

C r e a t e

N e W a v e

K o c c a !

2016. 2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2016. 2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이용자를 위한 안내〉

본 조사는 모집단을 통해 대표성 있는 표본이 추출되기 어려운 조사대상의 특성상, 임의 표본추출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수가 적은 분석항목의 경우, 경향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통계적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목 차



제 1 장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개요	1
제 1 절 조사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조사 방법	4
1. 독립제작사 조사 방법	4
2. 출연진(가수/배우) 조사 방법	5
3. 제작 스태프 조사 방법	6
4. 독립PD 조사 방법	7
제 3 절 표본특성	8
1. 독립제작사 표본특성	8
2. 출연진(가수, 배우) 표본특성	9
3. 제작 스태프 표본특성	10
4. 독립PD 표본특성	11
제 2 장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결과 요약	13
제 1 절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15
1. 독립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15
2. 출연진(가수/배우)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16
3. 제작 스태프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17
4. 독립PD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18
제 2 절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20
1. 독립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20
1) 방송사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납품/구매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20
2)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22
3)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25
2. 출연진(가수/배우)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28
1)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28
2)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30
3. 제작 스태프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32
1)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32
2)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34
4. 독립PD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37
1)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37
2)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39

제 3 절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	43
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진수	43
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43
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44
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44
5.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45
6. 4대 보험 가입 여부	46
7.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46
8.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47
9.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제도(중복응답)	47

제 3 장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결과 51

제 1 절 독립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53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53
2. 방송사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납품/구매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59
1)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59
2)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60
3)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64
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65
3.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67
1)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67
2)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68
3)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73
4)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74
4.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76
1)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76
2)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77
3)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85
4)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86
5.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87
1)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87
2) 출연진(가수/배우)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89
3)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90
4)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92
제 2 절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94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94
2.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96
1)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96
2)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97

3)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04
4)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06
3.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07
1)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07
2)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08
3)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15
4)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17
4.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18
1)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18
2)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19
3)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20
제 3 절 제작 스태프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121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121
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25
1)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25
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26
3)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32
4)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34
3.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35
1)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35
2)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36
3)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42
4)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44
4.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	145
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145
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146
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147
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148
5) 4대 보험 가입 여부	150
6)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155
7)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156
8)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제도(중복응답)	157
5.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58
1)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58
2) 외주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59
3)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60
제 4 절 독립PD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161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161
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65
1)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65

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66
3)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72
4)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74
3.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75
1)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75
2)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76
3)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82
4)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84
4.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	185
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185
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186
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187
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188
5) 4대 보험 가입 여부	190
6)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195
7)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196
8)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제도(중복응답)	197
5.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98
1)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98
2) 독립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200
3)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202

제 4 장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205

제 1 절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207

제 2 절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방안 215

【부 록】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설문지 221



표 목 차



〈표 1-2-1〉 독립제작사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4
〈표 1-2-2〉 가수/배우 등 출연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5
〈표 1-2-3〉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6
〈표 1-2-4〉 독립PD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7
〈표 1-3-1〉 독립제작사 표본특성	8
〈표 1-3-2〉 가수/배우 등 출연진 표본특성	9
〈표 1-3-3〉 제작 스태프 표본특성	10
〈표 1-3-4〉 독립PD 표본특성	11
〈표 2-1-1〉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16
〈표 2-1-2〉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17
〈표 2-1-3〉 제작 스태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17
〈표 2-1-4〉 독립PD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18
〈표 2-2-1〉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21
〈표 2-2-2〉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24
〈표 2-2-3〉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26
〈표 2-2-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29
〈표 2-2-5〉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31
〈표 2-2-6〉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33
〈표 2-2-7〉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36
〈표 2-2-8〉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38
〈표 2-2-9〉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40
〈표 3-1-1〉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54
〈표 3-1-2〉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인지도	54
〈표 3-1-3〉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인지도	55
〈표 3-1-4〉 제작사와 출연진(가수)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	56
〈표 3-1-5〉 제작사와 출연진(배우)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	56
〈표 3-1-6〉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	57
〈표 3-1-7〉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8
〈표 3-1-8〉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58
〈표 3-1-9〉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60
〈표 3-1-10〉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61
〈표 3-1-11〉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제작비 관련 내용 적용 정도	61
〈표 3-1-12〉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내용 적용 정도	62
〈표 3-1-13〉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63
〈표 3-1-1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수익배분 내용 적용 정도	63

〈표 3-1-15〉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 내용 적용 정도	64
〈표 3-1-16〉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65
〈표 3-1-17〉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66
〈표 3-1-18〉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68
〈표 3-1-19〉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69
〈표 3-1-20〉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내용 적용 정도	69
〈표 3-1-21〉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70
〈표 3-1-22〉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내용 적용 정도	71
〈표 3-1-23〉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71
〈표 3-1-24〉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내용 적용 정도	72
〈표 3-1-25〉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귀속 내용 적용 정도	73
〈표 3-1-26〉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74
〈표 3-1-27〉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75
〈표 3-1-28〉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77
〈표 3-1-29〉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78
〈표 3-1-30〉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적용 정도	79
〈표 3-1-31〉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 적용 정도	80
〈표 3-1-32〉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80
〈표 3-1-33〉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내용 적용 정도	81
〈표 3-1-34〉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82
〈표 3-1-35〉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82
〈표 3-1-36〉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	83
〈표 3-1-37〉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내용 적용 정도	84
〈표 3-1-38〉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84
〈표 3-1-39〉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85
〈표 3-1-40〉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86
〈표 3-1-41〉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87
〈표 3-1-42〉 출연진(가수/배우)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89
〈표 3-1-43〉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90
〈표 3-1-44〉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92
〈표 3-2-1〉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94
〈표 3-2-2〉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	95
〈표 3-2-3〉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97
〈표 3-2-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98
〈표 3-2-5〉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99
〈표 3-2-6〉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00
〈표 3-2-7〉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01
〈표 3-2-8〉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02
〈표 3-2-9〉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03
〈표 3-2-10〉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귀속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04

〈표 3-2-11〉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05
〈표 3-2-12〉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06
〈표 3-2-13〉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08
〈표 3-2-14〉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109
〈표 3-2-15〉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10
〈표 3-2-16〉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11
〈표 3-2-17〉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12
〈표 3-2-18〉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13
〈표 3-2-19〉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14
〈표 3-2-20〉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귀속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15
〈표 3-2-21〉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16
〈표 3-2-22〉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17
〈표 3-2-23〉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18
〈표 3-2-24〉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19
〈표 3-2-25〉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20
〈표 3-3-1〉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121
〈표 3-3-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	122
〈표 3-3-3〉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지 정도	123
〈표 3-3-4〉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 정도	124
〈표 3-3-5〉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26
〈표 3-3-6〉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127
〈표 3-3-7〉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28
〈표 3-3-8〉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28
〈표 3-3-9〉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29
〈표 3-3-10〉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29
〈표 3-3-11〉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0
〈표 3-3-12〉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0
〈표 3-3-13〉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1
〈표 3-3-14〉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1
〈표 3-3-15〉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2
〈표 3-3-16〉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33
〈표 3-3-17〉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34
〈표 3-3-18〉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36
〈표 3-3-19〉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137
〈표 3-3-20〉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8
〈표 3-3-21〉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8
〈표 3-3-22〉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9
〈표 3-3-23〉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39
〈표 3-3-24〉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140
〈표 3-3-25〉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40

〈표 3-3-26〉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	141
〈표 3-3-27〉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41
〈표 3-3-28〉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42
〈표 3-3-29〉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43
〈표 3-3-30〉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44
〈표 3-3-3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145
〈표 3-3-3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146
〈표 3-3-3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147
〈표 3-3-3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148
〈표 3-3-35〉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149
〈표 3-3-36〉 제작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비율	150
〈표 3-3-37〉 국민연금 가입 여부	151
〈표 3-3-38〉 건강보험 가입 여부	152
〈표 3-3-39〉 고용보험 가입 여부	153
〈표 3-3-40〉 산재보험 가입 여부	154
〈표 3-3-41〉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155
〈표 3-3-42〉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156
〈표 3-3-43〉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제도(중복응답)	157
〈표 3-3-44〉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58
〈표 3-3-45〉 외주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59
〈표 3-3-46〉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160
〈표 3-4-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161
〈표 3-4-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	162
〈표 3-4-3〉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지도	163
〈표 3-4-4〉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도	164
〈표 3-4-5〉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66
〈표 3-4-6〉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67
〈표 3-4-7〉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적용 정도	168
〈표 3-4-8〉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 적용 정도	168
〈표 3-4-9〉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169
〈표 3-4-10〉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내용 적용 정도	169
〈표 3-4-11〉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170
〈표 3-4-12〉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170
〈표 3-4-13〉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	171
〈표 3-4-14〉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내용 적용 정도	171
〈표 3-4-15〉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172
〈표 3-4-16〉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73
〈표 3-4-17〉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74
〈표 3-4-18〉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76
〈표 3-4-19〉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77

〈표 3-4-20〉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적용 정도	178
〈표 3-4-21〉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 적용 정도	178
〈표 3-4-22〉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179
〈표 3-4-23〉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내용 적용 정도	179
〈표 3-4-24〉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180
〈표 3-4-25〉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180
〈표 3-4-26〉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	181
〈표 3-4-27〉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내용 적용 정도	181
〈표 3-4-28〉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182
〈표 3-4-29〉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83
〈표 3-4-30〉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84
〈표 3-4-3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185
〈표 3-4-3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186
〈표 3-4-3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187
〈표 3-4-3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188
〈표 3-4-35〉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189
〈표 3-4-36〉 4대 보험 가입 여부	190
〈표 3-4-37〉 국민연금 가입 여부	191
〈표 3-4-38〉 건강보험 가입 여부	192
〈표 3-4-39〉 고용보험 가입 여부	193
〈표 3-4-40〉 산재보험 가입 여부	194
〈표 3-4-41〉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195
〈표 3-4-42〉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196
〈표 3-4-43〉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제도(중복응답)	197
〈표 3-4-44〉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198
〈표 3-4-45〉 독립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200
〈표 3-4-46〉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202
〈표 4-1-1〉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의 한계 및 개선방안	219



그림 목 차



〈그림 1-1-1〉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3
〈그림 2-1-1〉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15
〈그림 2-1-2〉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16
〈그림 2-1-3〉 제작 스태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17
〈그림 2-1-4〉 독립PD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18
〈그림 2-2-1〉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20
〈그림 2-2-2〉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21
〈그림 2-2-3〉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22
〈그림 2-2-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22
〈그림 2-2-5〉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23
〈그림 2-2-6〉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23
〈그림 2-2-7〉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24
〈그림 2-2-8〉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25
〈그림 2-2-9〉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25
〈그림 2-2-10〉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26
〈그림 2-2-11〉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27
〈그림 2-2-12〉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27
〈그림 2-2-13〉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28
〈그림 2-2-1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28
〈그림 2-2-15〉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29
〈그림 2-2-16〉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30
〈그림 2-2-17〉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31
〈그림 2-2-18〉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32
〈그림 2-2-19〉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32
〈그림 2-2-20〉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33
〈그림 2-2-21〉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34
〈그림 2-2-22〉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35
〈그림 2-2-23〉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35
〈그림 2-2-24〉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36
〈그림 2-2-25〉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37
〈그림 2-2-26〉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37
〈그림 2-2-27〉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38
〈그림 2-2-28〉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39
〈그림 2-2-29〉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40

〈그림 2-2-30〉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41
〈그림 2-3-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43
〈그림 2-3-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43
〈그림 2-3-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44
〈그림 2-3-4〉 제작 스태프의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44
〈그림 2-3-5〉 독립PD의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45
〈그림 2-3-6〉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45
〈그림 2-3-7〉 4대 보험 가입 여부	46
〈그림 2-3-8〉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 침해 경험 유형	46
〈그림 2-3-9〉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중복응답)	47
〈그림 2-3-10〉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제도(중복응답)	48
〈그림 3-1-1〉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53
〈그림 3-1-2〉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59
〈그림 3-1-3〉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60
〈그림 3-1-4〉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65
〈그림 3-1-5〉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66
〈그림 3-1-6〉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67
〈그림 3-1-7〉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68
〈그림 3-1-8〉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74
〈그림 3-1-9〉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75
〈그림 3-1-10〉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76
〈그림 3-1-11〉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78
〈그림 3-1-12〉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85
〈그림 3-1-13〉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86
〈그림 3-2-1〉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94
〈그림 3-2-2〉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96
〈그림 3-2-3〉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98
〈그림 3-2-4〉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05
〈그림 3-2-5〉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07
〈그림 3-2-6〉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109
〈그림 3-2-7〉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16
〈그림 3-3-1〉 제작 스태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121
〈그림 3-3-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25
〈그림 3-3-3〉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127
〈그림 3-3-4〉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33
〈그림 3-3-5〉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35
〈그림 3-3-6〉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137
〈그림 3-3-7〉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43
〈그림 3-3-8〉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146
〈그림 3-3-9〉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148

〈그림 3-3-10〉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149
〈그림 3-3-11〉 제작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비율	150
〈그림 3-4-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161
〈그림 3-4-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65
〈그림 3-4-3〉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67
〈그림 3-4-4〉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73
〈그림 3-4-5〉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175
〈그림 3-4-6〉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177
〈그림 3-4-7〉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183
〈그림 3-4-8〉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188
〈그림 3-4-9〉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189
〈그림 3-4-10〉 4대 보험 가입 여부	190
〈그림 4-1-1〉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및 적용 비율	208
〈그림 4-1-2〉 응답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209
〈그림 4-1-3〉 외주제작사-방송사 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외주사 응답)	210
〈그림 4-1-4〉 외주제작사-출연진 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외주사 응답)	210
〈그림 4-1-5〉 출연진-방송사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출연진 응답)	211
〈그림 4-1-6〉 외주제작사-스태프 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외주사 응답)	211
〈그림 4-1-7〉 스태프-방송사 근로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스태프 응답)	211
〈그림 4-1-8〉 각 대상별 적용이 어려운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항 상위 응답	212

제1장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개요

제 1 절 조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조사 방법

제 3 절 표본특성

제 1 장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개요

제 1 절 조사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 방송영상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방송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의 이용을 제도화/정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사, 독립제작사, 출연진(가수, 배우 등), 제작 스태프, 독립PD 등 방송분야 종사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 여부,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등을 중심으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고자 함.
- 아울러,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현황 및 점검을 통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의 활용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제작 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그림 1-1-1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제 2 절 조사 방법

1. 독립제작사 조사 방법

- 독립제작사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2015년 11월 현재 독립제작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3일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독립제작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자기기업식 설문지를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공문과 함께 우편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조사대상 사업체에 발송하고,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사업체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작성된 설문지는 이메일, 팩스, 전화 면접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였으며, 설문회수 이후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원을 통해 다시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하거나, 재질문을 통해 응답을 보완하였음.
- 독립제작사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여부,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 및 적용하지 않는 이유,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 우선 추진 과제,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이며,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방송사, 가수/배우 등의 출연진, 제작 스태프 등의 대상별로 조사 내용을 구분하였음.

〈 표 1-2-1 〉 독립제작사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102개 사업체
조 사 방 법	전화/팩스/온라인 등 복합조사
표 본 추 출	임의표본추출
조 사 기 간	2015. 11. 2(월) ~ 2015. 12. 4(금) : 33일간
주 요 조 사 내 용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2. 출연진(가수/배우) 조사 방법

- 가수/배우 등 출연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2015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음
- 또한, 2015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획사 대표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소속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표준계약서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음
- 가수/배우 등 출연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여부,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 및 적용하지 않는 이유,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 우선 추진 과제,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등이며,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 관련된 방송사, 외주제작사 등의 대상별로 조사 내용을 구분하였음.

〈 표 1-2-2 〉 가수/배우 등 출연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가수/배우 등 출연진 178명(가수 90명, 배우 88명)
조 사 방 법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표 본 추 출	임의표본추출
조 사 기 간	2015. 11. 16(월) ~ 2015. 12. 4(금) : 19일간
주 요 조 사 내 용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3. 제작 스태프 조사 방법

-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방송제작 관련한 촬영, 조명, 음향, 미술, 작가 등의 방송제작 인력들이 조사 대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단기간의 프로젝트 사업별로 고용되어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진행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한국방송문화산업기술인협회, 전문영상 업무연합 등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2015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바쁜 업무 스케줄과 개인정보 노출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해 조사 참여는 다소 저조하였음.
-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여부,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 및 적용하지 않는 이유,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 우선 추진 과제,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근로실태(제작 참여 건수, 보수 지급 형태, 보수 체불 경험, 제작 취소 경험, 4대 보험 가입 여부, 인권 침해 경험 등) 등이며, 제작 스태프와 관련된 방송사, 외주제작사 등의 대상별로 조사 내용을 구분하였음.

〈 표 1-2-3 〉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방송제작 관련 촬영, 조명, 음향, 미술, 작가 등 제작 스태프 58명
조 사 방 법	모바일 조사(Mobile Survey)
표 본 추 출	임의표본추출
조 사 기 간	2015. 11. 16(월) ~ 2015. 12. 04(금) : 19일간
주 요 조 사 내 용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 외주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제작 참여 건수, 보수 지급 형태, 보수 체불 경험, 제작 취소 경험, 4대 보험 가입 여부, 인권 침해 경험 등)

4. 독립PD 조사 방법

- 독립PD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2015년 11월 현재 독립PD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립PD의 연락처, 개인정보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한국독립PD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2015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일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 작성이 완료된 설문 응답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내용이 부실한 설문 응답에 대해서는 전문 조사원을 통해 다시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하거나, 재질문을 통해 응답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 독립PD의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 정도,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 및 적용하지 않는 이유,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 우선 추진 과제, 방송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제작 참여 건수, 보수 지급 형태, 보수 체불 경험, 제작 취소 경험, 4대 보험 가입 여부, 인권 침해 경험 등) 등이며, 독립PD와 관련된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의 대상별로 조사 내용을 구분하였음.

〈 표 1-2-4 〉 독립PD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독립PD 104명
조 사 방 법	모바일 조사(Mobile Survey)
표 본 추 출	임의표본추출
조 사 기 간	2015. 11. 16(월) ~ 2015. 12. 04(금) : 19일간
주 요 조 사 내 용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 독립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적용 여부 및 적용 정도 등)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제작 참여 건수, 보수 지급 형태, 보수 체불 경험, 제작 취소 경험, 4대 보험 가입 여부, 인권 침해 경험 등)



제 3 절 표본특성

1. 독립제작사 표본특성

- 독립제작사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독립제작사의 표본특성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규모별에 있어서는 종사자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66.7%로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33.3%)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71.6%로 10억원 이상인 중견 사업체(28.4%)보다 약 2배 이상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방송영상물 제작 장르별 특성으로는 다큐멘터리가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양/시사(18.6%), 드라마(13.7%), 오락/예능(8.8%), 애니메이션(6.9%), 교육/학습(4.9%), 영화(2.0%), 뉴스/보도, 스포츠/레저(각 1.0%) 등을 순을 보였음.

〈 표 1-3-1 〉 독립제작사 표본특성

구 분 (단위:%)		표본수(명)	비율(%)
전 체		102	100.0
상 근 로 자 수	1 0 명 미 만	68	66.7
	1 0 명 이 상	34	33.3
연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73	71.6
	1 0 억 원 이 상	29	28.4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13.7
	다 큐 멘 터 리	31	30.4
	애 니 메 이 션	7	6.9
	영 화	2	2.0
	오 락 / 예 능	9	8.8
	교 육 / 학 습	5	4.9
	교 양 / 시 사	19	18.6
	뉴 스 / 보 도	1	1.0
	스 포 츠 / 레 저	1	1.0
	기 타	13	12.7

2. 출연진(가수, 배우) 표본특성

- 가수/배우 등의 출연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방송출연자의 표본특성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방송출연자의 방송출연 계약기관 유형별로는 방송사가 56.2%로 외주제작사(43.8%)보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방송출연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67.9%로 여성(30.3%)보다 약 2배 정도 비중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39.9%), 20대(32.0%), 40대(20.8%), 50대 이상(7.3%) 순을 보였으며, 방송출연 활동기간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이 3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년 미만(25.8%), 3~5년 미만(18.5%), 5~10년 미만(16.3%) 순을 보였음.

〈 표 1-3-2 〉 가수/배우 등 출연진 표본특성

구 분 (단위:%)		표본수(명)	비율(%)
전 체		178	100.0
방 송 출 연 자 구	가 수	90	50.6
	배 우	88	49.4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100	56.2
	외 주 제 작 사	78	43.8
성 별	남 성	124	69.7
	여 성	54	30.3
연 령 별	2 0 대	57	32.0
	3 0 대	71	39.9
	4 0 대	37	20.8
	5 0 대 이 상	13	7.3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46	25.8
	3 ~ 5 년 미 만	33	18.5
	5 ~ 1 0 년 미 만	29	16.3
	1 0 년 이 상	70	39.3



3. 제작 스태프 표본특성

-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의 표본특성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77.6%로 여성(22.4%)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41.4%), 30대(31.0%), 40대(17.2%), 50대 이상(10.3%) 순으로 20대 연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제작관련 활동기간에서는 10년 이상이 37.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10년 미만(31.0%), 3~5년 미만(17.2%), 1~3년 미만(13.8%) 순을 보였으며, 계약기관 체결방식에 있어서는 제작사 개별 계약(37.9%), 방송사 개별 계약(32.8%), 제작사 팀별 계약(20.7%), 방송사 팀별 계약(8.6%) 순이었으며, 계약 형태에 있어서는 서면 계약이 60.3%로 구두 계약(24.1%)보다 약 2배 정도 비중이 높았으며(특별한 계약이 없음 15.5%), 소속회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가 있는 스태프가 67.2%로 소속회사가 없는 스태프(32.8%)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3-3 〉 제작 스태프 표본특성

구 분 (단위:%)			표본수(명)	비율(%)
전 체			58	100.0
성 별	남	성	45	77.6
	여	성	13	22.4
연 령 별	2	0 대	24	41.4
	3	0 대	18	31.0
	4	0 대	10	17.2
	5	0 대 이 상	6	10.3
제 작 관 련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8	13.8
	3 ~ 5	년 미 만	10	17.2
	5 ~ 10	년 미 만	18	31.0
	10	년 이 상	22	37.9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32.8
	방송사 팀별 계약		5	8.6
	제작사 개별 계약		22	37.9
	제작사 팀별 계약		12	20.7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35	60.3
	구 두 계 약		14	24.1
	특별한 계약 없음		9	15.5
소 속 회 사 유 무	소 속 회 사 있 음		39	67.2
	소 속 회 사 없 음		19	32.8

4. 독립PD 표본특성

- 독립PD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독립PD의 표본특성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79.8%로 여성(20.2%)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59.6%), 40대(24.0%), 20대(15.4%), 50대 이상(1.0%) 순을 보였음.
- 제작관련 활동기간에서는 10년 이상이 50.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10년 미만(34.0%), 3~5년 미만(10.6%), 1~3년 미만(4.8%) 순을 보였으며, 계약기관 체결방식에 있어서는 제작사 개별 계약(74.0%), 방송사 개별 계약(14.4%), 방송사 팀별 계약(6.7%), 제작사 팀별 계약(4.8%) 순이었으며, 계약 형태에 있어서는 서면 계약이 60.6%로 구두 계약(39.4%)보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가 있다는 응답이 77.9%로 소속사가 없다는 응답(22.1%)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3-4 〉 독립PD 표본특성

구 분 (단위:%)			표본수(명)	비율(%)
전 체			104	100.0
성 별	남	성	83	79.8
	여	성	21	20.2
연 령 별	2	0	대	15.4
	3	0	대	59.6
	4	0	대	24.0
	5	0	대 이 상	1.0
제 작 관 련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5	4.8
	3 ~ 5 년 미 만		11	10.6
	5 ~ 1 0 년 미 만		36	34.0
	1 0 년 이 상		52	50.0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14.4
	방송사 팀별 계약		7	6.7
	제작사 개별 계약		77	74.0
	제작사 팀별 계약		5	4.8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63	60.6
	구 두 계 약		41	39.4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77.9
	소 속 사 없 음		23	22.1

제2장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결과 요약

제 1 절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제 2 절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제 3 절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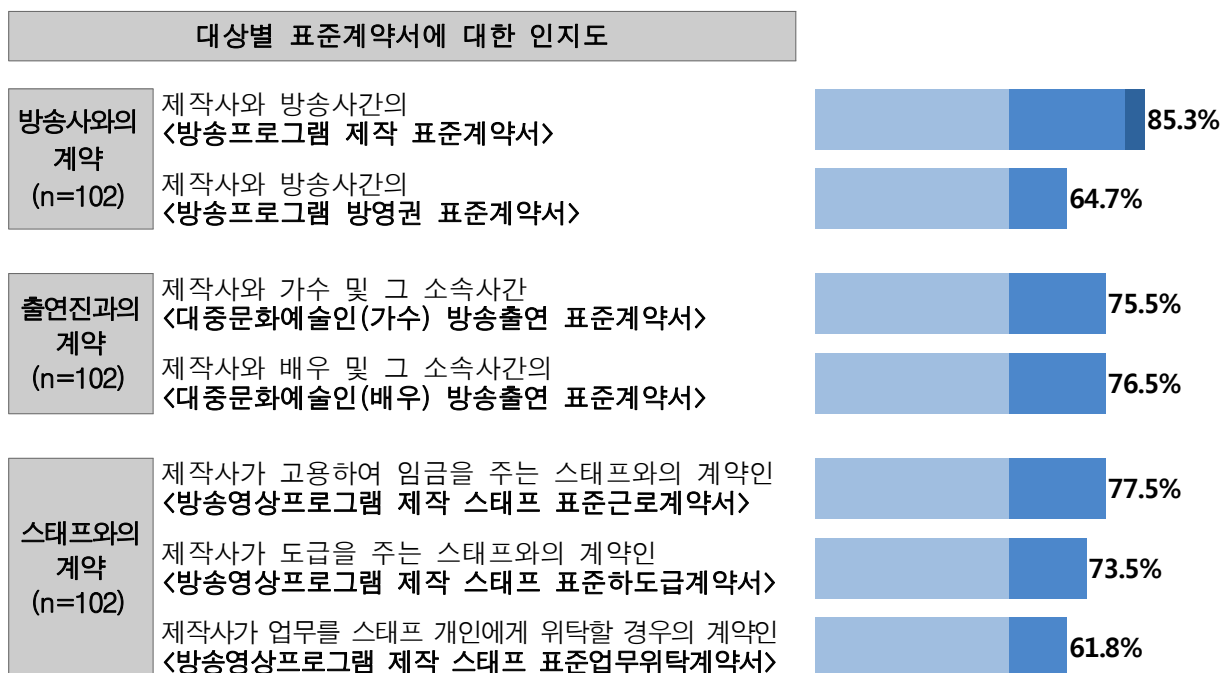
제 2 장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결과 요약

제 1 절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1. 독립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 독립제작사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를 계약 대상별(방송사, 출연진, 스태프)로 살펴보면,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 계약 시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64.7%로 나타났으며, 독립제작사와 출연진 간 계약 시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가수의 경우 75.5%, 배우의 경우 76.5%로 나타났고, 독립제작사와 스태프 간 계약 시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는 77.5%,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지도는 73.5%,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도는 61.8%로 나타남(n=102).
- 독립제작사의 경우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85.3%로 가장 높은 반면, 제작사와 제작 스태프 간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61.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n=102).

〈그림 2-1-1〉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 인지층(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들어는 보았다)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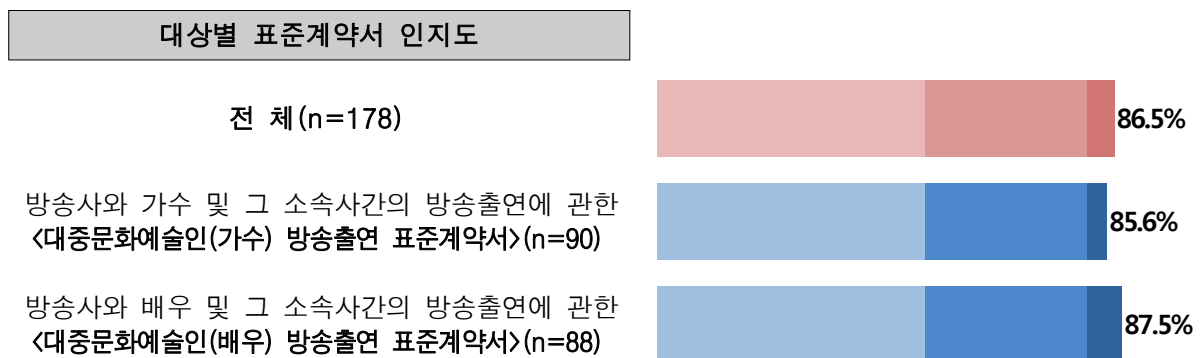
〈 표 2-1-1 〉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구 분 (단위:%)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총	비 인지총
방송사와의 계약 (n=102)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9.4	29.4	26.5	11.8	2.9	85.3	14.7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21.6	27.5	15.7	25.5	9.8	64.7	35.3
출연진과의 계약 (n=102)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9.4	21.6	24.5	15.7	8.8	75.5	24.5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33.3	22.5	20.6	14.7	8.8	76.5	23.5
스태프와의 계약 (n=10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28.4	25.5	23.5	15.7	6.9	77.5	22.5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28.4	23.5	21.6	18.6	7.8	73.5	26.5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21.6	18.6	21.6	27.5	10.8	61.8	38.2

2. 출연진(가수/배우)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경우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는 86.5%로 나타났으며 (n=178), 출연진의 유형별(가수, 배우)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를 살펴보면, 가수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6%(n=90), 배우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7.5%로 나타남(n=88).
- 세부 대상별로는 배우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87.5%, 가수의 인지도가 85.6%로 나타나, 가수와 배우 간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 그림 2-1-2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 인지총(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들어는 보았다)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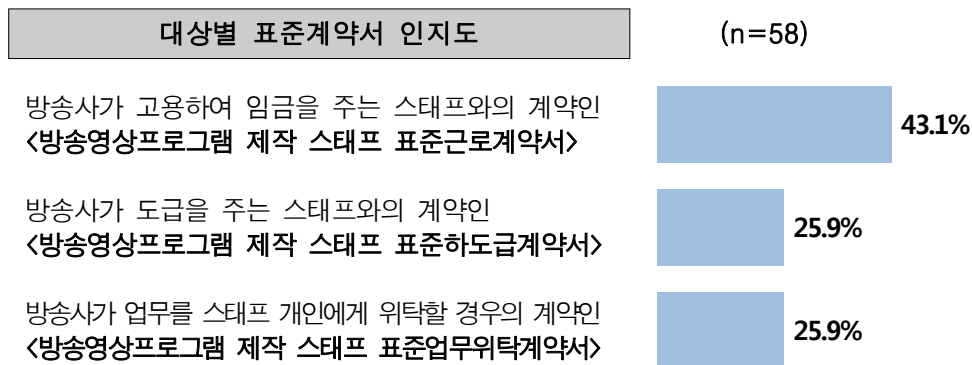
〈표 2-1-2〉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총	비 인지총
전 체	178	36.0	37.6	12.9	9.0	4.5	86.5	13.5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90	30.0	43.3	12.2	12.2	2.2	85.6	14.4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88	42.0	31.8	13.6	5.7	6.8	87.5	12.5

3. 제작 스태프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 제작 스태프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를 살펴보면,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표준근로계약서의 인지도는 43.1%로 나타난 반면,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방송사가 업무를 스태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인지도는 각 25.9%로 상대적으로 낮았음(n=58).

〈그림 2-1-3〉 제작 스태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 인지총(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들어는 보았다)만 표기

〈표 2-1-3〉 제작 스태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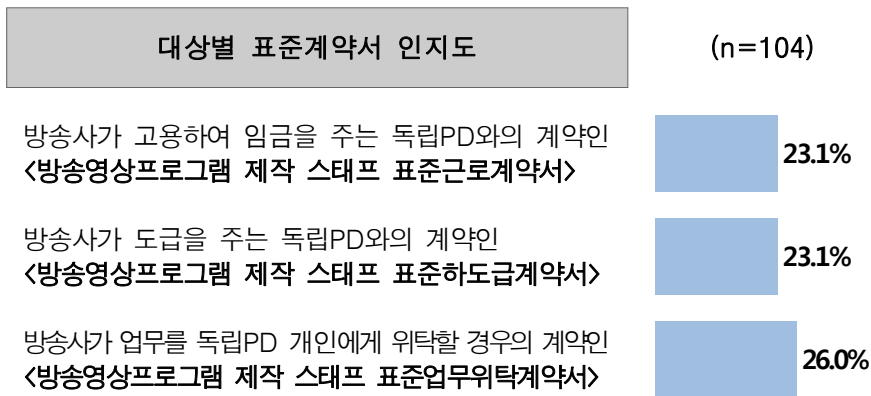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총	비 인지총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58	6.9	6.9	29.3	31.0	25.9	43.1	56.9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8	.0	5.2	20.7	43.1	31.0	25.9	74.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58	3.4	1.7	20.7	37.9	36.2	25.9	74.1



4. 독립PD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 독립PD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를 살펴보면, 방송사가 업무를 독립PD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인지도는 26.0%,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표준근로계약서의 인지도와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인지도는 각 23.1%로 독립PD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음(n=104).

〈그림 2-1-4〉 독립PD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 인지층(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들어는 보았다)만 표기

〈표 2-1-4〉 독립PD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04	1.0	4.8	17.3	28.8	48.1	23.1	76.9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104	2.9	5.8	14.4	31.7	45.2	23.1	76.9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104	1.0	2.9	22.1	24.0	50.0	26.0	74.0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관련 시사점

-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방송분야에 따른 계약 대상별, 표준계약서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출연진의 인지도가 평균 8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독립제작사(평균 73.5%), 제작 스태프(평균 31.6%), 독립PD(평균 24.1%) 순으로 나타남.
- 출연진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참여자 중 비교적 규모가 있는 일부 소속사 출연진의 조사 참여가 있었고, 가수/배우 등 출연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까다로워 추가적으로 실시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법정교육 현장방문을 통한 기획업자 대상의 간접 조사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독립제작사와 출연진의 인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중견 이상의 독립제작사나 소속사의 경우,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표준계약서가 철저히 요구되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제작 스태프나 독립PD의 인지도는 계약 대상별, 표준계약서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3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같이 방송 제작 현장 근무자인 제작 스태프와 독립PD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방송 제작 환경과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명, 음양, 작가 등의 제작 스태프와 독립PD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 형태의 프로젝트 사업별로 단기간 종사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로 참여해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대체인력이 많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방송 관련 제작 스태프 및 독립PD의 근로 및 복지 환경 뿐만 아니라 독립제작사의 경영여건 또한 그 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또한 정부에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대중문화예술 관련 기획업자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강제하는 등 방송분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영향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방송분야 인력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무여건 및 복지환경이 가장 열악한 제작 스태프(독립PD 포함)의 표준계약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인식의 확대를 통해 표준계약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 2 절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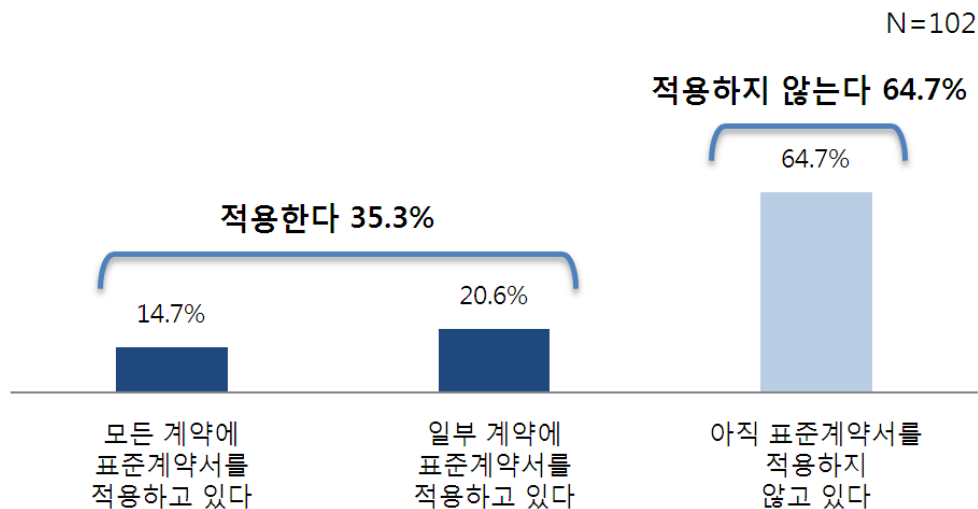
1. 독립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방송사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납품/구매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제작사가 방송사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5.3%(모든 계약 적용 14.7% + 일부 계약 적용 20.6%)로 나타남(n=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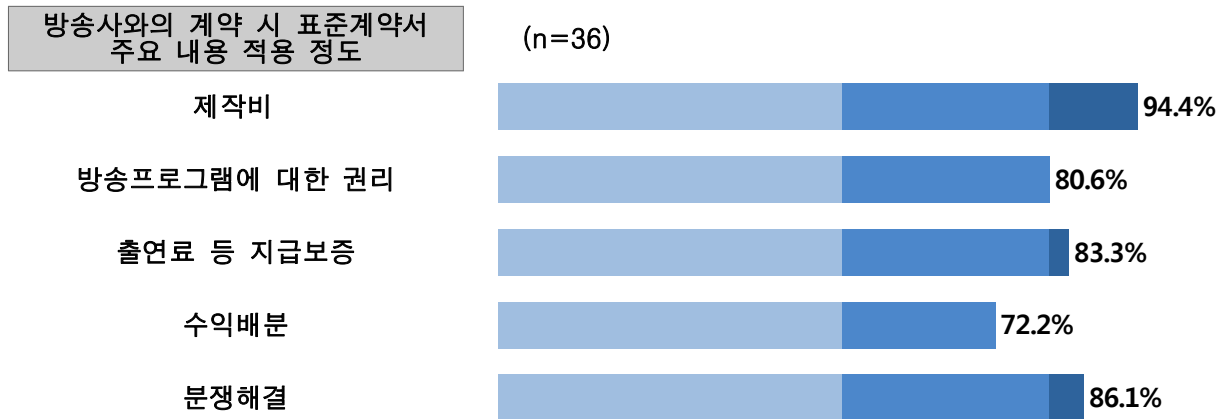
〈그림 2-2-1〉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②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독립제작사(n=36)의 제작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출연료 등 지급보증, 수익배분,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3.3%인 것으로 나타남.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제작비가 94.4%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분쟁해결(86.1%), 출연료 등 지급보증(83.3%),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80.6%), 수익배분(72.2%) 순으로 나타남(n=36).

〈그림 2-2-2〉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2-2-1〉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구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제작비	36	33.3	44.4	16.7	5.6	.0	94.4	5.6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36	30.6	38.9	11.1	11.1	8.3	80.6	19.4
출연료 등 지급보증	36	27.8	44.4	11.1	8.3	8.3	83.3	16.7
수익배분	36	25.0	41.7	5.6	22.2	5.6	72.2	27.8
분쟁해결	36	44.4	30.6	11.1	8.3	5.6	86.1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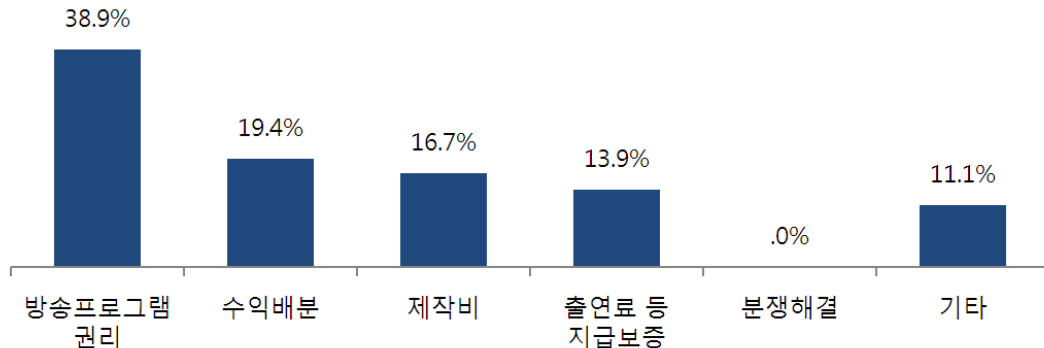
③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익배분(19.4%), 제작비(16.7%), 출연료 등 지급보증(13.9%) 등의 순을 보였음(n=36).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본적인 권리는 방송사가 가지게 되어 있어서라는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표준계약서 내용이 장황하고 반복적이어서, 모든 납품 영상물을 동일한 계약서 내용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방송 전 방송물에 대한 성공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각 1명) 등이 있었음.



〈그림 2-2-3〉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N=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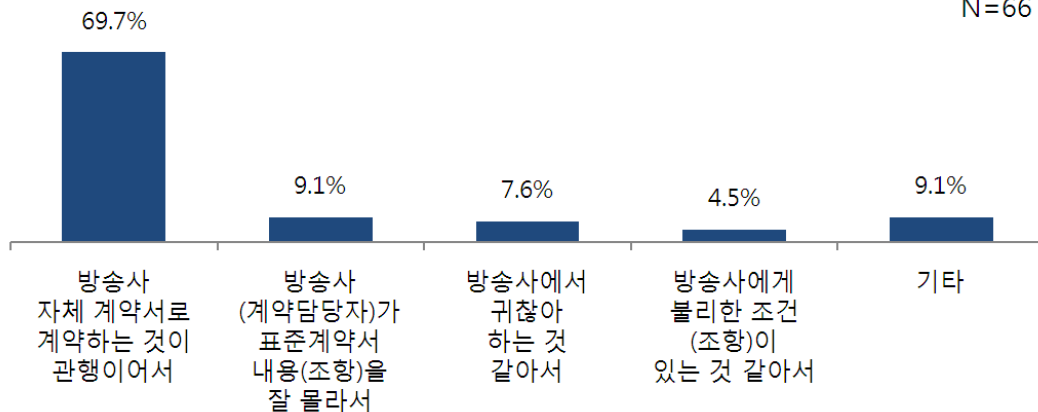


④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독립제작사(n=66)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가 6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9.1%), 방송사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7.6%),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4.5%) 등의 순을 보였음

〈그림 2-2-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N=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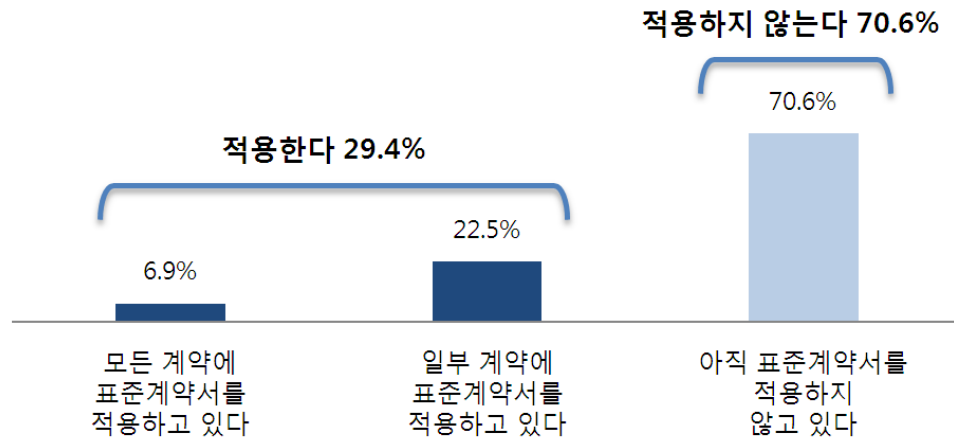
2)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제작사가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 계약 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9.4%(모든 계약 적용 6.9% + 일부 계약 적용 22.5%)로 나타남(n=102).

〈그림 2-2-5〉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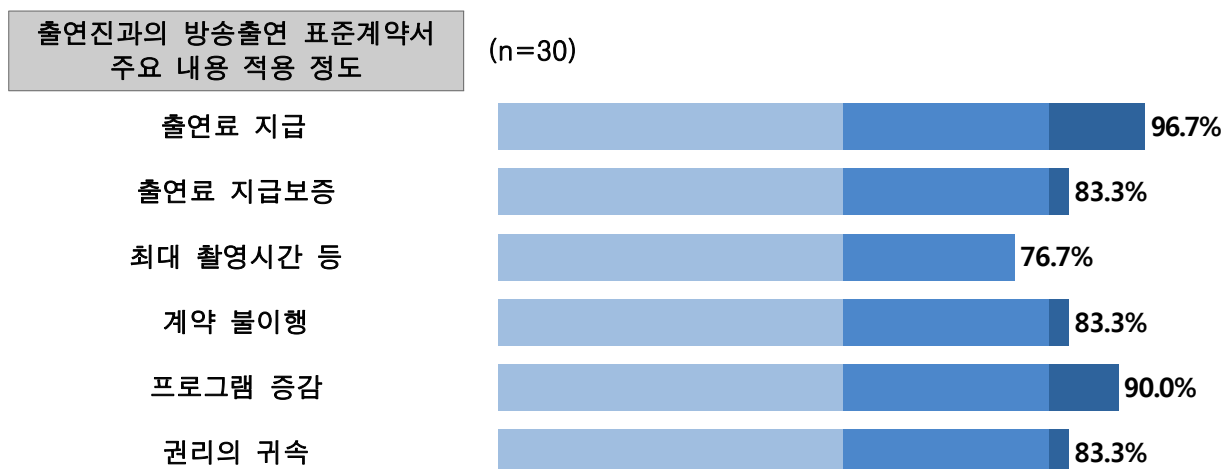
N=102



②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독립제작사를 대상 (n=30)으로 한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시간, 계약 불이행, 프로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5.6%인 것으로 나타남.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n=30), 출연료 지급이 96.7%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증감(90.0%), 출연료 지급 보증, 계약 불이행, 권리의 귀속(각 83.3%), 최대 촬영시간(7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6〉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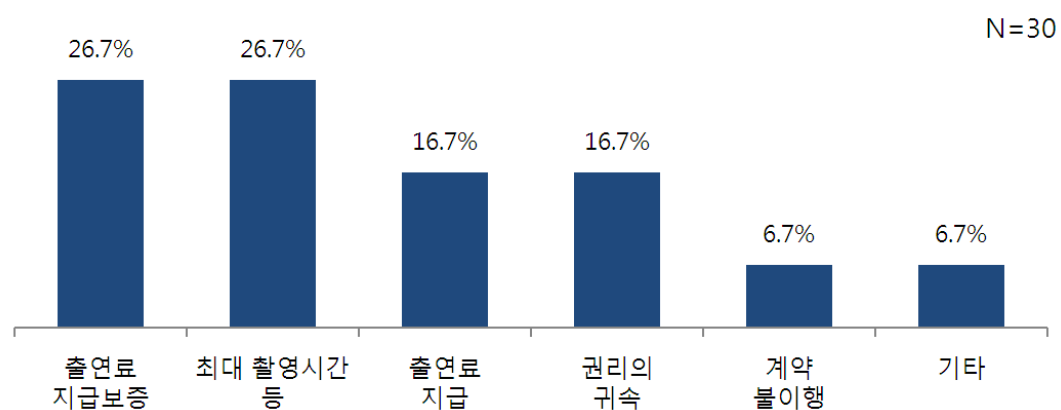
〈표 2-2-2〉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출연료 지급	30	16.7	66.7	13.3	3.3	.0	96.7	3.3
출연료 지급보증	30	20.0	46.7	16.7	16.7	.0	83.3	16.7
최대 촬영시간 등	30	13.3	43.3	20.0	20.0	3.3	76.7	23.3
계약 불이행	30	33.3	40.0	10.0	10.0	6.7	83.3	16.7
프로그램 증감	30	33.3	50.0	6.7	6.7	3.3	90.0	10.0
권리의 귀속	30	40.0	40.0	3.3	13.3	3.3	83.3	16.7

③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으로는 출연료 지급보증과 최대 촬영시간이 각 2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연료 지급과 권리의 귀속(각 16.7%), 계약 불이행(6.7%) 등의 순을 보였음(n=30).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증기금을 내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케줄 변경으로 추가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출연자와 별도로 협의해서(각 3명) 등이 있었음.

〈그림 2-2-7〉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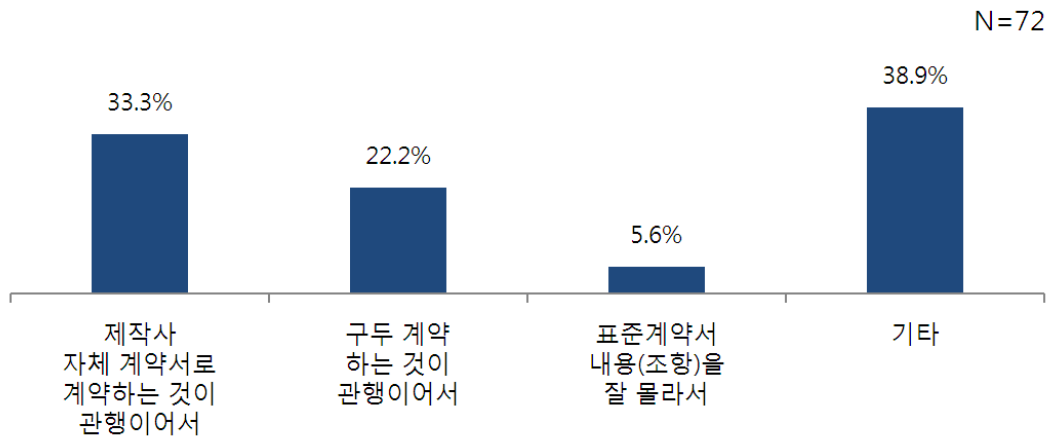


④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독립제작사(n=72)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22.2%),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5.6%)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38.9%), 기타(38.9%)는 출연진과 계약한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그림 2-2-8〉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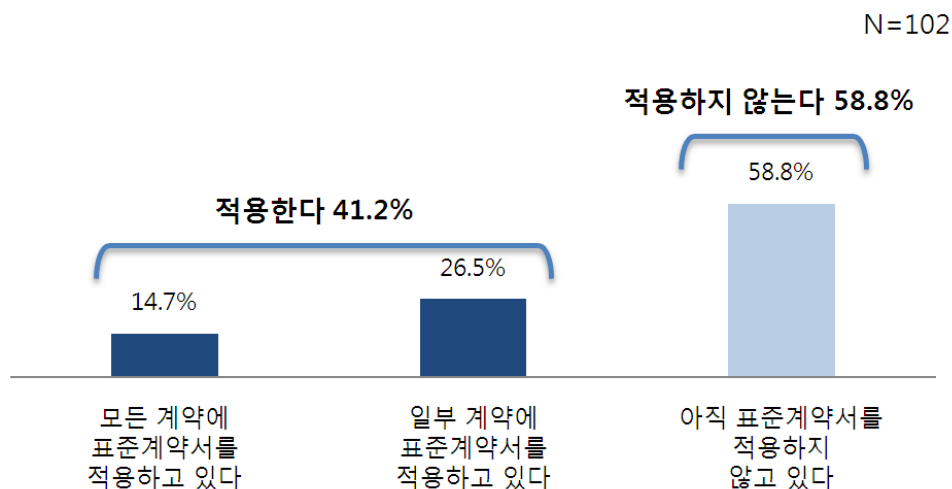


3)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제작사가 제작 스태프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1.2% (모든 계약 적용 14.7% + 일부 계약 적용 26.5%)로 나타남(n=102).

〈그림 2-2-9〉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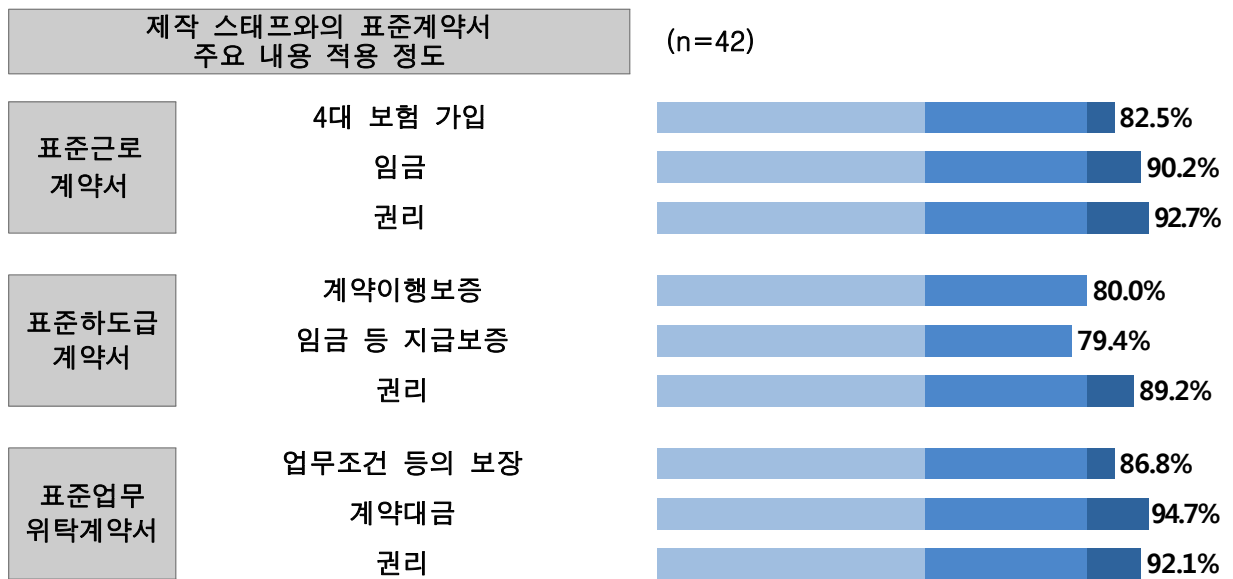




②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제작스태프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독립제작사의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8.5%,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2.9%,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91.2%로 나타남(n=42).

〈그림 2-2-10〉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2-2-3〉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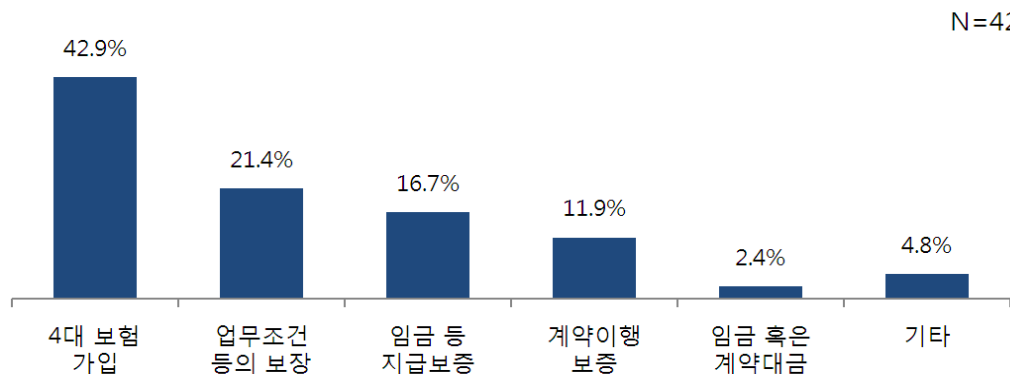
구 분 (단위: %)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총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40	40.0	35.0	7.5	15.0	2.5	82.5	17.5
	임금	41	39.0	46.3	4.9	7.3	2.4	90.2	9.8
	권리	41	48.8	36.6	7.3	7.3	.0	92.7	7.3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35	34.3	40.0	5.7	17.1	2.9	80.0	20.0
	임금 등 지급보증	34	32.4	38.2	8.8	14.7	5.9	79.4	20.6
	권리	37	40.5	37.8	10.8	8.1	2.7	89.2	10.8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38	31.6	34.2	21.1	10.5	2.6	86.8	13.2
	계약대금	38	34.2	47.4	13.2	2.6	2.6	94.7	5.3
	권리	38	44.7	31.6	15.8	2.6	5.3	92.1	7.9

※ 해당없음이라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③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조건 등의 보장(21.4%), 임금 등 지급 보증(16.7%), 계약이행보증(11.9%), 임금 혹은 계약대금(2.4%) 등의 순을 보였음(n=42).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스태프가 프리랜서라 4대보험 적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커서(4명), 촬영 시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1명) 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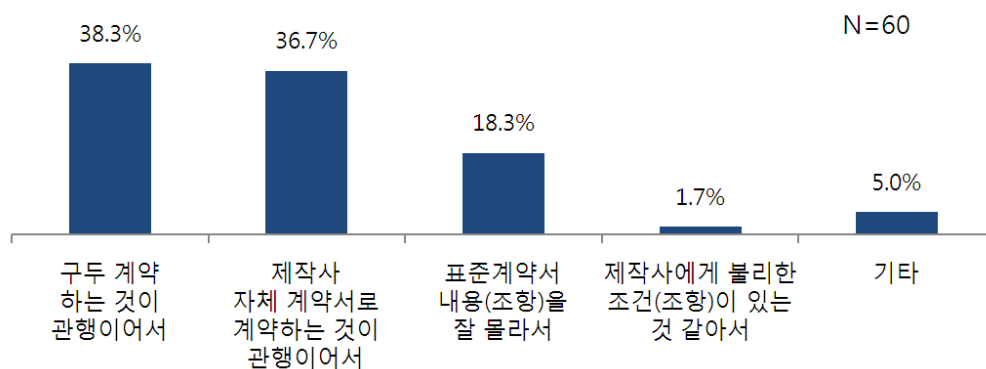
〈그림 2-2-11〉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④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독립제작사(n=60)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36.7%),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18.3%),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1.7%)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5.0%).

〈그림 2-2-12〉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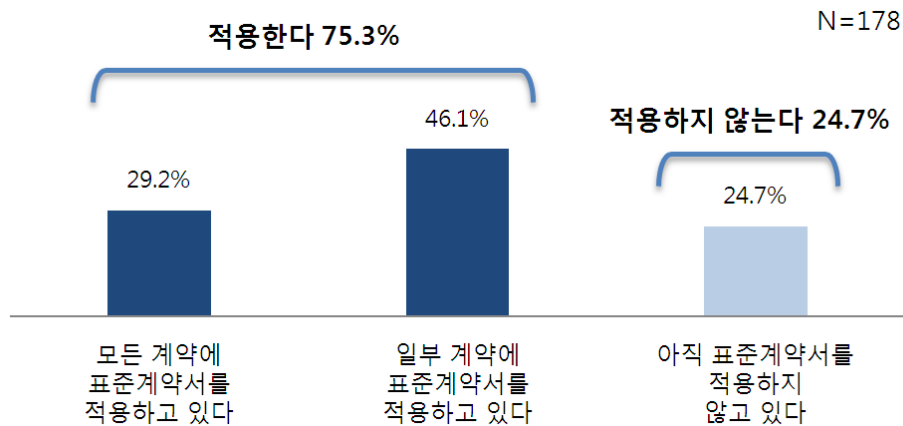
2. 출연진(가수/배우)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이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75.3%(모든 계약 적용 29.2% + 일부 계약 적용 46.1%)로 나타남(n=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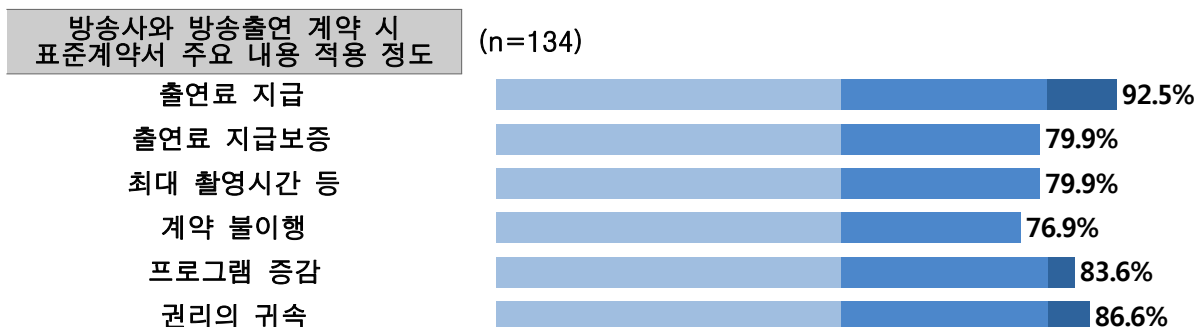
〈그림 2-2-13〉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②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출연진을 대상(n=134)으로 한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시간 등, 계약 불이행, 프로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등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1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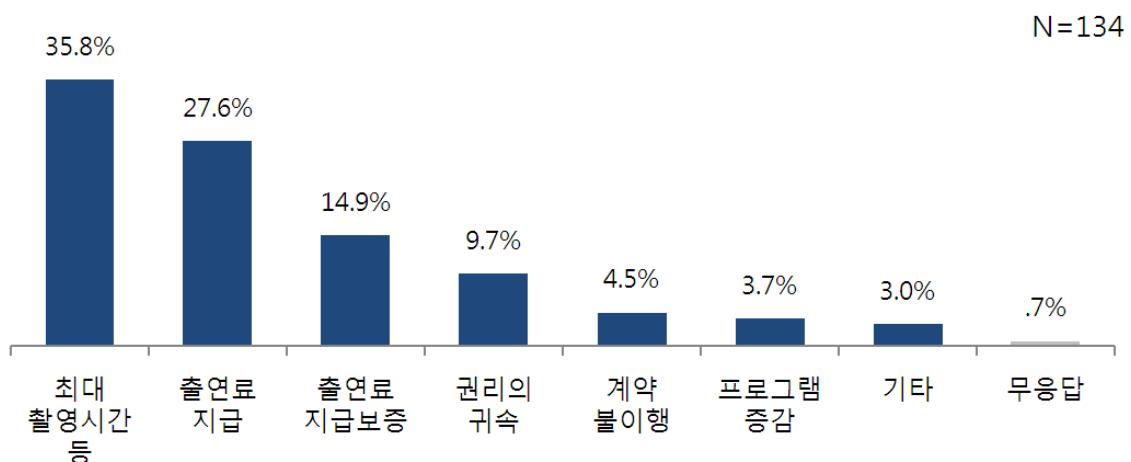
〈표 2-2-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출연료 지급	134	50.0	29.1	13.4	6.0	1.5	92.5	7.5
출연료 지급보증	134	38.8	20.9	20.1	12.7	7.5	79.9	20.1
최대 촬영시간 등	134	38.1	20.1	21.6	12.7	7.5	79.9	20.1
계약 불이행	134	41.0	19.4	16.4	18.7	4.5	76.9	23.1
프로그램 증감	134	40.3	26.1	17.2	13.4	3.0	83.6	16.4
권리의 귀속	134	47.0	21.6	17.9	9.7	3.7	86.6	13.4

③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이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 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최대 촬영시간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연료 지급(27.6%), 출연료 지급보증(14.9%), 권리의 귀속(9.7%), 계약 불이행(4.5%), 프로그램 증감(3.7%) 등의 순을 보였음(n=134).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드라마 제작 환경이 열악하고 유동성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급기한과 시스템이 부적절해서(23.1%), 기획사에서는 방송사에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라서(11.5%), 방송사 다이렉트 계약이 아닌 제작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그래서(각 7.7%) 등이 있었음.

〈그림 2-2-15〉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④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가수/배우 등이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출연진(n=44)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게 관행이어서가 3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22.7%),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방송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각 18.2%),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9.1%)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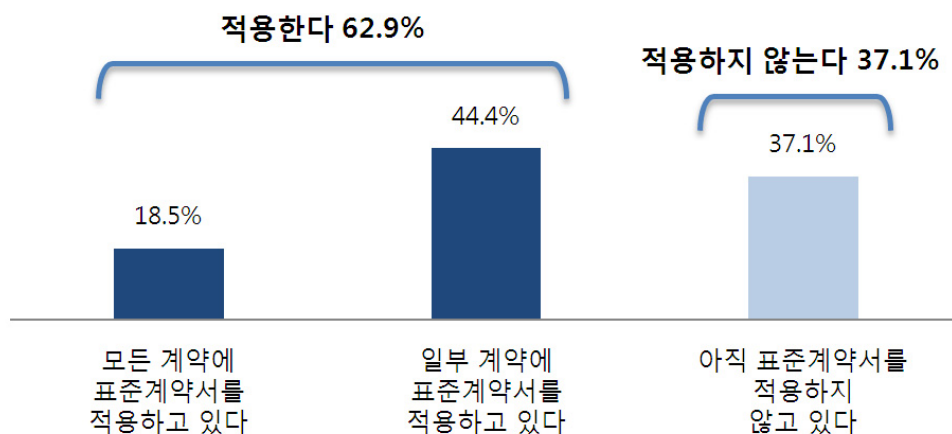
2)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이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62.9%(모든 계약 적용 18.5% + 일부 계약 적용 44.4%)로 나타남(n=178).

〈그림 2-2-16〉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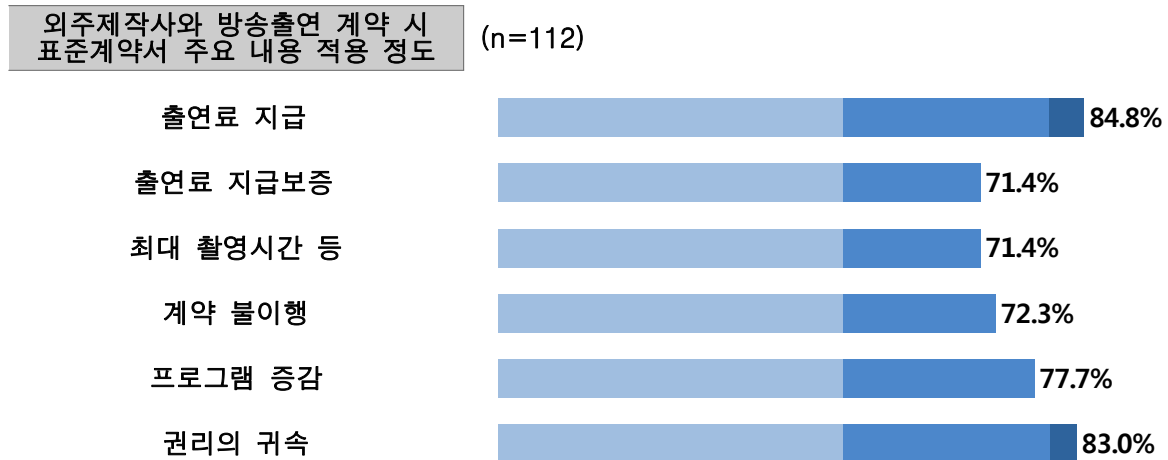
N=178



②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가수/배우 등 출연진을 대상(n=112)으로 한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시간 등, 계약 불이행, 프로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76.8%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17〉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2-2-5〉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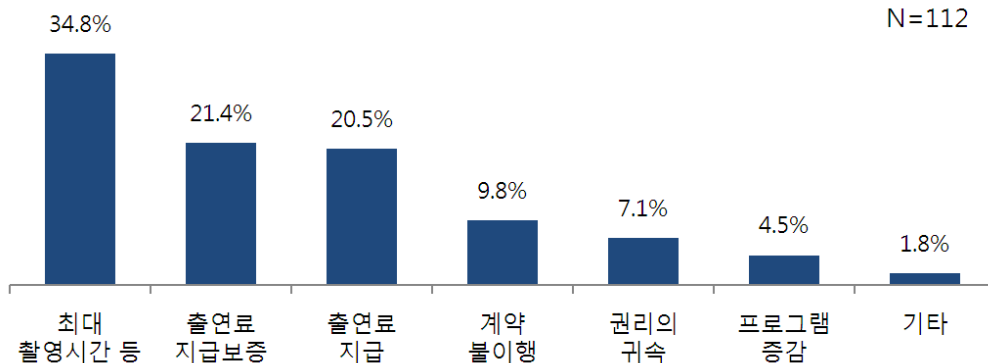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출연료 지급	112	36.6	31.3	17.0	11.6	3.6	84.8	15.2
출연료 지급보증	112	33.9	17.9	19.6	20.5	8.0	71.4	28.6
최대 촬영시간 등	112	27.7	22.3	21.4	20.5	8.0	71.4	28.6
계약 불이행	112	29.5	21.4	21.4	17.9	9.8	72.3	27.7
프로그램 증감	112	28.6	29.5	19.6	17.0	5.4	77.7	22.3
권리의 귀속	112	32.1	25.9	25.0	12.5	4.5	83.0	17.0

③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최대 촬영시간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연료 지급보증(21.4%), 출연료 지급(20.5%), 계약 불이행(9.8%), 권리의 귀속(7.1%), 프로그램 증감(4.5%) 등의 순을 보였음(n=112).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표준계약서가 현실적이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제작사에서 지급보증을 잘 안해서(각 4명) 등이 있었음.



〈그림 2-2-18〉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④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출연진(n=66)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가 3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22.7%), 제작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18.2%),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13.6%),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12.1%)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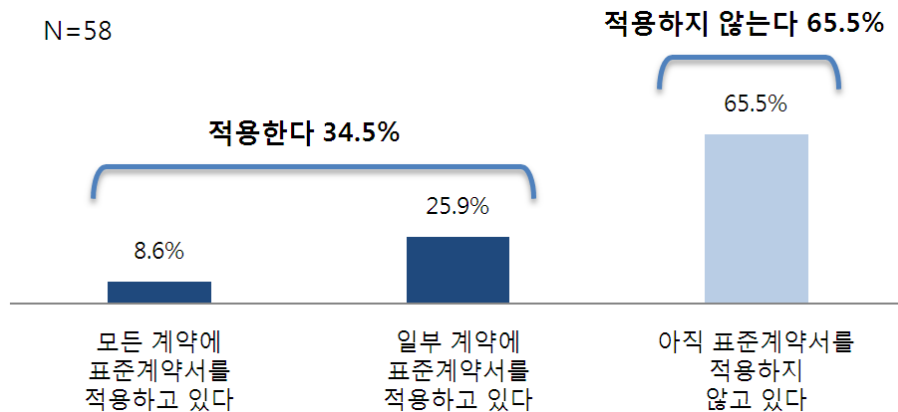
3. 제작 스태프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제작 스태프가 방송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4.5%(모든 계약 적용 8.6% + 일부 계약 적용 25.9%)로 나타남(n=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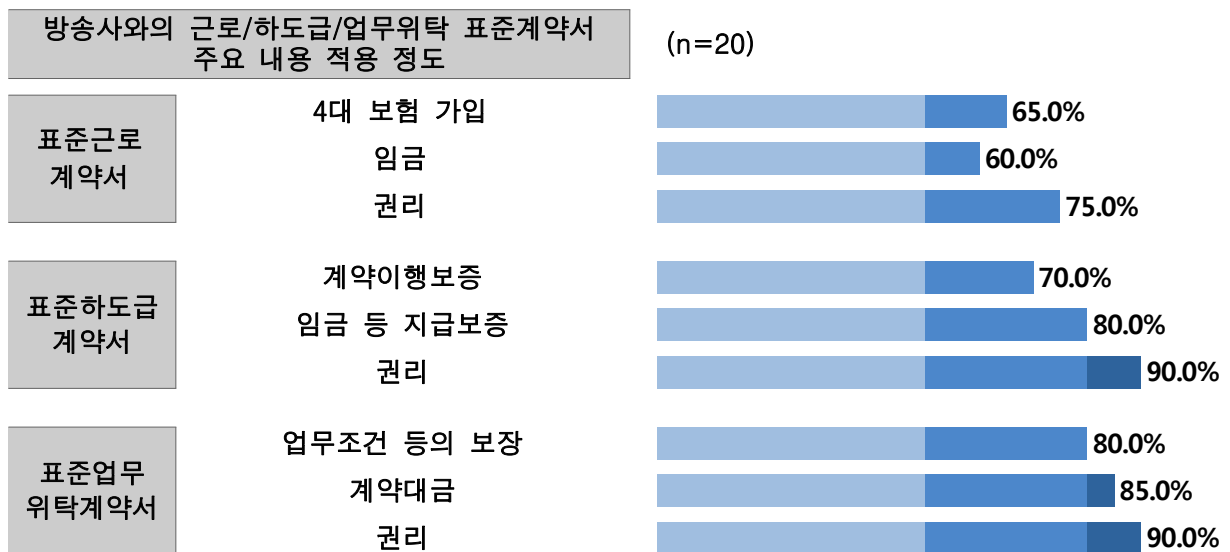
〈그림 2-2-19〉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②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방송사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스태프(n=20) 중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66.6%,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0.0%,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5.0%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20〉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2-2-6〉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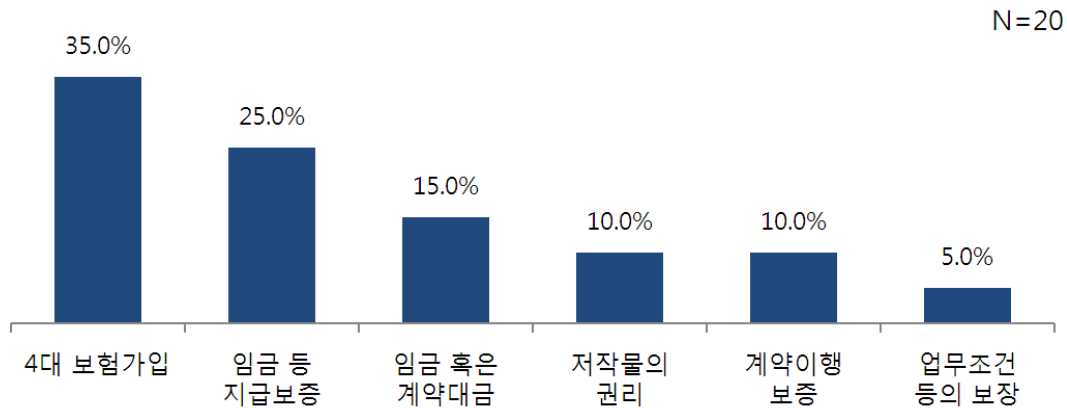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20	30.0	.0	35.0	30.0	5.0	65.0	35.0
	임금	20	5.0	5.0	50.0	30.0	10.0	60.0	40.0
	권리	20	15.0	5.0	55.0	25.0	10.0	75.0	25.0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20	.0	35.0	35.0	20.0	10.0	70.0	30.0
	임금 등 지급보증	20	.0	25.0	55.0	20.0	.0	80.0	20.0
	권리	20	10.0	25.0	55.0	10.0	.0	90.0	10.0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20	.0	25.0	55.0	10.0	10.0	80.0	20.0
	계약대금	20	5.0	35.0	45.0	15.0	.0	85.0	15.0
	권리	20	20.0	25.0	45.0	10.0	.0	90.0	10.0



③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 등 지급보증(25.0%), 임금 혹은 계약대금(15.0%), 저작물 권리, 계약이행보증(각 10.0%), 업무조건 등의 보장(5.0%) 순을 보였음(n=20).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프리랜서라서 잘 적용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4대 보험 정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라는 응답이 각 2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추가수당을 받기 힘들다(1명) 등이 있었음.

<그림 2-2-21>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④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스태프(n=38)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26.3%),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13.2%),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각 7.9%)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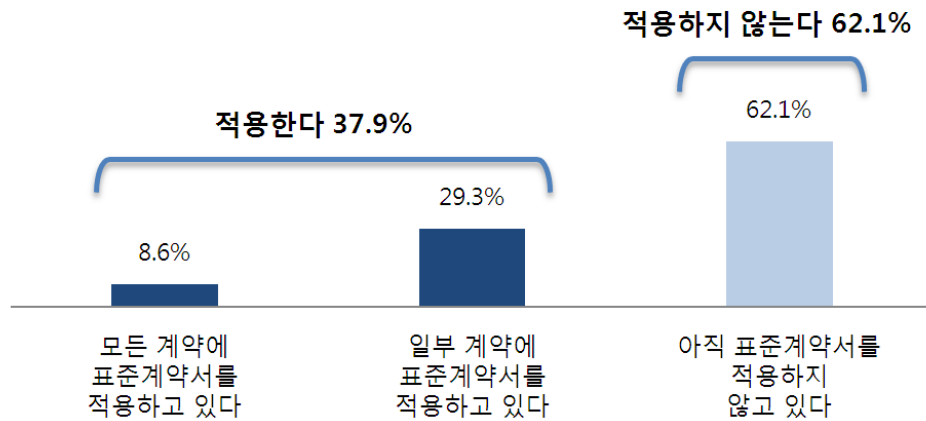
2)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제작 스태프가 방송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4.5%(모든 계약 적용 8.6% + 일부 계약 적용 25.9%)로 나타남(n=58).

〈 그림 2-2-22 〉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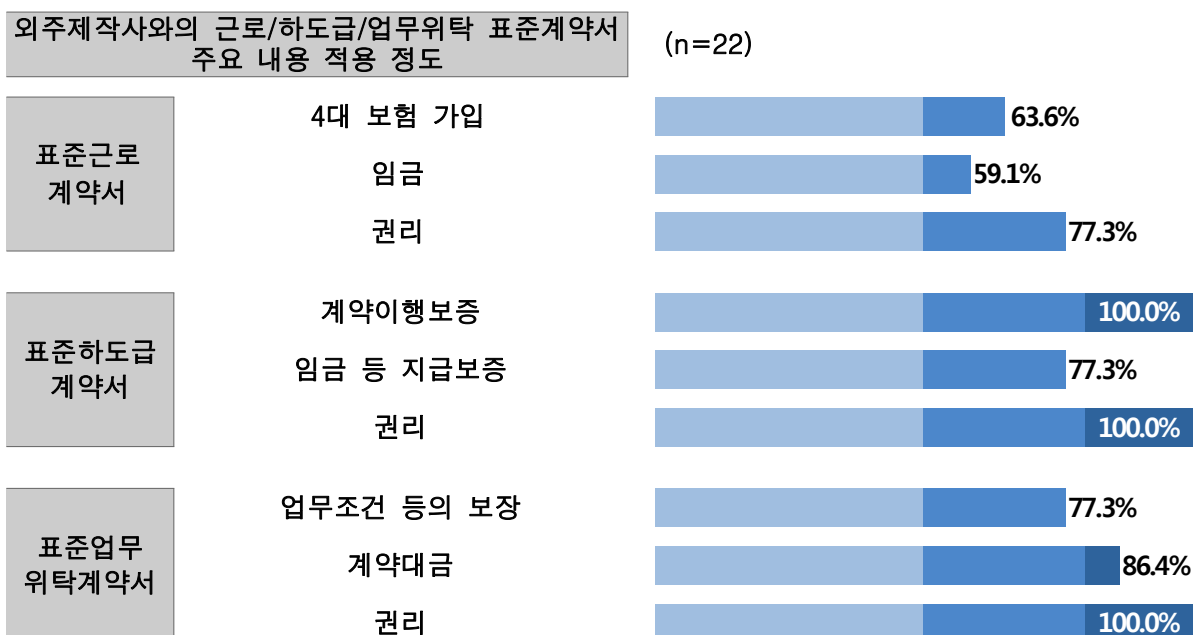
N=58



②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66.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92.4%,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7.9%인 것으로 나타남(n=22).

〈 그림 2-2-23 〉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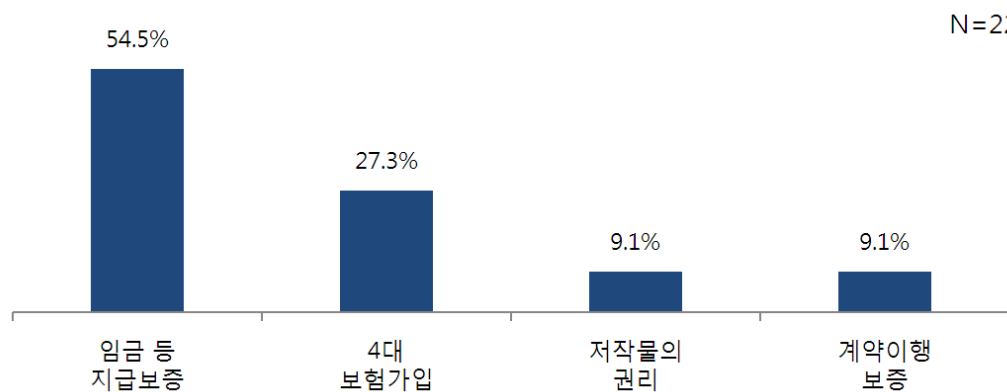
〈 표 2-2-7 〉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총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22	13.6	.0	50.0	13.6	22.7	63.6	36.4
	임금	22	13.6	13.6	31.8	.0	40.9	59.1	40.9
	권리	22	13.6	13.6	50.0	.0	22.7	77.3	22.7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22	27.3	.0	72.7	.0	.0	100.0	.0
	임금 등 지급보증	22	27.3	.0	50.0	22.7	.0	77.3	22.7
	권리	22	13.6	36.4	50.0	.0	.0	100.0	.0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22	13.6	13.6	50.0	22.7	.0	77.3	22.7
	계약대금	22	50.0	.0	36.4	.0	13.6	86.4	13.6
	권리	22	50.0	.0	50.0	.0	.0	100.0	.0

③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임금 등 지급보증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27.3%), 저작물 권리, 계약이행보증(각 9.1%) 순을 보였고,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증권 수수료의 문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대인보험 및 장비보험으로 이용, 현실적으로 어려움(각 1명) 등이 있었음(n=22).

〈 그림 2-2-24 〉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④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스태프(n=36)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각 22.2%), 제작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13.9%),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8.3%)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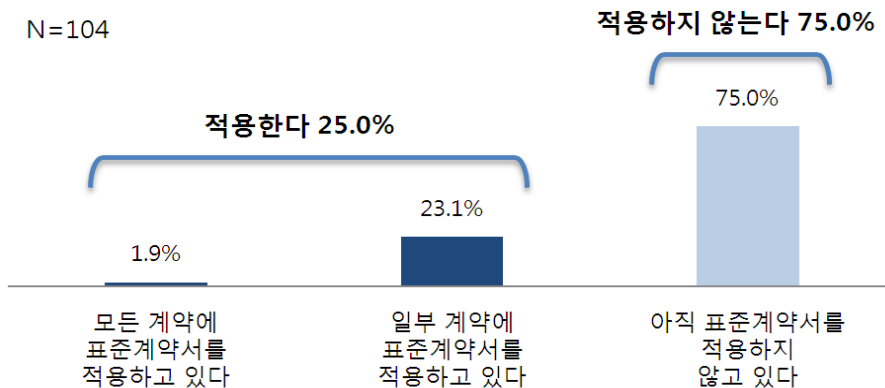
4. 독립PD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PD가 방송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5.0%(모든 계약 적용 1.9% + 일부 계약 적용 23.1%)로 나타남(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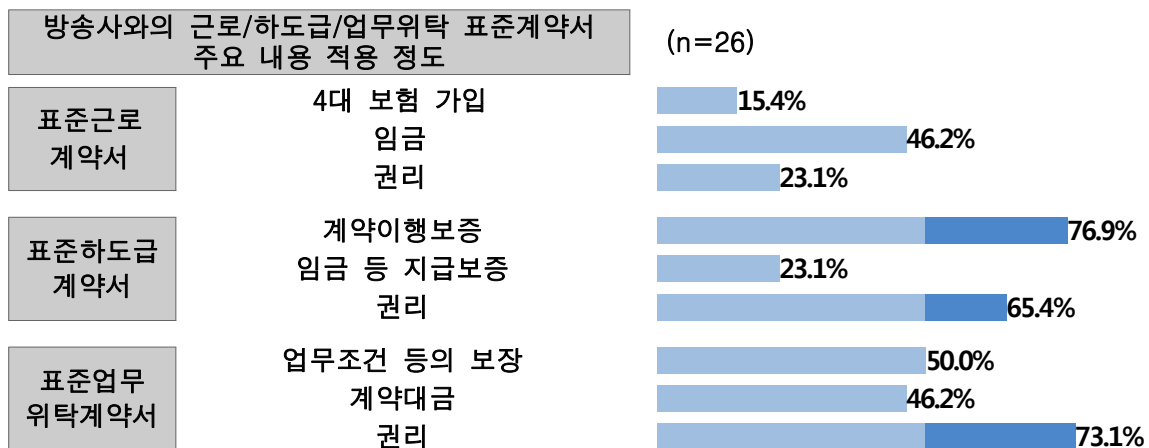
〈그림 2-2-25〉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②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방송사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한다고 응답한 독립 PD(n=26) 중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28.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55.1%,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56.4%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26〉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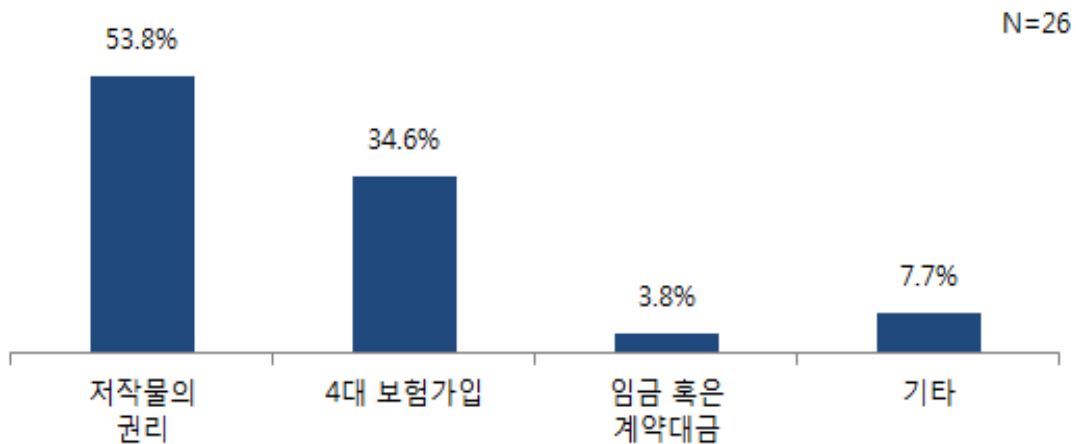
〈 표 2-2-8 〉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26	.0	15.4	.0	42.3	42.3	15.4	84.6
	임금	26	3.8	26.9	15.4	15.4	38.5	46.2	53.8
	권리	26	3.8	15.4	3.8	15.4	61.5	23.1	76.9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26	38.5	11.5	26.9	3.8	19.2	76.9	23.1
	임금 등 지급보증	26	15.4	.0	7.7	53.8	23.1	23.1	76.9
	권리	26	38.5	7.7	19.2	3.8	30.8	65.4	34.6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26	3.8	.0	46.2	26.9	23.1	50.0	50.0
	계약대금	26	.0	42.3	3.8	26.9	26.9	46.2	53.8
	권리	26	23.1	46.2	3.8	19.2	7.7	73.1	26.9

③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저작물 권리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34.6%), 임금 혹은 계약대금(3.8%) 등의 순을 보였음(n=26).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저작권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송사에 귀속된다, 회사 소속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각 1명) 등이 있었음.

〈 그림 2-2-27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④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독립PD(n=78)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 것이 관행이어서(20.5%),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17.9%), 방송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5.1%)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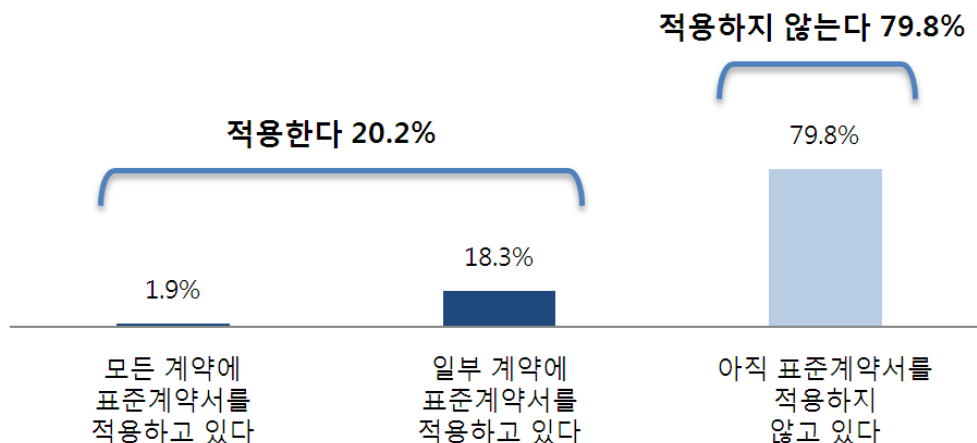
2)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①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PD가 독립제작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0.2%(모든 계약 적용 1.9% + 일부 계약 적용 18.3%)로 나타남(n=104).

〈그림 2-2-28〉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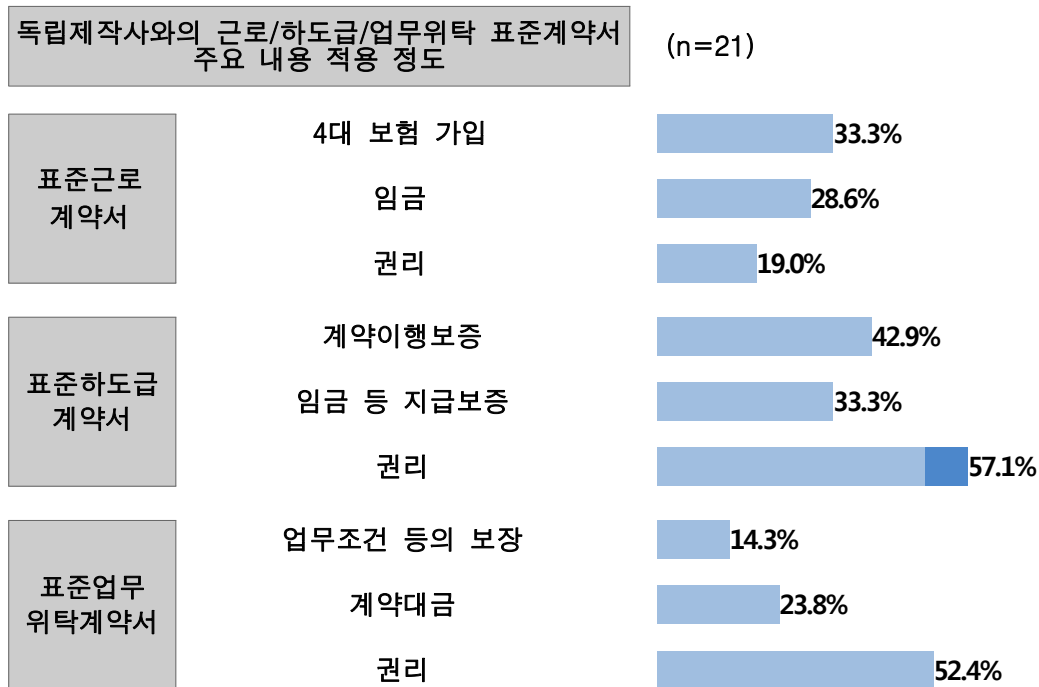


②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독립제작사와의 계약시 표준계약서로 적용한다고 응답한 독립PD(n=21) 중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27.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44.4%,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30.2%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2-29 〉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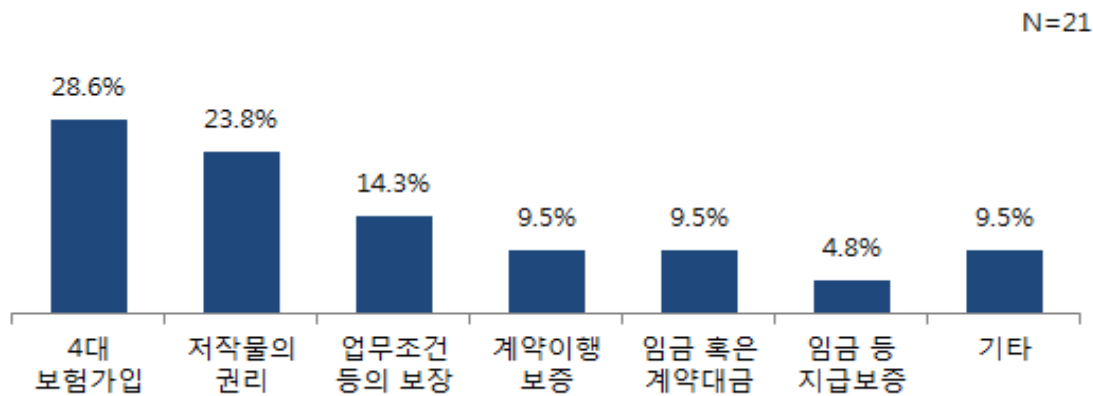
〈 표 2-2-9 〉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세부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21	4.8	28.6	.0	23.8	42.9	33.3	66.7
	임금	21	9.5	14.3	4.8	9.5	61.9	28.6	71.4
	권리	21	4.8	9.5	4.8	9.5	71.4	19.0	81.0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21	14.3	9.5	19.0	.0	57.1	42.9	57.1
	임금 등 지급보증	21	14.3	.0	19.0	14.3	52.4	33.3	66.7
	권리	21	33.3	4.8	19.0	.0	42.9	57.1	42.9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21	4.8	.0	9.5	23.8	61.9	14.3	85.7
	계약대금	21	.0	9.5	14.3	28.6	47.6	23.8	76.2
	권리	21	19.0	9.5	23.8	19.0	28.6	52.4	47.6

③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및 이유

-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작물 권리(23.8%), 업무조건 등의 보장(14.3%), 임금 혹은 계약대금, 계약이행보증(각 9.5%), 임금 등 지급보증(4.8%) 등의 순을 보였음(n=21).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작사가 4대 보험을 해주지 않음(2명)이 있었음.

〈그림 2-2-30〉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④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독립 PD(n=83)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가 5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16.9%),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13.3%),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10.8%), 제작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2.4%)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4.8%).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관련 시사점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방송분야에 따른 계약 대상별, 표준계약서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표준계약서 적용도(모든 계약 적용 + 일부 계약 적용)는 출연진이 평균 6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작 스태프(평균 36.2%), 독립제작사(평균 35.3%), 독립PD(평균 22.6%) 순으로 출연진을 제외하면 표준계약서의 적용도는 평균 약 30% 내외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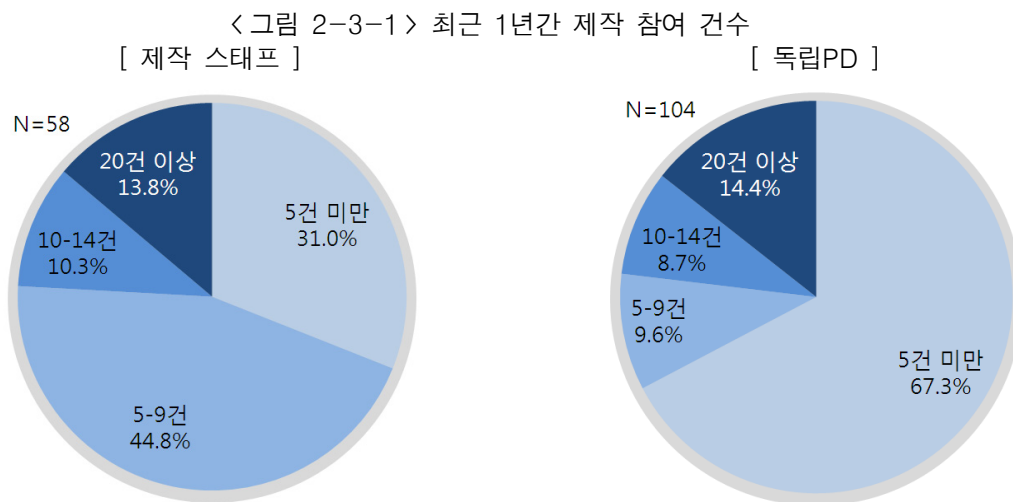


- 출연진의 표준계약서 적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참여자 중 비교적 규모가 있는 일부 소속사 출연진의 조사 참여가 있었고, 가수/배우 등 출연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까다로워 추가적으로 실시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법정교육 현장방문을 통한 기획업자 대상의 간접 조사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독립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적용도(모든 계약 적용 + 일부 계약 적용)를 계약 대상별로 살펴보면, 제작 스태프(41.2%) > 방송사(35.3%) > 출연진(29.4%) 순을 보였으며, 출연진의 경우에는 방송사(75.3%) > 외주제작사(62.9%) 순을 보였고, 제작 스태프의 경우에는 외주제작사(37.9%) > 방송사(34.5%), 독립PD의 경우에는 방송사(25.0%) > 외주제작사(20.2%) 순의 적용도를 보였음(표준계약서의 적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방송분야에 따른 계약대상별 적용도에 있어서는 주요 계약대상에 대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고무적인 결과를 보였음).
-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제작사의 경우, 방송사와의 관계에서는 권리와 수익배분 문제, 출연진과의 관계에서는 출연료 지급보증과 최대 촬영시간, 제작 스태프와의 관계에서는 4대 보험 가입과 업무 조건 등의 보장이었으며, 출연진의 경우에는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제작 스태프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등 지급 보증, 독립PD의 경우에는 권리와 4대 보험 가입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방송분야별로 이해관계 고리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음).
- 한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서의 사용과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는 응답이 방송분야에 상관없이 60~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방송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 3 절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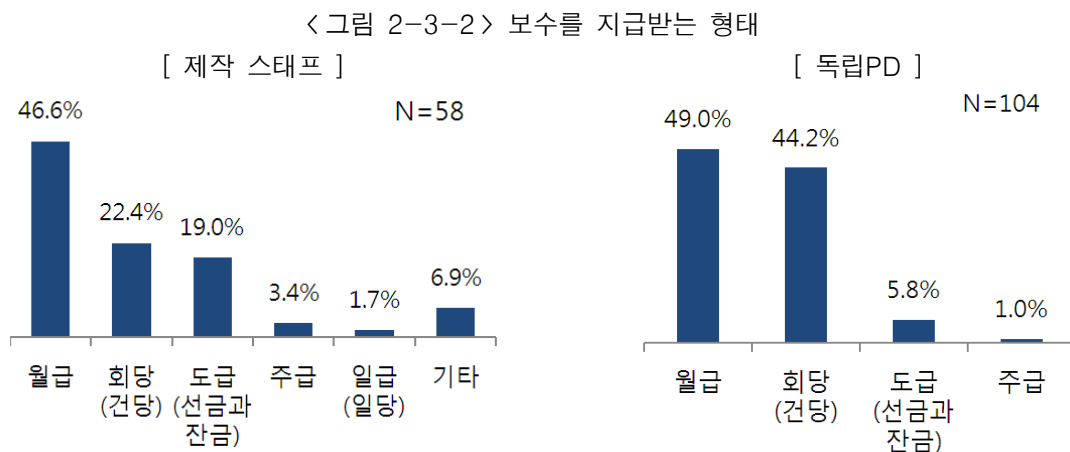
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를 살펴보면, 제작 스태프(n=58)의 경우, 5~9건이 4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건 미만(31.0%), 20건 이상(13.8%), 10~14건(10.3%) 순이며, 독립PD(n=104)의 경우에는 5건 미만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건 이상(14.4%), 5~9건(9.6%), 10~14건(8.7%) 순으로 나타남.



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를 살펴보면, 제작 스태프(n=58)의 경우 월급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회당(22.4%), 도급(19.0%), 주급(3.4%), 일급(1.7%) 순을 보였으며, 독립PD(n=104)의 경우에는 월급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회당(44.2%), 도급(5.8%), 주급(1.0%)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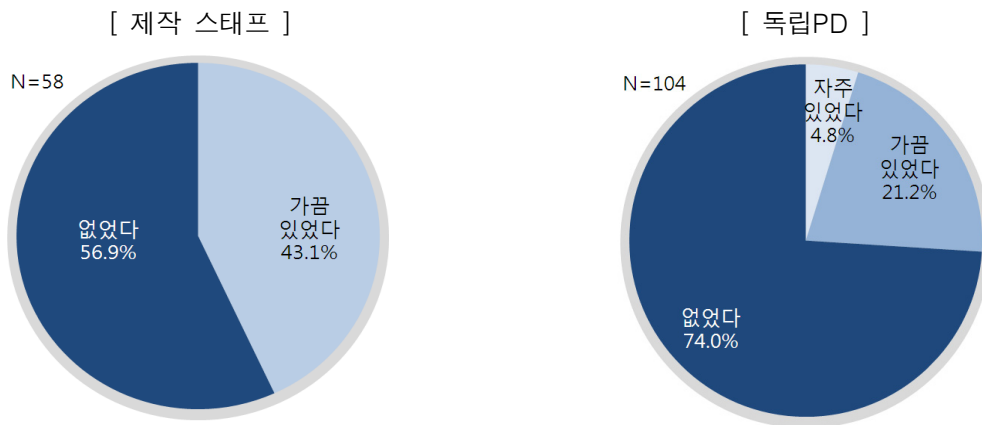




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n=58) 10명 중 4명 정도(43.1%)는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PD(n=104)의 경우 10명 중 3명 정도(26.0%)가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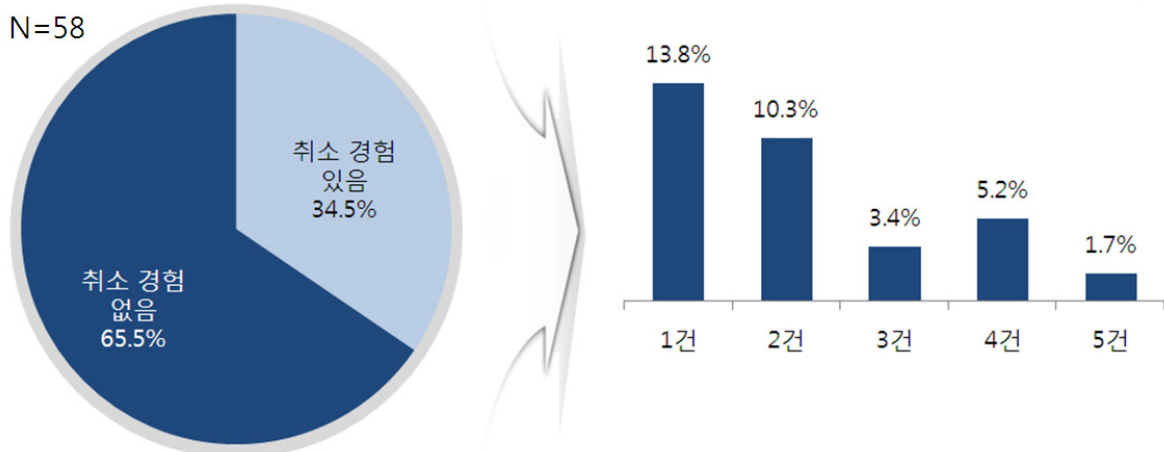
〈그림 2-3-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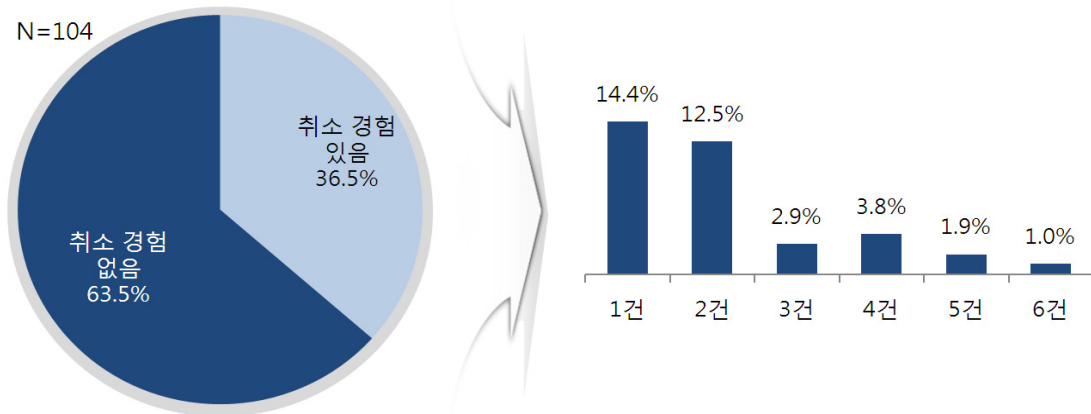
-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에 있어서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3명 정도(34.5%)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1건이 1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건(10.3%), 4건(5.2%), 3건(3.4%), 5건(1.7%) 순을 보였음(n=58).

〈그림 2-3-4〉 제작 스태프의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 독립PD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독립PD 10명 중 3명 정도(36.5%)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1건이 1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건(12.5%), 4건(3.8%), 3건(2.9%), 5건(1.9%), 6건(1.0%) 순을 보였음(n=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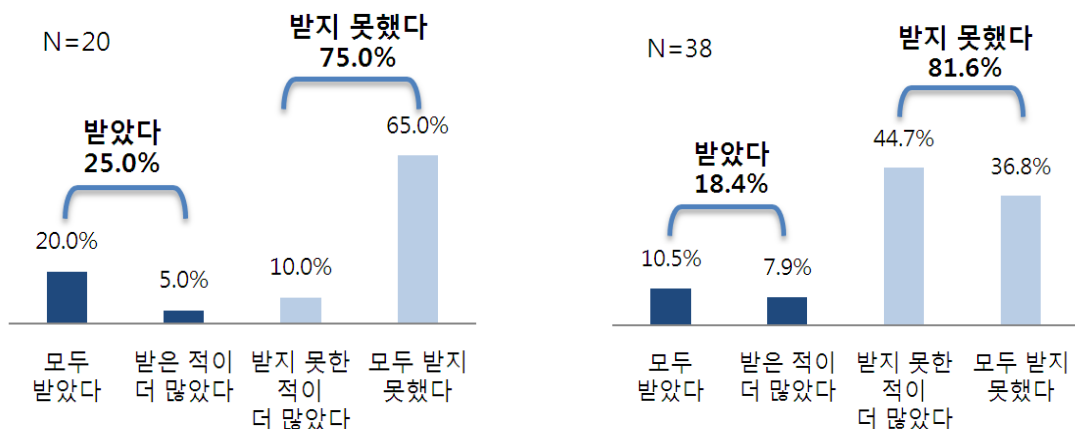
〈그림 2-3-5〉 독립PD의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5.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제작 스태프(n=20)의 경우에는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두 받았다(20.0%),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았다(10.0%), 받은 적이 더 많았다(5.0%) 순이었고, 독립PD(n=38)의 경우에는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았다가 4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두 받지 못했다(36.8%), 모두 받았다(10.5%), 받은 적이 더 많았다(7.9%)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6〉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제작 스태프] [독립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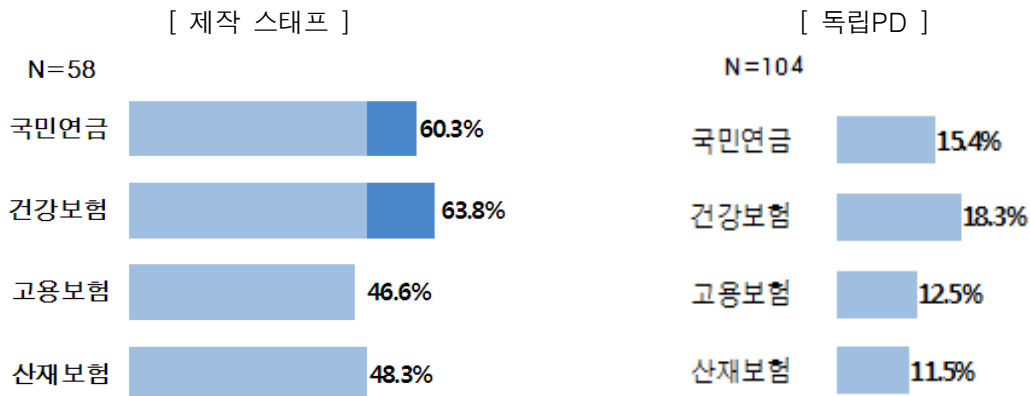




6.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 제작 스태프의 경우(n=58) 건강보험 가입이 6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60.3%), 산재보험(48.3%), 고용보험(46.6%) 순을 보였으며, 독립PD의 경우(n=104)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1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15.4%), 고용보험(12.5%), 산재보험(11.5%)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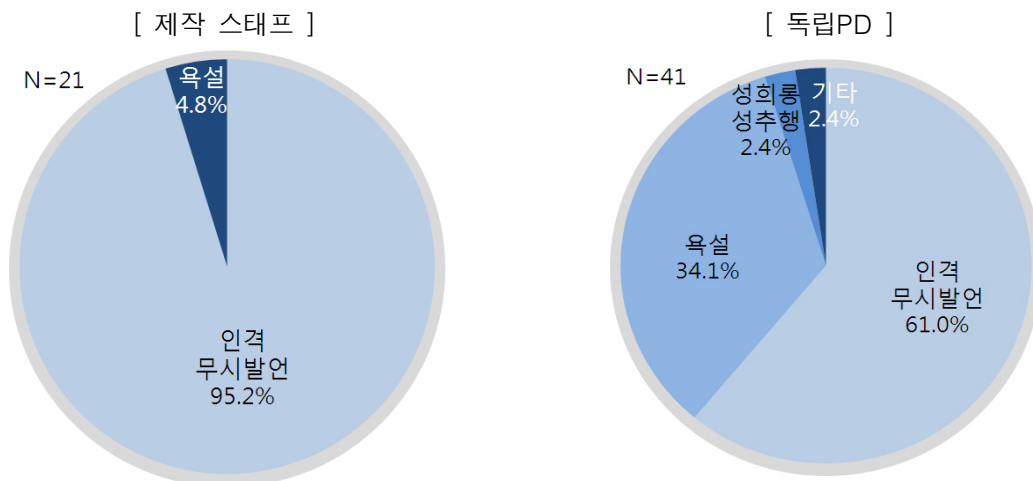
<그림 2-3-7> 4대 보험 가입 여부



7.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인격 무시 발언 등의 인권 침해 경험을 받았는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n=58) 10명 중 4명(36.2%)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PD의 경우(n=104)에도 10명 중 4명(39.4%)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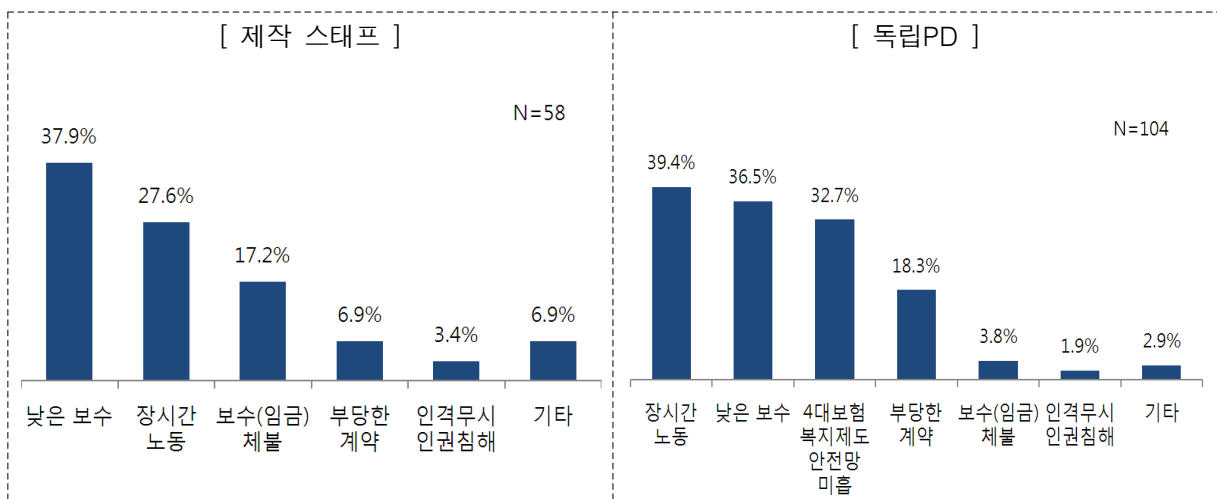
<그림 2-3-8>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 침해 경험 유형



8.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제작 스태프의 경우 낮은 보수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27.6%), 보수(임금) 체불(17.2%), 부당한 계약(6.9%), 인격 무시 및 인권 침해(3.4%) 등의 순을 보였음(n=58).
- 한편, 독립PD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보수(36.5%), 4대 보험 및 복지제도 안전망 미흡(32.7%), 부당한 계약(18.3%), 보수(임금) 체불(3.8%), 인격 무시 및 인권침해(1.9%) 등의 순을 보였음(n=104).

〈그림 2-3-9〉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중복응답)



9.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제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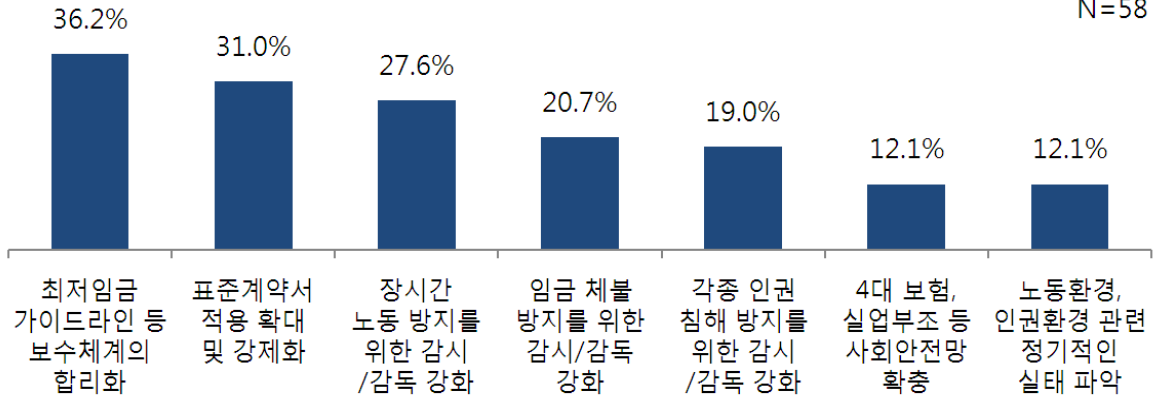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제도로 제작 스태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및 강제화(31.0%),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27.6%), 임금체불 방지 감시/감독 강화(20.7%), 4대 보험 및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인권 환경 관련 정기 실태 파악(각 12.1%) 순을 보였음(n=58).
- 한편, 독립PD의 경우에는 4대 보험 및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40.4%),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39.4%),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및 강제화(31.7%), 노동/인권 환경 관련 정기 실태 파악(11.5%), 인권 침해 방지 및 감시/감독 강화(5.8%), 임금체불 방지 감시/감독 강화(3.8%) 등의 순을 보였음(n=104).



〈그림 2-3-10〉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제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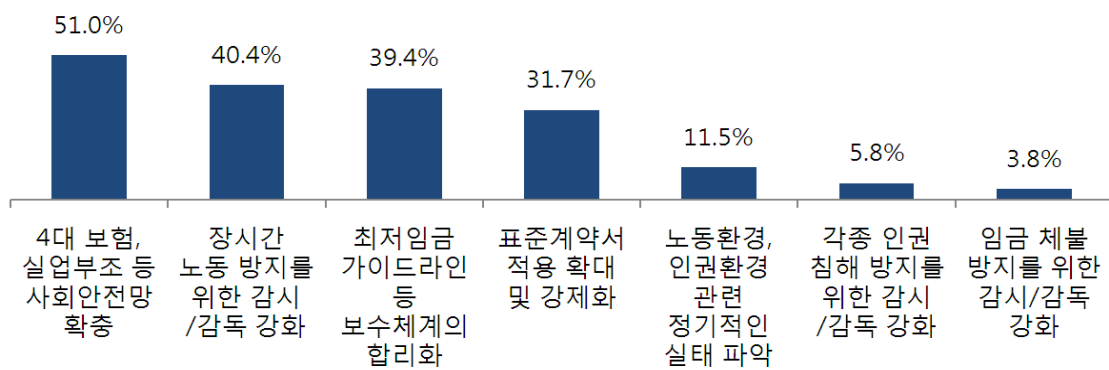
[제작 스태프]

N=58



[독립PD]

N=104



□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태 관련 시사점

-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를 살펴보면, 제작 스태프의 경우 10건 이상이 24.1%, 독립PD의 경우 23.1%를 차지하고 있어 제작 스태프와 독립PD 모두 4명 중 1명 정도는 1년에 10건 이상의 단기 사업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를 지급 받는 형태에 있어서도 월급을 받는다는 응답이 제작 스태프의 경우 46.6%, 독립PD의 경우 49.0%로 제작 스태프와 독립PD 모두 2명 중 1명 정도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방송 제작 환경과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조명, 음향, 작가 등의 제작 스태프와 보조출연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 형태의 프로젝트 사업별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방송분야 제작 스태프(독립PD 포함)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제작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방송분야 제작 스태프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환경 및 복지수준은 열악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에 있어서도 제작 스태프의 경우 10명 중 4명(43.1%)정도, 독립PD의 경우 4명 중 1명(26.0%)가 보수 체불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에 있어서도 제작 스태프와 독립PD 모두 10명 중 3명 정도가 취소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일한만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외주제작사의 경영여건도 열악한 상황으로 2015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립제작사의 약 50.0% 정도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체로 나타남).
-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제작 스태프의 경우에는 조사 참여자의 약 50.0% 정도가 4대 보험에 가입된 반면, 독립PD의 경우에는 조사 참여자의 약 14% 정도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송제작 현실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립PD 포함 제작 스태프의 4명 중 1명 정도인 약 25.0%가 1년에 10건 이상의 단기 사업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그 만큼 방송 제작 환경이 열악한 수준임을 방증하는 것임.
- 한편,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문제점으로 제작 스태프는 낮은 보수(37.9%), 장시간 노동(27.6%), 보수(임금) 체불(17.2%) 등을 높게 꼽은 반면, 독립PD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39.4%), 낮은 보수(36.5%), 4대 보험/사회안전망 미흡(32.7%) 등을 높게 꼽았음.
- 방송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적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임. 제작 스태프등 취약 대상의 현실을 감안한 표준계약서 보완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표준계약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3장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결과

제 1 절 독립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제 2 절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제 3 절 제작 스태프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제 4 절 독립PD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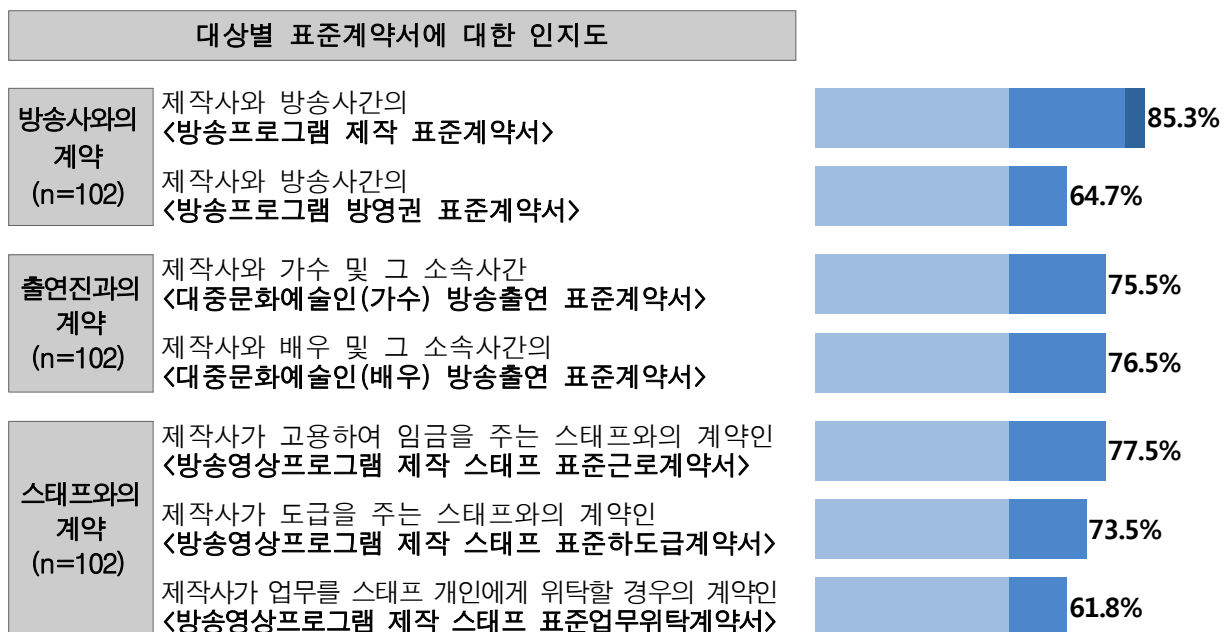
제 3 장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결과

제 1 절 독립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독립제작사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를 계약 대상별(방송사, 출연진, 스태프)로 살펴보면,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 계약 시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64.7%로 나타났으며, 독립제작사와 출연진 간 계약 시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가수의 경우 75.5%, 배우의 경우 76.5%로 나타났고, 독립제작사와 스태프 간 계약 시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는 77.5%,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지도는 73.5%,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도는 61.8%로 나타남(n=102).
- － 독립제작사의 경우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85.3%로 가장 높은 반면, 제작사와 제작 스태프 간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61.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n=102).

〈그림 3-1-1〉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 인지층(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들어는 보았다)만 표기



〈 표 3-1-1 〉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방송사와의 계약 (n=102)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9.4	29.4	26.5	11.8	2.9	85.3	14.7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21.6	27.5	15.7	25.5	9.8	64.7	35.3
출연진과의 계약 (n=102)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9.4	21.6	24.5	15.7	8.8	75.5	24.5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33.3	22.5	20.6	14.7	8.8	76.5	23.5
스태프와의 계약 (n=10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28.4	25.5	23.5	15.7	6.9	77.5	22.5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28.4	23.5	21.6	18.6	7.8	73.5	26.5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21.6	18.6	21.6	27.5	10.8	61.8	38.2

○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 계약 시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3%(잘 안다 29.4% + 대략 안다 29.4% + 들어는 보았다 26.5%)로 나타남(n=102).

- 세부 특성별로는 독립제작사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전반 인지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잘 알고 있다는 상세 인지층의 경우 종사자수 10명 이상(41.2%),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37.9%)의 중견 사업체가 종사자수 10명 미만(23.5%),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26.0%)의 소규모 사업체 보다 상세 인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1-2 〉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02	29.4	29.4	26.5	11.8	2.9	85.3	14.7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23.5	32.4	29.4	10.3	4.4	85.3	14.7
	1 0 명 이 상	34	41.2	23.5	20.6	14.7	.0	85.3	14.7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73	26.0	31.5	28.8	9.6	4.1	86.3	13.7
	1 0 억 원 이 상	29	37.9	24.1	20.7	17.2	.0	82.8	17.2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35.7	50.0	.0	14.3	.0	85.7	14.3
	다 큐 멘 터 리	31	32.3	35.5	19.4	12.9	.0	87.1	12.9
	애 니 메 이 션	7	14.3	28.6	42.9	14.3	.0	85.7	14.3
	영 화	2	.0	.0	.0	50.0	50.0	.0	100.0
	오 락 / 예 능	9	33.3	11.1	33.3	11.1	11.1	77.8	22.2
	교 육 / 학 습	5	40.0	.0	60.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19	21.1	42.1	21.1	10.5	5.3	84.2	15.8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0	.0	100.0	.0
기 타		13	30.8	7.7	53.8	7.7	.0	92.3	7.7

○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 계약 시의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64.7%(잘 안다 21.6% + 대략 안다 27.5% + 들어는 보았다 15.7%)로 나타남(n=102).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규모별 인지도에 있어서는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70.6%)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61.8%)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간 매출액 규모별 인지도에서는 10억 이상인 중견 사업체(75.9%)가 10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60.3%)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제작사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1-3 〉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총	비 인지총
전 체		102	21.6	27.5	15.7	25.5	9.8	64.7	35.3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19.1	27.9	14.7	29.4	8.8	61.8	38.2
	1 0 명 이 상	34	26.5	26.5	17.6	17.6	11.8	70.6	29.4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73	19.2	26.0	15.1	28.8	11.0	60.3	39.7
	1 0 억 원 이 상	29	27.6	31.0	17.2	17.2	6.9	75.9	24.1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28.6	64.3	.0	7.1	.0	92.9	7.1
	다 큐 멘 터 리	31	16.1	35.5	3.2	32.3	12.9	54.8	45.2
	애 니 메 이 션	7	28.6	14.3	42.9	14.3	.0	85.7	14.3
	영 화	2	.0	.0	.0	50.0	50.0	.0	100.0
	오 락 / 예 능	9	33.3	11.1	11.1	22.2	22.2	55.6	44.4
	교 육 / 학 습	5	40.0	.0	60.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19	15.8	21.1	15.8	31.6	15.8	52.6	47.4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0	.0	100.0	.0
	기 타	13	15.4	15.4	30.8	38.5	.0	61.5	38.5

○ 독립제작사와 출연진(가수) 간 계약 시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75.5%(잘 안다 29.4% + 대략 안다 21.6% + 들어는 보았다 24.5%)로 나타남(n=102).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규모별 인지도에 있어서는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85.3%)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70.6%)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간 매출액 규모별 인지도에서도 10억 이상인 중견 사업체(86.2%)가 10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71.2%)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제작사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1-4 〉 제작사와 출연진(가수)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02	29.4	21.6	24.5	15.7	8.8	75.5	24.5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29.4	19.1	22.1	17.6	11.8	70.6	29.4
	1 0 명 이 상		34	29.4	26.5	29.4	11.8	2.9	85.3	14.7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73	27.4	19.2	24.7	19.2	9.6	71.2	28.8
	1 0 억 원 이 상		29	34.5	27.6	24.1	6.9	6.9	86.2	13.8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50.0	42.9	.0	.0	7.1	92.9	7.1
	다 큐 멘 터 리		31	22.6	32.3	19.4	19.4	6.5	74.2	25.8
	애 니 메 이 션		7	14.3	.0	42.9	42.9	.0	57.1	42.9
	영 화		2	.0	.0	50.0	.0	50.0	50.0	50.0
	오 락 / 예 능		9	66.7	.0	11.1	.0	22.2	77.8	22.2
	교 육 / 학 습		5	20.0	.0	60.0	20.0	.0	80.0	20.0
	교 양 / 시 사		19	31.6	21.1	26.3	10.5	10.5	78.9	21.1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0	.0	100.0	.0
	기 타		13	7.7	15.4	38.5	30.8	7.7	61.5	38.5

○ 독립제작사와 출연진(배우) 간 계약 시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76.5%(잘 안다 33.3% + 대략 안다 22.5% + 들어는 보았다 20.6%)로 나타났으며 (n=102),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규모별 인지도에 있어서는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82.4%)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73.5%)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간 매출액 규모별 인지도에서는 10억 이상인 중견 사업체(86.2%)가 10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72.6%)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제작사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1-5 〉 제작사와 출연진(배우)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02	33.3	22.5	20.6	14.7	8.8	76.5	23.5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32.4	20.6	20.6	14.7	11.8	73.5	26.5
	1 0 명 이 상		34	35.3	26.5	20.6	14.7	2.9	82.4	17.6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73	31.5	19.2	21.9	17.8	9.6	72.6	27.4
	1 0 억 원 이 상		29	37.9	31.0	17.2	6.9	6.9	86.2	13.8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50.0	42.9	.0	.0	7.1	92.9	7.1
	다 큐 멘 터 리		31	29.0	32.3	12.9	19.4	6.5	74.2	25.8
	애 니 메 이 션		7	14.3	.0	42.9	42.9	.0	57.1	42.9
	영 화		2	.0	.0	50.0	.0	50.0	50.0	50.0
	오 락 / 예 능		9	66.7	11.1	.0	.0	22.2	77.8	22.2
	교 육 / 학 습		5	20.0	.0	60.0	20.0	.0	80.0	20.0
	교 양 / 시 사		19	36.8	21.1	21.1	10.5	10.5	78.9	21.1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0	.0	100.0	.0
	기 타		13	15.4	15.4	38.5	23.1	7.7	69.2	30.8

○ 독립제작사와 스태프 간 계약 시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는 77.5%(잘 안다 28.4% + 대략 안다 25.5% + 들어는 보았다 23.5%)로 나타남(n=102).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규모별 인지도에 있어서는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82.4%)가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67.6%)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연간 매출액 규모별 인지도에서는 10억 이상인 중견 사업체(79.3%)와 10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76.7%) 간의 큰 차이는 없었음.

〈표 3-1-6〉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총	비 인지총
전 체		102	28.4	25.5	23.5	15.7	6.9	77.5	22.5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29.4	25.0	27.9	10.3	7.4	82.4	17.6
	1 0 명 이 상	34	26.5	26.5	14.7	26.5	5.9	67.6	32.4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73	27.4	23.3	26.0	16.4	6.8	76.7	23.3
	1 0 억 원 이 상	29	31.0	31.0	17.2	13.8	6.9	79.3	20.7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50.0	28.6	.0	14.3	7.1	78.6	21.4
	다 큐 멘 터 리	31	19.4	38.7	19.4	19.4	3.2	77.4	22.6
	애 니 메 이 션	7	14.3	28.6	.0	57.1	.0	42.9	57.1
	영 화	2	.0	50.0	.0	.0	50.0	50.0	50.0
	오 락 / 예 능	9	66.7	11.1	.0	.0	22.2	77.8	22.2
	교 육 / 학 습	5	60.0	.0	40.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19	21.1	15.8	47.4	10.5	5.3	84.2	15.8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0	.0	100.0	.0
	기 타	13	7.7	23.1	46.2	15.4	7.7	76.9	23.1

○ 독립제작사와 스태프 간 계약 시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지도는 73.5%(잘 안다 28.4% + 대략 안다 23.5% + 들어는 보았다 21.6%)로 나타남(n=102).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규모별 인지도에 있어서는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75.0%)가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70.6%)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연간 매출액 규모별 인지도에서는 10억 이상인 중견 사업체(79.3%)가 10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71.2%)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7〉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02	28.4	23.5	21.6	18.6	7.8	73.5	26.5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29.4	22.1	23.5	14.7	10.3	75.0	25.0
	1 0 명 이 상		34	26.5	26.5	17.6	26.5	2.9	70.6	29.4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73	26.0	21.9	23.3	19.2	9.6	71.2	28.8
	1 0 억 원 이 상		29	34.5	27.6	17.2	17.2	3.4	79.3	20.7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35.7	35.7	7.1	14.3	7.1	78.6	21.4
	다 큐 멘 터 리		31	29.0	41.9	9.7	16.1	3.2	80.6	19.4
	애 니 메 이 션		7	14.3	28.6	.0	42.9	14.3	42.9	57.1
	영 화		2	.0	.0	50.0	.0	50.0	50.0	50.0
	오 락 / 예 능		9	44.4	11.1	.0	22.2	22.2	55.6	44.4
	교 육 / 학 습		5	40.0	20.0	20.0	20.0	.0	80.0	20.0
	교 양 / 시 사		19	26.3	5.3	42.1	21.1	5.3	73.7	26.3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0	.0	100.0	.0
	기 타		13	15.4	7.7	53.8	15.4	7.7	76.9	23.1

○ 독립제작사와 스태프 간 계약 시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도는 61.8%(잘 안다 21.6% + 대략 안다 18.6% + 들어는 보았다 21.6%)로 나타남(n=102).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규모별 인지도에 있어서는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와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 모두 61.8%로 동일한 수준의 인지도를 보인 반면, 연간 매출액 규모별 인지도에서는 10억 이상인 중견 사업체(75.9%)가 10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56.2%)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8〉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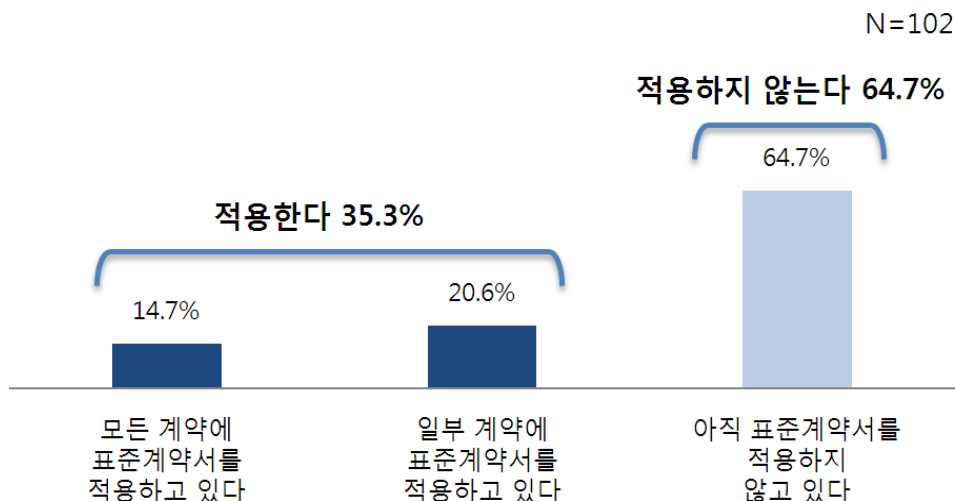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02	21.6	18.6	21.6	27.5	10.8	61.8	38.2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22.1	19.1	20.6	23.5	14.7	61.8	38.2
	1 0 명 이 상		34	20.6	17.6	23.5	35.3	2.9	61.8	38.2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73	17.8	17.8	20.5	31.5	12.3	56.2	43.8
	1 0 억 원 이 상		29	31.0	20.7	24.1	17.2	6.9	75.9	24.1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42.9	28.6	7.1	14.3	7.1	78.6	21.4
	다 큐 멘 터 리		31	16.1	25.8	22.6	29.0	6.5	64.5	35.5
	애 니 메 이 션		7	.0	14.3	14.3	57.1	14.3	28.6	71.4
	영 화		2	.0	.0	50.0	.0	50.0	50.0	50.0
	오 락 / 예 능		9	44.4	11.1	.0	22.2	22.2	55.6	44.4
	교 육 / 학 습		5	40.0	20.0	40.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19	15.8	15.8	26.3	36.8	5.3	57.9	42.1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0	.0	100.0	.0
	기 타		13	7.7	7.7	30.8	30.8	23.1	46.2	53.8

2. 방송사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납품/구매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제작사가 방송사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5.3%(모든 계약 적용 14.7% + 일부 계약 적용 20.6%)로 나타났으며, 독립제작사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제작사의 규모가 클수록 표준계약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n=102).
- 독립제작사가 방송사와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4.7%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규모별에 있어서는 종사자수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가 20.6%로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11.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간 매출액 규모별에서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중견 사업체가 27.6%로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9.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0.6%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규모별에 있어서는 종사자수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가 26.5%로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17.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간 매출액 규모별에서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중견 사업체가 24.1%로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19.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4.7%(n=102)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규모별에 있어서는 종사자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70.6%로 10명 이상인 중견 사업체(52.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간 매출액 규모별에서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71.2%로 10억원 이상인 중견 사업체(48.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2〉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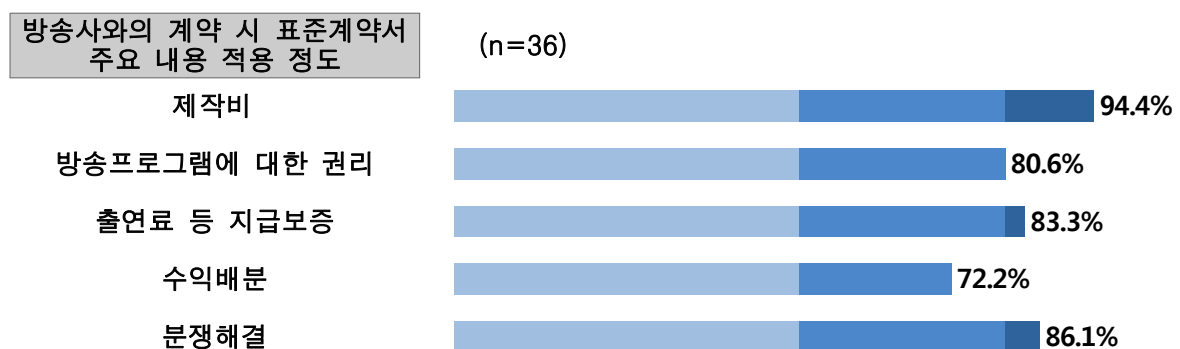
〈표 3-1-9〉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102	14.7	20.6	64.7
상 근로자수	10명 미만		68	11.8	17.6	70.6
	10명 이상		34	20.6	26.5	52.9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73	9.6	19.2	71.2
	10억원 이상		29	27.6	24.1	48.3
방송영상물 제작장르	드라마		14	28.6	14.3	57.1
	다큐멘터리		31	9.7	25.8	64.5
	애니메이션		7	14.3	.0	85.7
	영화		2	.0	.0	100.0
	오락 / 예능		9	.0	22.2	77.8
	교육 / 학습		5	20.0	40.0	40.0
	교양 / 시사		19	21.1	26.3	52.6
	뉴스 / 보도		1	.0	.0	100.0
	스포츠 / 레저		1	.0	.0	100.0
기 타			13	15.4	15.4	69.2

2)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독립제작사 대상(n=36)으로 한 제작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출연료 등 지급보증, 수익배분,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3.3%인 것으로 나타남.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제작비가 94.4%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분쟁해결(86.1%), 출연료 등 지급보증(83.3%),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80.6%), 수익배분(72.2%) 순으로 나타남(n=36).

〈그림 3-1-3〉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3-1-10〉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제작비	36	33.3	44.4	16.7	5.6	.0	94.4	5.6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36	30.6	38.9	11.1	11.1	8.3	80.6	19.4
출연료 등 지급보증	36	27.8	44.4	11.1	8.3	8.3	83.3	16.7
수익배분	36	25.0	41.7	5.6	22.2	5.6	72.2	27.8
분쟁해결	36	44.4	30.6	11.1	8.3	5.6	86.1	13.9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제작비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94.4%(그대로 적용 33.3%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4.4% + 일부 문구만 적용 16.7%, n=36)로 종사자수 10명 이상(100.0%),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100.0%) 중견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37.5%),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40.0%)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50.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7.6%)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11〉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제작비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6	33.3	44.4	16.7	5.6	.0	94.4	5.6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0	30.0	50.0	10.0	10.0	.0	90.0	10.0
	1 0 명 이 상	16	37.5	37.5	25.0	.0	.0	100.0	.0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21	28.6	47.6	14.3	9.5	.0	90.5	9.5
	1 0 억 원 이 상	15	40.0	40.0	20.0	.0	.0	100.0	.0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66.7	33.3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1	18.2	36.4	36.4	9.1	.0	90.9	9.1
	애 니 메 이 션	1	100.0	.0	.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2	.0	100.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3	33.3	.0	33.3	33.3	.0	66.7	33.3
	고 양 / 시 사	9	33.3	55.6	11.1	.0	.0	100.0	.0
	기 타	4	25.0	75.0	.0	.0	.0	100.0	.0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방송프로그램 권리 내용 적용 정도는 80.6%(그대로 적용 30.6%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8.9% + 일부 문구만 적용 11.1%, n=36)로 종사자수 10명 미만(85.0%)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50.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2.9%)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12〉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6	30.6	38.9	11.1	11.1	8.3	80.6	19.4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0	30.0	50.0	5.0	10.0	5.0	85.0	15.0
	1 0 명 이 상	16	31.3	25.0	18.8	12.5	12.5	75.0	25.0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1	28.6	42.9	9.5	9.5	9.5	81.0	19.0
	1 0 억 원 이 상	15	33.3	33.3	13.3	13.3	6.7	80.0	20.0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50.0	50.0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1	36.4	18.2	9.1	27.3	9.1	63.6	36.4
	애 니 메 이 션	1	.0	.0	10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2	.0	100.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3	.0	33.3	33.3	33.3	.0	66.7	33.3
	고 양 / 시 사	9	22.2	44.4	11.1	.0	22.2	77.8	22.2
	기 타	4	50.0	50.0	.0	.0	.0	100.0	.0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는 83.3%(그대로 적용 27.8%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4.4% + 일부 문구만 적용 11.1%, n=36)로 종사자수 10명 미만(85.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85.7%) 소규모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35.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38.1%)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50.0%),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53.3%)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13〉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6	27.8	44.4	11.1	8.3	8.3	83.3	16.7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0	35.0	50.0	.0	5.0	10.0	85.0	15.0
	1 0 명 이 상	16	18.8	37.5	25.0	12.5	6.3	81.3	18.8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1	38.1	38.1	9.5	4.8	9.5	85.7	14.3
	1 0 억 원 이 상	15	13.3	53.3	13.3	13.3	6.7	80.0	20.0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16.7	83.3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1	18.2	45.5	9.1	18.2	9.1	72.7	27.3
	애 니 메 이 션	1	100.0	.0	.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2	.0	100.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3	33.3	33.3	.0	33.3	.0	66.7	33.3
	고 양 / 시 사	9	44.4	11.1	22.2	.0	22.2	77.8	22.2
	기 타	4	25.0	50.0	25.0	.0	.0	100.0	.0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수익배분 내용 적용 정도는 72.2%(그대로 적용 25.0%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1.7% + 일부 문구만 적용 5.6%, n=36)로 종사자수 10명 미만(85.0%)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35.0%)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50.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7.6%)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았음.

〈표 3-1-1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수익배분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6	25.0	41.7	5.6	22.2	5.6	72.2	27.8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0	35.0	50.0	.0	5.0	10.0	85.0	15.0
	1 0 명 이 상	16	12.5	31.3	12.5	43.8	.0	56.3	43.8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1	23.8	47.6	.0	19.0	9.5	71.4	28.6
	1 0 억 원 이 상	15	26.7	33.3	13.3	26.7	.0	73.3	26.7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50.0	50.0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1	27.3	27.3	.0	45.5	.0	54.5	45.5
	애 니 메 이 션	1	.0	100.0	.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2	.0	100.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3	33.3	33.3	33.3	.0	.0	100.0	.0
	고 양 / 시 사	9	11.1	33.3	.0	33.3	22.2	44.4	55.6
	기 타	4	25.0	50.0	25.0	.0	.0	100.0	.0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 내용 적용 정도는 86.1%(그대로 적용 44.4%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0.6% + 일부 문구만 적용 11.1%)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n=36).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40.0%)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15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총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6	44.4	30.6	11.1	8.3	5.6	86.1	13.9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0	45.0	35.0	5.0	5.0	10.0	85.0	15.0
	1 0 명 이 상	16	43.8	25.0	18.8	12.5	.0	87.5	12.5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1	47.6	23.8	14.3	4.8	9.5	85.7	14.3
	1 0 억 원 이 상	15	40.0	40.0	6.7	13.3	.0	86.7	13.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66.7	33.3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1	45.5	27.3	9.1	18.2	.0	81.8	18.2
	애 니 메 이 션	1	100.0	.0	.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2	.0	100.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3	.0	33.3	33.3	33.3	.0	66.7	33.3
	고 양 / 시 사	9	44.4	11.1	22.2	.0	22.2	77.8	22.2
	기 타	4	50.0	50.0	.0	.0	.0	100.0	.0

3)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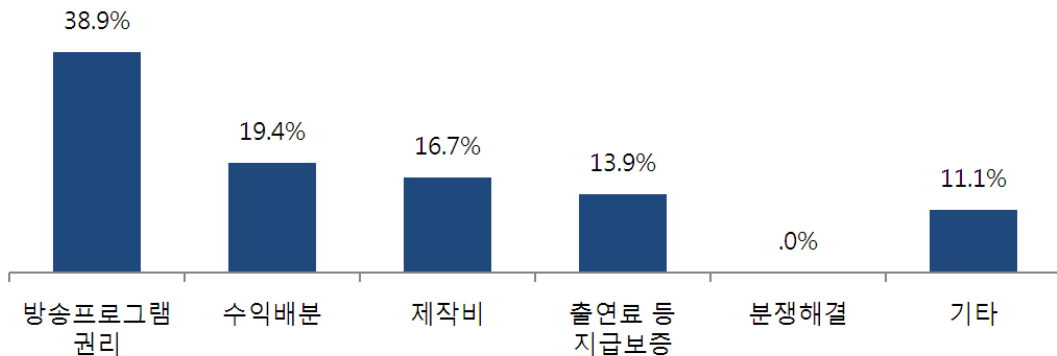
○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익배분(19.4%), 제작비(16.7%), 출연료 등 지급보증(13.9%) 등의 순을 보였음(n=36).

-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 제작비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25.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23.8%)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송프로그램 권리라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52.4%) 사업체에서, 출연료 등 지급보증이라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26.7%)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본적인 권리는 방송사가 가지게 되어 있어서라는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표준계약서 내용이 장황하고 반복적이어서, 모든 납품 영상물을 동일한 계약서 내용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방송 전 방송물에 대한 성공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각 1명) 등이 있었음.

〈그림 3-1-4〉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N=36



〈표 3-1-16〉 방송사와의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구 분 (단위:%)		표본수 (n)	제작비	방송 프로그램 권리	출연료 등 지급 보증	수익 배분	분쟁 해결	기타
전 체		36	16.7	38.9	13.9	19.4	.0	11.1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0	25.0	40.0	15.0	5.0	.0	15.0
	1 0 명 이 상	16	6.3	37.5	12.5	37.5	.0	6.3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21	23.8	52.4	4.8	9.5	.0	9.5
	1 0 억 원 이 상	15	6.7	20.0	26.7	33.3	.0	13.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0	16.7	33.3	16.7	.0	33.3
	다 큐 멘 터 리	11	18.2	45.5	9.1	18.2	.0	9.1
	애 니 메 이 션	1	.0	100.0	.0	.0	.0	.0
	오 략 / 예 능	2	50.0	50.0	.0	.0	.0	.0
	교 육 / 학 습	3	33.3	66.7	.0	.0	.0	.0
	고 양 / 시 사	9	11.1	44.4	11.1	22.2	.0	11.1
	기 타	4	25.0	.0	25.0	50.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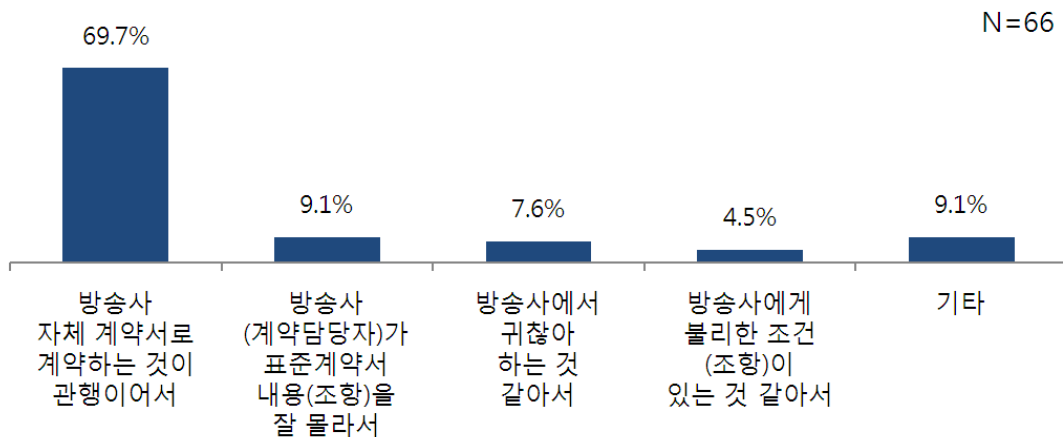
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제작사(n=66)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가 6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9.1%), 방송사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7.6%),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4.5%) 등의 순을 보였음.



-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81.3%),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75.0%)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22.2%),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21.4%)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3-1-5〉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표 3-1-17〉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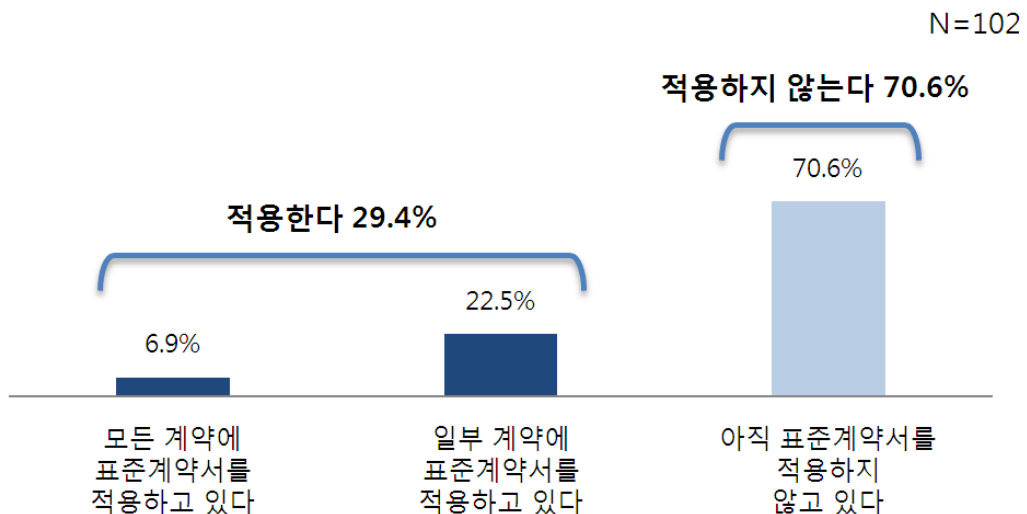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방송사에서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게 관행이어서	기타
전 체			66	4.5	9.1	7.6	69.7	9.1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48	4.2	4.2	8.3	81.3	2.1
	1 0 명 이 상		18	5.6	22.2	5.6	38.9	27.8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52	3.8	5.8	7.7	75.0	7.7
	1 0 억 원 이 상		14	7.1	21.4	7.1	50.0	14.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8	.0	.0	.0	87.5	12.5
	다 큐 멘 터 리		20	5.0	5.0	15.0	70.0	5.0
	애 니 메 이 션		6	33.3	33.3	.0	33.3	.0
	영 화		2	.0	.0	50.0	50.0	.0
	오 락 / 예 능		7	.0	14.3	.0	85.7	.0
	교 육 / 학 습		2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10	.0	.0	.0	100.0	.0
	뉴 스 / 보 도		1	.0	.0	.0	.0	100.0
	스 포 츠 / 레 저		1	.0	.0	.0	100.0	.0
	기 타		9	.0	22.2	11.1	33.3	33.3

3.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제작사가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 계약 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9.4%(모든 계약 적용 6.9% + 일부 계약 적용 22.5%)로 나타남(n=102).
- 독립제작사가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연간 매출액 규모별에서는 10억원 이상(10.3%)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간 매출액 규모별에서는 10억원 이상(27.6%)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0.6%(n=102)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규모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연간 매출액 규모별에서는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74.0%로 10억원 이상인 중견 사업체(62.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6〉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표 3-1-18〉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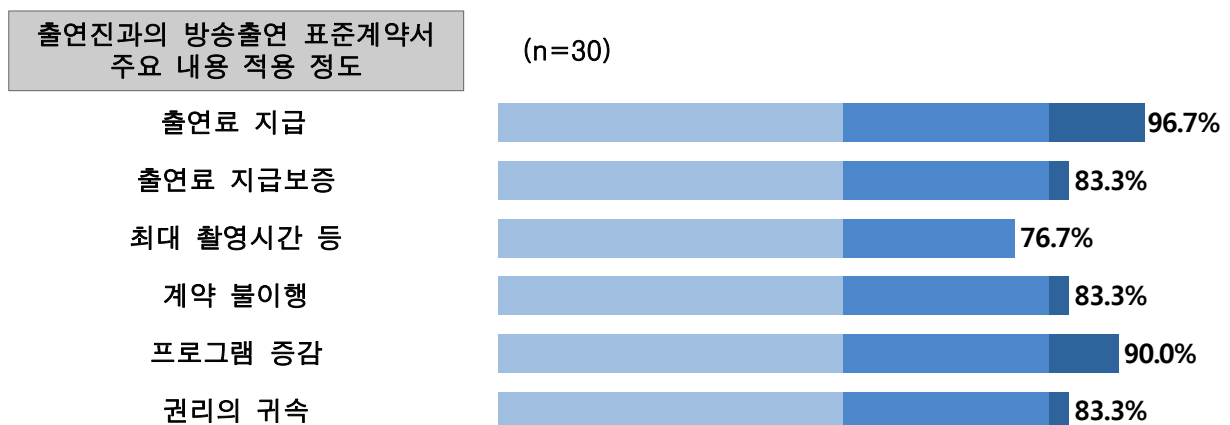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102	6.9	22.5	70.6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7.4	23.5	69.1
	1 0 명 이 상	34	5.9	20.6	73.5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73	5.5	20.5	74.0
	1 0 억 원 이 상	29	10.3	27.6	62.1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21.4	42.9	35.7
	다 큐 멘 터 리	31	3.2	29.0	67.7
	애 니 메 이 션	7	.0	14.3	85.7
	영 화	2	.0	.0	100.0
	오 락 / 예 능	9	.0	44.4	55.6
	교 육 / 학 습	5	20.0	.0	80.0
	교 양 / 시 사	19	5.3	10.5	84.2
	뉴 스 / 보 도	1	.0	.0	100.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기 타		13	7.7	7.7	84.6

2)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독립제작사를 대상 (n=30)으로 한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시간, 계약 불이행, 프로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5.6%인 것으로 나타남.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출연료 지급이 96.7%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증감(90.0%), 출연료 지급보증, 계약 불이행, 권리의 귀속(각 83.3%), 최대 촬영시간(76.7%) 순으로 나타남(n=30).

〈그림 3-1-7〉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3-1-19〉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총합	
							적용	비적용
출연료 지급	30	16.7	66.7	13.3	3.3	.0	96.7	3.3
출연료 지급보증	30	20.0	46.7	16.7	16.7	.0	83.3	16.7
최대 촬영시간 등	30	13.3	43.3	20.0	20.0	3.3	76.7	23.3
계약 불이행	30	33.3	40.0	10.0	10.0	6.7	83.3	16.7
프로그램 증감	30	33.3	50.0	6.7	6.7	3.3	90.0	10.0
권리의 귀속	30	40.0	40.0	3.3	13.3	3.3	83.3	16.7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내용 적용 정도는 96.7% (그대로 적용 16.7% + 약간 수정하여 적용 66.7% + 일부 문구만 적용 13.3%, n=30)로 종사자수 10명 이상(100.0%),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100.0%) 중견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높게 나타남.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19.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21.1%)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77.8%),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81.8%)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20〉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0	16.7	66.7	13.3	3.3	.0	96.7	3.3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1	19.0	61.9	14.3	4.8	.0	95.2	4.8
	1 0 명 이 상	9	11.1	77.8	11.1	.0	.0	100.0	.0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19	21.1	57.9	15.8	5.3	.0	94.7	5.3
	1 0 억 원 이 상	11	9.1	81.8	9.1	.0	.0	100.0	.0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9	11.1	88.9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0	10.0	40.0	40.0	10.0	.0	90.0	10.0
	애 니 메 이 션	1	.0	100.0	.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4	25.0	75.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1	100.0	.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3	.0	100.0	.0	.0	.0	100.0	.0
	기 타	2	50.0	50.0	.0	.0	.0	100.0	.0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는 83.3%(그대로 적용 20.0%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6.7% + 일부 문구만 적용 16.7%, n=30)로 종사자수 10명 이상(88.9%),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90.9%) 중견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23.8%),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26.3%)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66.7%),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63.6%)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1-21 〉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0	20.0	46.7	16.7	16.7	.0	83.3	16.7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1	23.8	38.1	19.0	19.0	.0	81.0	19.0
	1 0 명 이 상	9	11.1	66.7	11.1	11.1	.0	88.9	11.1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19	26.3	36.8	15.8	21.1	.0	78.9	21.1
	1 0 억 원 이 상	11	9.1	63.6	18.2	9.1	.0	90.9	9.1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9	33.3	55.6	11.1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0	10.0	20.0	30.0	40.0	.0	60.0	40.0
	애 니 메 이 션	1	.0	100.0	.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4	.0	75.0	25.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1	100.0	.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3	.0	66.7	.0	33.3	.0	66.7	33.3
	기 타	2	50.0	50.0	.0	.0	.0	100.0	.0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내용 적용 정도는 76.7%(그대로 적용 13.3%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3.3% + 일부 문구만 적용 20.0%, n=30)로 종사자수 10명 미만(81.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78.9%) 소규모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55.6%) 사업체에서, 일부 문구만 적용한다는 응답은 10명 미만(28.6%)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22〉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0	13.3	43.3	20.0	20.0	3.3	76.7	23.3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1	14.3	38.1	28.6	14.3	4.8	81.0	19.0
	1 0 명 이 상		9	11.1	55.6	.0	33.3	.0	66.7	33.3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19	15.8	42.1	21.1	15.8	5.3	78.9	21.1
	1 0 억 원 이 상		11	9.1	45.5	18.2	27.3	.0	72.7	27.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9	11.1	55.6	22.2	11.1	.0	88.9	11.1
	다 큐 멘 터 리		10	10.0	20.0	30.0	40.0	.0	60.0	40.0
	애 니 메 이 션		1	.0	100.0	.0	.0	.0	100.0	.0
	오 략 / 예 능		4	.0	50.0	25.0	25.0	.0	75.0	25.0
	교 육 / 학 습		1	100.0	.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3	.0	66.7	.0	.0	33.3	66.7	33.3
	기 타		2	50.0	50.0	.0	.0	.0	100.0	.0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내용 적용 정도는 83.3% (그대로 적용 33.3%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0.0% + 일부 문구만 적용 10.0%, n=30)로 종사자수 10명 미만(85.7%),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84.2%) 소규모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 (38.1%),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7.4%)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44.4%),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54.5%)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23〉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0	33.3	40.0	10.0	10.0	6.7	83.3	16.7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1	38.1	38.1	9.5	9.5	4.8	85.7	14.3
	1 0 명 이 상		9	22.2	44.4	11.1	11.1	11.1	77.8	22.2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19	47.4	31.6	5.3	10.5	5.3	84.2	15.8
	1 0 억 원 이 상		11	9.1	54.5	18.2	9.1	9.1	81.8	18.2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9	33.3	44.4	11.1	.0	11.1	88.9	11.1
	다 큐 멘 터 리		10	30.0	20.0	20.0	30.0	.0	70.0	30.0
	애 니 메 이 션		1	.0	100.0	.0	.0	.0	100.0	.0
	오 략 / 예 능		4	25.0	75.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1	100.0	.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3	33.3	33.3	.0	.0	33.3	66.7	33.3
	기 타		2	50.0	50.0	.0	.0	.0	100.0	.0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내용 적용 정도는 90.0% (그대로 적용 33.3% + 약간 수정하여 적용 50.0% + 일부 문구만 적용 6.7%, n=30)로 종사자수 10명 이상(100.0%),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100.0%) 중견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 (38.1%),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36.8%)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66.7%),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63.6%)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1-24 〉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0	33.3	50.0	6.7	6.7	3.3	90.0	10.0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1	38.1	42.9	4.8	9.5	4.8	85.7	14.3
	1 0 명 이 상	9	22.2	66.7	11.1	.0	.0	100.0	.0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19	36.8	42.1	5.3	10.5	5.3	84.2	15.8
	1 0 억 원 이 상	11	27.3	63.6	9.1	.0	.0	100.0	.0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9	44.4	55.6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0	20.0	40.0	20.0	20.0	.0	80.0	20.0
	애 니 메 이 션	1	.0	100.0	.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4	25.0	75.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1	100.0	.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3	33.3	33.3	.0	.0	33.3	66.7	33.3
	기 타	2	50.0	50.0	.0	.0	.0	100.0	.0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귀속 내용 적용 정도는 83.3% (그대로 적용 40.0%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0.0% + 일부 문구만 적용 3.3%, n=30)로 종사자수 10명 이상(88.9%),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90.9%) 중견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7.4%)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55.6%),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54.5%)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25〉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귀속 내용 적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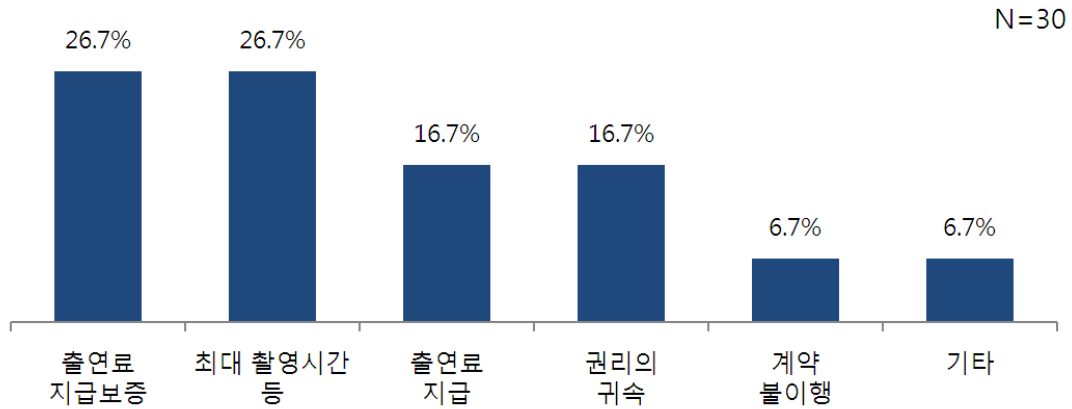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0	40.0	40.0	3.3	13.3	3.3	83.3	16.7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1	42.9	33.3	4.8	14.3	4.8	81.0	19.0
	1 0 명 이 상	9	33.3	55.6	.0	11.1	.0	88.9	11.1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19	47.4	31.6	.0	15.8	5.3	78.9	21.1
	1 0 억 원 이 상	11	27.3	54.5	9.1	9.1	.0	90.9	9.1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9	55.6	33.3	11.1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0	30.0	30.0	.0	40.0	.0	60.0	40.0
	애 니 메 이 션	1	.0	100.0	.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4	25.0	75.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1	100.0	.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3	33.3	33.3	.0	.0	33.3	66.7	33.3
	기 타	2	50.0	50.0	.0	.0	.0	100.0	.0

3)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으로는 출연료 지급보증과 최대 촬영시간이 각 2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연료 지급과 권리의 귀속(각 16.7%), 계약 불이행(6.7%) 등의 순을 보였음(n=30).
-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 출연료 지급보증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33.3%),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31.6%)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최대 촬영시간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출연료 지급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33.3%), 권리의 귀속이라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21.1%)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증기금을 내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케줄 변경으로 추가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출연자와 별도로 협의해서(각 3명) 등이 있었음.



〈그림 3-1-8〉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표 3-1-26〉 출연진과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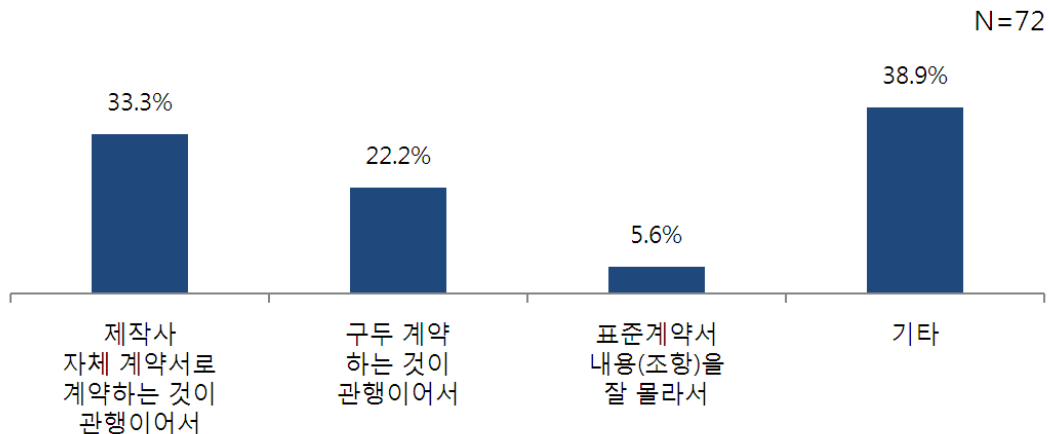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 보증	최대 촬영 시간 관련	계약 불이행	프로 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기타
전 체		30	16.7	26.7	26.7	6.7	.0	16.7	6.7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1	9.5	33.3	28.6	4.8	.0	19.0	4.8
	1 0 명 이 상	9	33.3	11.1	22.2	11.1	.0	11.1	11.1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19	10.5	31.6	26.3	5.3	.0	21.1	5.3
	1 0 억 원 이 상	11	27.3	18.2	27.3	9.1	.0	9.1	9.1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9	11.1	11.1	33.3	22.2	.0	.0	22.2
	다 큐 멘 터 리	10	30.0	20.0	30.0	.0	.0	20.0	.0
	애 니 메 이 션	1	100.0	.0	.0	.0	.0	.0	.0
	오 락 / 예 능	4	.0	25.0	50.0	.0	.0	25.0	.0
	교 육 / 학 습	1	.0	.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3	.0	66.7	.0	.0	.0	33.3	.0
	기 타	2	.0	100.0	.0	.0	.0	.0	.0

4)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제작사 (n=72)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22.2%),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5.6%)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38.9%). 기타(38.9%)는 출연진과 계약한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임.

-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36.0%),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33.3%)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9〉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표 3-1-27〉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구두 계약이 관행 이어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게 관행이어서	기타
전 체		72	5.6	22.2	33.3	38.9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47	8.5	14.9	34.0	42.6
	1 0 명 이 상	25	.0	36.0	32.0	32.0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54	7.4	18.5	33.3	40.7
	1 0 억 원 이 상	18	.0	33.3	33.3	33.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5	.0	20.0	80.0	.0
	다 큐 멘 터 리	21	.0	33.3	19.0	47.6
	애 니 메 이 션	6	16.7	16.7	33.3	33.3
	영 화	2	.0	.0	50.0	50.0
	오 락 / 예 능	5	.0	.0	60.0	40.0
	교 육 / 학 습	4	.0	25.0	.0	75.0
	교 양 / 시 사	16	12.5	18.8	18.8	50.0
	뉴 스 / 보 도	1	.0	.0	.0	100.0
	스 포 츠 / 레 저	1	.0	100.0	.0	.0
	기 타	11	9.1	18.2	63.6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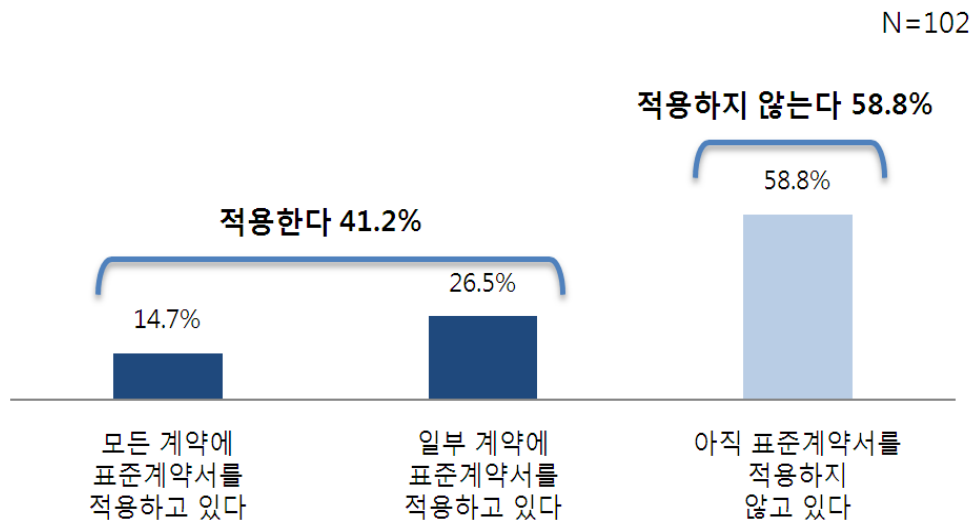


4.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제작사가 제작 스태프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1.2% (모든 계약 적용 14.7% + 일부 계약 적용 26.5%)로 나타남(n=102).
- 독립제작사가 제작 스태프와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4.7%로 종사자수 10명 이상(17.6%)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6.5%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31.0%)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8.8%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 거의 차이가 없었음(n=102).

〈그림 3-1-10〉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표 3-1-28 〉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102	14.7	26.5	58.8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68	13.2	27.9	58.8
	1 0 명 이 상	34	17.6	23.5	58.8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73	16.4	24.7	58.9
	1 0 억 원 이 상	29	10.3	31.0	58.6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14	14.3	42.9	42.9
	다 큐 멘 터 리	31	12.9	35.5	51.6
	애 니 메 이 션	7	14.3	14.3	71.4
	영 화	2	.0	.0	100.0
	오 락 / 예 능	9	11.1	33.3	55.6
	교 육 / 학 습	5	20.0	20.0	60.0
	교 양 / 시 사	19	15.8	15.8	68.4
	뉴 스 / 보 도	1	100.0	.0	.0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기 타	13	15.4	15.4	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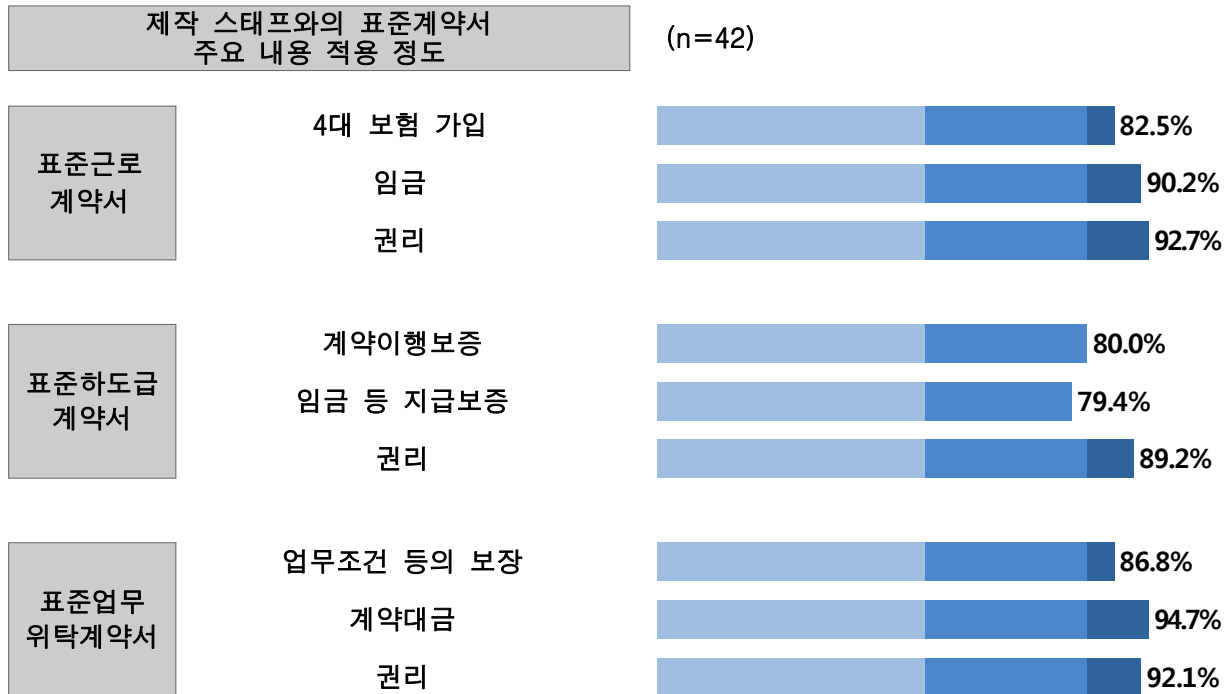
2)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독립제작사(n=42)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8.5%로 나타났으며, 권리가 92.7%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금(90.2%), 4대 보험 가입(82.5%) 순을 보였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2.9%로 나타났으며, 권리가 89.2%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이행보증(80.0%), 임금 등 지급보증(79.4%) 순을 보였음.
-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91.2%로 나타났으며, 계약대금이 94.7%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권리(92.1%), 업무조건 등의 보장(86.8%) 순을 보였음.



〈 그림 3-1-11 〉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 표 3-1-29 〉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40	40.0	35.0	7.5	15.0	2.5	82.5	17.5
	임금	41	39.0	46.3	4.9	7.3	2.4	90.2	9.8
	권리	41	48.8	36.6	7.3	7.3	.0	92.7	7.3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35	34.3	40.0	5.7	17.1	2.9	80.0	20.0
	임금 등 지급보증	34	32.4	38.2	8.8	14.7	5.9	79.4	20.6
	권리	37	40.5	37.8	10.8	8.1	2.7	89.2	10.8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38	31.6	34.2	21.1	10.5	2.6	86.8	13.2
	계약대금	38	34.2	47.4	13.2	2.6	2.6	94.7	5.3
	권리	38	44.7	31.6	15.8	2.6	5.3	92.1	7.9

※ 해당없음이라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적용 정도는 82.5%(그대로 적용 40.0%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5.0% + 일부 문구만 적용 7.5%, n=40)로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86.2%)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46.2%)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40.7%)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1-30 〉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40	40.0	35.0	7.5	15.0	2.5	82.5	17.5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7	37.0	40.7	3.7	14.8	3.7	81.5	18.5
	1 0 명 이 상	13	46.2	23.1	15.4	15.4	.0	84.6	15.4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9	44.8	34.5	6.9	10.3	3.4	86.2	13.8
	1 0 억 원 이 상	11	27.3	36.4	9.1	27.3	.0	72.7	27.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7	42.9	42.9	.0	14.3	.0	85.7	14.3
	다 큐 멘 터 리	15	33.3	20.0	13.3	26.7	6.7	66.7	33.3
	애 니 메 이 션	2	50.0	.0	5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4	25.0	75.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2	50.0	50.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6	33.3	50.0	.0	16.7	.0	83.3	16.7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기 타	3	66.7	33.3	.0	.0	.0	100.0	.0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임금 내용 적용 정도는 90.2%(그대로 적용 39.0%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6.3% + 일부 문구만 적용 4.9%, n=41)로 종사자수 10명 미만(92.6%),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93.1%) 소규모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40.7%),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1.4%)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도 종사자수 10명 미만(48.1%),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51.7%)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31〉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41	39.0	46.3	4.9	7.3	2.4	90.2	9.8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7	40.7	48.1	3.7	3.7	3.7	92.6	7.4
	1 0 명 이 상		14	35.7	42.9	7.1	14.3	.0	85.7	14.3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9	41.4	51.7	.0	3.4	3.4	93.1	6.9
	1 0 억 원 이 상		12	33.3	33.3	16.7	16.7	.0	83.3	16.7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7	28.6	57.1	14.3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5	40.0	40.0	.0	13.3	6.7	80.0	20.0
	애 니 메 이 션		2	.0	50.0	5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4	25.0	75.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2	50.0	50.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6	33.3	50.0	.0	16.7	.0	83.3	16.7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기 타		4	75.0	25.0	.0	.0	.0	100.0	.0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는 92.7%(그대로 적용 48.8%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6.6% + 일부 문구만 적용 7.3%, n=41)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 (51.9%),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55.2%)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41.7%)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32〉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41	48.8	36.6	7.3	7.3	.0	92.7	7.3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7	51.9	37.0	3.7	7.4	.0	92.6	7.4
	1 0 명 이 상		14	42.9	35.7	14.3	7.1	.0	92.9	7.1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9	55.2	34.5	3.4	6.9	.0	93.1	6.9
	1 0 억 원 이 상		12	33.3	41.7	16.7	8.3	.0	91.7	8.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7	42.9	57.1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5	40.0	33.3	6.7	20.0	.0	80.0	20.0
	애 니 메 이 션		2	50.0	.0	5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4	50.0	50.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2	50.0	50.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6	50.0	33.3	16.7	.0	.0	100.0	.0
	뉴 스 / 보 도		1	100.0	.0	.0	.0	.0	100.0	.0
	기 타		4	75.0	25.0	.0	.0	.0	100.0	.0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내용 적용 정도는 80.0%(그대로 적용 34.3%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0.0% + 일부 문구만 적용 5.7%, n=35)로 종사자수 10명 미만(83.3%),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84.0%) 소규모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37.5%),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4.0%)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41.7%),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50.0%)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33〉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하 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5	34.3	40.0	5.7	17.1	2.9	80.0	20.0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4	37.5	41.7	4.2	12.5	4.2	83.3	16.7
	1 0 명 이 상	11	27.3	36.4	9.1	27.3	.0	72.7	27.3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5	44.0	36.0	4.0	12.0	4.0	84.0	16.0
	1 0 억 원 이 상	10	10.0	50.0	10.0	30.0	.0	70.0	30.0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33.3	66.7	0.0	0.0	0.0	100.0	0.0
	다 큐 멘 터 리	13	38.5	7.7	7.7	38.5	7.7	53.8	46.2
	애 니 메 이 션	2	0.0	50.0	50.0	0.0	0.0	100.0	0.0
	오 락 / 예 능	3	33.3	66.7	0.0	0.0	0.0	100.0	0.0
	교 육 / 학 습	2	0.0	50.0	0.0	50.0	0.0	50.0	50.0
	교 양 / 시 사	5	40.0	60.0	0.0	0.0	0.0	100.0	0.0
	기 타	4	50.0	50.0	0.0	0.0	0.0	100.0	0.0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는 79.4%(그대로 적용 32.4%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8.2% + 일부 문구만 적용 8.8%, n=34)로 종사자수 10명 미만(83.3%),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84.0%) 소규모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4.0%)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44.4%)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34〉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4	32.4	38.2	8.8	14.7	5.9	79.4	20.6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4	33.3	41.7	8.3	8.3	8.3	83.3	16.7
	1 0 명 이 상		10	30.0	30.0	10.0	30.0	.0	70.0	30.0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5	44.0	36.0	4.0	8.0	8.0	84.0	16.0
	1 0 억 원 이 상		9	.0	44.4	22.2	33.3	.0	66.7	33.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33.3	50.0	16.7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3	38.5	7.7	7.7	30.8	15.4	53.8	46.2
	애 니 메 이 션		2	50.0	.0	5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3	33.3	66.7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2	.0	50.0	.0	50.0	.0	50.0	50.0
	교 양 / 시 사		5	20.0	80.0	.0	.0	.0	100.0	.0
	기 타		3	33.3	66.7	.0	.0	.0	100.0	.0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는 89.2%(그대로 적용 40.5%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7.8% + 일부 문구만 적용 10.8%, n=37)로 종사자수 10명 이상 (92.3%),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90.9%) 중견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 (46.2%),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6.2%)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41.7%),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45.5%)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35〉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7	40.5	37.8	10.8	8.1	2.7	89.2	10.8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4	37.5	41.7	8.3	8.3	4.2	87.5	12.5
	1 0 명 이 상		13	46.2	30.8	15.4	7.7	.0	92.3	7.7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6	46.2	34.6	7.7	7.7	3.8	88.5	11.5
	1 0 억 원 이 상		11	27.3	45.5	18.2	9.1	.0	90.9	9.1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7	42.9	57.1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4	42.9	14.3	21.4	14.3	7.1	78.6	21.4
	애 니 메 이 션		2	50.0	.0	5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3	33.3	66.7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2	50.0	50.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5	20.0	60.0	.0	20.0	.0	80.0	20.0
	기 타		4	50.0	50.0	.0	.0	.0	100.0	.0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는 86.8%(그대로 적용 31.6%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4.2% + 일부 문구만 적용 21.1%, n=38)로 종사자수 10명 미만(92.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92.3%) 소규모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36.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38.5%)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36.0%)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36〉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총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8	31.6	34.2	21.1	10.5	2.6	86.8	13.2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5	36.0	36.0	20.0	8.0	.0	92.0	8.0
	1 0 명 이 상	13	23.1	30.8	23.1	15.4	7.7	76.9	23.1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6	38.5	34.6	19.2	7.7	.0	92.3	7.7
	1 0 억 원 이 상	12	16.7	33.3	25.0	16.7	8.3	75.0	25.0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8	37.5	37.5	12.5	12.5	.0	87.5	12.5
	다 큐 멘 터 리	15	33.3	20.0	33.3	13.3	.0	86.7	13.3
	애 니 메 이 션	1	.0	.0	10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2	.0	100.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2	50.0	50.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5	20.0	60.0	.0	20.0	.0	80.0	20.0
	뉴 스 / 보 도	1	.0	.0	.0	.0	100.0	.0	100.0
	기 타	4	50.0	25.0	25.0	.0	.0	100.0	.0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내용 적용 정도는 94.7%(그대로 적용 34.2% + 약간 수정하여 적용 47.4% + 일부 문구만 적용 13.2%, n=38)로 종사자수 10명 미만(96.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96.2%) 소규모 사업체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36.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38.5%)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52.0%)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37 〉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하 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8	34.2	47.4	13.2	2.6	2.6	94.7	5.3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5	36.0	52.0	8.0	4.0	.0	96.0	4.0
	1 0 명 이 상		13	30.8	38.5	23.1	.0	7.7	92.3	7.7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6	38.5	46.2	11.5	3.8	.0	96.2	3.8
	1 0 억 원 이 상		12	25.0	50.0	16.7	.0	8.3	91.7	8.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8	50.0	50.0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4	28.6	50.0	21.4	.0	.0	100.0	.0
	애 니 메 이 션		1	.0	.0	10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3	.0	100.0	.0	.0	.0	100.0	.0
	교 육 / 학 습		2	50.0	50.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5	40.0	40.0	.0	20.0	.0	80.0	20.0
	뉴 스 / 보 도		1	.0	.0	.0	.0	100.0	.0	100.0
	기 타		4	50.0	25.0	25.0	.0	.0	100.0	.0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는 92.1%(그대로 적용 44.7%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1.6% + 일부 문구만 적용 15.8%, n=38)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었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46.2%),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51.9%)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간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54.5%) 사업체에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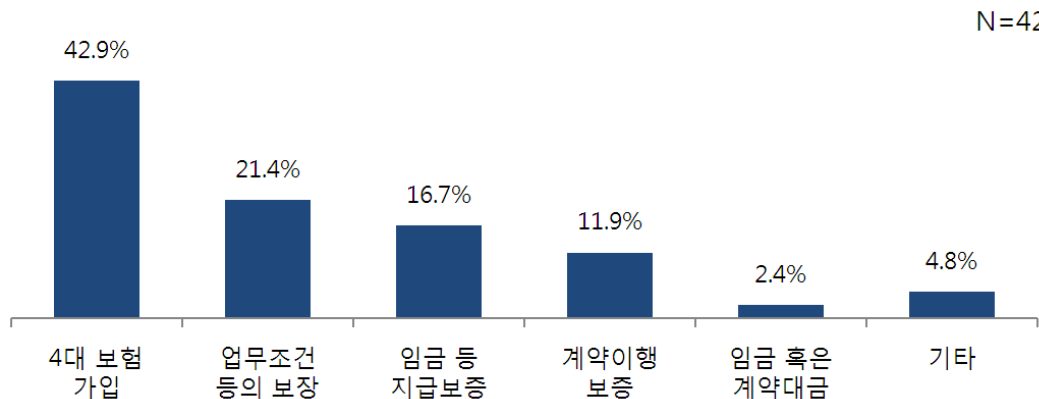
〈 표 3-1-38 〉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하 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38	44.7	31.6	15.8	2.6	5.3	92.1	7.9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26	46.2	30.8	15.4	3.8	3.8	92.3	7.7
	1 0 명 이 상		12	41.7	33.3	16.7	.0	8.3	91.7	8.3
연간 매출액	1 0 억 원 미 만		27	51.9	22.2	18.5	3.7	3.7	92.6	7.4
	1 0 억 원 이 상		11	27.3	54.5	9.1	.0	9.1	90.9	9.1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8	50.0	50.0	.0	.0	.0	100.0	.0
	다 큐 멘 터 리		14	50.0	14.3	28.6	.0	7.1	92.9	7.1
	애 니 메 이 션		1	.0	.0	100.0	.0	.0	100.0	.0
	오 락 / 예 능		3	.0	66.7	.0	33.3	.0	66.7	33.3
	교 육 / 학 습		2	50.0	50.0	.0	.0	.0	100.0	.0
	교 양 / 시 사		5	60.0	40.0	.0	.0	.0	100.0	.0
	뉴 스 / 보 도		1	.0	.0	.0	.0	100.0	.0	100.0
	기 타		4	50.0	25.0	25.0	.0	.0	100.0	.0

3)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조건 등의 보장(21.4%), 임금 등 지급보증(16.7%), 계약이행보증(11.9%), 임금 혹은 계약대금(2.4%) 등의 순을 보였음(n=42).
-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 4대 보험 가입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50.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6.7%) 소규모 사업체에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이라는 응답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33.3%) 사업체에서 높았음.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스태프가 프리랜서라 4대보험 적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커서(4명), 촬영 시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1명) 등이 있었음.

〈그림 3-1-12〉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표 3-1-39〉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구 분 (단위:%)		표본수 (n)	4대 보험 가입	임금 혹은 계약 대금	저작물 권리	계약 이행 보증	임금 등 지급 보증	업무 조건 등의 보장	기타
전 체		42	42.9	2.4	.0	11.9	16.7	21.4	4.8
종 사 자 수	10명 미만	28	50.0	3.6	.0	7.1	17.9	21.4	.0
	10명 이상	14	28.6	.0	.0	21.4	14.3	21.4	14.3
연 간 매 출 액	10억원 미만	30	46.7	3.3	.0	10.0	20.0	16.7	3.3
	10억원 이상	12	33.3	.0	.0	16.7	8.3	33.3	8.3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8	37.5	.0	.0	12.5	12.5	37.5	.0
	다 큐 멘 터 리	15	46.7	6.7	.0	6.7	20.0	20.0	.0
	애 니 메 이 션	2	.0	.0	.0	.0	50.0	.0	50.0
	오 략 / 예 능	4	25.0	.0	.0	25.0	25.0	25.0	.0
	교 육 / 학 습	2	50.0	.0	.0	.0	50.0	.0	.0
	교 양 / 시 사	6	66.7	.0	.0	33.3	.0	.0	.0
	뉴 스 / 보 도	1	.0	.0	.0	.0	.0	.0	100.0
	기 타	4	50.0	.0	.0	.0	.0	5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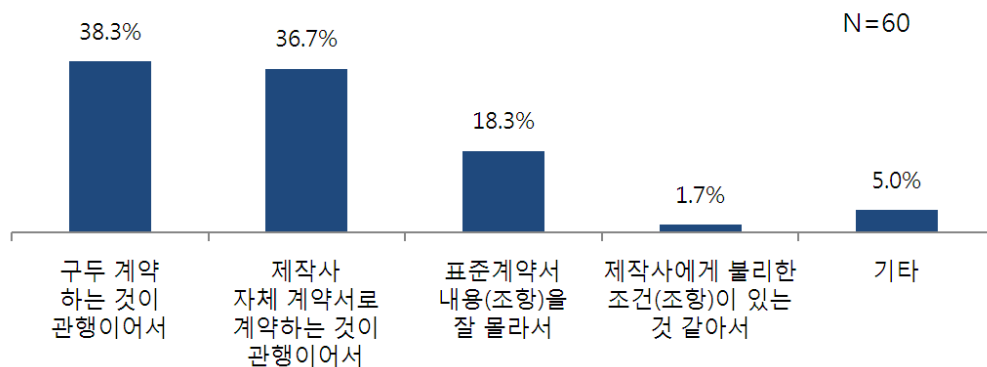


4)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제작사(n=60)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가 3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36.7%),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18.3%),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1.7%)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5.0%).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구두 계약이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미만(40.0%),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41.9%) 소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종사자수 10명 이상(40.0%),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47.1%) 중견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3-1-13〉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표 3-1-40〉 제작 스태프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구 분 (단위:%)		표본수 (n)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구두 계약이 관행 이어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게 관행이어서	기타
전 체		60	1.7	18.3	38.3	36.7	5.0
종 사 자 수	1 0 명 미 만	40	2.5	15.0	40.0	35.0	7.5
	1 0 명 이 상	20	.0	25.0	35.0	40.0	.0
연 간 매 출 액	1 0 억 원 미 만	43	2.3	18.6	41.9	32.6	4.7
	1 0 억 원 이 상	17	.0	17.6	29.4	47.1	5.9
방 송 영 상 물 제 작 장 르	드 라 마	6	.0	33.3	.0	66.7	.0
	다 큐 멘 터 리	16	.0	6.3	68.8	12.5	12.5
	애 니 메 이 션	5	.0	60.0	.0	40.0	.0
	영 화	2	.0	.0	.0	100.0	.0
	오 략 / 예 능	5	.0	.0	40.0	60.0	.0
	교 육 / 학 습	3	33.3	.0	.0	66.7	.0
	교 양 / 시 사	13	.0	38.5	46.2	7.7	7.7
	스 포 츠 / 레 저	1	.0	.0	100.0	.0	.0
	기 타	9	.0	.0	33.3	66.7	.0

5.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방송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개선, 표준계약서 홍보 및 교육, 저작권 보호 및 공유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1-41 〉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근절, 개선되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권리 공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8명) “계약 금액 지급 날짜 변경에 대한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방송사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 “서로 협의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방송사의 지급일정에 대한 임의변경 등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갑인 방송사에 표준계약서를 애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부터 개선해야 하며, 그에 앞서 방송사 자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에 앞장서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유도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외주 제작단가를 규격화하여 방송사 피디와 제작사 간에 인간적인 의리 혹은 다음에 더 챙겨준다 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관행들을 없앴으면 한다”
	● 표준계약서 홍보 및 교육(7명) “방송사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추천 및 교육을 해야 한다” “방송사의 담당자가 표준계약서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겠고, 적용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준계약서 배포,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회사들이 많다”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의무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것부터 선행 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더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작권 보호 및 공유(6명) “납품한 방송제작물의 저작권 보유 : 공동으로 저작권 보유 및 재방 및 판매 시 수익분배”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계약 상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지나치게 방송사 위주로 되어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저작권 관련 과거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방송사의 독점 방지” “제작사와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제작사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주어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작사에게 판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현실적 시장상황에 맞는 계약서 활용하면 좋겠다. 저작권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하면 좋겠다”



●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5명)

“공영방송사부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방송사도 표준계약서 작성 활성화, 관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시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사측에서 일방적인 계약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 강제력 있는 법안 마련(5명)

“방송사의 관행적인 행태를 제지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하지 않을 시 엄격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야한다”

“원청사에서 선금, 중도금 등을 현금으로 정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청업체 그리고 그 밑에 개별인력들에게도 제 때에 금액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 없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법으로 방송사는 표준계약서 필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송사와의 갑을관계 개선(4명)

“개선사항을 묻기 전에 그냥 바꾸세요. 갑을 관계를 잘 생각해보시고요”

“제작사는 선택의 여지 없고, 불이익 받는 경우 있다”

“표준계약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표준계약대로 갑(방송사)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작사가 대응 방법이 없어요”

“갑에서 표준계약서 채택 안하니 방송사 관행 개선시켜야 한다”

● 불공정 계약에 관한 지원 필요(2명)

“계약관련 심사제도나 불공정 계약에 관한 무료 법률 자문기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비에 비해 방영권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 방영권료의 현실화가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 출연진(가수/배우)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출연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관행을 없애고 규정을 일반화시키는 체제 개선, 표준계약서 관련 홍보 및 교육 필요, 확실한 계약 행정처리 등의 응답이 높았음.

〈 표 3-1-42 〉 출연진(가수/배우)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기존 관행을 없애고, 규정을 일반화시키는 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부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 계약을 준수하고, 행정처리를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 기존 관행을 없애고 규정을 일반화시키는 체제 개선 필요 (6명) “관행을 없애고 규정을 일반화 시키는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 선택이 되어야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법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하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유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성우 단체에서 출연료를 무리하게 기준 없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상호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길 바란다” “방송사의 관행적인 행태를 제지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필요하듯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상호 신뢰할만한 현시적 근거가 반영되어야 한다” “출연진과의 분쟁 발생 시 일방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제작사의 실질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표준계약서 관련 홍보 및 교육 필요(6명) “출연진들도 본인들이 제작사와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할 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 광고, 인쇄물 여러 가지 채널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사전고지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표준계약서 배포,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니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계약서 이행 의무 사항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 계약 준수 및 확실한 행정처리(3명) “계약된 금액에 대해 지급이 약속된 날짜에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제작을 하는 제작사 입장에서 계약서 적용이 번거로울 수 있다. 계약서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행정처리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
	● 적은 제작비용으로 계약 어려움(2명) “비현실적인 제작비로선 제작사만 힘들다” “적은 제작비용으로 활발한 계약에 어려움을 느낀다”
	● 무료 법률 자문기관 설립(1명) “계약관련 심사제도나 불공정 계약에 관한 무료 법률 자문기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3)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스태프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4대 보험 적용 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필요, 표준계약서 홍보,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강제화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표 3-1-43 〉 제작 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4대 보험 적용 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표준계약서에 대한 고지 등 적극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 4대 보험 적용 시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필요(10명) “4대 보험 적용 시 상승되는 제작사 부담금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대 보험 별도 조항이 잘 적용하기 힘들다. 정부에서 스태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대 보험 적용 어려우므로 공제조합, 스텝 조합 등이 대행해주었으면 한다” “산재보험 산재처리 및 산재보험금 만큼의 제작비 상승이 뒤따라야 한다” “업무위탁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라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제작 스태프가 위탁계약서 작성조차 해당되지 않아 4대 보험 등 혜택 부여하기 어렵다” “제작스태프들은 장비에 대한 안전사고가 상시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뜻하지 않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 “최저 임금 보장 및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좀 더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4대 보험 적용 시 제작비의 현실화, 세무회계비용의 분담처럼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4대 보험 별도 조항이 잘 적용하기 힘들다, 정부에서 스태프들이 적용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대 보험 적용 어려우므로 공제조합, 스텝 조합 등이 대행해주었으면 한다”
	● 표준계약서 홍보(8명) “제작관련 공모나 방송사 입찰 시 월2~3회 정부관련 홈페이지 방문조회, 독립제작사 협회 등록 300만원 내도 큰 지원없어 등록하기 어렵고 정부에서 홈페이지 등에 표준계약서 홍보 적극 활용을 요한다” “출연진들도 본인들이 제작사와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할 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 광고, 인쇄물 여러 가지 채널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사전고지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표준계약서 배포,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이행 의무 사항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프로덕션 회사와 스태프에게 해당 표준계약에 대한 홍보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

●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강제화(7명)

“갑인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쓰게 되면 당연히 제작사, 제작스태프까지 표준계약서 작성하게 되어 영상제작관련분야 활성화 될 것이다”

“제작스태프의 보호, 보장이 확실했으면 하나 이 또한 방송사와의 계약이 표준계약이 이뤄지면 가능할 듯 하니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해야한다”

“최저 임금 보장 및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좀 더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에게도 공개 할 수 있는 하청 제작비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스태프들도 자신들이 더 이상 착취 당한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객관화되고 명문화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턴키로 제작 요청하여 크게 와 닿진 않지만, 선진국처럼 스태프들의 정규 업무 시간이 지켜졌으면 한다”

● 제작사 사정에 맞는 현실적인 표준계약서(4명)

“산재보험 산재처리 및 산재보험금 만큼의 제작비 상승이 뒤따라야 한다”

“업무위탁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라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제작 스태프가 위탁계약서 작성조차 해당되지 않아 4대 보험 등 혜택 부여하기 어렵다”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등 큰 규모의 프로그램의 경우 고정 스태프와의 계약이 가능하나 특집이나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의 경우 단발적으로 스태프 구성이 이뤄질 경우 표준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요”

“스태프들이 프리랜서라 계약서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

● 간편한 행정처리 시스템 필요(2명)

“대금결제가 어음 없이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었으면 한다”

“행정처리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 업무환경 개선 할 수 있는 지원 필요(2명)

“열악한 업무환경과 조건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제작스태프들은 장비에 대한 안전사고가 상시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뜻하지 않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

● 정부차원 제재 필요(1명)

“계약된 스태프의 제작비 정부보증(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유 없이(또는 없는 이유를 들어) 제작비가 지급되지 않는 일부 악덕 제작사에 대한 정부차원 제재가 필요하다”

● 불공정 계약에 관한 무료 법률 자문기관 설립(1명)

“계약관련 심사제도나 불공정 계약에 관한 무료 법률 자문기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4)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준계약서 및 내용에 대한 홍보 필요,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 마련, 표준계약서 이용/적용 강제화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표 3-1-44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표준계약서 및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알아야 이용을 하죠) 💡 제작사 사정에 맞는 현실적인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이용/적용에 대한 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한 홍보 필요(14명)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알아야 이용하고 활용한다. 또한 빠른 업그레이드가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이 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한다. 변화되는 환경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보완 수정 되어 같이 진화되었으면 한다” “서로가 구두계약이 편해서 계약서 작성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관 홈페이지 및 유관 단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및 계약의 갑(방송사 및 대형제작사)에 대한 지속한 지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필수 작성 홍보 제도가 되면 위탁사 방송출연진 제작스태프 등도 구두 계약보다는 보증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계약이행 보증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름으로 제작사들에게 홍보가 우선으로 필요할 것 같다”
● 제작사 사정에 맞는 현실적인 표준계약서 마련(8명)	“계약서가 방송사 위주의 내용이라 제작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 “방송사와 계약시 방송사에서 지키지 않고 스태프와 계약시 제작사의 비용 등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 을을 위한 계약서라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다” “방송사와 제작사간 현실적인 방영권료가 우선 바탕이 되어야 스태프와 출연진들에게도 표준계약서를 통한 공정한 대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표준계약서 활용도 더 높아질 것이다” “제도는 좋으나 제작사는 갑과 을이 다 해당되는 입장인데 현실과는 내용이 너무 맞지 않는다” “제작현실과 표준계약서와는 안 맞는 부분이 많다” “방통위 위원 등은 실제 KBS 교수, 기자출신 등으로 외주제작사 실태나 어려움을 극히 잘 파악 못하고 있다. 역시 공무원 포함해서 실제 잘 아는 인재가 활성화 등 공정거래 등 정확히 파악해 재원해주긴 바란다” “현장 상황을 지금처럼 더욱 깊게 체크해서 현실적인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주세요”
● 표준계약서 강제화(8명)	“방송사 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첨부을 강제화 해야 한다” “정부에서 방송사가 계약서를 이행하도록 강제성을 주어야 한다” “표준계약서 이행을 방송사부터 해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 예상됨” “표준계약서를 방송사에서 많이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5명)

“방송사의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방송사의 불공정거래가 빨리 없어져야 계약시 방송편성 예정으로 계약한다”

“표준계약서에 앞서 표준제작비부터 정리해야 한다. 방송사의 내부제작비와 외주제작사의 제작비에 대한 공정한 산출, 그리고 외주비율을 준수하는 편성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외주산업 활성화가 급선무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계약관련 심사제도나 불공정 계약에 관한 무료 법률 자문기관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4명)

“의무화 하는 것이 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 된다”

“의무화가 아님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 표준계약서 적용시 품질제작비 지원 등 혜택 필요(3명)

“표준계약서 적용 시 인센티브나 자금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품질 좋은 방송영상 위해 제작비 높여 외주제작사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 제작비가 표준계약서 상에 넣게 되면 방송사 산정 제작비와 크게 안 맞는 것이 없을 것이지만 실질적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공정거래(관리감독 강화)등으로 중소 프로덕션 도울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한다”

● 약식 또는 요약본 필요(3명)

“간단한 요약본이 필요하고 상세사항은 옵션으로 하면 좋겠다”

“모든 계약서가 복잡하니 약식이었으면 한다”

“계약서가 큰 프로그램, 지상과 정규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한 것 같으나, 지역방송이나 IPTV 등에서 적용하기에는 좀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계약에서 할 수 있는 간소한 계약서가 만들어져 구분하여 쓸 수 있다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인식 개선 필요(2명)

“아직은 내용을 잘 모름으로 제작사에 많이 알리고 인식시켜야 한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저작권 보호조항 필요(2명)

“저작권에 있어 제작사 권한 없이 분배와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제작사의 최저 저작권에 대한 명기가 필요합니다”

● 유통관련 조항 필요(1명)

“방송사 콘텐츠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몰라도 외주 제작사 작은 콘텐츠라도 공동작업 등 많았으면 하고, 독립제작사는 해외판권을 갖고 판매촉진 하는 등 또 다른 유통도 고려 해봤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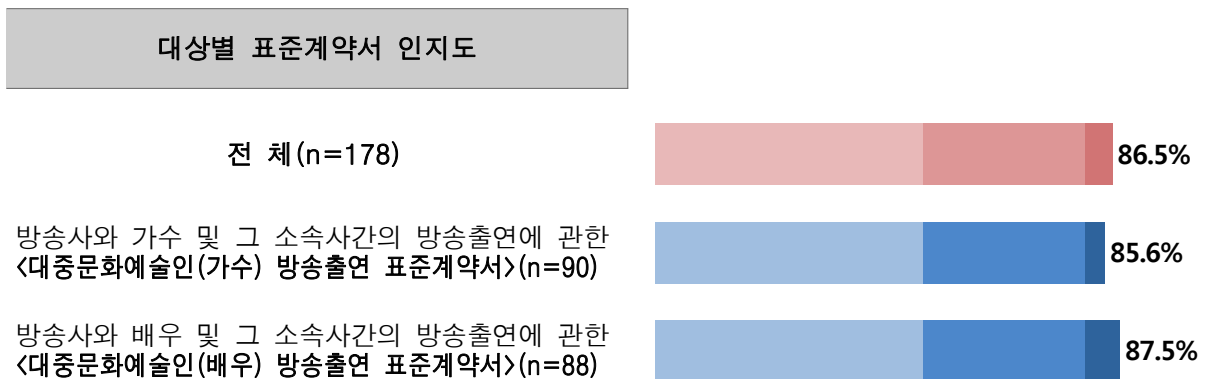
제 2 절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경우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는 86.5%로 나타났으며 (n=178), 출연진의 유형별(가수, 배우)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를 살펴보면, 가수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5.6%(n=90), 배우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87.5%로 나타남(n=88).

－ 세부 대상별로는 배우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87.5%, 가수의 인지도가 85.6%로 나타나, 가수와 배우 간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그림 3-2-1〉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 인지층(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들어는 보았다)만 표기

〈표 3-2-1〉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78	36.0	37.6	12.9	9.0	4.5	86.5	13.5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90	30.0	43.3	12.2	12.2	2.2	85.6	14.4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88	42.0	31.8	13.6	5.7	6.8	87.5	12.5

- 세부 특성별로는 남성(89.5%), 20대, 30대의 저 연령층(20대 86.0%, 30대 87.3%),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배우(87.5%),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89.0%),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93.9%)의 인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2-2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78	36.0	37.6	12.9	9.0	4.5	86.5	13.5
방 송 출 연 자 구 분	가 수	90	30.0	43.3	12.2	12.2	2.2	85.6	14.4
	배 우	88	42.0	31.8	13.6	5.7	6.8	87.5	12.5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100	43.0	35.0	11.0	10.0	1.0	89.0	11.0
	외 주 제 작 사	78	26.9	41.0	15.4	7.7	9.0	83.3	16.7
성 별	남 성	124	35.5	38.7	15.3	8.1	2.4	89.5	10.5
	여 성	54	37.0	35.2	7.4	11.1	9.3	79.6	20.4
연 령 별	2 0 대	57	35.1	36.8	14.0	8.8	5.3	86.0	14.0
	3 0 대	71	42.3	36.6	8.5	8.5	4.2	87.3	12.7
	4 0 대	37	29.7	40.5	10.8	13.5	5.4	81.1	18.9
	5 0 대 이 상	13	23.1	38.5	38.5	.0	.0	100.0	.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46	21.7	37.0	19.6	17.4	4.3	78.3	21.7
	3 ~ 5 년 미 만	33	45.5	45.5	3.0	6.1	.0	93.9	6.1
	5 ~ 1 0 년 미 만	29	44.8	27.6	17.2	.0	10.3	89.7	10.3
	1 0 년 이 상	70	37.1	38.6	11.4	8.6	4.3	87.1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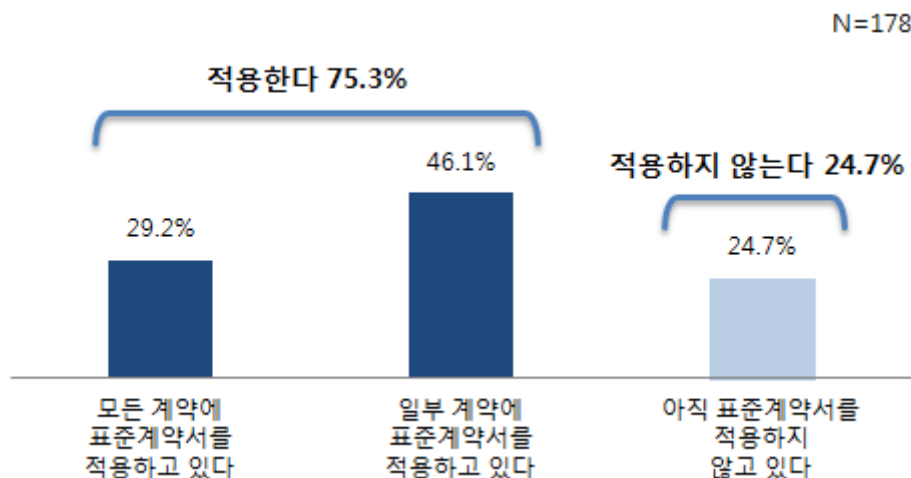


2.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이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75.3%(모든 계약 적용 29.2% + 일부 계약 적용 46.1%)로 나타남(n=178).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이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9.2%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40대 32.4%, 50대 이상 38.5%),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배우(33.0%),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33.0%),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4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6.1%로 나타났으며, 방송출연자에서는 성별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남성 46.0%, 여성 46.3%), 50대 이상(53.8%),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46.7%),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50.0%), 방송출연 활동 10년 이상(51.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4.7%(n=178)로 나타났으며, 남성(25.8%), 20대(31.6%),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27.8%),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34.6%), 방송출연 활동 1~3년 미만(32.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3-2-2〉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표 3-2-3 〉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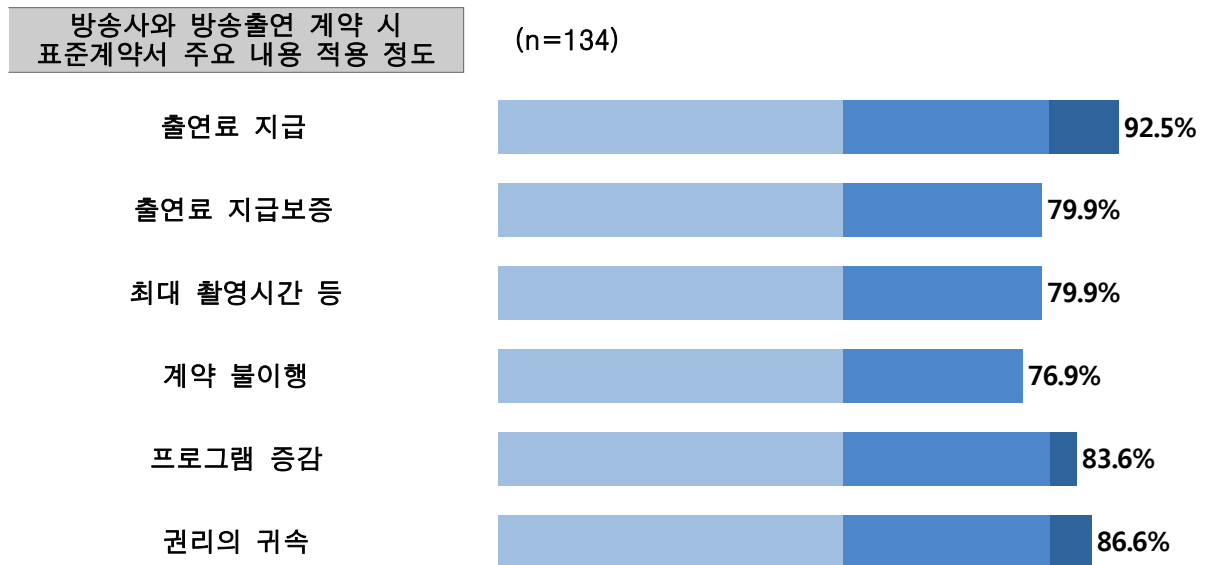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178	29.2	46.1	24.7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90	25.6	46.7	27.8
	배 우	88	33.0	45.5	21.6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100	33.0	50.0	17.0
	외 주 제 작 사	78	24.4	41.0	34.6
성 별	남 성	124	28.2	46.0	25.8
	여 성	54	31.5	46.3	22.2
연 령 별	2 0 대	57	26.3	42.1	31.6
	3 0 대	71	28.2	52.1	19.7
	4 0 대	37	32.4	37.8	29.7
	5 0 대 이 상	13	38.5	53.8	7.7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46	21.7	45.7	32.6
	3 ~ 5 년 미 만	33	45.5	36.4	18.2
	5 ~ 10 년 미 만	29	37.9	44.8	17.2
	1 0 년 이 상	70	22.9	51.4	25.7

2)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가수/배우 등 출연진을 대상(n=134)으로 한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시간 등, 계약 불이행, 프로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등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3.2%인 것으로 나타남,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가수/배우 등 출연진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출연료 지급이 92.5%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권리의 귀속(86.6%), 프로그램 증감(83.6%),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시간(각 79.9%), 계약 불이행(76.9%) 순으로 나타남(n=134).



〈그림 3-2-3〉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3-2-4〉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구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출연료 지급	134	50.0	29.1	13.4	6.0	1.5	92.5	7.5
출연료 지급보증	134	38.8	20.9	20.1	12.7	7.5	79.9	20.1
최대 촬영시간 등	134	38.1	20.1	21.6	12.7	7.5	79.9	20.1
계약 불이행	134	41.0	19.4	16.4	18.7	4.5	76.9	23.1
프로그램 증감	134	40.3	26.1	17.2	13.4	3.0	83.6	16.4
권리의 귀속	134	47.0	21.6	17.9	9.7	3.7	86.6	13.4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92.5%(그대로 적용 50.0%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9.1% + 일부 문구만 적용 13.4%, n=134)로 여성(95.2%), 30대(94.7%),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98.5%),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96.4%),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96.3%)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52.4%), 40대(57.7%),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60.0%),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56.6%),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7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5〉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하 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34	50.0	29.1	13.4	6.0	1.5	92.5	7.5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65	60.0	24.6	13.8	1.5	.0	98.5	1.5
	배 우	69	40.6	33.3	13.0	10.1	2.9	87.0	13.0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83	56.6	24.1	15.7	3.6	.0	96.4	3.6
	외 주 제 작 사	51	39.2	37.3	9.8	9.8	3.9	86.3	13.7
성 별	남 성	92	48.9	27.2	15.2	7.6	1.1	91.3	8.7
	여 성	42	52.4	33.3	9.5	2.4	2.4	95.2	4.8
연 령 별	2 0 대	39	56.4	23.1	12.8	7.7	.0	92.3	7.7
	3 0 대	57	45.6	38.6	10.5	5.3	.0	94.7	5.3
	4 0 대	26	57.7	19.2	11.5	3.8	7.7	88.5	11.5
	5 0 대 이 상	12	33.3	25.0	33.3	8.3	.0	91.7	8.3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31	41.9	32.3	19.4	6.5	.0	93.5	6.5
	3 ~ 5 년 미 만	27	74.1	18.5	3.7	3.7	.0	96.3	3.7
	5 ~ 10 년 미 만	24	45.8	29.2	12.5	8.3	4.2	87.5	12.5
	1 0 년 이 상	52	44.2	32.7	15.4	5.8	1.9	92.3	7.7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79.9% (그대로 적용 38.8%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0.9% + 일부 문구만 적용 20.1%, n=134)로 여성(90.5%), 20대(87.2%),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86.2%),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80.4%),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96.3%)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40.5%), 40대(42.3%),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44.6%),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39.8%),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7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6 〉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34	38.8	20.9	20.1	12.7	7.5	79.9	20.1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65	44.6	20.0	21.5	7.7	6.2	86.2	13.8
	배 우	69	33.3	21.7	18.8	17.4	8.7	73.9	26.1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83	39.8	19.3	20.5	14.5	6.0	79.5	20.5
	외 주 제 작 사	51	37.3	23.5	19.6	9.8	9.8	80.4	19.6
성 별	남 성	92	38.0	17.4	19.6	15.2	9.8	75.0	25.0
	여 성	42	40.5	28.6	21.4	7.1	2.4	90.5	9.5
연 령 별	2 0 대	39	38.5	20.5	28.2	7.7	5.1	87.2	12.8
	3 0 대	57	40.4	19.3	17.5	14.0	8.8	77.2	22.8
	4 0 대	26	42.3	26.9	7.7	15.4	7.7	76.9	23.1
	5 0 대 이 상	12	25.0	16.7	33.3	16.7	8.3	75.0	25.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31	22.6	25.8	32.3	12.9	6.5	80.6	19.4
	3 ~ 5 년 미 만	27	70.4	14.8	11.1	3.7	.0	96.3	3.7
	5 ~ 10년 미만	24	33.3	16.7	16.7	20.8	12.5	66.7	33.3
	1 0 년 이 상	52	34.6	23.1	19.2	13.5	9.6	76.9	23.1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79.9%(그대로 적용 38.1%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0.1% + 일부 문구만 적용 21.6%, n=134)로 여성(88.1%), 40대(88.5%),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87.7%),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80.4%),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92.6%)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42.9%), 40대(50.0%),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49.2%),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43.4%),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6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7〉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34	38.1	20.1	21.6	12.7	7.5	79.9	20.1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65	49.2	18.5	20.0	4.6	7.7	87.7	12.3
	배 우	69	27.5	21.7	23.2	20.3	7.2	72.5	27.5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83	43.4	15.7	20.5	12.0	8.4	79.5	20.5
	외 주 제 작 사	51	29.4	27.5	23.5	13.7	5.9	80.4	19.6
성 별	남 성	92	35.9	20.7	19.6	16.3	7.6	76.1	23.9
	여 성	42	42.9	19.0	26.2	4.8	7.1	88.1	11.9
연 령 별	2 0 대	39	35.9	20.5	23.1	12.8	7.7	79.5	20.5
	3 0 대	57	38.6	19.3	19.3	14.0	8.8	77.2	22.8
	4 0 대	26	50.0	23.1	15.4	7.7	3.8	88.5	11.5
	5 0 대 이 상	12	16.7	16.7	41.7	16.7	8.3	75.0	25.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31	32.3	25.8	25.8	16.1	.0	83.9	16.1
	3 ~ 5 년 미 만	27	63.0	14.8	14.8	.0	7.4	92.6	7.4
	5 ~ 10 년 미 만	24	29.2	29.2	16.7	20.8	4.2	75.0	25.0
	1 0 년 이 상	52	32.7	15.4	25.0	13.5	13.5	73.1	26.9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76.9%(그대로 적용 41.0% + 약간 수정하여 적용 19.4% + 일부 문구만 적용 16.4%, n=134)로 여성(81.0%), 40대(84.6%),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84.6%),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77.1%),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92.6%)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52.4%), 40대(50.0%),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47.7%),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44.6%),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7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8〉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34	41.0	19.4	16.4	18.7	4.5	76.9	23.1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65	47.7	18.5	18.5	9.2	6.2	84.6	15.4
	배 우	69	34.8	20.3	14.5	27.5	2.9	69.6	30.4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83	44.6	19.3	13.3	16.9	6.0	77.1	22.9
	외 주 제 작 사	51	35.3	19.6	21.6	21.6	2.0	76.5	23.5
성 별	남 성	92	35.9	17.4	21.7	20.7	4.3	75.0	25.0
	여 성	42	52.4	23.8	4.8	14.3	4.8	81.0	19.0
연 령 별	2 0 대	39	43.6	20.5	2.6	28.2	5.1	66.7	33.3
	3 0 대	57	35.1	21.1	24.6	12.3	7.0	80.7	19.3
	4 0 대	26	50.0	19.2	15.4	15.4	.0	84.6	15.4
	5 0 대 이 상	12	41.7	8.3	25.0	25.0	.0	75.0	25.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31	25.8	25.8	22.6	19.4	6.5	74.2	25.8
	3 ~ 5 년 미 만	27	70.4	14.8	7.4	7.4	.0	92.6	7.4
	5~10년미만	24	33.3	25.0	4.2	33.3	4.2	62.5	37.5
	1 0 년 이 상	52	38.5	15.4	23.1	17.3	5.8	76.9	23.1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관련 내용 적용 정도 83.6%(그대로 적용 40.3%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6.1% + 일부 문구만 적용 17.2%, n=134)로 여성 85.7%), 40대(96.2%),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89.2%),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84.3%),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92.6%)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47.6%), 40대(50.0%),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44.6%),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43.4%),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7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9〉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하 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34	40.3	26.1	17.2	13.4	3.0	83.6	16.4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65	44.6	24.6	20.0	6.2	4.6	89.2	10.8
	배 우	69	36.2	27.5	14.5	20.3	1.4	78.3	21.7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83	43.4	21.7	18.1	13.3	3.6	83.1	16.9
	외 주 제 작 사	51	35.3	33.3	15.7	13.7	2.0	84.3	15.7
성 별	남 성	92	37.0	23.9	21.7	14.1	3.3	82.6	17.4
	여 성	42	47.6	31.0	7.1	11.9	2.4	85.7	14.3
연 령 별	2 0 대	39	41.0	33.3	10.3	10.3	5.1	84.6	15.4
	3 0 대	57	38.6	22.8	19.3	15.8	3.5	80.7	19.3
	4 0 대	26	50.0	30.8	15.4	3.8	.0	96.2	3.8
	5 0 대 이 상	12	25.0	8.3	33.3	33.3	.0	66.7	33.3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31	29.0	38.7	22.6	6.5	3.2	90.3	9.7
	3 ~ 5 년 미 만	27	74.1	18.5	.0	7.4	.0	92.6	7.4
	5~10년미만	24	37.5	33.3	8.3	16.7	4.2	79.2	20.8
	1 0 년 이 상	52	30.8	19.2	26.9	19.2	3.8	76.9	23.1

○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귀속 관련 내용 적용 정도 86.6%(그대로 적용 47.0%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1.6% + 일부 문구만 적용 17.9%, n=134)로 여성(90.5%), 40대(92.3%),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92.3%),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89.2%),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100.0%)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64.3%), 40대(57.7%),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56.9%),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51.8%),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8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10 〉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귀속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34	47.0	21.6	17.9	9.7	3.7	86.6	13.4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65	56.9	21.5	13.8	6.2	1.5	92.3	7.7
	배 우	69	37.7	21.7	21.7	13.0	5.8	81.2	18.8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83	51.8	21.7	15.7	7.2	3.6	89.2	10.8
	외 주 제 작 사	51	39.2	21.6	21.6	13.7	3.9	82.4	17.6
성 별	남 성	92	39.1	23.9	21.7	10.9	4.3	84.8	15.2
	여 성	42	64.3	16.7	9.5	7.1	2.4	90.5	9.5
연 령 별	2 0 대	39	56.4	23.1	10.3	5.1	5.1	89.7	10.3
	3 0 대	57	40.4	19.3	24.6	10.5	5.3	84.2	15.8
	4 0 대	26	57.7	23.1	11.5	7.7	.0	92.3	7.7
	5 0 대 이 상	12	25.0	25.0	25.0	25.0	.0	75.0	25.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31	35.5	25.8	22.6	3.2	12.9	83.9	16.1
	3 ~ 5 년 미 만	27	81.5	7.4	11.1	.0	.0	100.0	.0
	5 ~ 10 년 미 만	24	37.5	33.3	12.5	16.7	.0	83.3	16.7
	1 0 년 이 상	52	40.4	21.2	21.2	15.4	1.9	82.7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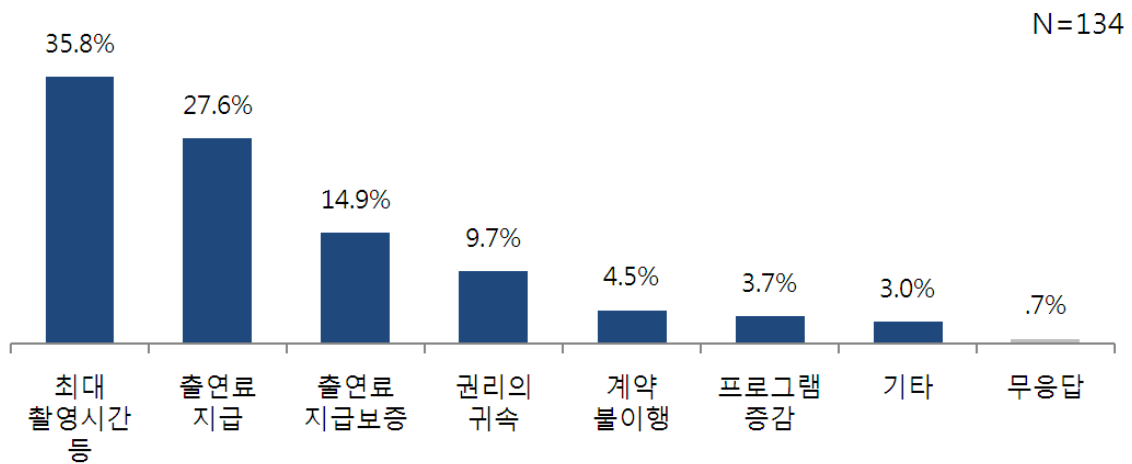
3)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이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최대 촬영시간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연료 지급(27.6%), 출연료 지급보증(14.9%), 권리의 귀속(9.7%), 계약 불이행(4.5%), 프로그램 증감(3.7%) 등의 순을 보였음(n=134).

－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 최대 촬영시간이라는 응답은 남성(38.0%), 20대(41.0%), 방송출연 활동 10년 이상(44.2%),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배우(37.7%),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39.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출연료 지급이라는 응답은 여성(35.7%),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33.8%),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31.3%), 방송출연 활동 10년 이상(30.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드라마 제작 환경이 열악하고 유동성이 많아서 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급기한과 시스템이 부적절해서(23.1%), 기획사에서는 방송사에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라서(11.5%), 방송사 다이렉트 계약이 아닌 제작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 그래서(각 7.7%) 등이 있었음(n=134).

〈그림 3-2-4〉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표 3-2-11〉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구 분 (단위:%)		표본수 (n)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 시간 관련	계약 불이행	프로 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기타	무응답
전 체		134	27.6	14.9	35.8	4.5	3.7	9.7	3.0	.7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65	33.8	15.4	33.8	6.2	4.6	6.2	.0	.0
	배 우	69	21.7	14.5	37.7	2.9	2.9	13.0	5.8	1.4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83	31.3	14.5	33.7	3.6	3.6	10.8	2.4	.0
	외 주 제 작 사	51	21.6	15.7	39.2	5.9	3.9	7.8	3.9	2.0
성 별	남 성	92	23.9	16.3	38.0	4.3	5.4	7.6	4.3	.0
	여 성	42	35.7	11.9	31.0	4.8	.0	14.3	.0	2.4
연 령 별	2 0 대	39	28.2	15.4	41.0	5.1	.0	7.7	2.6	.0
	3 0 대	57	28.1	15.8	33.3	1.8	5.3	12.3	1.8	1.8
	4 0 대	26	23.1	11.5	38.5	7.7	3.8	11.5	3.8	.0
	5 0 대 이 상	12	33.3	16.7	25.0	8.3	8.3	.0	8.3	.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31	19.4	22.6	32.3	3.2	3.2	12.9	6.5	.0
	3 ~ 5 년 미 만	27	29.6	11.1	29.6	3.7	7.4	11.1	3.7	3.7
	5 ~ 10년 미 만	24	29.2	20.8	29.2	.0	4.2	12.5	4.2	.0
	1 0 년 이 상	52	30.8	9.6	44.2	7.7	1.9	5.8	.0	.0



4)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가수/배우 등이 방송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출연진(n=44)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게 관행이어서가 3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22.7%),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방송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각 18.2%),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9.1%) 순으로 보였음.

－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게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남성(37.5%), 40대(45.5%),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배우(42.1%),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41.2%), 방송출연 활동 10년 이상(44.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2-12〉 방송출연 계약 시 방송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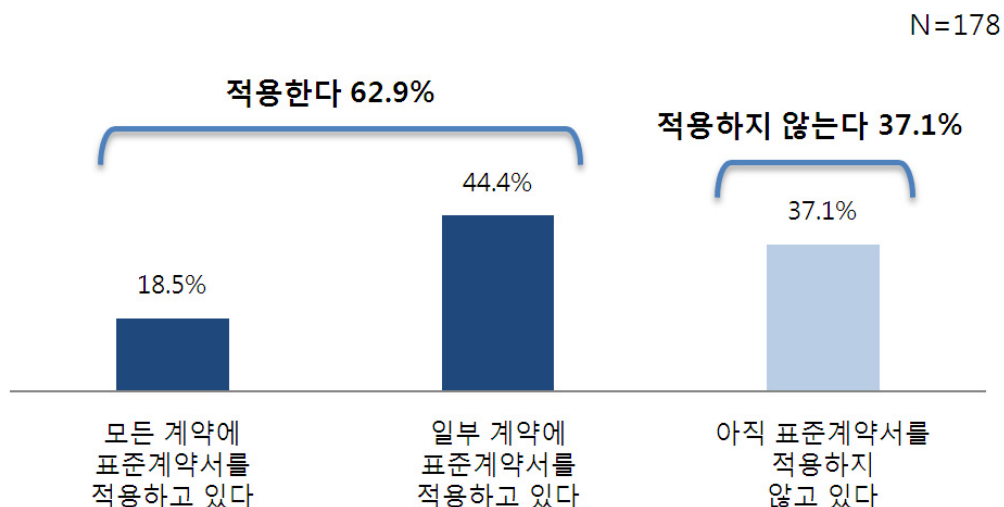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방송사가 표준 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방송사가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 이어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게 관행 이어서
전 체		44	9.1	18.2	18.2	22.7	31.8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25	4.0	24.0	20.0	28.0	24.0
	배 우	19	15.8	10.5	15.8	15.8	42.1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17	5.9	11.8	23.5	17.6	41.2
	외 주 제 작 사	27	11.1	22.2	14.8	25.9	25.9
성 별	남 성	32	12.5	9.4	15.6	25.0	37.5
	여 성	12	.0	41.7	25.0	16.7	16.7
연 령 별	2 0 대	18	11.1	27.8	11.1	27.8	22.2
	3 0 대	14	14.3	14.3	21.4	14.3	35.7
	4 0 대	11	.0	9.1	27.3	18.2	45.5
	5 0 대 이 상	1	.0	.0	.0	100.0	.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15	6.7	33.3	6.7	33.3	20.0
	3 ~ 5 년 미 만	6	16.7	16.7	16.7	16.7	33.3
	5 ~ 10년 미 만	5	20.0	20.0	20.0	20.0	20.0
	1 0 년 이 상	18	5.6	5.6	27.8	16.7	44.4

3.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이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62.9%(모든 계약 적용 18.5% + 일부 계약 적용 44.4%)로 나타남(n=178).
 - 가수/배우 등 출연진이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으며, 여성(25.9%), 40대(27.0%),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배우(20.5%),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19.0%),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3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로 나타났으며, 남성(46.8%), 30대(53.5%),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배우(53.4%),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51.3%), 방송출연 활동 5~10년 미만(62.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7.1%(n=178)로 나타났으며, 남성(37.9%), 50대 이상(61.5%),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47.8%),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42.0%), 방송출연 활동 10년 이상(4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5〉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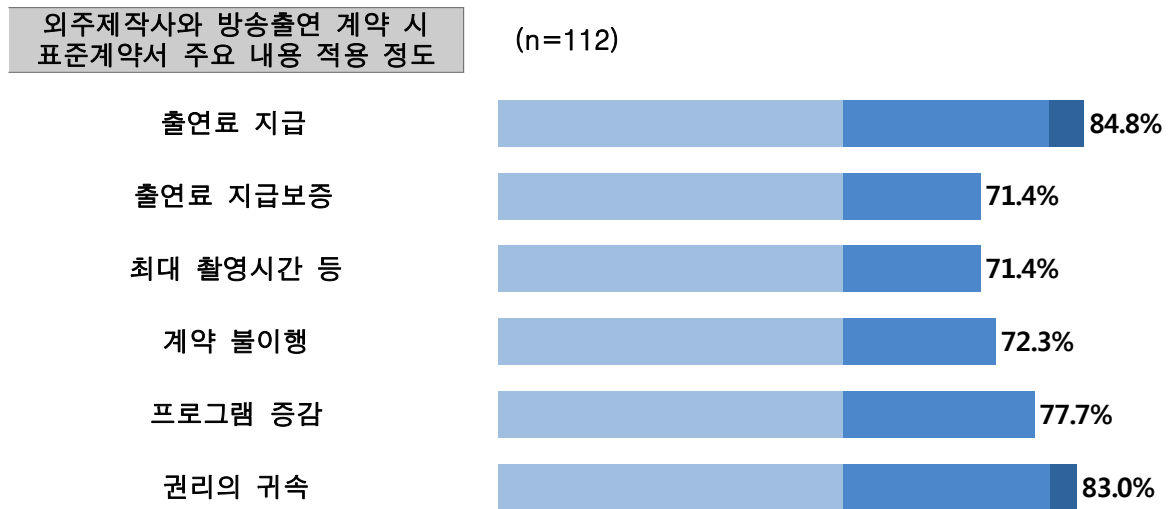
〈 표 3-2-13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178	18.5	44.4	37.1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90	16.7	35.6	47.8
	배 우	88	20.5	53.4	26.1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100	19.0	39.0	42.0
	외 주 제 작 사	78	17.9	51.3	30.8
성 별	남 성	124	15.3	46.8	37.9
	여 성	54	25.9	38.9	35.2
연 령 별	2 0 대	57	15.8	47.4	36.8
	3 0 대	71	16.9	53.5	29.6
	4 0 대	37	27.0	29.7	43.2
	5 0 대 이 상	13	15.4	23.1	61.5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46	13.0	50.0	37.0
	3 ~ 5 년 미 만	33	33.3	36.4	30.3
	5 ~ 10 년 미 만	29	17.2	62.1	20.7
	1 0 년 이 상	70	15.7	37.1	47.1

2)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가수/배우 등 출연진을 대상(n=112)으로 한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시간 등, 계약 불이행, 프로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76.8% 인 것으로 나타남.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가수/배우 등 출연진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출연료 지급이 84.8%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권리의 귀속(83.0%), 프로그램 증감(77.7%), 계약 불이행(72.3%), 출연료 지급보증, 최대 촬영시간(각 71.4%) 순으로 나타남(n=112).

〈그림 3-2-6〉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3-2-14〉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구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출연료 지급	112	36.6	31.3	17.0	11.6	3.6	84.8	15.2
출연료 지급보증	112	33.9	17.9	19.6	20.5	8.0	71.4	28.6
최대 촬영시간 등	112	27.7	22.3	21.4	20.5	8.0	71.4	28.6
계약 불이행	112	29.5	21.4	21.4	17.9	9.8	72.3	27.7
프로그램 증감	112	28.6	29.5	19.6	17.0	5.4	77.7	22.3
권리의 귀속	112	32.1	25.9	25.0	12.5	4.5	83.0	17.0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84.8% (그대로 적용 36.6% + 약간 수정하여 적용 31.3% + 일부 문구만 적용 17.0%, n=112)로 여성(91.4%), 30대(94.0%),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95.7%),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87.9%),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95.7%)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45.7%), 40대(57.1%),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46.8%),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44.8%),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5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15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12	36.6	31.3	17.0	11.6	3.6	84.8	15.2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47	46.8	29.8	19.1	4.3	.0	95.7	4.3
	배 우	65	29.2	32.3	15.4	16.9	6.2	76.9	23.1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58	44.8	25.9	17.2	10.3	1.7	87.9	12.1
	외 주 제 작 사	54	27.8	37.0	16.7	13.0	5.6	81.5	18.5
성 별	남 성	77	32.5	29.9	19.5	15.6	2.6	81.8	18.2
	여 성	35	45.7	34.3	11.4	2.9	5.7	91.4	8.6
연 령 별	2 0 대	36	30.6	36.1	13.9	13.9	5.6	80.6	19.4
	3 0 대	50	34.0	42.0	18.0	6.0	.0	94.0	6.0
	4 0 대	21	57.1	4.8	14.3	14.3	9.5	76.2	23.8
	5 0 대 이 상	5	20.0	.0	40.0	40.0	.0	60.0	40.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29	27.6	31.0	24.1	10.3	6.9	82.8	17.2
	3 ~ 5 년 미 만	23	52.2	30.4	13.0	4.3	.0	95.7	4.3
	5~10년미만	23	30.4	43.5	8.7	13.0	4.3	82.6	17.4
	1 0 년 이 상	37	37.8	24.3	18.9	16.2	2.7	81.1	18.9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71.4%(그대로 적용 33.9% + 약간 수정하여 적용 17.9% + 일부 문구만 적용 19.6%, n=112)로 여성(82.9%), 30대(82.0%),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85.1%),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72.2%),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87.0%)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40.0%), 40대(47.6%),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38.3%),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37.9%),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5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16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출연료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12	33.9	17.9	19.6	20.5	8.0	71.4	28.6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47	38.3	21.3	25.5	12.8	2.1	85.1	14.9
	배 우	65	30.8	15.4	15.4	26.2	12.3	61.5	38.5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58	37.9	13.8	19.0	24.1	5.2	70.7	29.3
	외 주 제 작 사	54	29.6	22.2	20.4	16.7	11.1	72.2	27.8
성 별	남 성	77	31.2	16.9	18.2	26.0	7.8	66.2	33.8
	여 성	35	40.0	20.0	22.9	8.6	8.6	82.9	17.1
연 령 별	2 0 대	36	22.2	19.4	25.0	25.0	8.3	66.7	33.3
	3 0 대	50	38.0	24.0	20.0	12.0	6.0	82.0	18.0
	4 0 대	21	47.6	4.8	9.5	23.8	14.3	61.9	38.1
	5 0 대 이 상	5	20.0	.0	20.0	60.0	.0	40.0	60.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29	17.2	24.1	27.6	20.7	10.3	69.0	31.0
	3 ~ 5 년 미 만	23	52.2	17.4	17.4	13.0	.0	87.0	13.0
	5~10년미만	23	30.4	21.7	13.0	21.7	13.0	65.2	34.8
	1 0 년 이 상	37	37.8	10.8	18.9	24.3	8.1	67.6	32.4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71.4% (그대로 적용 27.7%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2.3% + 일부 문구만 적용 21.4%, n=112)로 여성(82.9%), 30대(78.0%),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83.0%),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72.4%),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87.0%)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37.1%), 40대(52.4%),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29.8%),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34.5%),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5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17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최대 촬영시간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12	27.7	22.3	21.4	20.5	8.0	71.4	28.6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47	29.8	31.9	21.3	12.8	4.3	83.0	17.0
	배 우	65	26.2	15.4	21.5	26.2	10.8	63.1	36.9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58	34.5	19.0	19.0	20.7	6.9	72.4	27.6
	외 주 제 작 사	54	20.4	25.9	24.1	20.4	9.3	70.4	29.6
성 별	남 성	77	23.4	19.5	23.4	24.7	9.1	66.2	33.8
	여 성	35	37.1	28.6	17.1	11.4	5.7	82.9	17.1
연 령 별	2 0 대	36	19.4	19.4	19.4	27.8	13.9	58.3	41.7
	3 0 대	50	24.0	32.0	22.0	14.0	8.0	78.0	22.0
	4 0 대	21	52.4	9.5	14.3	23.8	.0	76.2	23.8
	5 0 대 이 상	5	20.0	.0	60.0	20.0	.0	80.0	20.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29	20.7	27.6	24.1	17.2	10.3	72.4	27.6
	3 ~ 5 년 미 만	23	52.2	17.4	17.4	8.7	4.3	87.0	13.0
	5~10년미만	23	13.0	34.8	13.0	34.8	4.3	60.9	39.1
	1 0 년 이 상	37	27.0	13.5	27.0	21.6	10.8	67.6	32.4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72.3%(그대로 적용 29.5%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1.4% + 일부 문구만 적용 21.4%, n=112)로 여성(77.1%), 40대(76.2%),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83.0%),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79.3%),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87.0%)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40.0%), 40대(47.6%),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31.9%),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34.5%),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4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18〉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하 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12	29.5	21.4	21.4	17.9	9.8	72.3	27.7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47	31.9	27.7	23.4	10.6	6.4	83.0	17.0
	배 우	65	27.7	16.9	20.0	23.1	12.3	64.6	35.4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58	34.5	22.4	22.4	13.8	6.9	79.3	20.7
	외 주 제 작 사	54	24.1	20.4	20.4	22.2	13.0	64.8	35.2
성 별	남 성	77	24.7	18.2	27.3	19.5	10.4	70.1	29.9
	여 성	35	40.0	28.6	8.6	14.3	8.6	77.1	22.9
연 령 별	2 0 대	36	22.2	25.0	16.7	22.2	13.9	63.9	36.1
	3 0 대	50	28.0	28.0	20.0	14.0	10.0	76.0	24.0
	4 0 대	21	47.6	4.8	23.8	19.0	4.8	76.2	23.8
	5 0 대 이 상	5	20.0	.0	60.0	20.0	.0	80.0	20.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29	20.7	24.1	27.6	13.8	13.8	72.4	27.6
	3 ~ 5 년 미 만	23	47.8	26.1	13.0	8.7	4.3	87.0	13.0
	5~10년미만	23	26.1	21.7	13.0	30.4	8.7	60.9	39.1
	1 0 년 이 상	37	27.0	16.2	27.0	18.9	10.8	70.3	29.7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77.7%(그대로 적용 28.6%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9.5% + 일부 문구만 적용 19.6%, n=112)로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여성(80.0%), 30대(86.0%), 가수(83.0%),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79.3%),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87.0%)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40.0%), 40대(52.4%),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29.8%),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32.8%),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5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19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프로그램 증감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12	28.6	29.5	19.6	17.0	5.4	77.7	22.3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47	29.8	36.2	17.0	12.8	4.3	83.0	17.0
	배 우	65	27.7	24.6	21.5	20.0	6.2	73.8	26.2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58	32.8	25.9	20.7	17.2	3.4	79.3	20.7
	외 주 제 작 사	54	24.1	33.3	18.5	16.7	7.4	75.9	24.1
성 별	남 성	77	23.4	32.5	20.8	19.5	3.9	76.6	23.4
	여 성	35	40.0	22.9	17.1	11.4	8.6	80.0	20.0
연 령 별	2 0 대	36	19.4	30.6	16.7	22.2	11.1	66.7	33.3
	3 0 대	50	26.0	36.0	24.0	10.0	4.0	86.0	14.0
	4 0 대	21	52.4	14.3	14.3	19.0	.0	81.0	19.0
	5 0 대 이 상	5	20.0	20.0	20.0	40.0	.0	60.0	40.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29	20.7	31.0	24.1	17.2	6.9	75.9	24.1
	3 ~ 5 년 미 만	23	52.2	26.1	8.7	8.7	4.3	87.0	13.0
	5~10년미만	23	21.7	30.4	13.0	26.1	8.7	65.2	34.8
	1 0 년 이 상	37	24.3	29.7	27.0	16.2	2.7	81.1	18.9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기속 관련 내용 적용 정도는 83.0%(그대로 적용 32.1% + 약간 수정하여 적용 25.9% + 일부 문구만 적용 25.0%, n=112)로 여성(85.7%), 30대(90.0%),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87.2%),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83.3%),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91.3%)에서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은 여성(42.9%), 40대(47.6%),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가수(34.0%),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방송사(34.5%), 방송출연 활동 3~5년 미만(4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20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권리의 귀속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112	32.1	25.9	25.0	12.5	4.5	83.0	17.0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47	34.0	36.2	17.0	10.6	2.1	87.2	12.8
	배 우	65	30.8	18.5	30.8	13.8	6.2	80.0	20.0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58	34.5	20.7	27.6	12.1	5.2	82.8	17.2
	외 주 제 작 사	54	29.6	31.5	22.2	13.0	3.7	83.3	16.7
성 별	남 성	77	27.3	24.7	29.9	14.3	3.9	81.8	18.2
	여 성	35	42.9	28.6	14.3	8.6	5.7	85.7	14.3
연 령 별	2 0 대	36	22.2	36.1	16.7	16.7	8.3	75.0	25.0
	3 0 대	50	34.0	26.0	30.0	6.0	4.0	90.0	10.0
	4 0 대	21	47.6	14.3	19.0	19.0	.0	81.0	19.0
	5 0 대 이 상	5	20.0	.0	60.0	20.0	.0	80.0	20.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29	27.6	27.6	27.6	10.3	6.9	82.8	17.2
	3 ~ 5 년 미 만	23	47.8	21.7	21.7	8.7	.0	91.3	8.7
	5 ~ 10 년 미 만	23	26.1	26.1	21.7	21.7	4.3	73.9	26.1
	1 0 년 이 상	37	29.7	27.0	27.0	10.8	5.4	83.8	16.2

3)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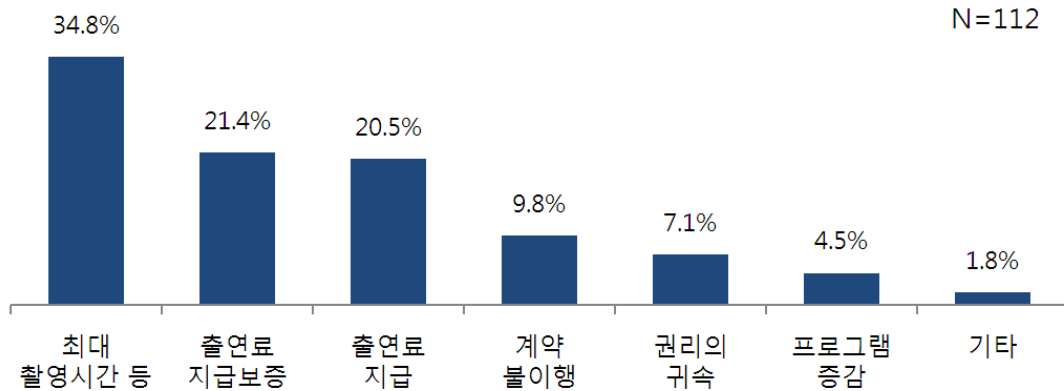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잘 적용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최대 촬영시간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연료 지급보증(21.4%), 출연료 지급(20.5%), 계약 불이행(9.8%), 권리의 귀속(7.1%), 프로그램 증감(4.5%) 등의 순을 보였음(n=112).

-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최대 촬영시간이라는 응답은 여성(37.1%), 20대(38.9%),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배우(36.9%),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42.6%), 방송출연 활동 10년 이상(4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표준계약서가 현실적이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제작사에서 지급보증을 잘 안해서(각 4명) 등이 있었음.

〈 그림 3-2-7 〉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표 3-2-21 〉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구 분 (단위:%)			표본수 (n)	출연료 지급	출연료 지급보 증	최대 촬영 시간 관련	계약 불이행	프로 그램 증감	권리의 귀속	기타
전 체			112	20.5	21.4	34.8	9.8	4.5	7.1	1.8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47	34.0	21.3	31.9	8.5	2.1	2.1	.0
	배 우		65	10.8	21.5	36.9	10.8	6.2	10.8	3.1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58	24.1	27.6	27.6	6.9	3.4	10.3	.0
	외 주 제 작 사		54	16.7	14.8	42.6	13.0	5.6	3.7	3.7
성 별	남 성		77	22.1	19.5	33.8	10.4	3.9	7.8	2.6
	여 성		35	17.1	25.7	37.1	8.6	5.7	5.7	.0
연 령 별	2 0 대		36	27.8	11.1	38.9	5.6	2.8	13.9	.0
	3 0 대		50	18.0	28.0	34.0	10.0	2.0	6.0	2.0
	4 0 대		21	9.5	28.6	33.3	14.3	9.5	.0	4.8
	5 0 대 이 상		5	40.0	.0	20.0	20.0	20.0	.0	.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29	17.2	17.2	34.5	13.8	3.4	10.3	3.4
	3 ~ 5 년 미 만		23	21.7	26.1	34.8	4.3	4.3	4.3	4.3
	5 ~ 10 년 미 만		23	26.1	30.4	26.1	4.3	8.7	4.3	.0
	1 0 년 이 상		37	18.9	16.2	40.5	13.5	2.7	8.1	.0

4)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외주제작사와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출연지(n=66)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가 3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22.7%), 제작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18.2%),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13.6%),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12.1%) 등의 순을 보였음(n=66).

－ 출연진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여성(31.6%), 40대(37.5%), 방송출연자 구분에서는 배우(34.8%), 방송출연 계약기관에서는 외주제작사(37.5%), 방송출연 활동 10년 이상(4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2-22 〉 방송출연 계약 시 외주제작사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단위:%)		표본수 (n)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제작사가 표준 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제작사가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 이어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게 관행 이어서	기타
전 체		66	12.1	18.2	13.6	22.7	30.3	3.0
방송출연자 구 분	가 수	43	9.3	18.6	16.3	27.9	27.9	.0
	배 우	23	17.4	17.4	8.7	13.0	34.8	8.7
방 송 출 연 계 약 기 관	방 송 사	42	9.5	19.0	19.0	23.8	26.2	2.4
	외 주 제 작 사	24	16.7	16.7	4.2	20.8	37.5	4.2
성 별	남 성	47	12.8	14.9	14.9	23.4	29.8	4.3
	여 성	19	10.5	26.3	10.5	21.1	31.6	.0
연 령 별	2 0 대	21	4.8	23.8	19.0	28.6	23.8	.0
	3 0 대	21	19.0	23.8	14.3	14.3	28.6	.0
	4 0 대	16	12.5	.0	12.5	25.0	37.5	12.5
	5 0 대 이 상	8	12.5	25.0	.0	25.0	37.5	.0
방 송 출 연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17	17.6	29.4	5.9	29.4	11.8	5.9
	3 ~ 5 년 미 만	10	.0	20.0	20.0	30.0	20.0	10.0
	5 ~ 10년 미 만	6	16.7	33.3	.0	16.7	33.3	.0
	1 0 년 이 상	33	12.1	9.1	18.2	18.2	42.4	.0



4.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방송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출연료 지급 보증, 표준계약서 강제화(의무화) 및 제재 마련, 방송사의 갑을의식 변화와 개선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2-23 〉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기본적인 개런티, 출연료 등 지급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의 강제화(의무적용) 및 위반 시 제재 마련이 필요합니다 💡 방송사의 의식(갑을관계)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출연료 지급 보증(15명)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본적 개런티, 출연료 보증이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한 강력한 국제 출연료 보증을 해야 합니다” “방송사가 출연료 관련 법적 보호 의무를 져야합니다” “가수 특성상 출연 프로그램이 한정 되나 방송출연 후 정산 및 정리 관계가 프로그램 마다 달라서 정산이 힘듭니다” “출연료 지급의 필수사항으로 계약서를 꼭 첨부해야하도록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출연료 지급보증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보증이 필수인데 잘 안 지켜집니다 ”
● 표준계약서의 강제화(의무적용) 및 제재 필요(9명)	“계약서 미작성, 미적용 시 제재를 크게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규범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의무로 적용하게 해야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필수로 사용하게 하는 환경 구현이 중요합니다”
● 방송사의 갑을의식 변화 및 개선(7명)	“갑과 을의 의식변화 방송사의 유연한 대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갑의 방송사와 을의 관계를 개선 바랍니다” “방송국의 갑으로서 악습 등 나쁜 관행 등은 뿌리 뽑을 수 있는 법적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방송사가 갑의 우위에 있다는 제도적 상황을 정리, 체계화 해야 한다”
● 현실적인 정책/법 개정 (4명)	“실행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상황을 잘 판단해서 만들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의도는 좋은 것 같으나 좀 더 현실을 파악한 후 진행하길 바란다”
● 촬영 시간 조정(3명)	“대본 촬영 2일 전 준비를 하는데 촬영 시간이 너무 유동적입니다” “미성년자 촬영 시간, 대기시간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일단 촬영 시간이 가장 큰 문제 인 것 같아요”
● 출연료/제작비 지원 강화(3명)	“방송사 출연 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주세요” “정확한 출연료의 정찰과 지원을 강화해 주세요”
● 투명한 계약 절차(1명)	“계약 등 모든 진행절차가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2)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외주제작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출연료 지급 보증 강화 및 준수, 표준계약서 적용/준수 방법 모색, 현실적인 정책 마련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2-24 〉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출연료 지급 보증 강화 및 준수가 필요해요 💡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출연료 지급 보증 강화 및 준수(16명) “연대 보증같은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외주제작사의 경우 지급 보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주시길” “정확한 지급기일을 준수해 주세요” “제작사와 방송사가 출연료 관련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연료 지급의 필수사항으로 계약서를 꼭 첨부해야하도록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를 적용 할 수 있는 방법 모색(8명) “외주제작사가 계약서 불이행 시 방송국에 방송 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한 법안 필요” “위반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규범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표준계약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강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됩니다”
	● 현실적인 정책 마련(2명) “정부의 의도는 좋은 것 같으나 좀 더 이쪽 현실을 파악한 후 진행해야된다” “현장의 의견을 디테일하게 수렴하여 표준의 응용력을 높인 계약서가 필요하다”
	● 지원 강화(2명) “제작지원이나 법적으로 부실 제작사 선별 후 좋은 제작사에 지원 강화해주었으면 한다” “외주제작사가 국내 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 규제보다는 좀 더 해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플렉서블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 촬영 시간 조정(1명) “촬영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 갑을 의식 변화(1명) “방송사, 외주 제작사의 적극적 협조 유도가 필요하다”
	● 외주사 선정 투명화(1명) “외주사 선정의 투명성과 재정 제작비 집행의 안전성을 도모 해야된다”
	● 중소기업 보호 제도(1명)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3)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준계약서 홍보 강화, 갑을 인식 개선, 강력한 제재 및 의무 활용 필요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25〉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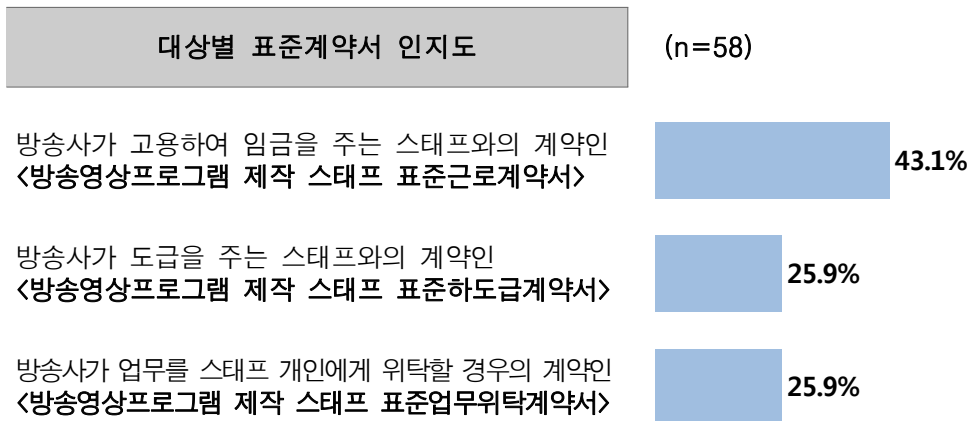
	💡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환경조성이 중요해요) 💡 갑을관계에 대한 인식/의식이 개선되어야 해요 💡 표준계약서 미적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해요
● 표준계약서 홍보 강화(7명)	“계약도 중요하지만 해당 법을 준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안전을 더 잘 알려야 될 것 같다” “대대적인 홍보가 우선이다” “아직 표준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좀 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표준계약서 존재를 알리고 활용하게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표준계약서 활용 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갑을 인식 개선(4명)	“갑의 위치에 있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의식 전환 및 제작비의 사전 확보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캐스팅 디렉터들의 무리한 수수료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방송국을 개선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
● 강력한 제재 및 의무 활용 필요(4명)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적용하여 활용이 의무적으로 되게끔 하면 좋겠다” “표준계약서 미작성 시 정부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 지급 보증 강화(3명)	“계약 시 정부의 공증이 있으면 좋겠다” “출연료 지급 보증이 필요합니다”
● 대기업 우선 시행(2명)	“일단 대형으로 움직이는 대형업자들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대형제작사와 독립영세제작사와의 경제적 사항도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작 환경 및 지원 활성화(2명)	“제작환경 개선과 재정지원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제작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 충분한 사전 제작 준비(1명)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된 사전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현실적인 정책(1명)	“정부에서 방송 현실을 좀 아는 분들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 약자 의견 반영 제도(1명)	“힘 없는 스태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체계화 된 조직 필요(1명)	“획일화 된 체계화 된 제대로 된 조직이 필요합니다”

제 3 절 제작 스태프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제작 스태프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를 살펴보면,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표준근로계약서의 인지도는 43.1%로 나타난 반면,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방송사가 업무를 스태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인지도는 각 25.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n=58).

〈그림 3-3-1〉 제작 스태프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 인지층(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들어는 보았다)만 표기

〈표 3-3-1〉 독립제작사의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58	6.9	6.9	29.3	31.0	25.9	43.1	56.9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8	.0	5.2	20.7	43.1	31.0	25.9	74.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58	3.4	1.7	20.7	37.9	36.2	25.9	74.1



- 제작 스태프와 방송사 간 계약 시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는 43.1%(잘 안다 6.9% + 대략 안다 6.9% + 들어는 보았다 29.3%, n=58)로 나타났으며, 세부 특성별로는 남성(48.9%), 30대(50.0%),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62.5%),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45.7%),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52.6%)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3-2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총	비 인지총
전 체		58	6.9	6.9	29.3	31.0	25.9	43.1	56.9
성 별	남 성	45	8.9	8.9	31.1	26.7	24.4	48.9	51.1
	여 성	13	.0	.0	23.1	46.2	30.8	23.1	76.9
연 령 별	2 0 대	24	8.3	4.2	29.2	33.3	25.0	41.7	58.3
	3 0 대	18	5.6	.0	44.4	27.8	22.2	50.0	50.0
	4 0 대	10	10.0	20.0	10.0	50.0	10.0	40.0	60.0
	5 0 대 이 상	6	.0	16.7	16.7	.0	66.7	33.3	66.7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12.5	12.5	37.5	25.0	12.5	62.5	37.5
	3 ~ 5 년 미 만	10	10.0	.0	30.0	50.0	10.0	40.0	60.0
	5 ~ 1 0 년 미 만	18	.0	.0	38.9	33.3	27.8	38.9	61.1
	1 0 년 이 상	22	9.1	13.6	18.2	22.7	36.4	40.9	59.1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10.5	.0	15.8	42.1	31.6	26.3	73.7
	방송사 팀별 계약	5	.0	.0	40.0	20.0	40.0	40.0	6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9.1	9.1	31.8	27.3	22.7	50.0	50.0
	제작사 팀별 계약	12	.0	16.7	41.7	25.0	16.7	58.3	41.7
계 약 타 입 방 식	서 면 계 약	35	8.6	8.6	28.6	31.4	22.9	45.7	54.3
	구 두 계 약	14	7.1	7.1	28.6	21.4	35.7	42.9	57.1
	특별한 계약 없음	9	.0	.0	33.3	44.4	22.2	33.3	66.7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2.6	5.1	30.8	33.3	28.2	38.5	61.5
	소 속 사 없 음	19	15.8	10.5	26.3	26.3	21.1	52.6	47.4

- 제작 스태프와 방송사 간 계약 시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지도는 25.9%(대략 안다 5.2% + 들어는 보았다 20.7%, n=58)로 나타났으며, 세부 특성별로는 남성(31.1%), 30대(33.3%),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5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31.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31.6%)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3-3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지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총	비 인지총
전 체		58	.0	5.2	20.7	43.1	31.0	25.9	74.1
성 별	남 성	45	.0	6.7	24.4	37.8	31.1	31.1	68.9
	여 성	13	.0	.0	7.7	61.5	30.8	7.7	92.3
연 령 별	2 0 대	24	.0	4.2	16.7	50.0	29.2	20.8	79.2
	3 0 대	18	.0	5.6	27.8	44.4	22.2	33.3	66.7
	4 0 대	10	.0	10.0	20.0	40.0	30.0	30.0	70.0
	5 0 대 이 상	6	.0	.0	16.7	16.7	66.7	16.7	83.3
제 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0	12.5	37.5	37.5	12.5	50.0	50.0
	3 ~ 5 년 미 만	10	.0	.0	10.0	70.0	20.0	10.0	90.0
	5 ~ 1 0 년 미 만	18	.0	.0	22.2	50.0	27.8	22.2	77.8
	1 0 년 이 상	22	.0	9.1	18.2	27.3	45.5	27.3	72.7
계 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0	5.3	5.3	52.6	36.8	10.5	89.5
	방송사 팀별 계약	5	.0	.0	40.0	20.0	40.0	40.0	6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0	4.5	36.4	31.8	27.3	40.9	59.1
	제작사 팀별 계약	12	.0	8.3	8.3	58.3	25.0	16.7	83.3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35	.0	5.7	25.7	37.1	31.4	31.4	68.6
	구 두 계 약	14	.0	7.1	21.4	35.7	35.7	28.6	71.4
	특별한 계약 없음	9	.0	.0	.0	77.8	22.2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0	.0	23.1	43.6	33.3	23.1	76.9
	소 속 사 없 음	19	.0	15.8	15.8	42.1	26.3	31.6	68.4



- 제작 스태프와 방송사 간 계약 시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도는 25.9%(잘 안다 3.4% + 대략 안다 1.7% + 들어는 보았다 20.7%, n=58)로 나타났으며, 세부 특성별로는 남성(31.1%), 30대(33.3%),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5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31.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31.6%)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3-4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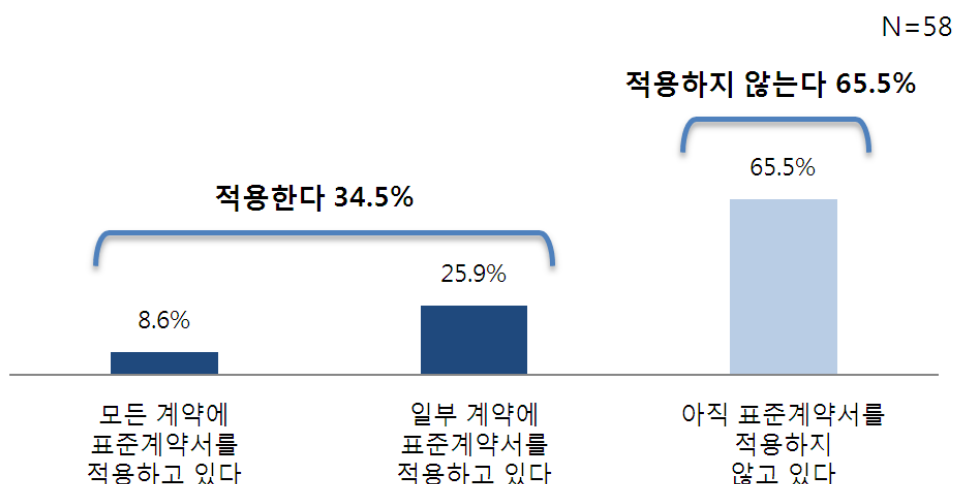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총	비 인지총
전 체		58	3.4	1.7	20.7	37.9	36.2	25.9	74.1
성 별	남 성	45	4.4	2.2	24.4	31.1	37.8	31.1	68.9
	여 성	13	.0	.0	7.7	61.5	30.8	7.7	92.3
연 령 별	2 0 대	24	4.2	.0	16.7	45.8	33.3	20.8	79.2
	3 0 대	18	5.6	.0	27.8	33.3	33.3	33.3	66.7
	4 0 대	10	.0	10.0	20.0	40.0	30.0	30.0	70.0
	5 0 대 이 상	6	.0	.0	16.7	16.7	66.7	16.7	83.3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12.5	.0	37.5	37.5	12.5	50.0	50.0
	3 ~ 5 년 미 만	10	.0	.0	10.0	60.0	30.0	10.0	90.0
	5 ~ 1 0 년 미 만	18	.0	.0	22.2	38.9	38.9	22.2	77.8
	1 0 년 이 상	22	4.5	4.5	18.2	27.3	45.5	27.3	72.7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5.3	.0	5.3	52.6	36.8	10.5	89.5
	방송사 팀별 계약	5	.0	.0	40.0	20.0	40.0	40.0	6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4.5	.0	36.4	18.2	40.9	40.9	59.1
	제작사 팀별 계약	12	.0	8.3	8.3	58.3	25.0	16.7	83.3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35	2.9	2.9	25.7	34.3	34.3	31.4	68.6
	구 두 계 약	14	7.1	.0	21.4	28.6	42.9	28.6	71.4
	특별한 계약 없음	9	.0	.0	.0	66.7	33.3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0	.0	23.1	38.5	38.5	23.1	76.9
	소 속 사 없 음	19	10.5	5.3	15.8	36.8	31.6	31.6	68.4

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제작 스태프가 방송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4.5%(모든 계약 적용 8.6% + 일부 계약 적용 25.9%)로 나타남(n=58).
- 제작 스태프가 방송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8.6%로 나타났으며, 여성(15.4%), 20대(12.5%),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2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14.3%),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1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으며, 여성(30.8%), 40대(40.0%),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37.5%),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37.1%),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31.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5.5%(n=58)로 나타났으며, 남성(68.9%), 20대(62.5%),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72.2%), 계약형태에서는 구두계약(92.9%),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69.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림 3-3-2 〉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표 3-3-5 〉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58	8.6	25.9	65.5
성 별	남	성	45	6.7	24.4	68.9
	여	성	13	15.4	30.8	53.8
연 령 별	2	0 대	24	12.5	25.0	62.5
	3	0 대	18	11.1	27.8	61.1
	4	0 대	10	.0	40.0	60.0
	5	0 대 이 상	6	.0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0	37.5	62.5
	3 ~ 5	년 미 만	10	20.0	30.0	50.0
	5 ~ 10	년 미 만	18	11.1	16.7	72.2
	10	년 이 상	22	4.5	27.3	68.2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21.1	21.1	57.9
	방송사 팀별 계약		5	.0	40.0	6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0	22.7	77.3
	제작사 팀별 계약		12	8.3	33.3	58.3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35	14.3	37.1	48.6
	구 두 계 약		14	.0	7.1	92.9
	특별한 계약 없음		9	.0	11.1	88.9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7.7	23.1	69.2
	소 속 사 없 음		19	10.5	31.6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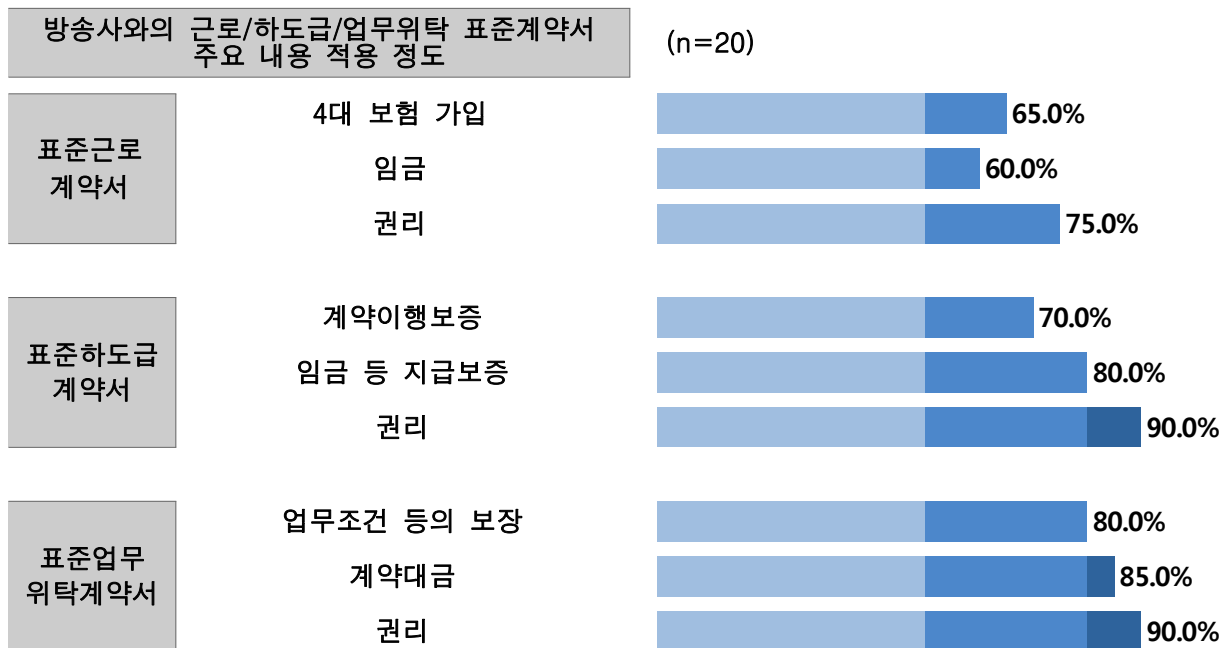
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방송사와의 계약 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제작 스태프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20).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66.6%,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0.0%,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5.0%인 것으로 나타남.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가 75.0%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65.0%), 임금(60.0%) 순을 보였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가 90.0%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금 등 지급보증(80.0%), 계약이행보증(70.0%) 순을 보였음.
-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가 90.0%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대금(85.0%), 업무조건 등의 보장(80.0%) 순을 보였음.

〈그림 3-3-3〉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3-3-6〉 방송사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20	30.0	.0	35.0	30.0	5.0	65.0	35.0
	임금	20	5.0	5.0	50.0	30.0	10.0	60.0	40.0
	권리	20	15.0	5.0	55.0	25.0	10.0	75.0	25.0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20	.0	35.0	35.0	20.0	10.0	70.0	30.0
	임금 등 지급보증	20	.0	25.0	55.0	20.0	.0	80.0	20.0
	권리	20	10.0	25.0	55.0	10.0	.0	90.0	10.0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20	.0	25.0	55.0	10.0	10.0	80.0	20.0
	계약대금	20	5.0	35.0	45.0	15.0	.0	85.0	15.0
	권리	20	20.0	25.0	45.0	10.0	.0	90.0	10.0



〈표 3-3-7〉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30.0	.0	35.0	30.0	5.0	65.0	35.0
성 별	남	성	14	42.9	.0	21.4	35.7	.0	64.3	35.7
	여	성	6	.0	.0	66.7	16.7	16.7	66.7	33.3
연 령 별	2 0 대		9	55.6	.0	33.3	11.1	.0	88.9	11.1
	3 0 대		7	.0	.0	57.1	28.6	14.3	57.1	42.9
	4 0 대		4	25.0	.0	.0	75.0	.0	25.0	75.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66.7	.0	33.3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40.0	.0	40.0	20.0	.0	80.0	20.0
	5 ~ 1 0 년 미 만		5	20.0	.0	60.0	20.0	.0	80.0	20.0
	1 0 년 이 상		7	14.3	.0	14.3	57.1	14.3	28.6	71.4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25.0	.0	25.0	37.5	12.5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80.0	.0	20.0	.0	.0	100.0	.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0	40.0	60.0	.0	40.0	6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33.3	.0	27.8	33.3	5.6	61.1	38.9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100.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50.0	.0	33.3	16.7	.0	83.3	16.7
	소 속 사 없 음		8	.0	.0	37.5	50.0	12.5	37.5	62.5

〈표 3-3-8〉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5.0	5.0	50.0	30.0	10.0	60.0	40.0
성 별	남	성	14	.0	7.1	64.3	14.3	14.3	71.4	28.6
	여	성	6	16.7	.0	16.7	66.7	.0	33.3	66.7
연 령 별	2 0 대		9	.0	.0	55.6	44.4	.0	55.6	44.4
	3 0 대		7	14.3	14.3	42.9	28.6	.0	71.4	28.6
	4 0 대		4	.0	.0	50.0	.0	50.0	50.0	5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0	100.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0	20.0	80.0	.0	20.0	80.0
	5 ~ 1 0 년 미 만		5	.0	.0	60.0	20.0	20.0	60.0	40.0
	1 0 년 이 상		7	14.3	14.3	42.9	14.3	14.3	71.4	28.6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12.5	12.5	25.0	50.0	.0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0	.0	60.0	40.0	.0	60.0	40.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0	60.0	.0	40.0	60.0	4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5.6	5.6	50.0	27.8	11.1	61.1	38.9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0	100.0	.0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0	.0	75.0	8.3	16.7	75.0	25.0
	소 속 사 없 음		8	12.5	12.5	12.5	62.5	.0	37.5	62.5

〈표 3-3-9〉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15.0	5.0	55.0	25.0	.0	75.0	25.0
성 별	남	성	14	14.3	7.1	64.3	14.3	.0	85.7	14.3
	여	성	6	16.7	.0	33.3	50.0	.0	50.0	50.0
연 령 별	2	0 대	9	11.1	.0	66.7	22.2	.0	77.8	22.2
	3	0 대	7	28.6	14.3	42.9	14.3	.0	85.7	14.3
	4	0 대	4	.0	.0	50.0	50.0	.0	50.0	5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0	100.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20.0	.0	40.0	40.0	.0	60.0	40.0
	5 ~ 1 0 년 미 만		5	.0	20.0	40.0	40.0	.0	60.0	40.0
	1 0 년 이 상		7	28.6	.0	57.1	14.3	.0	85.7	14.3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25.0	.0	50.0	25.0	.0	75.0	25.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20.0	.0	60.0	20.0	.0	80.0	20.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20.0	40.0	40.0	.0	60.0	4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16.7	5.6	55.6	22.2	.0	77.8	22.2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0	100.0	.0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8.3	8.3	66.7	16.7	.0	83.3	16.7
	소 속 사 없 음		8	25.0	.0	37.5	37.5	.0	62.5	37.5

〈표 3-3-10〉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0	35.0	35.0	20.0	10.0	70.0	30.0
성 별	남	성	14	.0	28.6	35.7	21.4	14.3	64.3	35.7
	여	성	6	.0	50.0	33.3	16.7	.0	83.3	16.7
연 령 별	2	0 대	9	.0	33.3	44.4	11.1	11.1	77.8	22.2
	3	0 대	7	.0	57.1	28.6	14.3	.0	85.7	14.3
	4	0 대	4	.0	.0	25.0	50.0	25.0	25.0	75.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33.3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20.0	40.0	20.0	20.0	60.0	40.0
	5 ~ 1 0 년 미 만		5	.0	40.0	40.0	20.0	.0	80.0	20.0
	1 0 년 이 상		7	.0	28.6	28.6	28.6	14.3	57.1	42.9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0	50.0	12.5	25.0	12.5	62.5	37.5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0	40.0	40.0	.0	20.0	80.0	20.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20.0	40.0	40.0	.0	60.0	4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0	38.9	27.8	22.2	11.1	66.7	33.3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100.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0	25.0	41.7	16.7	16.7	66.7	33.3
	소 속 사 없 음		8	.0	50.0	25.0	25.0	.0	75.0	25.0



〈 표 3-3-11 〉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0	25.0	55.0	20.0	.0	80.0	20.0
성 별	남	성	14	.0	28.6	50.0	21.4	.0	78.6	21.4
	여	성	6	.0	16.7	66.7	16.7	.0	83.3	16.7
연 령 별	2	0	대	9	.0	22.2	55.6	22.2	.0	77.8
	3	0	대	7	.0	42.9	42.9	14.3	.0	85.7
	4	0	대	4	.0	.0	75.0	25.0	.0	75.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33.3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0	60.0	40.0	.0	60.0	40.0
	5 ~ 1 0 년 미 만		5	.0	20.0	80.0	.0	.0	100.0	.0
	1 0 년 이 상		7	.0	28.6	42.9	28.6	.0	71.4	28.6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0	25.0	37.5	37.5	.0	62.5	37.5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0	40.0	40.0	20.0	.0	80.0	20.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20.0	80.0	.0	.0	100.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18	.0	27.8	50.0	22.2	.0	77.8	22.2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100.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0	25.0	58.3	16.7	.0	83.3	16.7
	소 속 사 없 음		8	.0	25.0	50.0	25.0	.0	75.0	25.0

〈 표 3-3-12 〉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10.0	25.0	55.0	10.0	.0	90.0	10.0
성 별	남	성	14	7.1	21.4	57.1	14.3	.0	85.7	14.3
	여	성	6	16.7	33.3	50.0	.0	.0	100.0	.0
연 령 별	2	0	대	9	.0	33.3	55.6	11.1	.0	88.9
	3	0	대	7	28.6	28.6	42.9	.0	.0	100.0
	4	0	대	4	.0	.0	75.0	25.0	.0	75.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33.3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20.0	60.0	20.0	.0	80.0	20.0
	5 ~ 1 0 년 미 만		5	.0	40.0	60.0	.0	.0	100.0	.0
	1 0 년 이 상		7	28.6	.0	57.1	14.3	.0	85.7	14.3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25.0	25.0	37.5	12.5	.0	87.5	12.5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0	40.0	40.0	20.0	.0	80.0	20.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20.0	80.0	.0	.0	100.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18	11.1	27.8	50.0	11.1	.0	88.9	11.1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100.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0	25.0	58.3	16.7	.0	83.3	16.7
	소 속 사 없 음		8	25.0	25.0	50.0	.0	.0	100.0	.0

〈표 3-3-13〉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0	25.0	55.0	10.0	10.0	80.0	20.0
성 별	남	성	14	.0	28.6	50.0	7.1	14.3	78.6	21.4
	여	성	6	.0	16.7	66.7	16.7	.0	83.3	16.7
연 령 별	2 0	대	9	.0	22.2	55.6	11.1	11.1	77.8	22.2
	3 0	대	7	.0	42.9	57.1	.0	.0	100.0	.0
	4 0	대	4	.0	.0	50.0	25.0	25.0	50.0	5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33.3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0	60.0	20.0	20.0	60.0	40.0
	5 ~ 1 0 년 미 만		5	.0	20.0	80.0	.0	.0	100.0	.0
	1 0 년 이 상		7	.0	28.6	42.9	14.3	14.3	71.4	28.6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0	25.0	62.5	.0	12.5	87.5	12.5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0	40.0	20.0	20.0	20.0	60.0	40.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20.0	60.0	20.0	.0	80.0	2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0	27.8	55.6	5.6	11.1	83.3	16.7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0	100.0	.0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0	25.0	58.3	.0	16.7	83.3	16.7
	소 속 사 없 음		8	.0	25.0	50.0	25.0	.0	75.0	25.0

〈표 3-3-14〉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5.0	35.0	45.0	15.0	.0	85.0	15.0
성 별	남	성	14	7.1	35.7	42.9	14.3	.0	85.7	14.3
	여	성	6	.0	33.3	50.0	16.7	.0	83.3	16.7
연 령 별	2 0	대	9	.0	33.3	55.6	11.1	.0	88.9	11.1
	3 0	대	7	14.3	28.6	42.9	14.3	.0	85.7	14.3
	4 0	대	4	.0	50.0	25.0	25.0	.0	75.0	25.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33.3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20.0	60.0	20.0	.0	80.0	20.0
	5 ~ 1 0 년 미 만		5	.0	60.0	40.0	.0	.0	100.0	.0
	1 0 년 이 상		7	14.3	14.3	42.9	28.6	.0	71.4	28.6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12.5	25.0	37.5	25.0	.0	75.0	25.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0	40.0	40.0	20.0	.0	80.0	20.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60.0	40.0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5.6	38.9	38.9	16.7	.0	83.3	16.7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100.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0	41.7	41.7	16.7	.0	83.3	16.7
	소 속 사 없 음		8	12.5	25.0	50.0	12.5	.0	87.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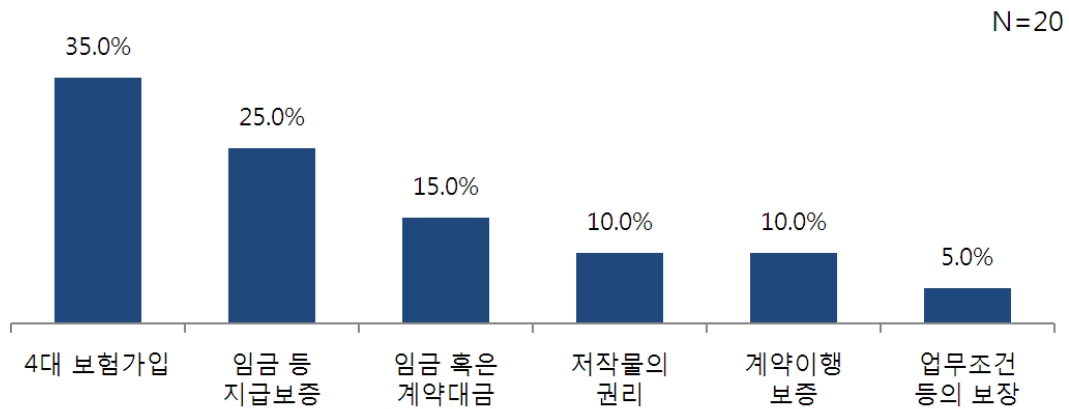
〈표 3-3-15〉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0	20.0	25.0	45.0	10.0	.0	90.0	10.0
성 별	남 성	14	21.4	21.4	42.9	14.3	.0	85.7	14.3
	여 성	6	16.7	33.3	50.0	.0	.0	100.0	.0
연 령 별	2 0 대	9	.0	33.3	55.6	11.1	.0	88.9	11.1
	3 0 대	7	28.6	28.6	42.9	.0	.0	100.0	.0
	4 0 대	4	50.0	.0	25.0	25.0	.0	75.0	25.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33.3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20.0	60.0	20.0	.0	80.0	20.0
	5 ~ 1 0 년 미 만	5	20.0	40.0	40.0	.0	.0	100.0	.0
	1 0 년 이 상	7	42.9	.0	42.9	14.3	.0	85.7	14.3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25.0	25.0	37.5	12.5	.0	87.5	12.5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0	40.0	40.0	20.0	.0	80.0	20.0
	제작사 팀별 계약	5	40.0	20.0	40.0	.0	.0	100.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18	22.2	27.8	38.9	11.1	.0	88.9	11.1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0	100.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2	16.7	25.0	41.7	16.7	.0	83.3	16.7
	소 속 사 없 음	8	25.0	25.0	50.0	.0	.0	100.0	.0

3)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 등 지급보증(25.0%), 임금 혹은 계약대금(15.0%), 저작물 권리, 계약이행보증(각 10.0%), 업무조건 등의 보장(5.0%) 순을 보였음(n=20).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프리랜서라서 잘 적용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4대 보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라는 응답이 각 2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추가수당을 받기 힘들다(1명) 등이 있었음.

〈 그림 3-3-4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표 3-3-16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구 분 (단위:%)			표본수 (n)	4대 보험 가입	임금 혹은 계약 대금	저작물 권리	계약 이행 보증	임금 등 지급 보증	업무 조건 등의 보장
전 체			20	35.0	15.0	10.0	10.0	25.0	5.0
성 별	남	성	14	21.4	14.3	7.1	14.3	35.7	7.1
	여	성	6	66.7	16.7	16.7	.0	.0	.0
연 령 별	2 0 대		9	22.2	33.3	22.2	11.1	.0	11.1
	3 0 대		7	57.1	.0	.0	.0	42.9	.0
	4 0 대		4	25.0	.0	.0	25.0	5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33.3	.0	.0	.0
	3 ~ 5 년 미 만		5	40.0	20.0	.0	20.0	.0	20.0
	5 ~ 1 0 년 미 만		5	20.0	.0	20.0	.0	60.0	.0
	1 0 년 이 상		7	57.1	.0	.0	14.3	28.6	.0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75.0	.0	12.5	12.5	.0	.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5	.0	60.0	.0	20.0	.0	20.0
	제작사 팀별 계약		5	20.0	.0	20.0	.0	60.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18	38.9	11.1	5.6	11.1	27.8	5.6
	구 두 계 약		1	.0	.0	100.0	.0	.0	.0
	특별한 계약 없음		1	.0	100.0	.0	.0	.0	.0
소 속 사 유	소 속 사 있 음		12	.0	16.7	16.7	16.7	41.7	8.3
	소 속 사 없 음		8	87.5	12.5	.0	.0	.0	.0



4)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스태프(n=38)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26.3%),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13.2%),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각 7.9%)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7.9%).

〈 표 3-3-17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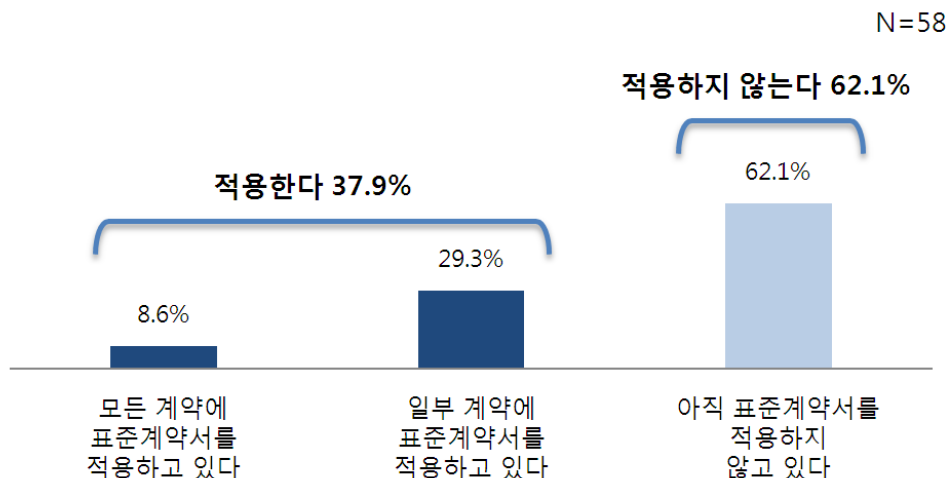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방송사가 표준 계약서 내용을 잘몰라서	방송사가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구두 계약이 관행 이어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게 관행 이어서	기타
전 체			38	26.3	7.9	36.8	13.2	7.9	7.9
성 별	남	성	31	25.8	6.5	38.7	12.9	9.7	6.5
	여	성	7	28.6	14.3	28.6	14.3	.0	14.3
연 령 별	2	0 대	15	26.7	20.0	26.7	13.3	.0	13.3
	3	0 대	11	27.3	.0	45.5	27.3	.0	.0
	4	0 대	6	.0	.0	66.7	.0	16.7	16.7
	5	0 대 이 상	6	50.0	.0	16.7	.0	33.3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20.0	.0	20.0	40.0	.0	20.0
	3 ~ 5	년 미 만	5	20.0	20.0	60.0	.0	.0	.0
	5 ~ 10	년 미 만	13	30.8	15.4	38.5	7.7	.0	7.7
	10	년 이 상	15	26.7	.0	33.3	13.3	20.0	6.7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1	45.5	.0	36.4	.0	.0	18.2
	방송사 팀별 계약		3	.0	.0	.0	33.3	33.3	33.3
	제작사 개별 계약		17	29.4	.0	41.2	23.5	5.9	.0
	제작사 팀별 계약		7	.0	42.9	42.9	.0	14.3	.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17	29.4	11.8	41.2	.0	5.9	11.8
	구 두 계 약		13	30.8	7.7	15.4	23.1	15.4	7.7
	특별한 계약 없음		8	12.5	.0	62.5	25.0	.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7	25.9	11.1	29.6	18.5	7.4	7.4
	소 속 사 없 음		11	27.3	.0	54.5	.0	9.1	9.1

3.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제작 스태프가 외주제작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37.9%(모든 계약 적용 8.6% + 일부 계약 적용 29.3%)로 나타남(n=58).
- 제작 스태프가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8.6%로 나타났으며, 남성(8.9%), 20대(12.5%),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25.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11.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10.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로 나타났으며, 남성(31.1%), 40대(50.0%),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40.0%), 계약형태에서는 특별한 계약 없음(44.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30.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으며(n=58), 여성(69.2%), 20대(66.7%),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75.0%), 계약형태에서는 구두계약(85.7%),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6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5〉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표 3-3-18 〉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58	8.6	29.3	62.1
성 별	남	성	45	8.9	31.1	60.0
	여	성	13	7.7	23.1	69.2
연 령 별	2 0 대	대	24	12.5	20.8	66.7
	3 0 대	대	18	11.1	38.9	50.0
	4 0 대	대	10	.0	50.0	50.0
	5 0 대 이 상	상	6	.0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25.0	.0	75.0
	3 ~ 5 년 미 만		10	10.0	40.0	50.0
	5 ~ 1 0 년 미 만		18	5.6	33.3	61.1
	1 0 년 이 상		22	4.5	31.8	63.6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10.5	31.6	57.9
	방송사 팀별 계약		5	.0	40.0	6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9.1	18.2	72.7
	제작사 팀별 계약		12	8.3	41.7	50.0
계 약 태 형	서 면 계 약		35	11.4	34.3	54.3
	구 두 계 약		14	7.1	7.1	85.7
	특별한 계약 없음		9	.0	44.4	55.6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10.3	30.8	59.0
	소 속 사 없 음		19	5.3	26.3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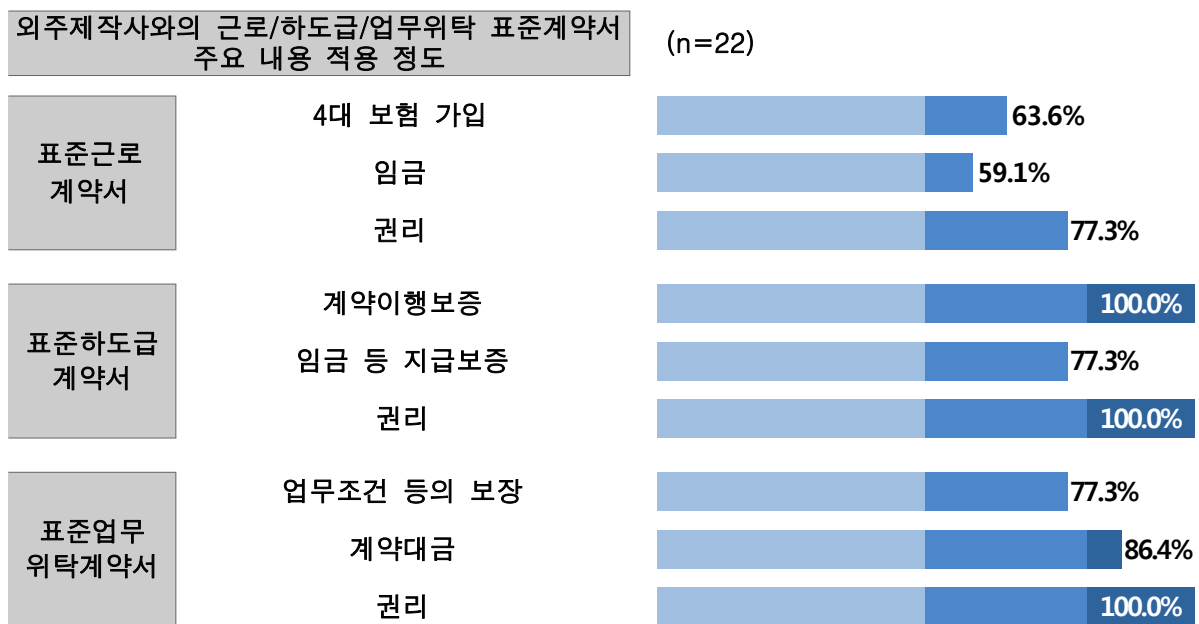
2)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제작 스태프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n=22).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66.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92.4%,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87.9%인 것으로 나타남.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가 77.3%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63.6%), 임금(59.1%) 순을 보였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보증과 권리가 각 100.0%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금 등 지급보증(77.3%) 순을 보였음.
-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가 100.0%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대금(86.4%), 업무조건 등의 보장(77.3%) 순을 보였음.

〈그림 3-3-6〉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3-3-19〉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22	13.6	.0	50.0	13.6	22.7	63.6	36.4
	임금	22	13.6	13.6	31.8	.0	40.9	59.1	40.9
	권리	22	13.6	13.6	50.0	.0	22.7	77.3	22.7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22	27.3	.0	72.7	.0	.0	100.0	.0
	임금 등 지급보증	22	27.3	.0	50.0	22.7	.0	77.3	22.7
	권리	22	13.6	36.4	50.0	.0	.0	100.0	.0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22	13.6	13.6	50.0	22.7	.0	77.3	22.7
	계약대금	22	50.0	.0	36.4	.0	13.6	86.4	13.6
	권리	22	50.0	.0	50.0	.0	.0	100.0	.0



〈 표 3-3-20 〉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13.6	.0	50.0	13.6	22.7	63.6	36.4
성 별	남	성	18	11.1	.0	55.6	16.7	16.7	66.7	33.3
	여	성	4	25.0	.0	25.0	.0	50.0	50.0	50.0
연 령 별	2	0 대	8	37.5	.0	50.0	.0	12.5	87.5	12.5
	3	0 대	9	.0	.0	55.6	33.3	11.1	55.6	44.4
	4	0 대	5	.0	.0	40.0	.0	60.0	40.0	6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100.0	.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20.0	.0	60.0	.0	20.0	80.0	20.0
	5 ~ 1 0 년 미 만		7	.0	.0	57.1	28.6	14.3	57.1	42.9
	1 0 년 이 상		8	.0	.0	50.0	12.5	37.5	50.0	50.0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12.5	.0	50.0	12.5	25.0	62.5	37.5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6	33.3	.0	33.3	16.7	16.7	66.7	33.3
	제작사 팀별 계약		6	.0	.0	50.0	16.7	33.3	50.0	5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6	18.8	.0	50.0	6.3	25.0	68.8	31.3
	구 두 계 약		2	.0	.0	50.0	50.0	.0	50.0	50.0
	특별한 계약 없음		4	.0	.0	50.0	25.0	25.0	50.0	5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12.5	.0	62.5	12.5	12.5	75.0	25.0
	소 속 사 없 음		6	16.7	.0	16.7	16.7	50.0	33.3	66.7

〈 표 3-3-21 〉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13.6	13.6	31.8	.0	40.9	59.1	40.9
성 별	남	성	18	16.7	11.1	38.9	.0	33.3	66.7	33.3
	여	성	4	.0	25.0	.0	.0	75.0	25.0	75.0
연 령 별	2	0 대	8	.0	37.5	25.0	.0	37.5	62.5	37.5
	3	0 대	9	33.3	.0	33.3	.0	33.3	66.7	33.3
	4	0 대	5	.0	.0	40.0	.0	60.0	40.0	6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100.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20.0	40.0	.0	40.0	60.0	40.0
	5 ~ 1 0 년 미 만		7	28.6	.0	28.6	.0	42.9	57.1	42.9
	1 0 년 이 상		8	12.5	.0	37.5	.0	50.0	50.0	50.0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12.5	12.5	25.0	.0	50.0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0	.0	100.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6	16.7	33.3	33.3	.0	16.7	83.3	16.7
	제작사 팀별 계약		6	16.7	.0	50.0	.0	33.3	66.7	33.3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6	6.3	18.8	31.3	.0	43.8	56.3	43.8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25.0	.0	25.0	.0	50.0	50.0	5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12.5	12.5	37.5	.0	37.5	62.5	37.5
	소 속 사 없 음		6	16.7	16.7	16.7	.0	50.0	50.0	50.0

〈표 3-3-22〉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13.6	13.6	50.0	.0	22.7	77.3	22.7
성 별	남	성	18	16.7	11.1	55.6	.0	16.7	83.3	16.7
	여	성	4	.0	25.0	25.0	.0	50.0	50.0	50.0
연 령 별	2	0 대	8	.0	37.5	50.0	.0	12.5	87.5	12.5
	3	0 대	9	33.3	.0	55.6	.0	11.1	88.9	11.1
	4	0 대	5	.0	.0	40.0	.0	60.0	40.0	6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100.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20.0	60.0	.0	20.0	80.0	20.0
	5 ~ 1 0 년 미 만		7	28.6	.0	57.1	.0	14.3	85.7	14.3
	1 0 년 이 상		8	12.5	.0	50.0	.0	37.5	62.5	37.5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12.5	12.5	50.0	.0	25.0	75.0	25.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6	16.7	33.3	33.3	.0	16.7	83.3	16.7
	제작사 팀별 계약		6	16.7	.0	50.0	.0	33.3	66.7	33.3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6	6.3	18.8	50.0	.0	25.0	75.0	25.0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25.0	.0	50.0	.0	25.0	75.0	2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12.5	12.5	62.5	.0	12.5	87.5	12.5
	소 속 사 없 음		6	16.7	16.7	16.7	.0	50.0	50.0	50.0

〈표 3-3-23〉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27.3	.0	72.7	.0	.0	100.0	.0
성 별	남	성	18	27.8	.0	72.2	.0	.0	100.0	.0
	여	성	4	25.0	.0	75.0	.0	.0	100.0	.0
연 령 별	2	0 대	8	37.5	.0	62.5	.0	.0	100.0	.0
	3	0 대	9	33.3	.0	66.7	.0	.0	100.0	.0
	4	0 대	5	.0	.0	100.0	.0	.0	10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100.0	.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20.0	.0	80.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7	28.6	.0	71.4	.0	.0	100.0	.0
	1 0 년 이 상		8	12.5	.0	87.5	.0	.0	100.0	.0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25.0	.0	75.0	.0	.0	100.0	.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6	50.0	.0	50.0	.0	.0	100.0	.0
	제작사 팀별 계약		6	16.7	.0	83.3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6	25.0	.0	75.0	.0	.0	100.0	.0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25.0	.0	75.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25.0	.0	75.0	.0	.0	100.0	.0
	소 속 사 없 음		6	33.3	.0	66.7	.0	.0	100.0	.0



〈 표 3-3-24 〉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27.3	.0	50.0	22.7	.0	77.3	22.7
성 별	남	성	18	27.8	.0	55.6	16.7	.0	83.3	16.7
	여	성	4	25.0	.0	25.0	50.0	.0	50.0	50.0
연 령 별	2	0 대	8	37.5	.0	50.0	12.5	.0	87.5	12.5
	3	0 대	9	33.3	.0	55.6	11.1	.0	88.9	11.1
	4	0 대	5	.0	.0	40.0	60.0	.0	40.0	6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100.0	.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20.0	.0	60.0	20.0	.0	80.0	20.0
	5 ~ 1 0 년 미 만		7	28.6	.0	57.1	14.3	.0	85.7	14.3
	1 0 년 이 상		8	12.5	.0	50.0	37.5	.0	62.5	37.5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25.0	.0	50.0	25.0	.0	75.0	25.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6	50.0	.0	33.3	16.7	.0	83.3	16.7
	제작사 팀별 계약		6	16.7	.0	50.0	33.3	.0	66.7	33.3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6	25.0	.0	50.0	25.0	.0	75.0	25.0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25.0	.0	50.0	25.0	.0	75.0	2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25.0	.0	62.5	12.5	.0	87.5	12.5
	소 속 사 없 음		6	33.3	.0	16.7	50.0	.0	50.0	50.0

〈 표 3-3-25 〉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13.6	36.4	50.0	.0	.0	100.0	.0
성 별	남	성	18	16.7	27.8	55.6	.0	.0	100.0	.0
	여	성	4	.0	75.0	25.0	.0	.0	100.0	.0
연 령 별	2	0 대	8	.0	50.0	50.0	.0	.0	100.0	.0
	3	0 대	9	33.3	11.1	55.6	.0	.0	100.0	.0
	4	0 대	5	.0	60.0	40.0	.0	.0	10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100.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40.0	60.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7	28.6	14.3	57.1	.0	.0	100.0	.0
	1 0 년 이 상		8	12.5	37.5	50.0	.0	.0	100.0	.0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12.5	37.5	50.0	.0	.0	100.0	.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6	16.7	50.0	33.3	.0	.0	100.0	.0
	제작사 팀별 계약		6	16.7	33.3	50.0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6	6.3	43.8	50.0	.0	.0	100.0	.0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25.0	25.0	50.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12.5	25.0	62.5	.0	.0	100.0	.0
	소 속 사 없 음		6	16.7	66.7	16.7	.0	.0	100.0	.0

〈 표 3-3-26 〉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13.6	13.6	50.0	22.7	.0	77.3	22.7
성 별	남	성	18	16.7	11.1	55.6	16.7	.0	83.3	16.7
	여	성	4	.0	25.0	25.0	50.0	.0	50.0	50.0
연 령 별	2	0 대	8	.0	37.5	50.0	12.5	.0	87.5	12.5
	3	0 대	9	33.3	.0	55.6	11.1	.0	88.9	11.1
	4	0 대	5	.0	.0	40.0	60.0	.0	40.0	6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100.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0	20.0	60.0	20.0	.0	80.0	20.0
	5 ~ 1 0 년 미 만		7	28.6	.0	57.1	14.3	.0	85.7	14.3
	1 0 년 이 상		8	12.5	.0	50.0	37.5	.0	62.5	37.5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12.5	12.5	50.0	25.0	.0	75.0	25.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6	16.7	33.3	33.3	16.7	.0	83.3	16.7
	제작사 팀별 계약		6	16.7	.0	50.0	33.3	.0	66.7	33.3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6	6.3	18.8	50.0	25.0	.0	75.0	25.0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25.0	.0	50.0	25.0	.0	75.0	2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12.5	12.5	62.5	12.5	.0	87.5	12.5
	소 속 사 없 음		6	16.7	16.7	16.7	50.0	.0	50.0	50.0

〈 표 3-3-27 〉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50.0	.0	36.4	.0	13.6	86.4	13.6
성 별	남	성	18	44.4	.0	38.9	.0	16.7	83.3	16.7
	여	성	4	75.0	.0	25.0	.0	.0	100.0	.0
연 령 별	2	0 대	8	50.0	.0	25.0	.0	25.0	75.0	25.0
	3	0 대	9	44.4	.0	44.4	.0	11.1	88.9	11.1
	4	0 대	5	60.0	.0	40.0	.0	.0	10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100.0	.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40.0	.0	20.0	.0	40.0	60.0	40.0
	5 ~ 1 0 년 미 만		7	42.9	.0	42.9	.0	14.3	85.7	14.3
	1 0 년 이 상		8	50.0	.0	50.0	.0	.0	100.0	.0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50.0	.0	37.5	.0	12.5	87.5	12.5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6	66.7	.0	16.7	.0	16.7	83.3	16.7
	제작사 팀별 계약		6	50.0	.0	33.3	.0	16.7	83.3	16.7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6	50.0	.0	37.5	.0	12.5	87.5	12.5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50.0	.0	25.0	.0	25.0	75.0	2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37.5	.0	43.8	.0	18.8	81.3	18.8
	소 속 사 없 음		6	83.3	.0	16.7	.0	.0	10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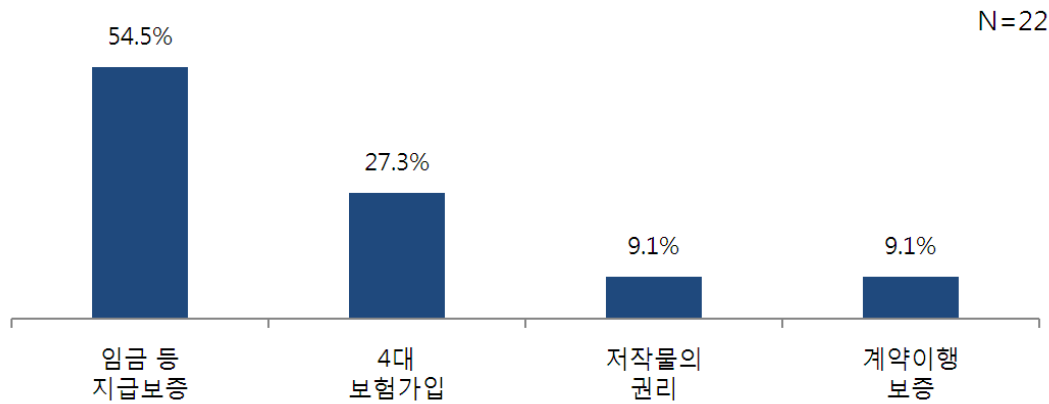
〈 표 3-3-28 〉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2	50.0	.0	50.0	.0	13.6	100.0	.0
성 별	남	성	18	44.4	.0	55.6	.0	16.7	100.0	.0
	여	성	4	75.0	.0	25.0	.0	.0	100.0	.0
연 령 별	2 0 대		8	50.0	.0	50.0	.0	25.0	100.0	.0
	3 0 대		9	44.4	.0	55.6	.0	11.1	100.0	.0
	4 0 대		5	60.0	.0	40.0	.0	.0	10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100.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40.0	.0	60.0	.0	40.0	100.0	.0
	5 ~ 1 0 년 미 만		7	42.9	.0	57.1	.0	14.3	100.0	.0
	1 0 년 이 상		8	50.0	.0	50.0	.0	.0	100.0	.0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50.0	.0	50.0	.0	12.5	100.0	.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10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6	66.7	.0	33.3	.0	16.7	100.0	.0
	제작사 팀별 계약		6	50.0	.0	50.0	.0	16.7	100.0	.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16	50.0	.0	50.0	.0	12.5	100.0	.0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0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50.0	.0	50.0	.0	25.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37.5	.0	62.5	.0	18.8	100.0	.0
	소 속 사 없 음		6	83.3	.0	16.7	.0	.0	100.0	.0

3)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임금 등 지급보증(5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27.3%), 저작물 권리, 계약이행보증(각 9.1%) 순을 보였음(n=22).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증권 수수료의 문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대인보험 및 장비보험으로 이용, 현실적으로 어려움(각 1명) 등이 있었음.

〈 그림 3-3-7 〉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표 3-3-29 〉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구 분 (단위:%)			표본수 (n)	4대 보험 가입	저작물 권리	계약 이행 보증	임금 등 지급 보증
전 체			22	27.3	9.1	9.1	54.5
성 별	남	성	18	27.8	11.1	11.1	50.0
	여	성	4	25.0	.0	.0	75.0
연 령 별	2	0 대	8	37.5	.0	.0	62.5
	3	0 대	9	33.3	.0	22.2	44.4
	4	0 대	5	.0	40.0	.0	6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100.0	.0	.0	.0
	3 ~ 5 년 미 만		5	20.0	.0	.0	80.0
	5 ~ 1 0 년 미 만		7	28.6	.0	14.3	57.1
	1 0 년 이 상		8	12.5	25.0	12.5	50.0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8	25.0	.0	12.5	62.5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6	50.0	16.7	.0	33.3
	제작사 팀별 계약		6	16.7	16.7	16.7	50.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16	25.0	12.5	6.3	56.3
	구 두 계 약		2	50.0	.0	5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25.0	.0	.0	7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6	25.0	6.3	12.5	56.3
	소 속 사 없 음		6	33.3	16.7	.0	50.0



4)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스태프(n=36)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각 22.2%), 제작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13.9%),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8.3%)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2.8%).

〈표 3-3-30〉 외주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단위:%)			표본수 (n)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제작사가 표준 계약서 내용을 잘몰라서	제작사가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구두 계약이 관행 이어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게 관행 이어서	기타
전 체			36	30.6	13.9	22.2	22.2	8.3	2.8
성 별	남	성	27	33.3	14.8	18.5	25.9	3.7	3.7
	여	성	9	22.2	11.1	33.3	11.1	22.2	.0
연 령 별	2	0 대	16	43.8	12.5	25.0	12.5	6.3	.0
	3	0 대	9	22.2	11.1	.0	55.6	11.1	.0
	4	0 대	5	.0	40.0	60.0	.0	.0	.0
	5	0 대 이 상	6	33.3	.0	16.7	16.7	16.7	16.7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6	50.0	.0	16.7	33.3	.0	.0
	3 ~ 5	년 미 만	5	.0	20.0	60.0	.0	20.0	.0
	5 ~ 10	년 미 만	11	54.5	18.2	9.1	9.1	9.1	.0
	10	년 이 상	14	14.3	14.3	21.4	35.7	7.1	7.1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1	27.3	9.1	36.4	9.1	18.2	.0
	방송사 팀별 계약		3	33.3	33.3	.0	.0	.0	33.3
	제작사 개별 계약		16	25.0	12.5	18.8	43.8	.0	.0
	제작사 팀별 계약		6	50.0	16.7	16.7	.0	16.7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19	31.6	10.5	31.6	10.5	15.8	.0
	구 두 계 약		12	33.3	25.0	.0	33.3	.0	8.3
	특별한 계약 없음		5	20.0	.0	40.0	40.0	.0	.0
소 속 사 무	소 속 사 있 음		23	34.8	13.0	26.1	17.4	4.3	4.3
	소 속 사 없 음		13	23.1	15.4	15.4	30.8	15.4	.0

4.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

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 제작 스태프의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5~9건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건 미만(31.0%), 20건 이상(13.8%), 10~14건(10.3%) 순으로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58).

－ 제작 스태프의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가 5~9건이라는 응답은 남성(46.7%), 20대(58.3%),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62.5%),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48.6%),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4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5건 미만이라는 응답은 여성(46.2%), 40대(40.0%),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40.9%), 계약형태에서는 특별한 계약 없음(44.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3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구 분 (단위:%)			표본수 (n)	5건 미만	5-9건	10-14건	20건 이상
전 체			58	31.0	44.8	10.3	13.8
성 별	남	성	45	26.7	46.7	13.3	13.3
	여	성	13	46.2	38.5	.0	15.4
연 령 별	20대		24	20.8	58.3	8.3	12.5
	30대		18	38.9	38.9	5.6	16.7
	40대		10	40.0	30.0	30.0	.0
	50대 이상		6	33.3	33.3	.0	33.3
제작관련 활동기간	1 ~ 3년 미만		8	37.5	62.5	.0	.0
	3 ~ 5년 미만		10	30.0	50.0	.0	20.0
	5 ~ 10년 미만		18	16.7	38.9	22.2	22.2
	10년 이상		22	40.9	40.9	9.1	9.1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36.8	47.4	5.3	10.5
	방송사 팀별 계약		5	40.0	40.0	.0	2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18.2	54.5	9.1	18.2
	제작사 팀별 계약		12	41.7	25.0	25.0	8.3
계약 형태	서면 계약		35	28.6	48.6	14.3	8.6
	구두 계약		14	28.6	35.7	7.1	28.6
	특별한 계약 없음		9	44.4	44.4	.0	11.1
소속사 유무	소속사 있음		39	30.8	43.6	10.3	15.4
	소속사 없음		19	31.6	47.4	10.5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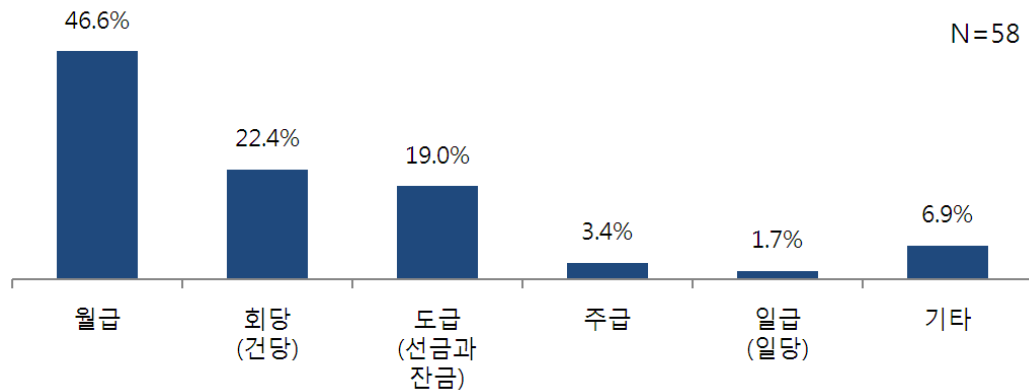


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 제작 스태프가 보수를 지급 받는 형태로는 월급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회당(22.4%), 도급(19.0%), 주급(3.4%), 일급(1.7%) 순을 보였음(n=58).

- 제작 스태프가 보수를 지급 받는 형태로 월급이라는 응답은 남성(46.7%), 30대(55.6%),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5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51.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5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8〉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표 3-3-3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구 분 (단위:%)			표본수 (n)	일급 (일당)	주급	월급	회당 (건당)	도급 (선금과 잔금)	기타
전 체			58	1.7	3.4	46.6	22.4	19.0	6.9
성 별	남	성	45	.0	.0	46.7	22.2	24.4	6.7
	여	성	13	7.7	15.4	46.2	23.1	.0	7.7
연 령 별	20대		24	.0	8.3	50.0	20.8	16.7	4.2
	30대		18	5.6	.0	55.6	22.2	16.7	.0
	40대		10	.0	.0	40.0	30.0	30.0	.0
	50대 이상		6	.0	.0	16.7	16.7	16.7	50.0
제작관련 활동기간	1 ~ 3년 미만		8	.0	12.5	50.0	25.0	.0	12.5
	3 ~ 5년 미만		10	.0	10.0	50.0	20.0	20.0	.0
	5 ~ 10년 미만		18	5.6	.0	38.9	22.2	33.3	.0
	10년 이상		22	.0	.0	50.0	22.7	13.6	13.6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5.3	10.5	52.6	15.8	5.3	10.5
	방송사 팀별 계약		5	.0	.0	40.0	40.0	.0	2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0	.0	45.5	31.8	18.2	4.5
	제작사 팀별 계약		12	.0	.0	41.7	8.3	50.0	.0
계약 형태	서면 계약		35	2.9	5.7	51.4	5.7	25.7	8.6
	구두 계약		14	.0	.0	50.0	35.7	14.3	.0
	특별한 계약 없음		9	.0	.0	22.2	66.7	.0	11.1
소속사 유무	소속사 있음		39	.0	.0	41.0	25.6	23.1	10.3
	소속사 없음		19	5.3	10.5	57.9	15.8	10.5	.0

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에 있어서는 체불된 적이 없었다가 56.9%, 체불된 적이 가끔 있었다가 43.1%로 나타나,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4명 정도(43.1%)는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58).

-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이 가끔 있었다는 응답은 남성(53.3%), 20대(45.8%),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61.1%), 계약형태에서는 구두계약(50.0%),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56.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은 여성(92.3%), 40대(80.0%),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80.0%), 계약형태에서는 특별한 계약 없음(66.7%),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8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33 〉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자주 있었다	가끔 있었다	없었다
전 체			58	.0	43.1	56.9
성 별	남	성	45	.0	53.3	46.7
	여	성	13	.0	7.7	92.3
연 령 별	2	0	대	24	.0	45.8
	3	0	대	18	.0	33.3
	4	0	대	10	.0	20.0
	5	0	대 이 상	6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0	50.0	50.0
	3 ~ 5	년 미 만	10	.0	20.0	80.0
	5 ~ 10	년 미 만	18	.0	61.1	38.9
	10	년 이 상	22	.0	36.4	63.6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0	31.6	68.4
	방송사 팀별 계약		5	.0	40.0	6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0	45.5	54.5
	제작사 팀별 계약		12	.0	58.3	41.7
계 약 형태	서 면 계 약		35	.0	42.9	57.1
	구 두 계 약		14	.0	50.0	50.0
	특별한 계약 없음		9	.0	33.3	66.7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0	56.4	43.6
	소 속 사 없 음		19	.0	15.8	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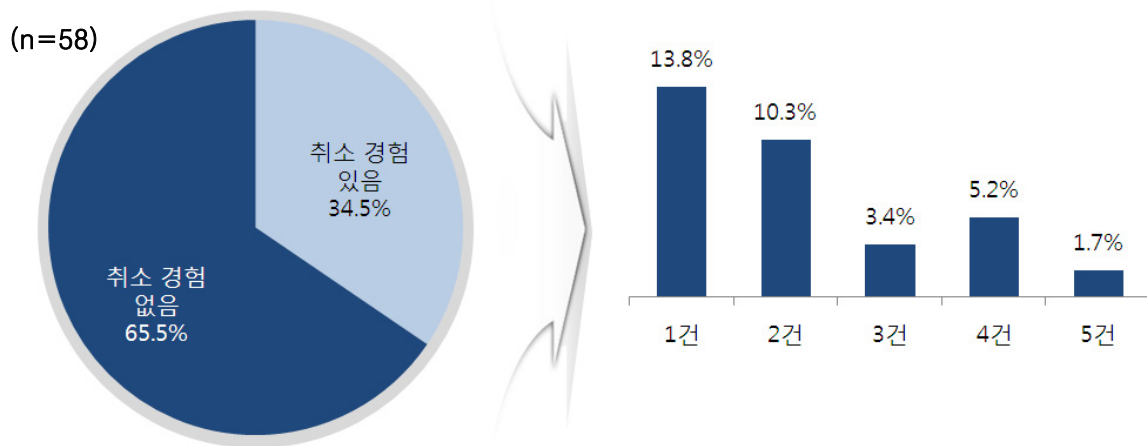


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에 있어서는 취소 경험 없다가 65.5%, 취소 경험 있다가 34.5%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3명 정도(34.5%)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58).

－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의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1건이 1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건(10.3%), 4건(5.2%), 3건(3.4%), 5건(1.7%) 순을 보였음.

〈그림 3-3-9〉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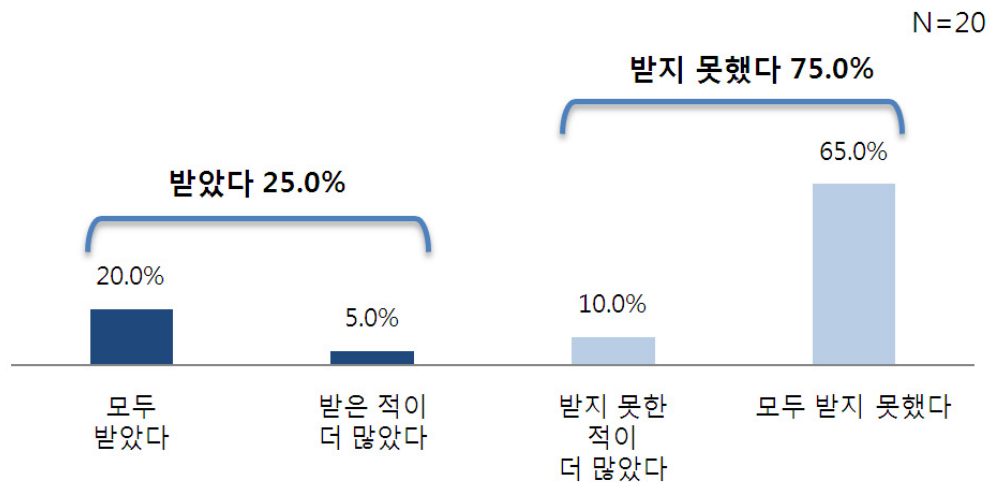
〈표 3-3-3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구 분 (단위:%)			표본수 (n)	1건	2건	3건	4건	5건	취소경험 없음
전 체			58	13.8	10.3	3.4	5.2	1.7	65.5
성 별	남	성	45	17.8	11.1	4.4	6.7	.0	60.0
	여	성	13	.0	7.7	.0	.0	7.7	84.6
연 령 별	2	0 대	24	4.2	12.5	.0	4.2	.0	79.2
	3	0 대	18	11.1	5.6	.0	11.1	5.6	66.7
	4	0 대	10	10.0	20.0	.0	.0	.0	70.0
	5	0 대 이 상	6	66.7	.0	33.3	.0	.0	.0
	1 ~ 3	년 미 만	8	.0	.0	.0	.0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3 ~ 5	년 미 만	10	10.0	10.0	.0	.0	.0	80.0
	5 ~ 10	년 미 만	18	11.1	22.2	.0	5.6	5.6	55.6
	10	년 이 상	22	22.7	4.5	9.1	9.1	.0	54.5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5.3	5.3	10.5	5.3	5.3	68.4
	방송사 팀별 계약		5	20.0	.0	.0	.0	.0	80.0
	제작사 개별 계약		22	13.6	4.5	.0	9.1	.0	72.7
	제작사 팀별 계약		12	25.0	33.3	.0	.0	.0	41.7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35	14.3	17.1	5.7	.0	2.9	60.0
	구 두 계 약		14	21.4	.0	.0	21.4	.0	57.1
	특별한 계약 없음		9	.0	.0	.0	.0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음		39	20.5	12.8	5.1	7.7	.0	53.8
	소 속 사 없음		19	.0	5.3	.0	.0	5.3	89.5

4-1)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이 있다는 제작 스태프(n=20)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두 받았다(20.0%),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았다(10.0%), 받은 적이 더 많았다(5.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10〉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표 3-3-35〉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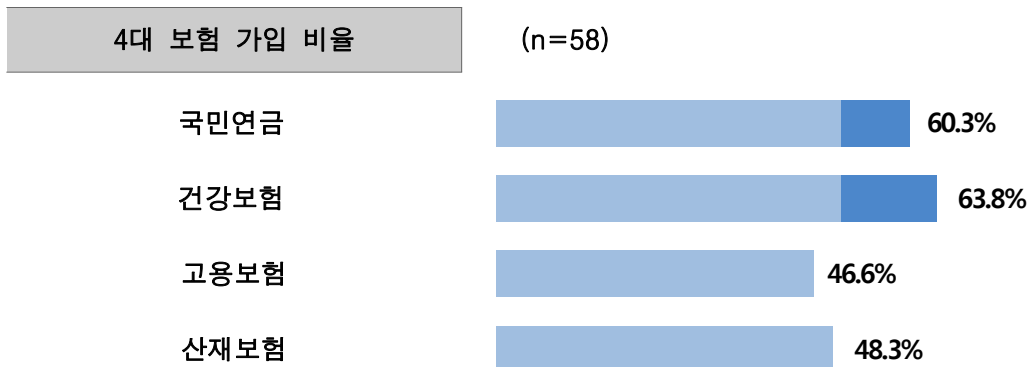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두 받았다	받은 적이 더 많았다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았다	모두 받지 못했다
전 체			20	20.0	5.0	10.0	65.0
성 별	남	성	18	22.2	.0	11.1	66.7
	여	성	2	.0	50.0	.0	50.0
연 령 별	2 0 대	대	5	40.0	.0	.0	60.0
	3 0 대	대	6	.0	16.7	16.7	66.7
	4 0 대	대	3	66.7	.0	.0	33.3
	5 0 대 이 상	대	6	.0	.0	16.7	83.3
제 작 관련 활동기간	3 ~ 5 년 미 만	만	2	.0	.0	.0	100.0
	5 ~ 1 0 년 미 만	만	8	37.5	12.5	12.5	37.5
	1 0 년 이 상	상	10	10.0	.0	10.0	80.0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계약	6	.0	16.7	.0	83.3
	방송사 팀별 계약	계약	1	.0	.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계약	6	.0	.0	16.7	83.3
	제작사 팀별 계약	계약	7	57.1	.0	14.3	28.6
계 약 형태	서 면 계 약	계약	14	28.6	7.1	7.1	57.1
	구 두 계 약	계약	6	.0	.0	16.7	83.3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음	유무	18	22.2	.0	11.1	66.7
	소 속 사 없음	유무	2	.0	50.0	.0	50.0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제작 스태프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6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60.3%), 산재보험(48.3%), 고용보험(46.6%) 순을 보였음(n=58).

〈그림 3-3-11〉 제작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비율



〈표 3-3-36〉 제작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비율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국민연금	58	60.3	32.8	6.9
건강보험	58	63.8	31.0	5.2
고용보험	58	46.6	43.1	10.3
산재보험	58	48.3	43.1	8.6

- 제작 스태프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가입이 60.3%, 미가입이 32.8%로 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6명 정도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n=58).
-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가입이 63.8%, 미가입이 31.0%로 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6명 정도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n=58).
-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가입이 46.6%, 미가입이 43.1%로 엇비슷한 수준이며, 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5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n=58).
-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가입이 48.3%, 미가입이 43.1%로 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5명 정도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n=58).

-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60.3%(n=58)로, 남성(64.4%), 30대(66.7%),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87.5%), 계약형태에서는 구두계약(85.7%),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6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8%로, 여성(38.5%), 20대(33.3%),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4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45.7%),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4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7〉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58	60.3	32.8	6.9
성 별	남	성	45	64.4	31.1	4.4
	여	성	13	46.2	38.5	15.4
연 령 별	2	0 대	24	58.3	33.3	8.3
	3	0 대	18	66.7	27.8	5.6
	4	0 대	10	60.0	30.0	10.0
	5	0 대 이 상	6	50.0	5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87.5	12.5	.0
	3 ~ 5	년 미 만	10	40.0	40.0	20.0
	5 ~ 10	년 미 만	18	55.6	38.9	5.6
	10	년 이 상	22	63.6	31.8	4.5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47.4	42.1	10.5
	방송사 팀별 계약		5	80.0	20.0	.0
	제작사 개별 계약		22	68.2	27.3	4.5
	제작사 팀별 계약		12	58.3	33.3	8.3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35	48.6	45.7	5.7
	구 두 계 약		14	85.7	14.3	.0
	특별한 계약 없음		9	66.7	11.1	22.2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66.7	28.2	5.1
	소 속 사 없 음		19	47.4	42.1	10.5



○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63.8%(n=58)로, 남성(66.7%), 40대(70.0%),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87.5%), 계약형태에서는 구두계약(92.9%),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6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1.0%(n=58)로, 여성(38.5%), 20대(33.3%),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4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45.7%),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4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8〉 건강보험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58	63.8	31.0	5.2
성 별	남	성	45	66.7	28.9	4.4
	여	성	13	53.8	38.5	7.7
연 령 별	2	0 대	24	62.5	33.3	4.2
	3	0 대	18	66.7	27.8	5.6
	4	0 대	10	70.0	20.0	10.0
	5	0 대 이 상	6	50.0	5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87.5	12.5	.0
	3 ~ 5	년 미 만	10	50.0	40.0	10.0
	5 ~ 10	년 미 만	18	55.6	38.9	5.6
	10	년 이 상	22	68.2	27.3	4.5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47.4	42.1	10.5
	방송사 팀별 계약		5	100.0	.0	.0
	제작사 개별 계약		22	72.7	27.3	.0
	제작사 팀별 계약		12	58.3	33.3	8.3
계 약 형태	서 면 계 약		35	48.6	45.7	5.7
	구 두 계 약		14	92.9	7.1	.0
	특별한 계약 없음		9	77.8	11.1	11.1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69.2	25.6	5.1
	소 속 사 없 음		19	52.6	42.1	5.3

-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6.6%(n=58)로, 남성(51.1%), 30대(50.0%),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62.5%), 계약형태에서는 구두계약(64.3%),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5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3.1%(n=58)로, 여성(53.8%), 20대(45.8%),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5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54.3%),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5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39〉 고용보험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58	46.6	43.1	10.3
성 별	남	성	45	51.1	40.0	8.9
	여	성	13	30.8	53.8	15.4
연 령 별	2	0 대	24	45.8	45.8	8.3
	3	0 대	18	50.0	38.9	11.1
	4	0 대	10	40.0	40.0	20.0
	5	0 대 이 상	6	50.0	5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62.5	37.5	.0
	3 ~ 5	년 미 만	10	30.0	50.0	20.0
	5 ~ 10	년 미 만	18	44.4	38.9	16.7
	10	년 이 상	22	50.0	45.5	4.5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36.8	52.6	10.5
	방송사 팀별 계약		5	80.0	20.0	.0
	제작사 개별 계약		22	54.5	36.4	9.1
	제작사 팀별 계약		12	33.3	50.0	16.7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35	37.1	54.3	8.6
	구 두 계 약		14	64.3	35.7	.0
	특별한 계약 없음		9	55.6	11.1	33.3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53.8	35.9	10.3
	소 속 사 없 음		19	31.6	57.9	10.5



-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8.3%(n=58)로, 남성(51.1%), 20대(50.0%), 제작관련 활동 1~3년 미만(62.5%), 계약형태에서는 특별한 계약 없음(66.7%),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5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3.1%(n=58)로, 여성(53.8%), 20대(45.8%),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5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54.3%),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5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40 〉 산재보험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58	48.3	43.1	8.6
성 별	남	성	45	51.1	40.0	8.9
	여	성	13	38.5	53.8	7.7
연 령 별	2	0 대	24	50.0	45.8	4.2
	3	0 대	18	50.0	38.9	11.1
	4	0 대	10	40.0	40.0	20.0
	5	0 대 이 상	6	50.0	5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62.5	37.5	.0
	3 ~ 5	년 미 만	10	40.0	50.0	10.0
	5 ~ 10	년 미 만	18	44.4	38.9	16.7
	10	년 이 상	22	50.0	45.5	4.5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36.8	52.6	10.5
	방송사 팀별 계약		5	80.0	20.0	.0
	제작사 개별 계약		22	59.1	36.4	4.5
	제작사 팀별 계약		12	33.3	50.0	16.7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35	37.1	54.3	8.6
	구 두	계 약	14	64.3	35.7	.0
	특별한 계약 없음		9	66.7	11.1	22.2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53.8	35.9	10.3
	소 속 사	없 음	19	36.8	57.9	5.3

6)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인격 무시 발언 등의 인권 침해 경험을 받았는지에 대해 인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있다가 36.2%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4명(36.2%)은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58).
- 업무와 관련한 인권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인격 무시 발언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욕설(4.8%) 순을 보였음(n=21).

〈 표 3-3-41 〉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구 분 (단위:%)			표본수 (n)	인격 무시 발언	욕설
전 체			21	95.2	4.8
성 별	남	성	16	93.8	6.3
	여	성	5	100.0	.0
연 령 별	2	0 대	9	100.0	.0
	3	0 대	7	85.7	14.3
	4	0 대	3	100.0	.0
	5	0 대 이 상	2	100.0	.0
제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100.0	.0
	3 ~ 5	년 미 만	5	100.0	.0
	5 ~ 10	년 미 만	5	80.0	20.0
	10	년 이 상	8	100.0	.0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7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13	92.3	7.7
	제작사 팀별 계약		1	100.0	.0
계 약 타 형	서 면 계 약		12	91.7	8.3
	구 두 계 약		5	100.0	.0
	특별한 계약 없음		4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3	100.0	.0
	소 속 사 없 음		8	87.5	12.5



7)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낮은 보수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27.6%), 보수(임금) 체불(17.2%), 부당한 계약(6.9%), 인격 무시 및 인권 침해(3.4%) 등의 순을 보였음(n=58).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낮은 보수라는 응답은 37.9%(n=58)로, 여성(46.2%), 40대(60.0%),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70.0%), 계약형태에서는 특별한 계약 없음(44.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4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3-42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장시간 노동	낮은 보수	보수 (임금) 체불	부당한 계약	인격 무시 인권 침해	기타
전 체			58	27.6	37.9	17.2	6.9	3.4	6.9
성 별	남	성	45	33.3	35.6	13.3	8.9	.0	8.9
	여	성	13	7.7	46.2	30.8	.0	15.4	.0
연 령 별	2	0	대	24	16.7	45.8	25.0	4.2	4.2
	3	0	대	18	50.0	22.2	5.6	.0	16.7
	4	0	대	10	10.0	60.0	20.0	10.0	.0
	5	0	대 이 상	6	33.3	16.7	16.7	33.3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8	12.5	50.0	37.5	.0	.0	.0
	3 ~ 5	년 미 만	10	10.0	70.0	10.0	10.0	.0	.0
	5 ~ 10	년 미 만	18	50.0	16.7	22.2	.0	5.6	5.6
	10	년 이 상	22	22.7	36.4	9.1	13.6	4.5	13.6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9	21.1	36.8	15.8	10.5	5.3	10.5
	방송사 팀별	계약	5	40.0	40.0	20.0	.0	.0	.0
	제작사 개별	계약	22	31.8	40.9	9.1	4.5	4.5	9.1
	제작사 팀별	계약	12	25.0	33.3	33.3	8.3	.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35	34.3	34.3	17.1	8.6	.0	5.7
	구 두	계 약	14	21.4	42.9	21.4	.0	.0	14.3
	특별한	계약 없음	9	11.1	44.4	11.1	11.1	22.2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39	28.2	33.3	17.9	10.3	2.6	7.7
	소 속 사	없 음	19	26.3	47.4	15.8	.0	5.3	5.3

8)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제도(중복응답)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제도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가 3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및 강제화(31.0%),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27.6%), 임금체불 방지 감시/감독 강화(20.7%), 4대 보험 및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인권 환경 관련 정기 실태 파악(각 12.1%) 순을 보였음(n=58).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제도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라는 응답은 여성(38.5%), 40대(40.0%),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45.5%),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37.1%),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3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43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제도(중복응답)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장시간 노동 방지 위한 감시 감독 강화	최저 임금 가이드 라인, 보수 체계의 합리화	임금 체불 방지 감시 감독 강화	4대 보험, 실업 부조 사회 안전망 확충	표준 계약서 적용 확대 및 강제화	인권 침해 방지 감시 감독 강화	노동, 인권 환경 관련 정기 실태 파악
전 체			58	27.6	36.2	20.7	12.1	31.0	19.0	12.1
성 별	남	성	45	31.1	35.6	17.8	8.9	33.3	20.0	13.3
	여	성	13	15.4	38.5	30.8	23.1	23.1	15.4	7.7
연 령 별	20대	대	24	16.7	25.0	25.0	25.0	29.2	16.7	16.7
	30대	대	18	50.0	38.9	11.1	5.6	33.3	27.8	5.6
	40대	대	10	30.0	40.0	20.0	.0	50.0	.0	10.0
	50대 이상	대 이 상	6	.0	66.7	33.3	.0	.0	33.3	16.7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년 미만	만	8	12.5	25.0	.0	25.0	37.5	25.0	12.5
	3 ~ 5년 미만	만	10	30.0	30.0	30.0	30.0	20.0	10.0	10.0
	5 ~ 10년 미만	만	18	38.9	33.3	27.8	5.6	38.9	16.7	11.1
	10년 이상	만	22	22.7	45.5	18.2	4.5	27.3	22.7	13.6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방 송 사 개 별 계 약	19	36.8	31.6	21.1	15.8	15.8	26.3	26.3
	방송사 팀별 계약	방 송 사 팀 별 계 약	5	40.0	80.0	.0	.0	20.0	.0	.0
	제작사 개별 계약	제 작 사 개 별 계 약	22	22.7	36.4	18.2	9.1	40.9	18.2	4.5
	제작사 팀별 계약	제 작 사 팀 별 계 약	12	16.7	25.0	33.3	16.7	41.7	16.7	8.3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서 면 계 약	35	34.3	37.1	20.0	14.3	28.6	14.3	20.0
	구 두 계 약	구 두 계 약	14	7.1	35.7	21.4	7.1	35.7	21.4	.0
	특별한 계약 없음	특별한 계약 없음	9	33.3	33.3	22.2	11.1	33.3	33.3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음	소 속 사 있음	39	23.1	38.5	25.6	10.3	30.8	23.1	12.8
	소 속 사 없음	소 속 사 없음	19	36.8	31.6	10.5	15.8	31.6	10.5	10.5



5.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방송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표준계약서 강제화/의무화, 표준계약서 홍보 필요, 표준계약서 시행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3-44 〉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표준계약서에 대한 강제화/의무화가 필요해요 -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 표준계약서 시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강제화/의무화(4명)	“강제적 적용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모든 계약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된다”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가 아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에 관한 언급이 없이 방송사에 유리한 계약을 요구한다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홍보 필요(3명)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장이나 후반 등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 사람들에게 꼭 홍보해 주세요”
표준계약서 시행에 대한 조사 필요(2명)	“정부의 직접 참여 된 외부참여 업체 및 개인에 대한 개별 면접 조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외부참여 업체에 면접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급의 보증(2명)	“지급의 보증을 꼭 해주세요” “임금 지급 보증 필요합니다”
방송환경을 공영화(1명)	“방송 환경을 공영화하고 외주 비용을 현실화 해야 됩니다”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필요(1명)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스태프 조건 완화(1명)	“학력 등 따지는 것. 능력이 있어도 시도도 못해보는 경우. 조건미달이라는 애초에 희망도 없는 경우 가 있어 조건을 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외주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외주제작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는 지급의 보증, 표준계약서 홍보 필요,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 및 계약 확인 필수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3-45 〉 외주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임금 등의 지급 보증이 필요합니다 💡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 표준계약서 준수여부 및 계약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지급 보증(6명)	“외주의 경우 대부분 방송사 내부의 결제과정이 끝나야 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일과 상관없는 임금 지불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이 많은 건 상관 없으나 그에 맞는 임금으로 보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기적 관리” “임금 지급 보증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급 보증이 필요합니다”
● 표준계약서 홍보 필요(2명)	“현장이나 후반 등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 사람들에게 홍보가 필요합니다”
● 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계약 확인 확대(2명)	“하도급업체와 제작사 간의 계약과 실제 결과와 다르므로 준수여부 확인 조사해야 됩니다” “제작사와 하도급업체 계약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필요(2명)	“소기업 등과의 거래 시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이 필요”
● 제도적 지원(2명)	“제도적 지원을 해주세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표준계약서 강제화/의무화(1명)	“모든 계약 계약서 작성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콘텐츠 저작권 보호(1명)	“외주제작 비율 확대도 필요하지만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독점하지 않는 제도 역시 필요합니다”



3)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준계약서 강제화/의무화, 표준계약서 홍보 필요, 위탁업체끼리 정보교환의 장 마련, 제도적 지원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3-46 〉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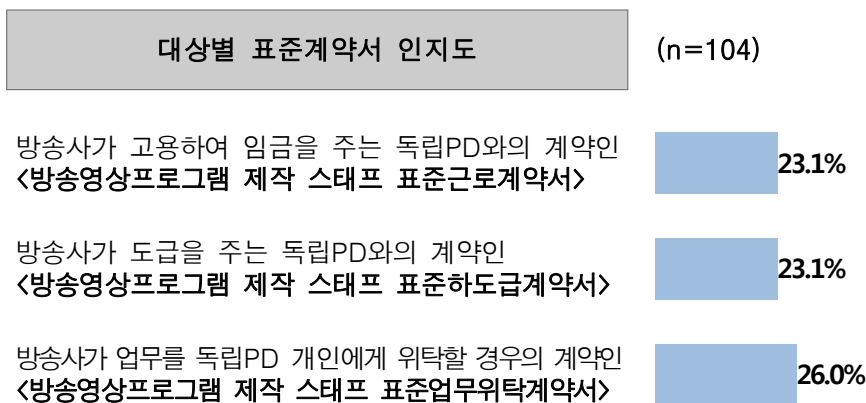
	💡 표준계약서 강제화/의무화가 필요해요 💡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요(적극적 실행이 필요) 💡 위탁업체끼리 정보교환의 장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표준계약서 강제화/의무화(4명) “모든 계약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는 실시가 무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관리 및 감독 필요하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 표준계약서 홍보 필요(3명)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일하고 있는 스태프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제도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홍보를 적극적 실행해야 됩니다”
	● 위탁업체끼리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3명) “그들끼리 단체 구성을 용이토록 하고 제작사와 협상 및 교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제작사와 관련 된 외부위탁 업체 명단 및 연락처 공고를 통한 위탁업체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제작사와 방송사의 투명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신문고가 필요합니다”
	● 제도적 지원(3명)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 합니다” “투명한 임금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및 정부지원 확대를 해야합니다”

제 4 절 독립PD의 표준계약서 이용 실태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독립PD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를 살펴보면, 방송사가 업무를 독립PD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인지도는 26.0%,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표준근로계약서의 인지도와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인지도는 각 23.1%로 독립PD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음(n=104).

〈그림 3-4-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 인지층(잘 알고 있다 + 대략 알고 있다 + 들어는 보았다)만 표기

〈표 3-4-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04	1.0	4.8	17.3	28.8	48.1	23.1	76.9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104	2.9	5.8	14.4	31.7	45.2	23.1	76.9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104	1.0	2.9	22.1	24.0	50.0	26.0	74.0



-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는 23.1%(잘 안다 1.0% + 대략 안다 4.8% + 들어는 보았다 17.3%, n=104)로 나타났으며, 남성(26.5%), 40대(40.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27.0%),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25.9%)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비인지층은 여성(90.5%), 20대(93.8%),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77.8%),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구두 계약(82.9%),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8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2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근로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04	1.0	4.8	17.3	28.8	48.1	23.1	76.9
성 별	남 성	83	.0	4.8	21.7	32.5	41.0	26.5	73.5
	여 성	21	4.8	4.8	.0	14.3	76.2	9.5	90.5
연 령 별	2 0 대	16	.0	6.3	.0	25.0	68.8	6.3	93.8
	3 0 대	62	1.6	1.6	17.7	27.4	51.6	21.0	79.0
	4 0 대	25	.0	12.0	28.0	32.0	28.0	40.0	60.0
	5 0 대 이 상	1	.0	.0	.0	100.0	.0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0	.0	.0	40.0	60.0	.0	100.0
	3 ~ 5 년 미 만	11	.0	9.1	18.2	18.2	54.5	27.3	72.7
	5 ~ 1 0 년 미 만	36	2.8	2.8	16.7	22.2	55.6	22.2	77.8
	1 0 년 이 상	52	.0	5.8	19.2	34.6	40.4	25.0	75.0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0	.0	26.7	33.3	40.0	26.7	73.3
	방송사 팀별 계약	7	.0	14.3	14.3	14.3	57.1	28.6	71.4
	제작사 개별 계약	77	1.3	3.9	15.6	31.2	48.1	20.8	79.2
	제작사 팀별 계약	5	.0	20.0	20.0	.0	60.0	40.0	60.0
계 약 형태	서 면 계 약	63	1.6	7.9	17.5	25.4	47.6	27.0	73.0
	구 두 계 약	41	.0	.0	17.1	34.1	48.8	17.1	82.9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1.2	4.9	19.8	30.9	43.2	25.9	74.1
	소 속 사 없 음	23	.0	4.3	8.7	21.7	65.2	13.0	87.0

-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 계약서 인지도는 23.1%(잘 안다 2.9% + 대략 안다 5.8% + 들어는 보았다 14.4%, n=104)로 나타났으며, 남성(25.3%), 40대(44.0%),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30.8%),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27.0%)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비인지층은 여성(85.7%), 20대(93.8%),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83.3%),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구두 계약(82.9%),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8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3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지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04	2.9	5.8	14.4	31.7	45.2	23.1	76.9
성 별	남 성	83	2.4	4.8	18.1	36.1	38.6	25.3	74.7
	여 성	21	4.8	9.5	.0	14.3	71.4	14.3	85.7
연 령 별	2 0 대	16	.0	6.3	.0	31.3	62.5	6.3	93.8
	3 0 대	62	3.2	3.2	12.9	30.6	50.0	19.4	80.6
	4 0 대	25	4.0	12.0	28.0	36.0	20.0	44.0	56.0
	5 0 대 이 상	1	.0	.0	.0	.0	100.0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0	.0	.0	20.0	80.0	.0	100.0
	3 ~ 5 년 미 만	11	.0	18.2	.0	36.4	45.5	18.2	81.8
	5 ~ 1 0 년 미 만	36	5.6	2.8	8.3	25.0	58.3	16.7	83.3
	1 0 년 이 상	52	1.9	5.8	23.1	36.5	32.7	30.8	69.2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6.7	.0	6.7	33.3	53.3	13.3	86.7
	방송사 팀별 계약	7	.0	.0	28.6	.0	71.4	28.6	71.4
	제작사 개별 계약	77	2.6	6.5	14.3	36.4	40.3	23.4	76.6
	제작사 팀별 계약	5	.0	20.0	20.0	.0	60.0	40.0	60.0
계 약 형태	서 면 계 약	63	4.8	9.5	12.7	30.2	42.9	27.0	73.0
	구 두 계 약	41	.0	.0	17.1	34.1	48.8	17.1	82.9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2.5	6.2	16.0	34.6	40.7	24.7	75.3
	소 속 사 없 음	23	4.3	4.3	8.7	21.7	60.9	17.4	82.6



- 방송사가 업무를 독립PD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도는 26.0%(잘 안다 1.0% + 대략 안다 2.9% + 들어는 보았다 22.1%, n=104)로 나타났으며, 남성(30.1%), 40대(44.0%),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32.7%)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비인지층은 여성(90.5%), 20대(93.8%),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81.8%),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7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4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의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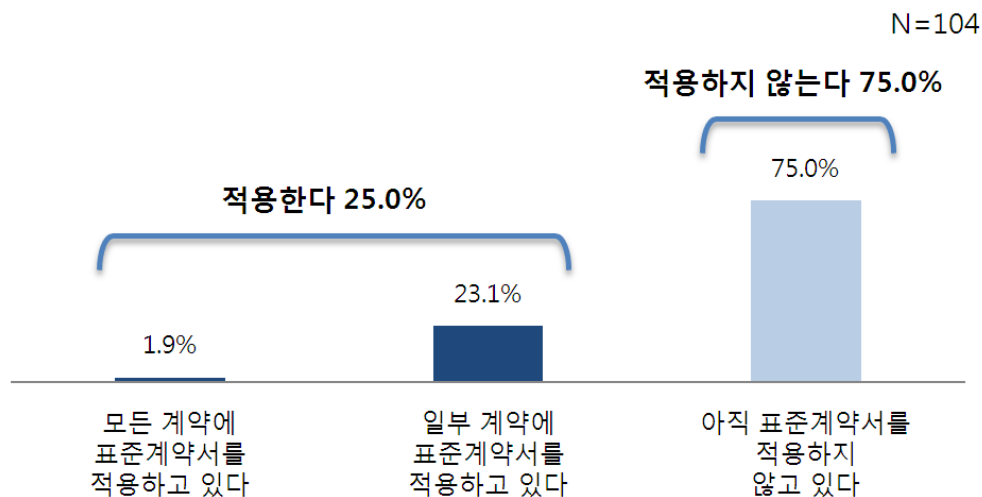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잘 몰랐다	전혀 몰랐다	종합	
									인지층	비 인지층
전 체			104	1.0	2.9	22.1	24.0	50.0	26.0	74.0
성 별	남	성	83	1.2	2.4	26.5	26.5	43.4	30.1	69.9
	여	성	21	.0	4.8	4.8	14.3	76.2	9.5	90.5
연 령 별	2	0 대	16	.0	6.3	.0	18.8	75.0	6.3	93.8
	3	0 대	62	.0	1.6	22.6	22.6	53.2	24.2	75.8
	4	0 대	25	4.0	4.0	36.0	32.0	24.0	44.0	56.0
	5	0 대 이 상	1	.0	.0	.0	.0	100.0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0	.0	.0	20.0	80.0	.0	100.0
	3 ~ 5	년 미 만	11	.0	9.1	9.1	18.2	63.6	18.2	81.8
	5 ~ 10	년 미 만	36	.0	.0	22.2	19.4	58.3	22.2	77.8
	10	년 이 상	52	1.9	3.8	26.9	28.8	38.5	32.7	67.3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0	.0	20.0	26.7	53.3	20.0	80.0
	방송사 팀별 계약		7	.0	.0	28.6	.0	71.4	28.6	71.4
	제작사 개별 계약		77	.0	3.9	22.1	27.3	46.8	26.0	74.0
	제작사 팀별 계약		5	20.0	.0	20.0	.0	60.0	40.0	60.0
계 약 타	서	면 계 약	63	1.6	3.2	20.6	25.4	49.2	25.4	74.6
	구	두 계 약	41	.0	2.4	24.4	22.0	51.2	26.8	73.2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1.2	2.5	23.5	29.6	43.2	27.2	72.8
	소 속 사 없 음		23	.0	4.3	17.4	4.3	73.9	21.7	78.3

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PD가 방송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5.0%(모든 계약 적용 1.9% + 일부 계약 적용 23.1%)로 나타남(n=104).
- 독립PD가 방송사와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매우 낮았으며,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로 여성(28.6%), 40대(28.0%),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31.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5.0%(n=104)로 남성(77.1%), 30대(79.0%),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80.6%), 계약형태에서는 구두계약(9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4-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표 3-4-5 〉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104	1.9	23.1	75.0
성 별	남	성	83	1.2	21.7	77.1
	여	성	21	4.8	28.6	66.7
연 령 별	2	0	대	16	.0	25.0
	3	0	대	62	.0	21.0
	4	0	대	25	8.0	28.0
	5	0	대 이 상	1	.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0	60.0	40.0
	3 ~ 5	년 미 만	11	.0	18.2	81.8
	5 ~ 10	년 미 만	36	.0	19.4	80.6
	10	년 이 상	52	3.8	23.1	73.1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0	13.3	86.7
	방송사 팀별 계약		7	.0	42.9	57.1
	제작사 개별 계약		77	1.3	24.7	74.0
	제작사 팀별 계약		5	20.0	.0	80.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63	3.2	31.7	65.1
	구 두 계 약		41	.0	9.8	90.2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2.5	23.5	74.1
	소 속 사 없 음		23	.0	21.7	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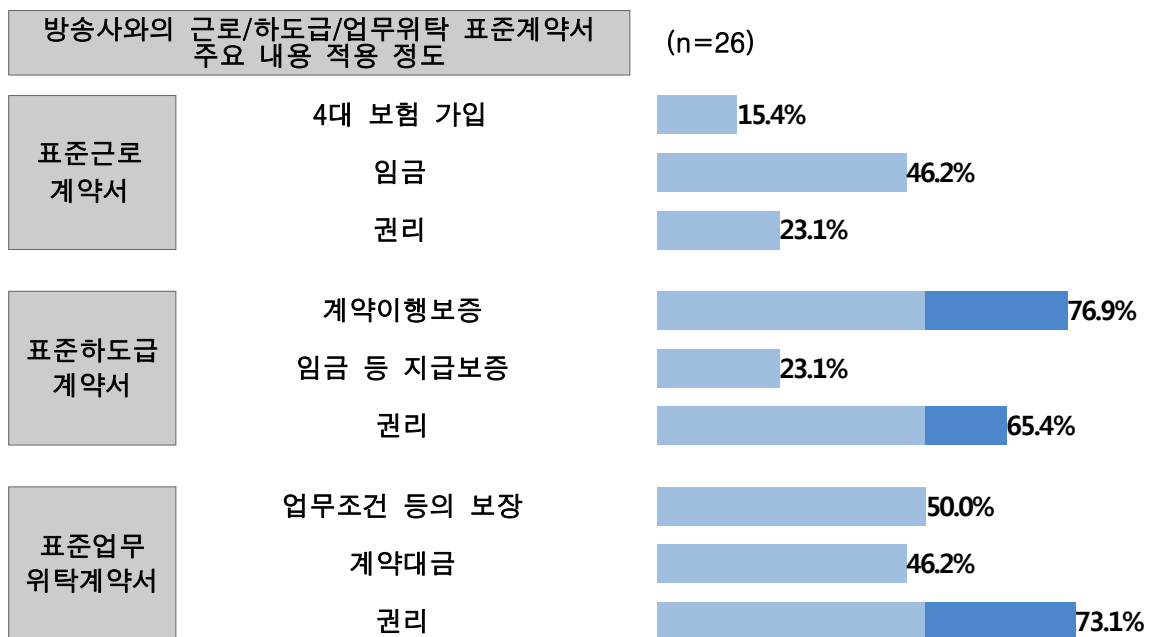
2)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방송사와의 계약 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독립PD를 대상(n=26)으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28.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55.1%,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56.4%인 것으로 나타남(n=26).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임금이 46.2%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권리(23.1%), 4대 보험 가입(15.4%) 순을 보였음(n=26).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보증이 76.9%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권리(65.4%), 임금 등 지급보증(23.1%) 순을 보였음(n=26).
-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가 73.1%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업무조건 등의 보장(50.0%), 계약대금(46.2%) 순을 보였음(n=26).

〈그림 3-4-3〉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3-4-6〉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26	.0	15.4	.0	42.3	42.3	15.4	84.6
	임금	26	3.8	26.9	15.4	15.4	38.5	46.2	53.8
	권리	26	3.8	15.4	3.8	15.4	61.5	23.1	76.9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26	38.5	11.5	26.9	3.8	19.2	76.9	23.1
	임금 등 지급보증	26	15.4	.0	7.7	53.8	23.1	23.1	76.9
	권리	26	38.5	7.7	19.2	3.8	30.8	65.4	34.6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26	.0	3.8	46.2	26.9	23.1	50.0	50.0
	계약대금	26	.0	42.3	3.8	26.9	26.9	46.2	53.8
	권리	26	23.1	46.2	3.8	19.2	7.7	73.1	26.9



〈표 3-4-7〉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0	15.4	.0	42.3	42.3	15.4	84.6
성 별	남	성	19	.0	21.1	.0	36.8	42.1	21.1	78.9
	여	성	7	.0	.0	.0	57.1	42.9	.0	100.0
연 령 별	2 0 대		4	.0	.0	.0	75.0	25.0	.0	100.0
	3 0 대		13	.0	30.8	.0	30.8	38.5	30.8	69.2
	4 0 대		9	.0	.0	.0	44.4	55.6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0	.0	66.7	33.3	.0	100.0
	3 ~ 5 년 미 만		2	.0	50.0	.0	50.0	.0	50.0	50.0
	5 ~ 1 0 년 미 만		7	.0	.0	.0	71.4	28.6	.0	100.0
	1 0 년 이 상		14	.0	21.4	.0	21.4	57.1	21.4	78.6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0	50.0	.0	.0	50.0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3	.0	.0	.0	66.7	33.3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20	.0	15.0	.0	40.0	45.0	15.0	85.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0	100.0	.0	.0	10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0	13.6	.0	45.5	40.9	13.6	86.4
	구 두 계 약		4	.0	25.0	.0	25.0	50.0	25.0	7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0	14.3	.0	42.9	42.9	14.3	85.7
	소 속 사 없 음		5	.0	20.0	.0	40.0	40.0	20.0	80.0

〈표 3-4-8〉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3.8	26.9	15.4	15.4	38.5	46.2	53.8
성 별	남	성	19	5.3	15.8	21.1	21.1	36.8	42.1	57.9
	여	성	7	.0	57.1	.0	.0	42.9	57.1	42.9
연 령 별	2 0 대		4	.0	75.0	.0	.0	25.0	75.0	25.0
	3 0 대		13	.0	15.4	30.8	15.4	38.5	46.2	53.8
	4 0 대		9	11.1	22.2	.0	22.2	44.4	33.3	66.7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0	.0	33.3	66.7	33.3
	3 ~ 5 년 미 만		2	.0	50.0	50.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7	14.3	28.6	.0	14.3	42.9	42.9	57.1
	1 0 년 이 상		14	.0	14.3	21.4	21.4	42.9	35.7	64.3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0	.0	50.0	50.0	.0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3	.0	33.3	.0	.0	66.7	33.3	66.7
	제작사 개별 계약		20	5.0	25.0	15.0	15.0	40.0	45.0	55.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100.0	.0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4.5	27.3	13.6	18.2	36.4	45.5	54.5
	구 두 계 약		4	.0	25.0	25.0	.0	50.0	50.0	5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4.8	23.8	14.3	14.3	42.9	42.9	57.1
	소 속 사 없 음		5	.0	40.0	20.0	20.0	20.0	60.0	40.0

〈표 3-4-9〉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3.8	15.4	3.8	15.4	61.5	23.1	76.9
성 별	남 성	19	.0	21.1	5.3	21.1	52.6	26.3	73.7
	여 성	7	14.3	.0	.0	.0	85.7	14.3	85.7
연 령 별	2 0 대	4	.0	.0	.0	.0	100.0	.0	100.0
	3 0 대	13	7.7	15.4	.0	30.8	46.2	23.1	76.9
	4 0 대	9	.0	22.2	11.1	.0	66.7	33.3	66.7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0	.0	.0	100.0	.0	100.0
	3 ~ 5 년 미 만	2	.0	.0	.0	50.0	50.0	.0	100.0
	5 ~ 1 0 년 미 만	7	.0	14.3	14.3	.0	71.4	28.6	71.4
	1 0 년 이 상	14	7.1	21.4	.0	21.4	50.0	28.6	71.4
계 약 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0	50.0	.0	50.0	.0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3	.0	.0	.0	.0	100.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20	5.0	15.0	5.0	15.0	60.0	25.0	75.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0	.0	100.0	.0	10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4.5	18.2	4.5	13.6	59.1	27.3	72.7
	구 두 계 약	4	.0	.0	.0	25.0	75.0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4.8	14.3	4.8	14.3	61.9	23.8	76.2
	소 속 사 없 음	5	.0	20.0	.0	20.0	60.0	20.0	80.0

〈표 3-4-10〉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38.5	11.5	26.9	3.8	19.2	76.9	23.1
성 별	남 성	19	36.8	15.8	26.3	.0	21.1	78.9	21.1
	여 성	7	42.9	.0	28.6	14.3	14.3	71.4	28.6
연 령 별	2 0 대	4	75.0	.0	25.0	.0	.0	100.0	.0
	3 0 대	13	30.8	15.4	38.5	.0	15.4	84.6	15.4
	4 0 대	9	33.3	11.1	11.1	11.1	33.3	55.6	44.4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66.7	.0	33.3	.0	.0	100.0	.0
	3 ~ 5 년 미 만	2	50.0	.0	50.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7	42.9	28.6	14.3	.0	14.3	85.7	14.3
	1 0 년 이 상	14	28.6	7.1	28.6	7.1	28.6	64.3	35.7
계 약 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50.0	.0	50.0	.0	.0	100.0	.0
	방송사 팀별 계약	3	33.3	33.3	33.3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20	35.0	10.0	25.0	5.0	25.0	70.0	30.0
	제작사 팀별 계약	1	100.0	.0	.0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40.9	13.6	27.3	4.5	13.6	81.8	18.2
	구 두 계 약	4	25.0	.0	25.0	.0	50.0	50.0	5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33.3	14.3	23.8	4.8	23.8	71.4	28.6
	소 속 사 없 음	5	60.0	.0	40.0	.0	.0	100.0	.0



〈표 3-4-11〉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15.4	.0	7.7	53.8	23.1	23.1	76.9
성 별	남 성	19	10.5	.0	5.3	52.6	31.6	15.8	84.2
	여 성	7	28.6	.0	14.3	57.1	.0	42.9	57.1
연 령 별	2 0 대	4	.0	.0	25.0	75.0	.0	25.0	75.0
	3 0 대	13	7.7	.0	.0	61.5	30.8	7.7	92.3
	4 0 대	9	33.3	.0	11.1	33.3	22.2	44.4	55.6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0	33.3	66.7	.0	33.3	66.7
	3 ~ 5 년 미 만	2	.0	.0	.0	100.0	.0	.0	100.0
	5 ~ 1 0 년 미 만	7	.0	.0	14.3	57.1	28.6	14.3	85.7
	1 0 년 이 상	14	28.6	.0	.0	42.9	28.6	28.6	71.4
계 약 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0	.0	.0	50.0	50.0	.0	100.0
	방송사 팀별 계약	3	.0	.0	33.3	66.7	.0	33.3	66.7
	제작사 개별 계약	20	20.0	.0	5.0	50.0	25.0	25.0	75.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0	100.0	.0	.0	10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9.1	.0	9.1	54.5	27.3	18.2	81.8
	구 두 계 약	4	50.0	0	.0	50.0	.0	50.0	5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19.0	.0	4.8	52.4	23.8	23.8	76.2
	소 속 사 없 음	5	.0	.0	20.0	60.0	20.0	20.0	80.0

〈표 3-4-12〉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38.5	7.7	19.2	3.8	30.8	65.4	34.6
성 별	남 성	19	47.4	.0	26.3	.0	26.3	73.7	26.3
	여 성	7	14.3	28.6	.0	14.3	42.9	42.9	57.1
연 령 별	2 0 대	4	.0	25.0	.0	.0	75.0	25.0	75.0
	3 0 대	13	30.8	7.7	30.8	.0	30.8	69.2	30.8
	4 0 대	9	66.7	.0	11.1	11.1	11.1	77.8	22.2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33.3	.0	.0	66.7	33.3	66.7
	3 ~ 5 년 미 만	2	.0	.0	50.0	.0	50.0	50.0	50.0
	5 ~ 1 0 년 미 만	7	42.9	.0	14.3	.0	42.9	57.1	42.9
	1 0 년 이 상	14	50.0	7.1	21.4	7.1	14.3	78.6	21.4
계 약 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50.0	.0	50.0	.0	.0	100.0	.0
	방송사 팀별 계약	3	33.3	33.3	.0	.0	33.3	66.7	33.3
	제작사 개별 계약	20	40.0	5.0	20.0	5.0	30.0	65.0	35.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0	.0	100.0	.0	10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36.4	9.1	18.2	4.5	31.8	63.6	36.4
	구 두 계 약	4	50.0	.0	25.0	.0	25.0	75.0	2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42.9	4.8	19.0	4.8	28.6	66.7	33.3
	소 속 사 없 음	5	20.0	20.0	20.0	.0	40.0	60.0	40.0

〈표 3-4-13〉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0	3.8	46.2	26.9	23.1	50.0	50.0
성 별	남 성	19	.0	.0	42.1	36.8	21.1	42.1	57.9
	여 성	7	.0	14.3	57.1	.0	28.6	71.4	28.6
연 령 별	2 0 대	4	.0	.0	75.0	.0	25.0	75.0	25.0
	3 0 대	13	.0	7.7	30.8	46.2	15.4	38.5	61.5
	4 0 대	9	.0	.0	55.6	11.1	33.3	55.6	44.4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0	66.7	.0	33.3	66.7	33.3
	3 ~ 5 년 미 만	2	.0	.0	50.0	50.0	.0	50.0	50.0
	5 ~ 1 0 년 미 만	7	.0	.0	57.1	28.6	14.3	57.1	42.9
	1 0 년 이 상	14	.0	7.1	35.7	28.6	28.6	42.9	57.1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0	.0	50.0	50.0	.0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3	.0	.0	33.3	33.3	33.3	33.3	66.7
	제작사 개별 계약	20	.0	5.0	45.0	25.0	25.0	50.0	50.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100.0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0	4.5	50.0	27.3	18.2	54.5	45.5
	구 두 계 약	4	.0	.0	25.0	25.0	50.0	25.0	7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0	4.8	42.9	28.6	23.8	47.6	52.4
	소 속 사 없 음	5	.0	.0	60.0	20.0	20.0	60.0	40.0

〈표 3-4-14〉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0	42.3	3.8	26.9	26.9	46.2	53.8
성 별	남 성	19	.0	36.8	5.3	36.8	21.1	42.1	57.9
	여 성	7	.0	57.1	.0	.0	42.9	57.1	42.9
연 령 별	2 0 대	4	.0	75.0	.0	.0	25.0	75.0	25.0
	3 0 대	13	.0	30.8	.0	46.2	23.1	30.8	69.2
	4 0 대	9	.0	44.4	11.1	11.1	33.3	55.6	44.4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66.7	.0	.0	33.3	66.7	33.3
	3 ~ 5 년 미 만	2	.0	50.0	.0	50.0	.0	50.0	50.0
	5 ~ 1 0 년 미 만	7	.0	42.9	14.3	28.6	14.3	57.1	42.9
	1 0 년 이 상	14	.0	35.7	.0	28.6	35.7	35.7	64.3
계 약 기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0	50.0	.0	50.0	.0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3	.0	33.3	.0	33.3	33.3	33.3	66.7
	제작사 개별 계약	20	.0	40.0	5.0	25.0	30.0	45.0	55.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100.0	.0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0	45.5	4.5	27.3	22.7	50.0	50.0
	구 두 계 약	4	.0	25.0	.0	25.0	50.0	25.0	75.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0	38.1	4.8	28.6	28.6	42.9	57.1
	소 속 사 없 음	5	.0	60.0	.0	20.0	20.0	6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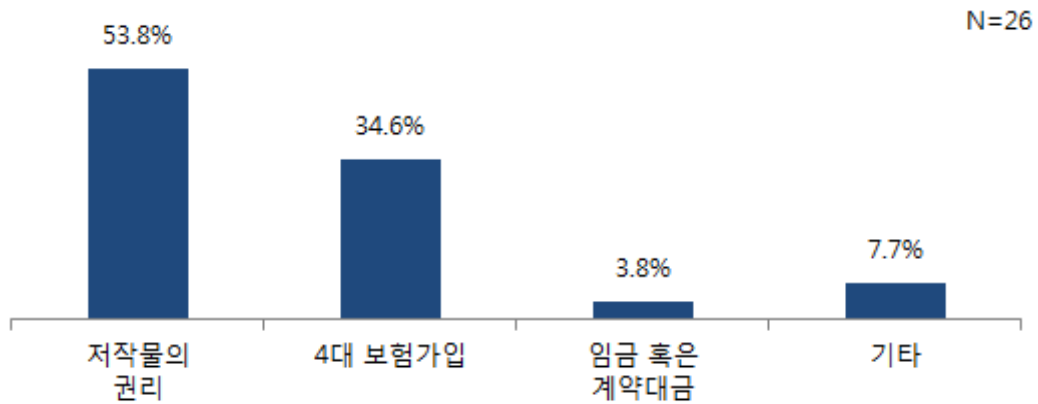
〈표 3-4-15〉 방송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관련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6	23.1	46.2	3.8	19.2	7.7	73.1	26.9
성 별	남	성	19	26.3	36.8	5.3	21.1	10.5	68.4	31.6
	여	성	7	14.3	71.4	.0	14.3	.0	85.7	14.3
연 령 별	2	0 대	4	.0	100.0	.0	.0	.0	100.0	.0
	3	0 대	13	15.4	30.8	.0	38.5	15.4	46.2	53.8
	4	0 대	9	44.4	44.4	11.1	.0	.0	10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100.0	.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2	.0	50.0	.0	50.0	.0	50.0	50.0
	5 ~ 1 0 년 미 만		7	28.6	42.9	14.3	.0	14.3	85.7	14.3
	1 0 년 이 상		14	28.6	35.7	.0	28.6	7.1	64.3	35.7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0	50.0	.0	50.0	.0	50.0	50.0
	방송사 팀별 계약		3	33.3	66.7	.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20	25.0	40.0	5.0	20.0	10.0	70.0	30.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100.0	.0	.0	.0	100.0	.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22	18.2	50.0	4.5	18.2	9.1	72.7	27.3
	구 두 계 약		4	50.0	25.0	.0	25.0	.0	75.0	25.0
소 속 사 무	소 속 사 있 음		21	28.6	38.1	4.8	19.0	9.5	71.4	28.6
	소 속 사 없 음		5	.0	80.0	.0	20.0	.0	80.0	20.0

3)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저작물 권리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가입(34.6%), 임금 혹은 계약 대금(3.8%) 등의 순을 보였음(n=26).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저작권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송사에 귀속 된다, 회사 소속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각 1명) 등이 있었음.

〈 그림 3-4-4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표 3-4-16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구 분 (단위:%)			표본수 (n)	4대 보험 가입	임금 혹은 계약 대금	저작물 권리	기타	
전 체			26	34.6	3.8	53.8	7.7	
성 별	남	성	19	42.1	.0	47.4	10.5	
	여	성	7	14.3	14.3	71.4	.0	
연 령 별	2	0	대	4	25.0	.0	75.0	.0
	3	0	대	13	46.2	7.7	38.5	7.7
	4	0	대	9	22.2	.0	66.7	11.1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33.3	.0	66.7	.0	
	3 ~ 5 년 미 만		2	50.0	.0	50.0	.0	
	5 ~ 1 0 년 미 만		7	14.3	.0	71.4	14.3	
	1 0 년 이 상		14	42.9	7.1	42.9	7.1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2	100.0	.0	.0	.0	
	방송사 팀별 계약		3	33.3	.0	66.7	.0	
	제작사 개별 계약		20	30.0	5.0	55.0	10.0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100.0	.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22	36.4	4.5	50.0	9.1	
	구 두 계 약		4	25.0	.0	75.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21	28.6	4.8	57.1	9.5	
	소 속 사 없 음		5	60.0	.0	40.0	.0	



4)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독립PD(n=78)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 것이 관행이어서(20.5%),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17.9%), 방송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5.1%)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6.4%).

〈 표 3-4-17〉 방송사와의 계약 시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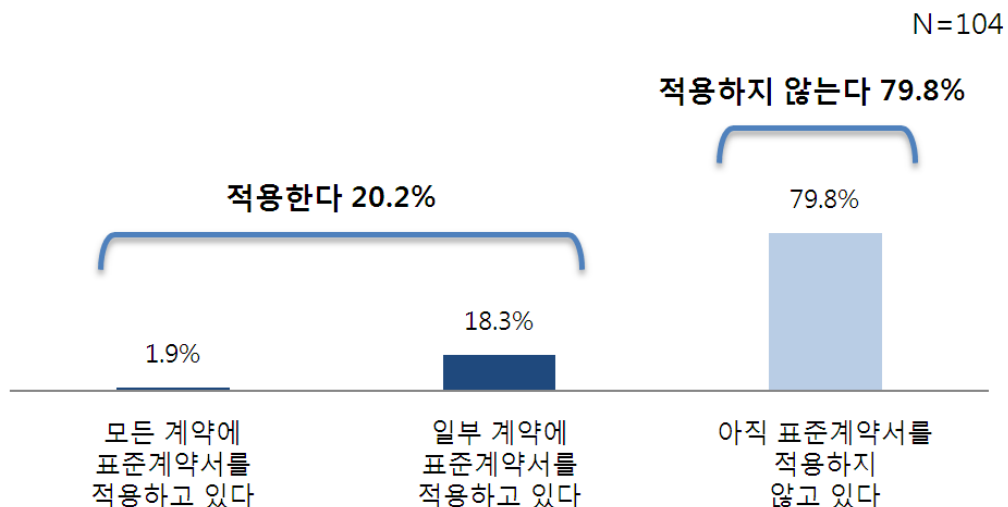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방송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방송사가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구두 계약이 관행 이어서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게 관행 이어서	기타
전 체		78	17.9	5.1	50.0	20.5	6.4
성 별	남 성	64	20.3	6.3	50.0	17.2	6.3
	여 성	14	7.1	.0	50.0	35.7	7.1
연 령 별	2 0 대	12	16.7	.0	50.0	25.0	8.3
	3 0 대	49	18.4	6.1	53.1	18.4	4.1
	4 0 대	16	18.8	6.3	43.8	18.8	12.5
	5 0 대 이 상	1	.0	.0	.0	100.0	.0
제 작 관 련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2	50.0	.0	.0	50.0	.0
	3 ~ 5 년 미 만	9	22.2	.0	55.6	11.1	11.1
	5 ~ 1 0 년 미 만	29	20.7	6.9	51.7	20.7	.0
	1 0 년 이 상	38	13.2	5.3	50.0	21.1	10.5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13	23.1	.0	46.2	23.1	7.7
	방송사 팀별 계약	4	25.0	25.0	.0	25.0	25.0
	제작사 개별 계약	57	15.8	5.3	54.4	19.3	5.3
	제작사 팀별 계약	4	25.0	.0	50.0	25.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41	26.8	9.8	24.4	26.8	12.2
	구 두 계 약	37	8.1	.0	78.4	13.5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60	20.0	5.0	51.7	18.3	5.0
	소 속 사 없 음	18	11.1	5.6	44.4	27.8	11.1

3.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1)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독립PD가 독립제작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0.2%(모든 계약 적용 1.9% + 일부 계약 적용 18.3%)로 나타남(n=104).
- 독립PD가 독립제작사와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 시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으며, 남성(2.4%), 20대(6.3%),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3.2%),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2.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으며, 남성(19.3%), 40대(28.0%),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23.1%), 계약형태에서는 서면계약(25.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19.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9.8%(n=104)로 나타났으며, 여성(85.7%), 20대(87.5%),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90.9%), 계약형태에서는 구두계약(92.7%),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87.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3-4-5〉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 표 3-4-18 〉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 체			104	1.9	18.3	79.8
성 별	남	성	83	2.4	19.3	78.3
	여	성	21	.0	14.3	85.7
연 령 별	2	0	대	16	6.3	87.5
	3	0	대	62	.0	82.3
	4	0	대	25	4.0	68.0
	5	0	대 이 상	1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20.0	20.0	60.0
	3 ~ 5	년 미 만	11	.0	9.1	90.9
	5 ~ 10	년 미 만	36	.0	13.9	86.1
	10	년 이 상	52	1.9	23.1	75.0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0	6.7	93.3
	방송사 팀별 계약		7	.0	28.6	71.4
	제작사 개별 계약		77	1.3	20.8	77.9
	제작사 팀별 계약		5	20.0	.0	80.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63	3.2	25.4	71.4
	구 두 계 약		41	.0	7.3	92.7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2.5	19.8	77.8
	소 속 사 없 음		23	.0	13.0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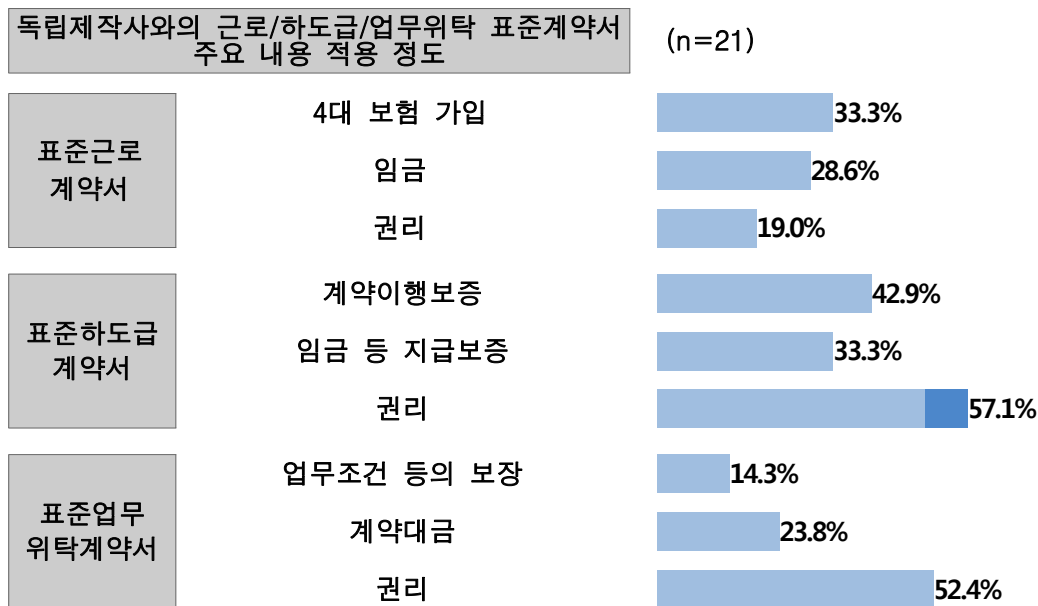
2)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독립PD를 대상(n=21)으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용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4대 보험 가입, 임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27.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계약이행보증, 임금 등 지급보증,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44.4%,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업무조건 등의 보장, 계약대금, 권리)에 대한 적용도는 평균 30.2%인 것으로 나타남(n=21).
-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33.3%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금(28.6%), 권리(19.0%) 순을 보였음(n=21).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가 57.1%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이행보증(42.9%), 임금 등 지급보증(33.3%) 순을 보였음(n=21).
-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가 52.4%로 적용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대금(23.8%), 업무조건 등의 보장(14.3%) 순을 보였음(n=21).

〈그림 3-4-6〉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 적용한다(그대로 적용 + 약간 수정하여 적용 + 일부 문구만 적용)는 응답만 표기

〈표 3-4-19〉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표준근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21	4.8	28.6	.0	23.8	42.9	33.3	66.7
	임금	21	9.5	14.3	4.8	9.5	61.9	28.6	71.4
	권리	21	4.8	9.5	4.8	9.5	71.4	19.0	81.0
표준하도급 계약서	계약이행보증	21	14.3	9.5	19.0	.0	57.1	42.9	57.1
	임금 등 지급보증	21	14.3	.0	19.0	14.3	52.4	33.3	66.7
	권리	21	33.3	4.8	19.0	.0	42.9	57.1	42.9
표준업무 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21	4.8	.0	9.5	23.8	61.9	14.3	85.7
	계약대금	21	.0	9.5	14.3	28.6	47.6	23.8	76.2
	권리	21	19.0	9.5	23.8	19.0	28.6	52.4	47.6



〈 표 3-4-20 〉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4대 보험 가입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4.8	28.6	.0	23.8	42.9	33.3	66.7
성 별	남	성	18	5.6	33.3	.0	22.2	38.9	38.9	61.1
	여	성	3	.0	.0	.0	33.3	66.7	.0	100.0
연 령 별	2	0 대	2	50.0	.0	.0	.0	50.0	50.0	50.0
	3	0 대	11	.0	45.5	.0	9.1	45.5	45.5	54.5
	4	0 대	8	.0	12.5	.0	50.0	37.5	12.5	87.5
제 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50.0	.0	.0	.0	50.0	50.0	50.0
	3 ~ 5 년 미 만		1	.0	100.0	.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5	.0	20.0	.0	20.0	60.0	20.0	80.0
	1 0 년 이 상		13	.0	30.8	.0	30.8	38.5	30.8	69.2
계 약기 관 체 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0	.0	.0	.0	100.0	.0	100.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0	50.0	50.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17	5.9	35.3	.0	17.6	41.2	41.2	58.8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0	100.0	.0	.0	10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5.6	22.2	.0	27.8	44.4	27.8	72.2
	구 두 계 약		3	.0	66.7	.0	.0	33.3	66.7	33.3
소 속 사 유	소 속 사 있 음		18	5.6	27.8	.0	22.2	44.4	33.3	66.7
	소 속 사 없 음		3	.0	33.3	.0	33.3	33.3	33.3	66.7

〈 표 3-4-21 〉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9.5	14.3	4.8	9.5	61.9	28.6	71.4
성 별	남	성	18	5.6	16.7	5.6	11.1	61.1	27.8	72.2
	여	성	3	33.3	.0	.0	.0	66.7	33.3	66.7
연 령 별	2	0 대	2	.0	.0	.0	.0	100.0	.0	100.0
	3	0 대	11	9.1	18.2	9.1	.0	63.6	36.4	63.6
	4	0 대	8	12.5	12.5	.0	25.0	50.0	25.0	75.0
제 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0	.0	.0	100.0	.0	100.0
	3 ~ 5 년 미 만		1	.0	100.0	.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5	20.0	.0	.0	20.0	60.0	20.0	80.0
	1 0 년 이 상		13	7.7	15.4	7.7	7.7	61.5	30.8	69.2
계 약기 관 체 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0	.0	.0	100.0	.0	.0	100.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0	.0	100.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17	11.8	11.8	5.9	5.9	64.7	29.4	70.6
	제작사 팀별 계약		1	.0	100.0	.0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11.1	5.6	5.6	11.1	66.7	22.2	77.8
	구 두 계 약		3	.0	66.7	.0	.0	33.3	66.7	33.3
소 속 사 유	소 속 사 있 음		18	11.1	11.1	5.6	11.1	61.1	27.8	72.2
	소 속 사 없 음		3	.0	33.3	.0	.0	66.7	33.3	66.7

〈표 3-4-22〉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4.8	9.5	4.8	9.5	71.4	19.0	81.0
성 별	남 성	18	.0	11.1	5.6	11.1	72.2	16.7	83.3
	여 성	3	33.3	.0	.0	.0	66.7	33.3	66.7
연 령 별	2 0 대	2	.0	.0	.0	50.0	50.0	.0	100.0
	3 0 대	11	9.1	.0	.0	9.1	81.8	9.1	90.9
	4 0 대	8	.0	25.0	12.5	.0	62.5	37.5	62.5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0	.0	50.0	50.0	.0	100.0
	3 ~ 5 년 미 만	1	.0	.0	.0	.0	100.0	.0	100.0
	5 ~ 1 0 년 미 만	5	.0	20.0	20.0	.0	60.0	40.0	60.0
	1 0 년 이 상	13	7.7	7.7	.0	7.7	76.9	15.4	84.6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0	100.0	.0	.0	.0	100.0	.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0	.0	100.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17	5.9	5.9	5.9	11.8	70.6	17.6	82.4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0	.0	100.0	.0	10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5.6	11.1	5.6	11.1	66.7	22.2	77.8
	구 두 계 약	3	.0	.0	.0	.0	100.0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8	5.6	11.1	5.6	11.1	66.7	22.2	77.8
	소 속 사 없 음	3	.0	.0	.0	.0	100.0	.0	100.0

〈표 3-4-23〉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이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14.3	9.5	19.0	.0	57.1	42.9	57.1
성 별	남 성	18	16.7	5.6	16.7	.0	61.1	38.9	61.1
	여 성	3	.0	33.3	33.3	.0	33.3	66.7	33.3
연 령 별	2 0 대	2	.0	.0	50.0	.0	50.0	50.0	50.0
	3 0 대	11	.0	9.1	18.2	.0	72.7	27.3	72.7
	4 0 대	8	37.5	12.5	12.5	.0	37.5	62.5	37.5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0	50.0	.0	50.0	50.0	50.0
	3 ~ 5 년 미 만	1	.0	.0	.0	.0	100.0	.0	100.0
	5 ~ 1 0 년 미 만	5	20.0	.0	40.0	.0	40.0	60.0	40.0
	1 0 년 이 상	13	15.4	15.4	7.7	.0	61.5	38.5	61.5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100.0	.0	.0	.0	.0	100.0	.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50.0	50.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17	5.9	5.9	17.6	.0	70.6	29.4	70.6
	제작사 팀별 계약	1	100.0	.0	.0	.0	.0	100.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16.7	11.1	22.2	.0	50.0	50.0	50.0
	구 두 계 약	3	.0	.0	.0	.0	100.0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8	16.7	11.1	16.7	.0	55.6	44.4	55.6
	소 속 사 없 음	3	.0	.0	33.3	.0	66.7	33.3	66.7



〈 표 3-4-24 〉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임금 등 지급보증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14.3	.0	19.0	14.3	52.4	33.3	66.7
성 별	남	성	18	11.1	.0	16.7	16.7	55.6	27.8	72.2
	여	성	3	33.3	.0	33.3	.0	33.3	66.7	33.3
연 령 별	2 0 대		2	.0	.0	50.0	.0	50.0	50.0	50.0
	3 0 대		11	18.2	.0	18.2	9.1	54.5	36.4	63.6
	4 0 대		8	12.5	.0	12.5	25.0	50.0	25.0	75.0
제 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0	50.0	.0	50.0	50.0	50.0
	3 ~ 5 년 미 만		1	.0	.0	100.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5	20.0	.0	20.0	.0	60.0	40.0	60.0
	1 0 년 이 상		13	15.4	.0	7.7	23.1	53.8	23.1	76.9
계 약기 관 체 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0	.0	.0	.0	100.0	.0	100.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50.0	50.0	.0	50.0	50.0
	제작사 개별 계약		17	17.6	.0	17.6	5.9	58.8	35.3	64.7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0	100.0	.0	.0	10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11.1	.0	11.1	16.7	61.1	22.2	77.8
	구 두 계 약		3	33.3	.0	66.7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8	16.7	.0	11.1	16.7	55.6	27.8	72.2
	소 속 사 없 음		3	.0	.0	66.7	.0	33.3	66.7	33.3

〈 표 3-4-25 〉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33.3	4.8	19.0	.0	42.9	57.1	42.9
성 별	남	성	18	33.3	.0	22.2	.0	44.4	55.6	44.4
	여	성	3	33.3	33.3	.0	.0	33.3	66.7	33.3
연 령 별	2 0 대		2	.0	50.0	50.0	.0	.0	100.0	.0
	3 0 대		11	27.3	.0	18.2	.0	54.5	45.5	54.5
	4 0 대		8	50.0	.0	12.5	.0	37.5	62.5	37.5
제 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50.0	50.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1	100.0	.0	.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5	20.0	.0	40.0	.0	40.0	60.0	40.0
	1 0 년 이 상		13	38.5	.0	7.7	.0	53.8	46.2	53.8
계 약기 관 체 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100.0	.0	.0	.0	.0	100.0	.0
	방송사 팀별 계약		2	50.0	50.0	.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17	29.4	.0	23.5	.0	47.1	52.9	47.1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0	.0	100.0	.0	100.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18	22.2	5.6	22.2	.0	50.0	50.0	50.0
	구 두 계 약		3	100.0	.0	.0	.0	.0	100.0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8	33.3	.0	22.2	.0	44.4	55.6	44.4
	소 속 사 없 음		3	33.3	33.3	.0	.0	33.3	66.7	33.3

〈 표 3-4-26 〉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업무조건 등의 보장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4.8	.0	9.5	23.8	61.9	14.3	85.7
성 별	남	성	18	.0	.0	11.1	27.8	61.1	11.1	88.9
	여	성	3	33.3	.0	.0	.0	66.7	33.3	66.7
연 령 별	2	0 대	2	.0	.0	.0	.0	100.0	.0	100.0
	3	0 대	11	9.1	.0	.0	18.2	72.7	9.1	90.9
	4	0 대	8	.0	.0	25.0	37.5	37.5	25.0	75.0
제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0	.0	.0	100.0	.0	100.0
	3 ~ 5 년 미 만		1	.0	.0	.0	.0	100.0	.0	100.0
	5 ~ 1 0 년 미 만		5	.0	.0	20.0	40.0	40.0	20.0	80.0
	1 0 년 이 상		13	7.7	.0	7.7	23.1	61.5	15.4	84.6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0	.0	.0	100.0	.0	.0	100.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0	50.0	50.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17	5.9	.0	5.9	17.6	70.6	11.8	88.2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100.0	.0	.0	100.0	.0
계약 형태	서 면 계 약		18	5.6	.0	11.1	27.8	55.6	16.7	83.3
	구 두 계 약		3	.0	.0	.0	.0	100.0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8	5.6	.0	11.1	27.8	55.6	16.7	83.3
	소 속 사 없 음		3	.0	.0	.0	.0	100.0	.0	100.0

〈 표 3-4-27 〉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계약대금 내용 적용 정도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0	9.5	14.3	28.6	47.6	23.8	76.2
성 별	남	성	18	.0	5.6	16.7	33.3	44.4	22.2	77.8
	여	성	3	.0	33.3	.0	.0	66.7	33.3	66.7
연 령 별	2	0 대	2	.0	.0	.0	.0	100.0	.0	100.0
	3	0 대	11	.0	9.1	18.2	27.3	45.5	27.3	72.7
	4	0 대	8	.0	12.5	12.5	37.5	37.5	25.0	75.0
제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0	.0	.0	100.0	.0	100.0
	3 ~ 5 년 미 만		1	.0	.0	.0	100.0	.0	.0	100.0
	5 ~ 1 0 년 미 만		5	.0	.0	60.0	20.0	20.0	60.0	40.0
	1 0 년 이 상		13	.0	15.4	.0	30.8	53.8	15.4	84.6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0	.0	.0	100.0	.0	.0	100.0
	방송사 팀별 계약		2	.0	.0	.0	50.0	50.0	.0	100.0
	제작사 개별 계약		17	.0	5.9	17.6	23.5	52.9	23.5	76.5
	제작사 팀별 계약		1	.0	100.0	.0	.0	.0	100.0	.0
계약 형태	서 면 계 약		18	.0	11.1	16.7	22.2	50.0	27.8	72.2
	구 두 계 약		3	.0	.0	.0	66.7	33.3	.0	10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18	.0	11.1	16.7	27.8	44.4	27.8	72.2
	소 속 사 없 음		3	.0	.0	.0	33.3	66.7	.0	100.0



〈 표 3-4-28 〉 독립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권리 내용 적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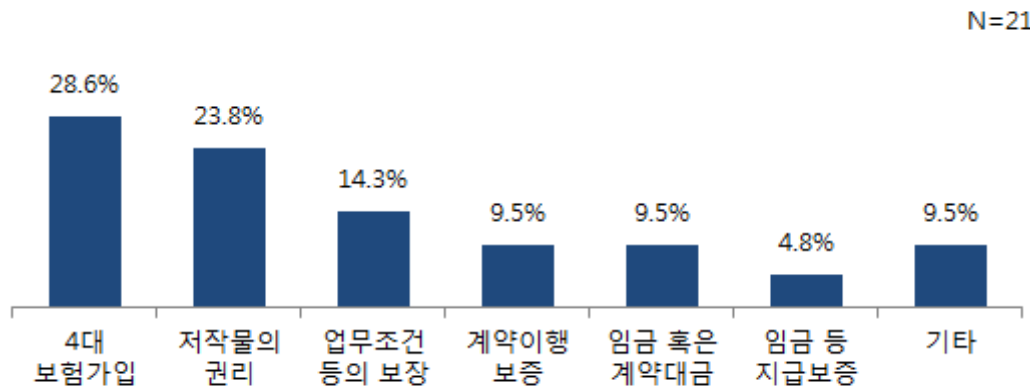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잘 적용 하지 않는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종합	
								적용	비적용
전 체		21	19.0	9.5	23.8	19.0	28.6	52.4	47.6
성 별	남 성	18	16.7	5.6	27.8	22.2	27.8	50.0	50.0
	여 성	3	33.3	33.3	.0	.0	33.3	66.7	33.3
연 령 별	2 0 대	2	.0	50.0	50.0	.0	.0	100.0	.0
	3 0 대	11	9.1	.0	27.3	18.2	45.5	36.4	63.6
	4 0 대	8	37.5	12.5	12.5	25.0	12.5	62.5	37.5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0	50.0	50.0	.0	.0	100.0	.0
	3 ~ 5 년 미 만	1	.0	.0	100.0	.0	.0	100.0	.0
	5 ~ 1 0 년 미 만	5	.0	.0	40.0	40.0	20.0	40.0	60.0
	1 0 년 이 상	13	30.8	7.7	7.7	15.4	38.5	46.2	53.8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0	.0	.0	100.0	.0	.0	100.0
	방송사 팀별 계약	2	50.0	50.0	.0	.0	.0	100.0	.0
	제작사 개별 계약	17	17.6	.0	29.4	17.6	35.3	47.1	52.9
	제작사 팀별 계약	1	.0	100.0	.0	.0	.0	100.0	.0
계 약 태 형	서 면 계 약	18	16.7	11.1	16.7	22.2	33.3	44.4	55.6
	구 두 계 약	3	33.3	.0	66.7	.0	.0	100.0	.0
소 속 사 무	소 속 사 있 음	18	16.7	5.6	22.2	22.2	33.3	44.4	55.6
	소 속 사 없 음	3	33.3	33.3	33.3	.0	.0	100.0	.0

3)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작물 권리(23.8%), 업무조건 등의 보장(14.3%), 임금 혹은 계약대금, 계약이행보증(각 9.5%), 임금 등 지급보증(4.8%) 등의 순을 보였음(n=21).

○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작사가 4대 보험을 해주지 않음(2명)이 있었음.

〈그림 3-4-7〉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표 3-4-29〉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표준계약서 내용(조항)

구 분 (단위: %)			표본수 (n)	4대 보험 가입	임금 혹은 계약 대금	저작물 권리	계약 이행 보증	임금 등 지급 보증	업무 조건 등의 보장	기타
전 체			21	28.6	9.5	23.8	9.5	4.8	14.3	9.5
성 별	남	성	18	22.2	11.1	22.2	11.1	5.6	16.7	11.1
	여	성	3	66.7	.0	33.3	.0	.0	.0	.0
연 령 별	2	0	대	2	50.0	.0	.0	.0	50.0	.0
	3	0	대	11	36.4	9.1	9.1	18.2	9.1	9.1
	4	0	대	8	12.5	12.5	50.0	.0	12.5	12.5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50.0	.0	.0	.0	.0	50.0	.0
	3 ~ 5 년 미 만		1	.0	.0	.0	100.0	.0	.0	.0
	5 ~ 1 0 년 미 만		5	20.0	20.0	20.0	.0	.0	20.0	20.0
	1 0 년 이 상		13	30.8	7.7	30.8	7.7	7.7	7.7	7.7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1	.0	.0	100.0	.0	.0	.0	.0
	방송사 팀별 계약		2	50.0	.0	50.0	.0	.0	.0	.0
	제작사 개별 계약		17	29.4	11.8	11.8	11.8	5.9	17.6	11.8
	제작사 팀별 계약		1	.0	.0	100.0	.0	.0	.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18	33.3	5.6	27.8	.0	5.6	16.7	11.1
	구 두 계 약		3	.0	33.3	.0	66.7	.0	.0	.0
소 속 사 무	소 속 사 있 음		18	22.2	11.1	27.8	5.6	5.6	16.7	11.1
	소 속 사 없 음		3	66.7	.0	.0	33.3	.0	.0	.0



4)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독립 PD(n=83) 중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이 관행이어서가 5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16.9%),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13.3%),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10.8%), 제작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2.4%) 등의 순을 보였음(기타 4.8%).

〈표 3-4-30〉 독립제작사와의 계약 시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단위:%)		표본수 (n)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제작사가 표준 계약서 내용을 잘몰라서	제작사가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구두 계약이 관행 이어서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 하는게 관행 이어서	기타
전 체		83	13.3	2.4	10.8	51.8	16.9	4.8
성 별	남 성	65	13.8	1.5	9.2	56.9	13.8	4.6
	여 성	18	11.1	5.6	16.7	33.3	27.8	5.6
연 령 별	2 0 대	14	7.1	14.3	14.3	35.7	28.6	.0
	3 0 대	51	17.6	.0	11.8	56.9	9.8	3.9
	4 0 대	17	5.9	.0	5.9	52.9	23.5	11.8
	5 0 대 이 상	1	.0	.0	.0	.0	10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3	.0	.0	.0	66.7	33.3	.0
	3 ~ 5 년 미 만	10	20.0	10.0	10.0	40.0	20.0	.0
	5 ~ 1 0 년 미 만	31	22.6	3.2	16.1	45.2	12.9	.0
	1 0 년 이 상	39	5.1	.0	7.7	59.0	17.9	10.3
계 약 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4	21.4	.0	7.1	42.9	28.6	.0
	방송사 팀별 계약	5	20.0	.0	.0	40.0	20.0	20.0
	제작사 개별 계약	60	11.7	3.3	11.7	55.0	13.3	5.0
	제작사 팀별 계약	4	.0	.0	25.0	50.0	25.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45	22.2	4.4	17.8	17.8	31.1	6.7
	구 두 계 약	38	2.6	.0	2.6	92.1	.0	2.6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63	14.3	1.6	11.1	55.6	11.1	6.3
	소 속 사 없 음	20	10.0	5.0	10.0	40.0	35.0	.0

4.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실태

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 독립PD의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5건 미만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건 이상(14.4%), 5~9건(9.6%), 10~14건(8.7%) 순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한 독립PD 10명 중 7명 정도(67.3%)는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가 5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n=104).

－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로 5건 미만이라는 응답은 여성(76.2%), 20대(87.5%),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81.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건 이상이라는 응답은 남성(15.7%), 40대(20.0%),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1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31〉 최근 1년간 제작 참여 건수

구 분 (단위:%)			표본수 (n)	5건 미만	5-9건	10-14건	20건 이상
전 체			104	67.3	9.6	8.7	14.4
성 별	남	성	83	65.1	9.6	9.6	15.7
	여	성	21	76.2	9.5	4.8	9.5
연 령 별	2	0	대	16	87.5	.0	12.5
	3	0	대	62	66.1	11.3	12.9
	4	0	대	25	56.0	12.0	20.0
	5	0	대 이 상	1	100.0	.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60.0	.0	20.0	20.0
	3 ~ 5	년 미 만	11	81.8	.0	.0	18.2
	5 ~ 10	년 미 만	36	75.0	11.1	2.8	11.1
	10	년 이 상	52	59.6	11.5	13.5	15.4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60.0	6.7	6.7	26.7
	방송사 팀별 계약		7	57.1	.0	28.6	14.3
	제작사 개별 계약		77	68.8	11.7	7.8	11.7
	제작사 팀별 계약		5	80.0	.0	.0	20.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63	67.9	8.6	11.1	12.3
	구 두 계 약		41	65.2	13.0	.0	21.7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65.1	9.5	6.3	19.0
	소 속 사 없 음		23	70.7	9.8	12.2	7.3



2)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 독립PD가 보수를 지급 받는 형태로는 월급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회당(44.2%), 도급(5.8%), 주급(1.0%) 순을 보였음(n=104).

- 보수를 지급 받는 형태로는 월급이라는 응답은 여성(61.9%), 20대(62.5%),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58.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회당(건당)이라는 응답은 남성(48.2%),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50.0%), 계약형태에서는 구두 계약(5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32 〉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구 분 (단위:%)			표본수 (n)	주급	월급	회당 (건당)	도급 (선금과 잔금)
전 체			104	1.0	49.0	44.2	5.8
성 별	남	성	83	.0	45.8	48.2	6.0
	여	성	21	4.8	61.9	28.6	4.8
연 령 별	2	0	대	16	.0	62.5	37.5
	3	0	대	62	1.6	50.0	45.2
	4	0	대	25	.0	40.0	44.0
	5	0	대 이 상	1	.0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0	60.0	40.0	.0
	3 ~ 5	년 미 만	11	.0	54.5	45.5	.0
	5 ~ 10	년 미 만	36	2.8	58.3	36.1	2.8
	10	년 이 상	52	.0	40.4	50.0	9.6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0	20.0	80.0	.0
	방송사 팀별 계약		7	.0	28.6	57.1	14.3
	제작사 개별 계약		77	1.3	54.5	37.7	6.5
	제작사 팀별 계약		5	.0	80.0	20.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63	1.6	50.8	39.7	7.9
	구 두 계 약		41	.0	46.3	51.2	2.4
소 속 사 무	소 속 사 있 음		81	1.2	50.6	43.2	4.9
	소 속 사 없 음		23	.0	43.5	47.8	8.7

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에 있어서는 체불된 적이 없었다가 74.0%, 체불된 적이 있었다가 26.0%(자주 있었다 4.8% + 가끔 있었다 21.2%)로 나타나, 실태조사에 참여한 독립PD 10명 중 2명 정도(26.0%)가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104).
-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에 있어서 자주 있었다는 응답은 여성(9.5%), 40대(12.0%),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7.7%),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구두 계약(9.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끔 있었다는 응답은 여성(28.6%), 30대(25.8%), 제작관련 활동 3~5년(27.3%),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서면 계약(2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은 남성(77.1%), 20대(81.3%),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77.8%),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8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33〉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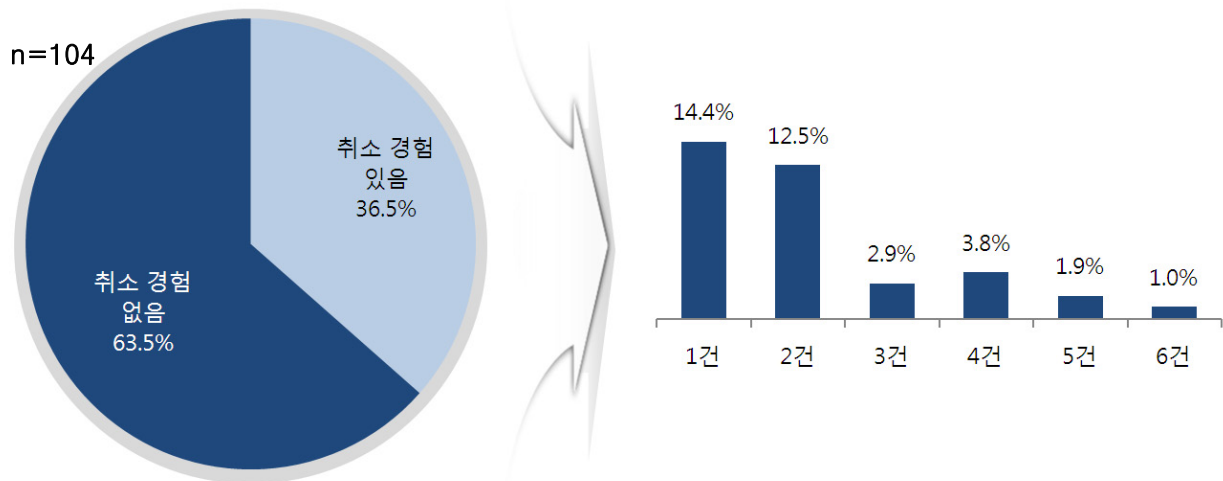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자주 있었다	가끔 있었다	없었다
전 체		104	4.8	21.2	74.0
성 별	남 성	83	3.6	19.3	77.1
	여 성	21	9.5	28.6	61.9
연 령 별	2 0 대	16	.0	18.8	81.3
	3 0 대	62	3.2	25.8	71.0
	4 0 대	25	12.0	12.0	76.0
	5 0 대 이 상	1	.0	.0	10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0	40.0	60.0
	3 ~ 5 년 미 만	11	.0	27.3	72.7
	5 ~ 1 0 년 미 만	36	2.8	19.4	77.8
	1 0 년 이 상	52	7.7	19.2	73.1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13.3	20.0	66.7
	방송사 팀별 계약	7	14.3	42.9	42.9
	제작사 개별 계약	77	2.6	19.5	77.9
	제작사 팀별 계약	5	.0	20.0	80.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63	1.6	23.8	74.6
	구 두 계 약	41	9.8	17.1	73.2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6.2	22.2	71.6
	소 속 사 없 음	23	.0	17.4	82.6



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에 있어서는 취소 경험 없다가 63.5%, 취소 경험 있다가 36.5%로 실태조사에 참여한 독립PD 10명 중 3명 정도(36.5%)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104).
- 실태조사에 참여한 독립PD의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빈도를 살펴 보면, 1건이 1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건(12.5%), 4건(3.8%), 3건(2.9%), 5건(1.9%), 6건(1.0%) 순을 보였음(n=104).

〈그림 3-4-8〉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표 3-4-34〉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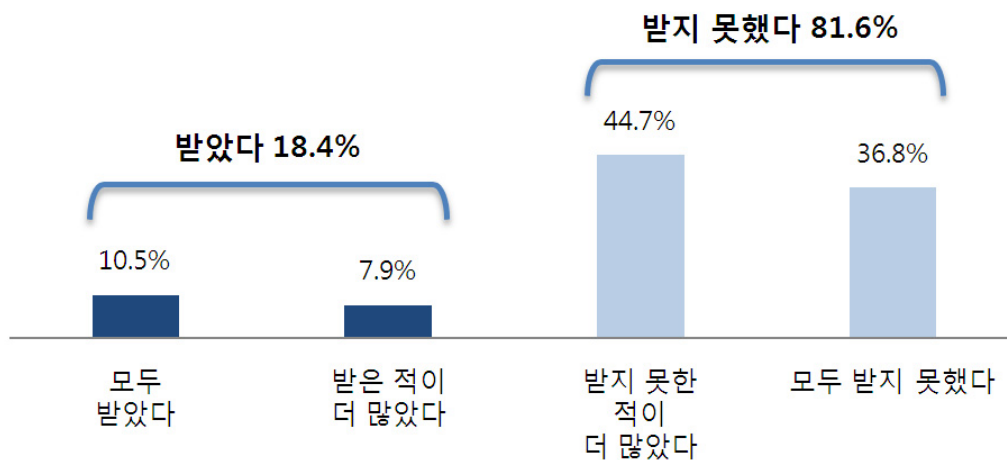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취소경험 없음
성 별	전 체		104	14.4	12.5	2.9	3.8	1.9	1.0	63.5
	남	성	83	13.3	13.3	3.6	3.6	2.4	1.2	62.7
	여	성	21	19.0	9.5	.0	4.8	.0	.0	66.7
연 령 별	20대	대	16	.0	31.3	.0	.0	.0	.0	68.8
	30대	대	62	21.0	9.7	3.2	4.8	3.2	1.6	56.5
	40대	대	25	8.0	8.0	4.0	4.0	.0	.0	76.0
	50대 이상	대	1	.0	.0	.0	.0	.0	.0	100.0
	1 ~ 3년 미만	만	5	.0	20.0	.0	.0	.0	.0	80.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3 ~ 5년 미만	만	11	9.1	36.4	.0	.0	.0	.0	54.5
	5 ~ 10년 미만	만	36	22.2	8.3	5.6	.0	2.8	2.8	58.3
	10년 이상	만	52	11.5	9.6	1.9	7.7	1.9	.0	67.3
계 약 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방	15	33.3	20.0	.0	13.3	.0	.0	33.3
	방송사 팀별 계약	방	7	14.3	14.3	14.3	.0	.0	.0	57.1
	제작사 개별 계약	제	77	10.4	11.7	2.6	2.6	2.6	1.3	68.8
	제작사 팀별 계약	제	5	20.0	.0	.0	.0	.0	.0	80.0
계 약 형태	서면 계약	서	63	11.1	12.7	4.8	3.2	3.2	.0	65.1
	구두 계약	구	41	19.5	12.2	.0	4.9	.0	2.4	61.0
소 속 사 유 무	소속사 있음	소	81	13.6	9.9	3.7	3.7	2.5	1.2	65.4
	소속사 없음	소	23	17.4	21.7	.0	4.3	.0	.0	56.5

4-1)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이 있다는 독립PD(n=38)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았다가 4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두 받지 못했다(36.8%), 모두 받았다(10.5%), 받은 적이 더 많았다(7.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9〉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N=38



〈표 3-4-35〉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대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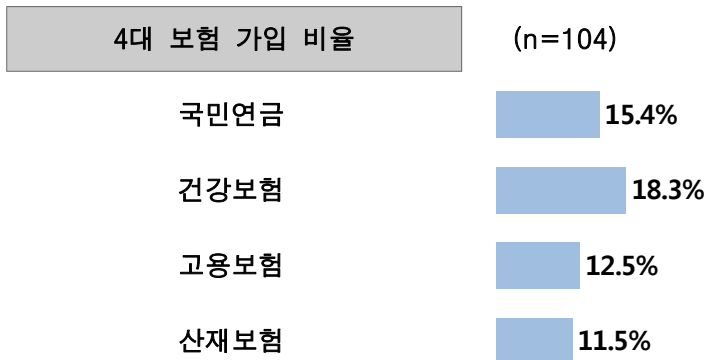
구 분 (단위:%)			표본수 (n)	모두 받았다	받은 적이 더 많았다	받지 못한 적이 더 많았다	모두 받지 못했다
전 체			38	10.5	7.9	44.7	36.8
성 별	남	성	31	9.7	6.5	45.2	38.7
	여	성	7	14.3	14.3	42.9	28.6
연 령 별	20	대	5	.0	20.0	40.0	40.0
	30	대	27	14.8	3.7	51.9	29.6
	40	대	6	.0	16.7	16.7	66.7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1	.0	.0	100.0	.0
	3 ~ 5 년 미 만		5	20.0	20.0	20.0	40.0
	5 ~ 10 년 미 만		15	13.3	6.7	60.0	20.0
	10 년 이 상		17	5.9	5.9	35.3	52.9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0	20.0	10.0	30.0	40.0
	방송사 팀별 계약		3	.0	33.3	.0	66.7
	제작사 개별 계약		24	8.3	.0	58.3	33.3
	제작사 팀별 계약		1	.0	100.0	.0	.0
계 약 태	서 면 계 약		22	9.1	13.6	50.0	27.3
	구 두 계 약		16	12.5	.0	37.5	50.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음		28	10.7	3.6	50.0	35.7
	소 속 사 없음		10	10.0	20.0	30.0	40.0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독립PD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1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15.4%), 고용보험(12.5%), 산재보험(11.5%) 순을 보였음(n=104).

〈그림 3-4-10〉 4대 보험 가입 여부



〈표 3-4-36〉 4대 보험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국민연금	104	15.4	82.7	1.9
건강보험	104	18.3	79.8	1.9
고용보험	104	12.5	81.7	5.8
산재보험	104	11.5	79.8	8.7

- 독립PD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있어서 가입이 15.4%, 미가입이 82.7%로 조사에 참여한 독립PD 10명 중 2명 정도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가입이 18.3%, 미가입이 79.8%로 조사에 참여한 독립PD 10명 중 2명 정도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가입이 12.5%, 미가입이 81.7%로 조사에 참여한 독립PD 10명 중 1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가입이 11.5%, 미가입이 79.8%로 조사에 참여한 독립PD 10명 중 1명 정도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립PD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있어서 가입이라는 응답은 남성(16.9%), 40대(28.0%),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1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미가입이라는 응답은 30대(88.7%),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86.1%),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9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37 〉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104	15.4	82.7	1.9	
성 별	남	성	83	16.9	83.1	.0	
	여	성	21	9.5	81.0	9.5	
연 령 별	2	0	대	16	12.5	75.0	12.5
	3	0	대	62	11.3	88.7	.0
	4	0	대	25	28.0	72.0	.0
	5	0	대 이 상	1	.0	100.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20.0	80.0	.0
	3	~ 5	년 미 만	11	9.1	72.7	18.2
	5	~ 10	년 미 만	36	13.9	86.1	.0
	10	년 이 상	52	17.3	82.7	.0	
계 약 기 관 체 결 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26.7	66.7	6.7	
	방송사 팀별 계약		7	28.6	71.4	.0	
	제작사 개별 계약		77	13.0	87.0	.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80.0	20.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63	15.9	81.0	3.2	
	구	두 계 약	41	14.6	85.4	.0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19.8	79.0	1.2	
	소 속 사	없 음	23	.0	95.7	4.3	



- 독립PD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 가입이라는 응답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40대(24.0%), 제작관련 활동 5~10년 미만(22.2%),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2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미가입이라는 응답은 남성(81.9%), 30대(82.3%),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82.7%),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구두 계약(82.9%),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9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38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104	18.3	79.8	1.9	
성 별	남	성	83	18.1	81.9	.0	
	여	성	21	19.0	71.4	9.5	
연 령 별	2	0	대	16	12.5	75.0	12.5
	3	0	대	62	17.7	82.3	.0
	4	0	대	25	24.0	76.0	.0
	5	0	대 이 상	1	.0	100.0	.0
제 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20.0	80.0	.0
	3	~ 5	년 미 만	11	9.1	72.7	18.2
	5	~ 10	년 미 만	36	22.2	77.8	.0
	10	년 이 상	52	17.3	82.7	.0	
계 약기 관 체 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33.3	60.0	6.7	
	방송사 팀별 계약		7	28.6	71.4	.0	
	제작사 개별 계약		77	15.6	84.4	.0	
	제작사 팀별 계약		5	.0	80.0	20.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63	19.0	77.8	3.2	
	구	두 계 약	41	17.1	82.9	.0	
소 속 사 무	소 속 사	있 음	81	23.5	75.3	1.2	
	소 속 사	없 음	23	.0	95.7	4.3	

- 독립PD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 가입이라는 응답은 40대(24.0%),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서면 계약(15.9%),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16.0%)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미가입이라는 응답은 남성(84.3%), 30대(87.1%),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84.6%),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구두 계약(85.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9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39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104	12.5	81.7	5.8
성 별	남 성	83	13.3	84.3	2.4
	여 성	21	9.5	71.4	19.0
연 령 별	2 0 대	16	12.5	75.0	12.5
	3 0 대	62	8.1	87.1	4.8
	4 0 대	25	24.0	72.0	4.0
	5 0 대 이 상	1	.0	100.0	.0
제 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20.0	80.0	.0
	3 ~ 5 년 미 만	11	9.1	72.7	18.2
	5 ~ 1 0 년 미 만	36	13.9	80.6	5.6
	1 0 년 이 상	52	11.5	84.6	3.8
계 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20.0	66.7	13.3
	방송사 팀별 계약	7	28.6	71.4	.0
	제작사 개별 계약	77	10.4	85.7	3.9
	제작사 팀별 계약	5	.0	80.0	20.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63	15.9	79.4	4.8
	구 두 계 약	41	7.3	85.4	7.3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16.0	79.0	4.9
	소 속 사 없 음	23	.0	91.3	8.7



- 독립PD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 가입이라는 응답은 40대(20.0%),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서면 계약(14.3%),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있음(14.8%)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미가입이라는 응답은 남성(83.1%), 30대(87.1%),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82.7%),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구두 계약(85.4%),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8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40 〉 산재보험 가입 여부

구 분 (단위:%)			표본수 (n)	가입	미가입	잘 모름	
전 체			104	11.5	79.8	8.7	
성 별	남	성	83	12.0	83.1	4.8	
	여	성	21	9.5	66.7	23.8	
연 령 별	2	0	대	16	12.5	68.8	18.8
	3	0	대	62	8.1	87.1	4.8
	4	0	대	25	20.0	68.0	12.0
	5	0	대 이 상	1	.0	100.0	.0
제 작관 련 활 동 기 간	1 ~ 3 년 미 만		5	20.0	80.0	.0	
	3 ~ 5 년 미 만		11	9.1	63.6	27.3	
	5 ~ 1 0 년 미 만		36	13.9	80.6	5.6	
	1 0 년 이 상		52	9.6	82.7	7.7	
계 약 기 관 체 결 방 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20.0	66.7	13.3	
	방송사 팀별 계약		7	14.3	71.4	14.3	
	제작사 개별 계약		77	10.4	83.1	6.5	
	제작사 팀별 계약		5	.0	80.0	20.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63	14.3	76.2	9.5	
	구 두 계 약		41	7.3	85.4	7.3	
소 속 사 무	소 속 사 있 음		81	14.8	77.8	7.4	
	소 속 사 없 음		23	.0	87.0	13.0	

6)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인격 무시 발언 등의 인권 침해 경험을 받았는지에 대해 인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있다가 39.4%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제작 스태프 10명 중 4명(39.4%)은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104).
- 업무와 관련한 인권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인격 무시 발언이 6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욕설(34.1%), 성희롱/성추행(2.4%), 기타(2.4%) 순을 보였음(n=104).

〈 표 3-4-41 〉 최근 1년간 업무 관련 인권침해 경험

구 분 (단위:%)		표본수 (n)	인격 무시 발언	욕설	성희롱 성추행	기타
전 체		41	61.0	34.1	2.4	2.4
성 별	남 성	32	59.4	37.5	.0	3.1
	여 성	9	66.7	22.2	11.1	.0
연 령 별	2 0 대	8	75.0	25.0	.0	.0
	3 0 대	27	55.6	37.0	3.7	3.7
	4 0 대	6	66.7	33.3	.0	.0
제 작 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2	50.0	50.0	.0	.0
	3 ~ 5 년 미 만	6	83.3	16.7	.0	.0
	5 ~ 1 0 년 미 만	15	66.7	26.7	6.7	.0
	1 0 년 이 상	18	50.0	44.4	.0	5.6
계 약 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7	85.7	.0	.0	14.3
	방송사 팀별 계약	5	60.0	40.0	.0	.0
	제작사 개별 계약	26	53.8	42.3	3.8	.0
	제작사 팀별 계약	3	66.7	33.3	.0	.0
계 형 약 태	서 면 계 약	31	67.7	29.0	3.2	.0
	구 두 계 약	10	40.0	50.0	.0	10.0
소 속 사 무	소 속 사 있 음	32	59.4	34.4	3.1	3.1
	소 속 사 없 음	9	66.7	33.3	.0	.0



7)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장시간 노동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보수(36.5%), 4대 보험 및 복지제도 안전망 미흡(32.7%), 부당한 계약(18.3%), 보수(임금) 체불(3.8%), 인격 무시 및 인권침해(1.9%) 순을 보였음(n=104, 중복응답).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시간 노동이라는 응답은 20대(62.5%), 제작관련 활동 3~5년 미만(54.5%),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구두 계약(43.9%),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43.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낮은 보수라는 응답은 남성(37.3%), 20대(37.5%), 제작관련 활동 10년 이상(44.2%),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서면 계약(38.1%),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43.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4대보험 등 복지제도 안전망 미흡이라는 응답은 30대(37.1%), 제작관련 활동 5~10년(47.2%), 소속사 유무에 있어서는 소속사 없음(3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42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장시간 노동	낮은 보수	보수 (임금) 체불	4대보험 복지제도 안전망 미흡	부당한 계약	인격 무시 인권 침해	기타
전 체		104	39.4	36.5	3.8	32.7	18.3	1.9	2.9
성 별	남 성	83	39.8	37.3	3.6	32.5	19.3	2.4	3.6
	여 성	21	38.1	33.3	4.8	33.3	14.3	.0	.0
연 령 별	2 0 대	16	62.5	37.5	6.3	25.0	12.5	.0	.0
	3 0 대	62	40.3	35.5	3.2	37.1	19.4	.0	.0
	4 0 대	25	24.0	36.0	4.0	28.0	20.0	8.0	12.0
	5 0 대 이 상	1	.0	100.0	.0	.0	.0	.0	.0
제 작관련 활동기간	1 ~ 3 년 미 만	5	40.0	40.0	.0	.0	40.0	.0	.0
	3 ~ 5 년 미 만	11	54.5	36.4	9.1	45.5	9.1	.0	.0
	5 ~ 1 0 년 미 만	36	41.7	25.0	2.8	47.2	13.9	2.8	.0
	1 0 년 이 상	52	34.6	44.2	3.8	23.1	21.2	1.9	5.8
계 약기 관 체 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46.7	33.3	.0	26.7	20.0	6.7	.0
	방송사 팀별 계약	7	28.6	42.9	.0	.0	42.9	.0	.0
	제작사 개별 계약	77	39.0	39.0	5.2	35.1	15.6	1.3	3.9
	제작사 팀별 계약	5	40.0	.0	.0	60.0	20.0	.0	.0
계 약 형 태	서 면 계 약	63	36.5	38.1	6.3	33.3	17.5	1.6	1.6
	구 두 계 약	41	43.9	34.1	.0	31.7	19.5	2.4	4.9
소 속 사 유 무	소 속 사 있 음	81	38.3	34.6	2.5	30.9	18.5	2.5	3.7
	소 속 사 없 음	23	43.5	43.5	8.7	39.1	17.4	.0	.0

8)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제도(중복응답)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제도로 4대 보험 및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40.4%),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및 보수체계의 합리화(39.4%),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및 강제화(31.7%), 노동/인권 환경 관련 정기 실태 파악(11.5%), 인권 침해 방지 및 감시/감독 강화(5.8%), 임금체불 방지 감시/감독 강화(3.8%) 등의 순을 보였음(n=104).

- 4대 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응답은 여성(71.4%), 20대(56.3%)에서, 장시간 노동방지 위한 감시/감독 강화라는 응답은 남성(43.4%), 20대(68.8%)에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라는 응답은 여성(47.6%), 30대(4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43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제도(중복응답)

구 분 (단위:%)			표본수 (n)	장시간 노동 방지 위한 감시 감독 강화	최저 임금 가이드 라인, 보수 체계의 합리화	임 금 체 불 방 지 감 시 감 독 강 화	4대 보험, 실업 부조 사회 안전망 확충	표준 계약서 적용 확대 및 강제화	인권 침해 방지 감 시 감 독 강 화	노동, 인권 환경 관련 정기 실태 파악	기타
전 체			104	40.4	39.4	3.8	51.0	31.7	5.8	11.5	12.5
성 별	남	성	83	43.4	37.3	3.6	45.8	32.5	7.2	13.3	13.3
	여	성	21	28.6	47.6	4.8	71.4	28.6	.0	4.8	9.5
연 령 별	20	대	16	68.8	31.3	6.3	56.3	12.5	.0	6.3	18.8
	30	대	62	40.3	45.2	3.2	53.2	38.7	4.8	4.8	6.5
	40	대	25	24.0	28.0	4.0	44.0	28.0	8.0	32.0	24.0
	50	대 이상	1	.0	100.0	.0	.0	.0	100.0	.0	.0
제작관련 활동기간	1 ~ 3년	미만	5	60.0	40.0	.0	20.0	60.0	.0	20.0	.0
	3 ~ 5년	미만	11	54.5	9.1	9.1	90.9	9.1	.0	.0	27.3
	5 ~ 10년	미만	36	41.7	27.8	2.8	72.2	27.8	5.6	5.6	11.1
	10년	이상	52	34.6	53.8	3.8	30.8	36.5	7.7	17.3	11.5
계약기관 체결방식	방송사	개별 계약	15	46.7	13.3	.0	60.0	26.7	13.3	.0	33.3
	방송사	팀별 계약	7	42.9	57.1	.0	14.3	71.4	.0	.0	14.3
	제작사	개별 계약	77	39.0	45.5	5.2	50.6	27.3	5.2	15.6	7.8
	제작사	팀별 계약	5	40.0	.0	.0	80.0	60.0	.0	.0	20.0
계약 형태	서면	계약	63	42.9	36.5	6.3	52.4	28.6	4.8	9.5	14.3
	구두	계약	41	36.6	43.9	.0	48.8	36.6	7.3	14.6	9.8
소속사 유무	소속사	있음	81	42.0	38.3	2.5	48.1	33.3	6.2	13.6	12.3
	소속사	없음	23	34.8	43.5	8.7	60.9	26.1	4.3	4.3	13.0



5.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방송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표준계약서 법적 의무화/강제화, 저작권 인정, 제작비 현실화 및 독립PD의 제작 환경 개선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44 〉 방송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표준계약서의 법적 의무화/강제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 저작권에 대한 인정, 권리보호가 필요해요 💡 너무 터무니없는 제작비에 대한 현실화가 있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법적 의무화/강제화(14명)	“갑질하지 않고, 말도 안 되게 횡포를 부리거나 하지 않게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부터 불법으로 간주해야하고 계약서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함” “계약서 없이는 일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함, 증빙이 없으니 돈을 달라할 때 눈치 보이고 심지어 사전제작 폐이는 받지도 못한다” “구두계약이 아닌 문서상의 계약을 진행하였으면 하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해를 보지 않은 제도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방송사나 공공 기관이 영상 관련 발주를 줄때 계약서작성과 임금 지불 사항 체크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표준계약서 모든 방송사/제작사와 독립피디들/스태프들 간의 계약 관계에서 잘 적용이 되도록 꼭 의무화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적용을 강제하는 룰을 만들지 않는다면, 갑의 위치에 있는 방송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 하지 않음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 저작권 인정/보호(9명)	“현재 방송사가 저작권 모두를 갖는 방식을 바꿔 저작권을 공유 혹은 제작자에게 귀속하게 해야 한다” “저작권을 방송사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제작팀에 합당한 제작비 지급과 콘텐츠 저작권 일임 혹은 공유 해야한다”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재방송출료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 PD의 저작권 보장 (지적재산권 보장)”
● 제작비 현실화(5명)	“제작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제작비를 현실화 해야 한다” “제작 업무에 있어 방송사 권한을 남용하여 제작비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된다” “터무니 없는 제작비에 대한 현실화”

● 독립 피디의 제작환경 개선(5명)

“근로 환경 중에서 고용의 불안정. 프로그램의 정규화보다 시즌제의 편성이 짧다 또한 독립PD들의 권리이행 부분에 있어 법조항 이해도와 법무 보조하는 기관이나 부서들의 정보와 활용이 적다”

“독립 피디의 제작 환경을 개선 해주었으면 한다”

“독립 피디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작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시사 및 수정제작진을 고려하지 않은 미팅장소 및 시간은 고쳐져야 한다”

● 표준계약서 홍보(4명)

“계약서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홍보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내용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먼저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 이곳에서 일한지 10년이 되었지만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방송인들이 많음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례도 들어본 적이 없음”

“도급 피디로 방송사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이것이 표준계약서인지 잘 모름 계약사인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이행했을 뿐 제작인력 보호를 위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 정당한 근무시간 대비 급여 지급(3명)

“과징업무 제한 및 추가수당지급을 해야된다”

“급여의 투명성과 정당한 근무시간 대비 급여, 일주일간 한숨도 못자고 일하는데 급여는 고등학생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기본급 인상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임금이 필요하다”

● 독립PD 보호 할 수 있는 정책 필요(2명)

“미수금 회수함에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독립제작사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방송사의 슈퍼 갑질을 제지 할 수 있을만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 기타(2명)

“피디의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작하기로 약속한 회차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독립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독립제작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표준계약서 법적 의무화/강제화, 근무시간에 따른 정당한 급여 지급, 독립PD의 복지 및 제작여건 개선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표 3-4-45 〉 독립제작사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우선 추진 개선 사항

	💡 표준계약서의 법적 의무화/강제화가 필요합니다 💡 근무시간에 따른 정당한 급여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 독립PD의 복지 및 제작여건 개선이 필요해요
● 표준계약서 법적 의무화/강제화(12명)	“거의 갑질화 되어있는 제작사 계약서를 쓰는 경우 제작사 사업자등록 취소 조치 같은 강력한 규율이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문화 개선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를 의무화해야 한다” “독립제작사와의 계약서를 썼다는 일은 이 일을 시작하고 들어본 적도 목격한 적도 없다” “방송국도 독립제작사도 투명하게 표준계약서를 밝히고 독립피디들의 계약 또한 정식으로 양식을 갖춰 고용해야 한다” “안정적인 페이 지급 구조 마련 및 명확한 계약서 작성 시에만 계약체결 가능하도록 방송의무규정 마련해야한다” “임금체불 아직 만연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좋겠다” “제작사는 피디의 편에 서야지 그 와중에 자기 배만 불리려하니 독립피디만 죽어난다 정당한 계약서를 통한 계약과 그 계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 필요하다”
● 근무시간에 따른 정당한 급여 지급(9명)	“계약서작성의 의무화 급여 보존. 급여조차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근로시간 준수 및 초과근무 시 합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인상, 근로시간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임금 및 최저 시급 보장 임금 미지급 안 되는 것 밀려서 지급하는 것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한다” “서로 일한만큼 정산도 깔끔하게! 서로 요구할 것은 확실히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게!” “야간업무 시 합당한 급여를 주고, 월급여도 미루지 않고 제때 주었으면 하고, 4대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 등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독립피디의 제작 환경 개선(5명)	“최소한의 근로 복지가 보장 되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고용보장. 근로조건 개선” “근로환경 개선 근로환경의 법무에 따른 정보의 이해 활용하는 부서 또는 기관, 법무사 등이 독립PD협회나 독립제작사에 연계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 볼 뿐만 아니라 독립PD들에 세미나나 강연도 필연이라 생각한다” “퇴직금 지급 의무화해주십시오 0.1%의 사람들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 표준계약서 홍보(3명)

“독립제작사의 경영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많으니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독립제작사도 스태프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강제적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 이곳에서 일 한지 10년이 되었지만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방송인들이 많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례도 들어 본 적 없다”

“제대로 된 내용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 보험 적용 필요 (2명)

“보험적용이 필요하다

“최소 4대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 저작권 인정(1명)

“창작자의 저작권의 보호 및 재방송출료의 정산해주세요”

● 제작비 현실화(1명)

“방송사의 터무니없는 제작비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지고 나면 제작여건(최저 임금, 과중 업무, 안전불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독립PD 보호 할 수 있는 정책 필요(1명)

“방송관련 종사자들도 표준 근로자들과 같은 법률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타(2명)

“독립피디들과의 소통의 장을 필요. 공개 카톡 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된다”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3)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준계약서 법적 의무화/강제화, 표준계약서 미준수의 경우 벌금/과세 등 불이익 처벌, 저작권 인정(공유)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46〉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표준계약서의 법적 의무화(강제화)가 필요합니다 💡 표준계약서 강제화를 통해 미준수의 경우 벌금/과세 등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 저작권에 대한 인정(공유)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 표준계약서 법적 의무화(8명)	“계약서를 안 쓰면, 자동으로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외주제작사들이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지 않는 이상 표준계약서는 정치인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만 남을 것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쳇말로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만든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이행을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피해사례들이 많고 그 내용도 그것이 표준인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서가 오히려 제작인력의 노동력만 더 제공케 하는 정당성을 주는 인상을 받는다”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많은 환경에서, 필히 계약서를 써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 지키지 않을 시 패널티 적용하고, 신고 들어올시 또 패널티 적용 등 실질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 표준계약서 미준수의 경우 벌금/과세 등 불이익을 줘야(6명)	“계약서가 없는 제작의 경우 방송사에 벌금 및 경고조치 해야된다” “방송국 및 제작사에서 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 징수 필요하다” “표준계약서를 강제화해야한다”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방송사나 제작사에게 크게 불이익을 줘야한다”
● 저작권 인정(4명)	“독립PD의 저작권 인정과 2차 수익의 재분배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저작권이 공유되어야 한다” “제작PD들에게도 저작권을 주어야 한다” “창작자의 저작권의 보호 및 재방송출료의 정산도 해주어야 한다”

● 표준계약서 홍보(3명)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pd에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한다”

“제대로 된 내용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처음 시작하는 조연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계약문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 계약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적시와 언급(2명)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의 원칙에 입각해서,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표준계약서 상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적시와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임금도 구체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계약서 작성 후 제대로 활용되는지 후속 조치 필요(1명)

“계약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제대로 활용되는지 후속조치도 필요한 것 같다”

● 기타(2명)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행하는 방송사나 수혜자인 스텝들에게도 강연과 관련 정보 등을 열람하는 사이트 등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력 착취를 막고, 열심히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제 1 절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제 2 절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방안

제 4 장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제 1 절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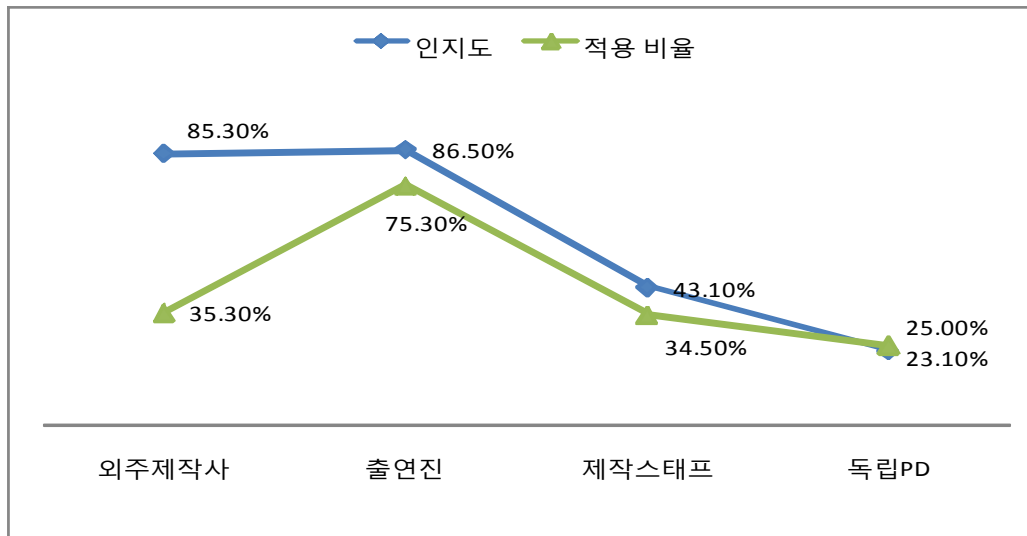
-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조사방법론상의 한계
 - 본 보고서를 통해 시행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1) 독립제작사 102개 업체 2) 출연진(가수, 배우 등) 178명 3) 제작 스태프 58명 4) 독립PD 104명 이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조사되어, 모집단을 통해 대표성 있는 표본이 추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화된 해석에 주의 필요
 - 또한, 표준계약서 작성 주체 중 하나인 방송사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간 응답의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다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시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음.

□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및 활용도 차이

- 표준계약서 인지도와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는 출연자이고 제작스태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용 비율이 낮음. 외주제작사의 경우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적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외주제작사의 경우, 표준계약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적용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방송사-외주제작사간 표준계약서가 두 당사자 간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방송사가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외주제작사의 경우, 규모가 작거나 비드라마 장르 제작사에 비해 규모가 클수록(종사자수 10인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드라마 장르일 경우 표준계약서 인지도 및 적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1〉 대상별 표준계약서 인지도 및 적용 비율



* 외주제작사(n=102)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
* 출연자(n=178) :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
* 제작스태프(n=58), 독립PD(n=104)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응답 기준
*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방송사와의 계약 기준(일부 적용 포함)

※ 출연진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 참여자 중 비교적 규모가 있는 일부 소속사 출연진의 조사 참여가 있었고, 가수/배우 등 출연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까다로워 추가적으로 실시한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자 법정교육 현장방문을 통한 기획업자 대상의 간접 조사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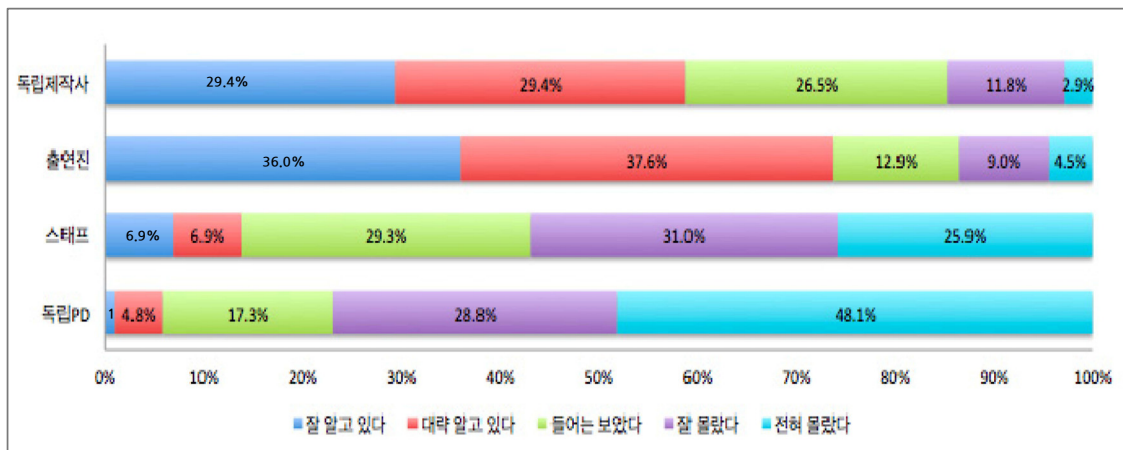
- 특히, 방송 제작 현장 근무자인 제작 스태프와 독립PD의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방송 제작 환경과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조명, 음향, 작가 등의 제작 스태프와 독립PD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 형태의 프로젝트 사업별로 단기간 종사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로 참여해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대체인력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약 절차나 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력 차이,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창구 유무 등 때문이라고 추정됨.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의 일방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표준계약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표준계약서의 적용 여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 즉, 드라마제작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 방송실연자협회 등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제작 스태프의 경우는 이를 대변할 단체가 마땅치 않음.

- 따라서 제작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 및 활동 지원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

- 표준계약서 이해당사자들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독립제작사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30% 내외
 - 출연진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36% 내외
 - 스태프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7% 내외
 - 독립PD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1% 내외
- 특히, 스태프나 독립PD의 경우 매우 저조한 표준계약서 이해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제작 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시행(2014. 8.) 이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나, 제작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을 함의함.

〈그림 4-1-2〉 응답 대상별 표준계약서 세부 인지도



* 외주제작사(n=102)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

* 출연자(n=178) :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

* 제작스태프(n=58), 독립PD(n=104)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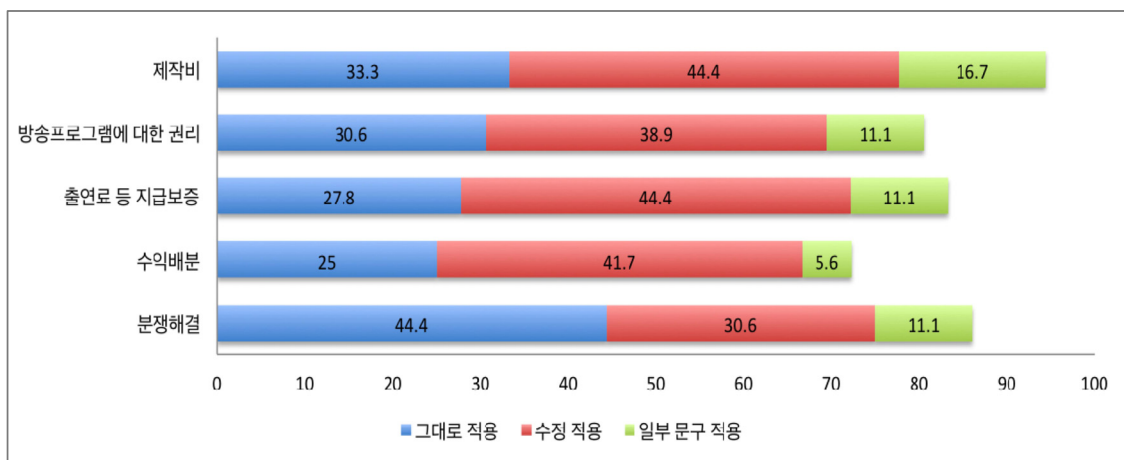


□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적용 정도

- 일단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필수조항 적용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보다는 수정 적용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조항 적용 실태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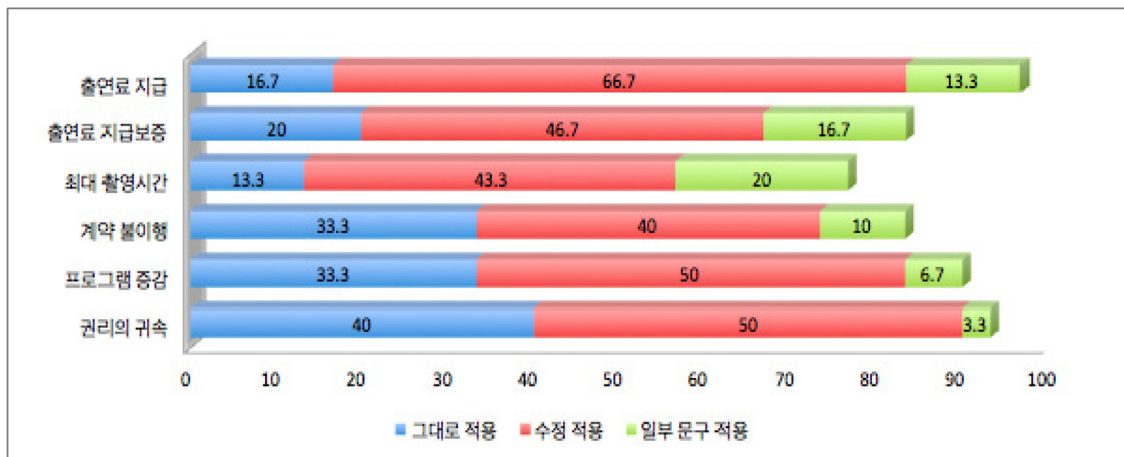
※ 표준계약서 적용 관련 응답 수가 적은 경우, 통계적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경향성 파악에 활용

〈그림 4-1-3〉 외주제작사-방송사 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외주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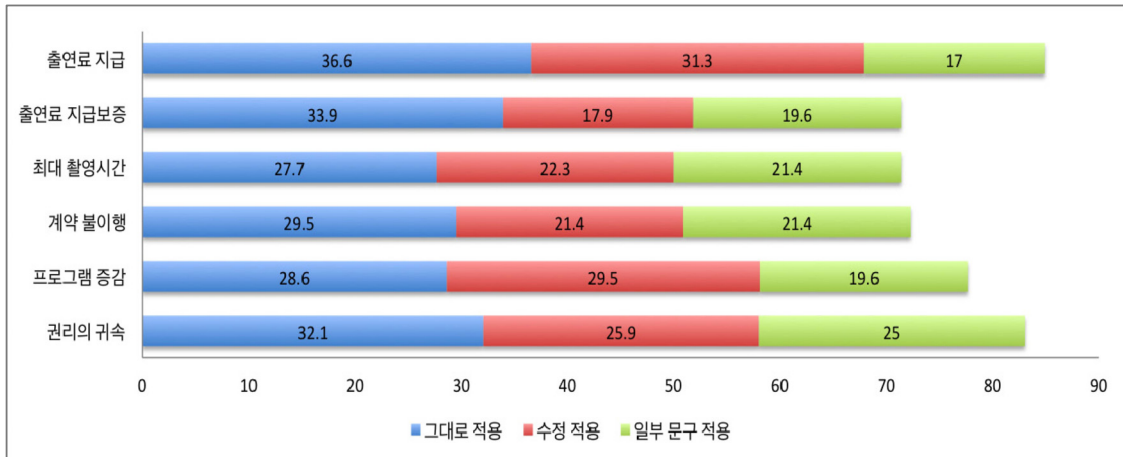
* 외주제작사(n=36)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단위: %)

〈그림 4-1-4〉 외주제작사-출연진 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외주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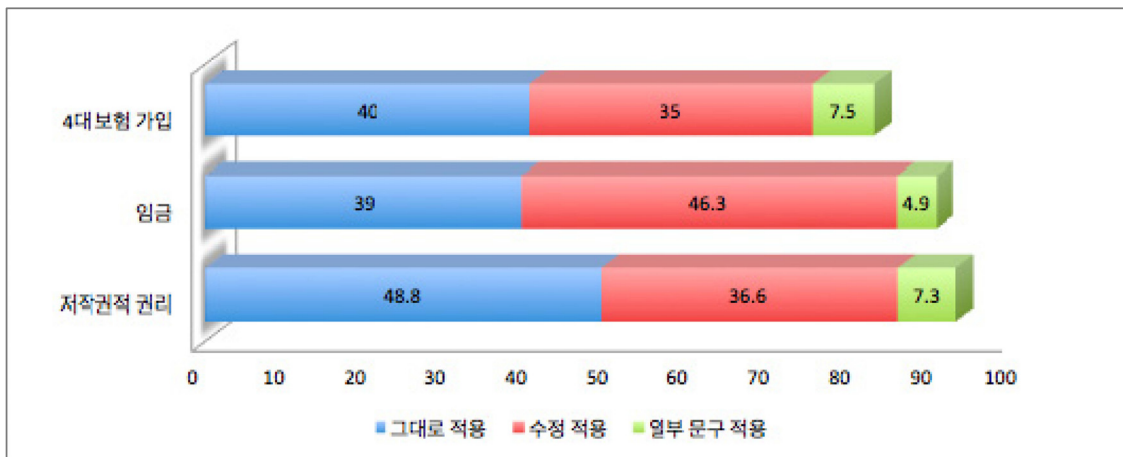
* 외주제작사(n=30) : 출연진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단위: %)

〈그림 4-1-5〉 출연진-방송사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출연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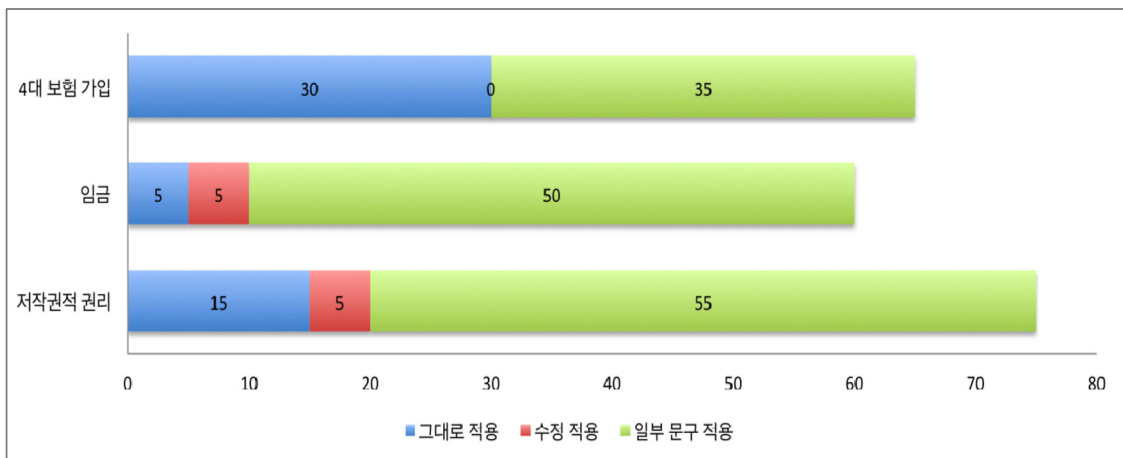
* 출연진(n=134) :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단위: %)

〈그림 4-1-6〉 외주제작사-스태프 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외주사 응답)



* 외주제작사(n=41) : 스태프 표준계약서 응답 기준(단위: %)

〈그림 4-1-7〉 스태프-방송사 근로표준계약서 조항 적용 정도(스태프 응답)



* 제작스태프(n=20) : 방송사와의 표준근로계약서 응답 기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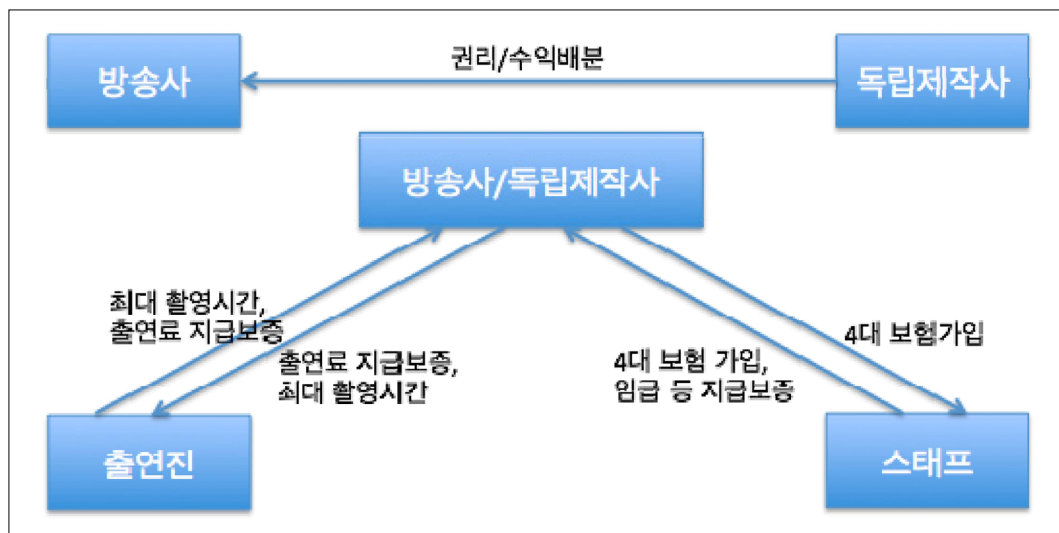


□ 표준계약서 적용의 핵심 쟁점(적용이 어려운 항목)

○ 대상별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중 외주제작사가 상대방과의 계약 시 적용하기 힘들다는 1순위 응답과 출연진 및 스태프가 방송사와 외주사와의 계약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1순위 응답을 교차 도시화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핵심 항목을 도출해보면, 이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표준계약서 활성화에 핵심 사안임을 유추할 수 있음.

- 제작사(방송사)와 출연진간 핵심 쟁점은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보증
- 제작사(방송사)와 스태프간 핵심 쟁점은 4대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보증
- 제작사와 방송사간 핵심 쟁점은 권리 및 수익배분

〈그림 4-1-8〉 각 대상별 적용이 어려운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한 상위 응답



○ 교차된 응답이 유사한 카테고리라고 보이고 있다는 점은 방송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얹힌 핵심 쟁점임을 의미함.

- 현 시점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은 계약상대자 어느 한 쪽이 기존 관행에서의 이득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송분야 관련자들의 상생을 위해서는 결국 강자의 배려를 통한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여건 조성 및 중재가 바로 정부의 핵심적 역할일 것으로 보임.

□ 기존 계약 관행의 유지

- 방송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서의 사용과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는 응답이 독립제작사, 출연진, 독립PD에서 대체로 60~70% 가량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독립제작사 응답 기준) 방송사 계약시 방송사 자체 계약서 관행 때문에 69.7%, 출연진 계약시 제작사 자체 계약서(33.3%) 및 구두 계약(22.2%) 관행 때문에, 제작 스태프 계약시 구두 계약(38.3%), 제작사 자체 계약서(36.7%) 관행 때문으로 나타남.
 - 단, 제작 스태프의 경우, 방송사 및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다는 응답(각 36.8%, 22.2%), 방송사 및 제작사에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다는 응답(각 26.3%, 30.6%)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제작 스태프들에 대한 공식적 계약 관행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제작사나 방송사와의 계약에 있어 정당한 요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유추됨.

□ 제작 스태프 및 독립PD 제작 환경 개선 강화 필요성

- 방송분야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및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특히 제작 스태프의 경우 실질적 제작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방송 제작 환경과 노동 시장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조명, 음향, 작가 등의 제작 스태프와 보조출연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 형태의 다수 프로젝트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여건과 복지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독립PD 포함 제작 스태프의 4명 중 1명 정도인 약 25.0%가 1년에 10건 이상 다수의 단기 사업별 프로젝트에 참여
 - ※ 제작 스태프의 경우 10건 이상이 24.1%, 독립PD의 경우 23.1%를 차지하고 있어 제작 스태프와 독립PD 모두 4명 중 1명 정도는 1년에 10건 이상 단기 사업별 프로젝트 참여
 - 최근 1년간 보수 체불 경험은 제작 스태프의 경우 10명 중 4명(43.1%), 독립PD의 경우 4명 중 1명(26.0%)가 보수 체불 경험을 갖고 있음.
 - 제작 스태프와 독립PD 모두 10명 중 3명 정도가 최근 1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취소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취소 시 일한만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제작 스태프의 경우에는 조사 참여자의 약 50.0% 정도가 4대 보험에 가입된 반면, 독립PD의 경우에는 조사 참여자의 약 14% 정도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에서의 문제점으로 제작 스태프는 낮은 보수(37.9%), 장시간 노동(27.6%), 임금 체불(17.2%) 등을 높게 꼽았으며, 독립PD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39.4%), 낮은 보수(36.5%), 4대 보험/사회안전망 미흡(32.7%) 등을 높게 꼽았음.
- 제작스태프 및 독립PD 10명 중 4명(각각 36.2%, 39.2%)는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인격 무시 발언, 욕설 등 인격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

□ 표준계약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방형 응답으로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제작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 마련’, ‘홍보 및 교육’, ‘표준계약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개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 특히, 방송 제작 시장에서 ‘을’의 특성을 강하게 보인 제작 스태프, 독립PD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화/의무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제작 스태프 응답자 58명 중 31.0%, 독립PD 응답자 104명 중 40.4%).
-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방송콘텐츠산업 시장에서 방송사가 여전히 지니는 우월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표준계약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제 2 절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방안

- 앞 장에서 제기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체계의 구축

- 표준계약서 이해당사자들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반적 인지율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이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에 대한 집행 요구에 앞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임.
 - 특히 표준계약서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소규모 독립제작사(비드라마), 제작 스태프에 대한 우선적 표준계약서 홍보 활동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수행

- 정기적인 적용 협조 요청(문서발송 시행 등)
- 유관단체 홈페이지 게시, 안내 책자, SNS 등 다면적 미디어 활용 캠페인 수행
- 지상파 방송사·케이블방송협회, 제작사 협회 등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안내장 발송
 - 독립제작사 신고·변경 시 안내장 발송

■ 방송분야 관계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방송사, 독립제작사, 출연자, 스태프, 독립PD 등 관련 협단체 대상별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 워크숍 등 단체별 자체행사와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한 표준계약서 적용 독려·요청 및 설명회 개최

■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법정 교육 등 관련 교육시 표준계약서 교육 포함
- 방송영상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표준계약서 관련 교육 혹은 교과목 운영
 - 사이버 방송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등 관련 방송분야 인력 교육 시 표준계약서 교과 운영 추가



□ 표준계약서 적용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간접적으로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 미래부 등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방안 모색이 요구됨.

- 평가 관련 인센티브 : 방송사 평가 등에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경우 가점 부여, 외주 인정기준 적용 등
- 정부 지원사업 시 적용 의무화 : 문체부·미래부 등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시 의무적용 시행
- 비용 지원 인센티브 : 투·융자 관련 지원사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연계하여 가점 부여

□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달리 표준계약서의 법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은 표준계약서 시행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본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 의무화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표준계약서의 법제화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의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목표하기보다는, 방송 제작 환경 내 갑-을 간의 계약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하고 이를 강제화하는 하는 목표가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음.
- 다만, 방송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정부가 지나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의 의무사용 시행 등 강제력을 지닌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타당성 여부와 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취약 대상(제작 스태프 등) 보호 조항 강화

- 표준계약서에 방송분야 제작진들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 강화
- 장기간 노동 방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정기적 실태 파악 및 감시/감독 체계 확보
- 방송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인격 무시 발언, 욕설, 폭력, 성희롱/성추행 금지 등)과 교육 실시

□ 표준계약서의 지속적 내용 보완 개정

- 제작 거래에 있어서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표준계약서 도입된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제작현실과 괴리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작현실에서 수용가능한 범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용인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된 현실 거래상황과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표준계약서 내용도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제작·거래 현실에 맞게 검토·보완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제작현실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분은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제작현실이 변경될 때까지는 현실에 맞는 규정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제작여건의 차이가 반영된 다양하고 구분된 다양한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표준계약서 관련 무료 법률자문 시스템 마련

- 방송분야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검토 서비스 제공
 - 본 실태조사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있을 것 같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꺼린다는 응답이 나타난 바와 같이,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최대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통한 무료 법률자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합리적 계약을 돕고, 계약분쟁 해결을 돕는 중립적 기구 운영 필요
 - 방송제작 주체들의 계약을 돕고,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을 조율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 운영 필요
 - ※ 기존 콘진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활용 및 역할 강화 모색

□ 표준계약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강화와 이에 기초한 보완

- 독립제작사, 스태프, 독립PD, 출연진 등 방송분야 종사자들의 업무 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 요구 사항에 차이가 발견됨.
 - (독립제작사)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교육, 표준계약서 적용의 의무화/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출연진)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출연료 지급 보증, 엄격한 표준계약서 정책, 촬영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음.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 갑을 의식 개선, 강력한 제재 및 의무 활용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독립PD) 표준계약서 법적 의무화/강제화, 저작권 인정, 표준계약서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연구 활동 및 공청회 개최

-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연구 활동 및 공청회 수행 후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거시적 차원의 방송조직 간 수익 배분 문제(프로그램의 권리, 수익배분, 저작권, 표준제작비 등)와 방송 종사자들의 환경 개선 문제(4대 보험 지급, 임금지급 보증, 출연료 지급, 촬영 시간 등)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 연구 활동 및 공청회 개최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민주적 업계 문화 형성

- 갑을관계 속에서 표준계약서를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 극복과 민주적 업계 문화 구축 필요
 - 표준계약서 구성(변경) 및 표준계약서 작성시 외주제작업체, 독립PD, 출연진 등 약자의 발언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계 문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외주제작업체, 출연진, 제작 스태프, 독립PD 등이 속한 협회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 필요.
 - 정부 및 각 단체의 각종 캠페인 활동, 교육활동 전개가 지원될 필요가 있음.

■ 불공정한 외주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 마련

-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방송산업 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실태조사 응답자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아닌 방송사의 일방적인 제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저작권 권리의 일방적 양도, 비현실적 제작비 책정 등의 문제가 외주 거래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가져오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표준제작비 책정, 저작권 배분 문제 등 외주제작 관련한 해묵은 난제들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외주제도개선협의회(정부·방송사·제작사 등 참여) 지속적 개최를 통한 의견 조율이 요구됨.

〈표 4-1-1〉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의 한계 및 개선방안

구분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관련 문제점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율 저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설명회, 교육 활성화(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유통 등) → 소규모 비드라마 독립제작사, 제작 스태프 집중 홍보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	표준계약서 적용 비율이 표준계약서 인지 비율보다 적은 상황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평가 및 비용 인센티브 부여, 정부 제작지원시 의무화 → 방송사 평가 계량 반영 우선 시행, 외주 인정 기준 적용, 융자지원사업 등 재원 확보 관련 인센티브 부여, 정부 제작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적용
방송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침해금지 조항 명시	방송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성의 문제 제기(낮은 임금, 임금체불, 제작 취소시 대가없음의 문제)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정기적 노동 실태 파악, 국책방송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시행
	방송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 제기(인격무시, 욕설, 성추행 등)	제작현장의 인권보호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권침해 금지 조항의 명문화
	갑을관계 속 표준계약서 요청이 어려운 상황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각종 캠페인 활동, 교육활동을 통한 인식 제고)
실효성 확보 방안 구축	자체계약서, 구두계약 등 관습적/비공식적 계약 만연	현장 수용가능 범주에 대한 검토, 이에 기반하여 용인도를 점차 확대 → 지속적인 표준계약서 수정·보완
	표준계약서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방송 제작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 필요 합리적 계약을 돕는 무료 법률자문 시스템,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표준계약서 이해주체 간 표준계약서 요구사항에 차이 존재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위한 지속적 실태 조사 및 연구 활동, 공청회 등 강화 중·장기적으로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표준제작비 산정, 저작권 배분 원칙 설정 등)

부 록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설문지

1 독립제작사

ID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방송사/출연진/스태프 등과의 계약시 표준계약서 적용 현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0~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의처 : (주)아시아리서치센터 장영배 본부장 (☎ 02-3775-1347)

주관부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산업정책팀 송진 (☎ 061-900-6313)

※ 응답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3만원 상당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아래 응답자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	
독립제작사명			
제작사 상시 근로자수	() 명	주된 방송영상물 제작 장르	① 드라마 ② 다큐멘터리 ③ 애니메이션 ④ 영화 ⑤ 음악 ⑥ 오락/예능 ⑦ 교육/학습 ⑧ 교양/시가 ⑨ 뉴스/보도 ⑩ 스포츠/레저 ⑪ 기타 ()
제작사 연간 매출액	() 억 원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계약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그리고 소속 기획사 간의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영상 제작 스태프와의 업무와 관련된 임금 근로자 성격의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도급을 받는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인적 업무수행에 따른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제정 하였습니다.

1. 다음의 정부가 제정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대상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정도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보았다	④ 잘 몰랐다	⑤ 전혀 몰랐다
① 방송사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② 출연진	제작사와 가수 및 그 소속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제작사와 배우 및 그 소속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③ 스태프	제작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제작사가 도급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제작사가 업무를 스태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① 방송사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납품/구매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방송사와의 프로그램 제작/납품/구매 계약에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ㄱ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ㄴ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제작사만) 가장 최근 방송사와 체결한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 - 프로그램 일부 혹은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 지급	①	②	③	④	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출연료 등 지급보증>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제출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수익배분>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	①	②	③	④	⑤
<분쟁해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	①	②	③	④	⑤



[1-2] (표준계약을 적용한 적이 있다는 제작사만) 방송사에서 제작사와의 계약시 표준계약서의 내용(조항) 중 잘 적용하지 않는 내용(조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내용(조항)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① 제작비 | ②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
| ③ 출연료 등 지급보증 | ④ 수익배분 |
| ⑤ 분쟁해결 | ⑥ 기타 () |

위의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1-3] (표준계약을 적용한 적이 없다는 제작사만) 제작사와 방송사간의 계약시 표준계약을 활용하여 계약 체결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방송사에게 불리한 조건(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 ② 방송사(계약담당자)가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을 잘 몰라서
- ③ 방송사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 ④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⑤ 기타 ()

②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ㄱ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ㄴ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는 제작사만) 가장 최근 출연진과 체결한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출연료 지급>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예술인에게 지급토록 함	①	②	③	④	⑤
<출연료 지급보증>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 마련	①	②	③	④	⑤
<최대 촬영시간 등> 대본은 촬영일 2일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이상 지속 할 수 없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계약 불이행> (쌍방 동일) 계약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증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하며 출연료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함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 넘을 수 없음	①	②	③	④	⑤
<권리의 귀속>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② 제작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제작스태프와의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는 제작사만) 가장 최근 제작스태프와 체결한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⑨ 해당 없음
제작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⑨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임금 지급기일 명시, 부당한 임금 결정 금지 등 명시	①	②	③	④	⑤	⑨
<권리>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스태프 권리 보호, 다만 제작사는 제작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식재산권 소유	①	②	③	④	⑤	⑨
제작사가 도급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이행보증> 제작사는 계약 체결시 제작스태프 회사에 계약이행보증 보험 증권 제출 요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⑨
<임금 등 지급보증> 제작스태프 회사가 제작사에게 임금 등의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때까지 제작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⑨
<권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①	②	③	④	⑤	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⑨ 해당 없음
제작사가 업무를 스태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위탁업무량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	①	②	③	④	⑤	⑨
<계약대금> 상호 합의하에 정하되, 일일업무량 및 업계 수준 등을 반영	①	②	③	④	⑤	⑨
<권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①	②	③	④	⑤	⑨

[1-2]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는 제작사만) 제작사에서 제작스태프와 계약시 표준계약서의 내용(조항) 중 적용하기 곤란한 내용(조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곤란한 계약 내용(조항)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① 4대 보험 가입 | ② 임금 혹은 계약대금 |
| ③ 저작물의 권리 | ④ 계약이행 보증 |
| ⑤ 임금 등 지급보증 | ⑥ 업무조건 등의 보장 |
| ⑦ 기타 () | |

위의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	--

[1-3]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없는 제작사만) 귀사가 제작스태프와의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제작사에게 불리한 조건(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 |
| ②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을 잘 몰라서 | |
| ③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
| ④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
| ⑤ 기타 () | |

II.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 방송사와의 프로그램 제작/납품/구매 관련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2. 가수/배우 등 출연진과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 제작스태프와의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4. 마지막으로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정/마련한 방송분야 (방송사/출연진/스태프) 표준계약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 가수/배우 등 출연진

ID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가수/배우 등 방송출연진(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등과의 계약시 표준계약서 적용 현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 (주)아시아리서치센터 장영배 본부장 (☎ 02-3775-1347)

주관부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산업정책팀 송진 (☎ 061-900-6313)

※ 응답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휴대폰으로 소정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아래 응답자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출연자 구분	① 가수 ② 배우				
응답자 연락처 (휴대폰)					
출연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출연자 연령	① 20대 ④ 50대	② 30대 ⑤ 60세 이상	③ 40대
출연자 관련 활동기간	() 년	방송 관련 주된 출연(계약) 기관	① 방송사	② 외주제작사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

1. 다음의 정부가 제정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대상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정도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보았다	④ 잘 몰랐다	⑤ 전혀 몰랐다
출연진	방송사와 가수 및 그 소속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방송사와 배우 및 그 소속사간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①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계약에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출연진만) 가장 최근 방송사와 체결한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출연료 지급>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예술인에게 지급토록 함	①	②	③	④	⑤
<출연료 지급보증>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 마련	①	②	③	④	⑤
<최대 촬영시간 등> 대본은 촬영일 2일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이상 지속 할 수 없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계약 불이행> (쌍방 동일) 계약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증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하며 출연료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함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 넘을 수 없음	①	②	③	④	⑤
<권리의 귀속>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②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계약에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출연진만) 가장 최근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출연료 지급>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예술인에게 지급토록 함	①	②	③	④	⑤
<출연료 지급보증>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 마련	①	②	③	④	⑤
<최대 촬영시간 등> 대본은 촬영일 2일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이상 지속 할 수 없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계약 불이행> (쌍방 동일) 계약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증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경우 동의를 구해야 하며 출연료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함 단, 기존 출연료에 준하고 최대 150% 넘을 수 없음	①	②	③	④	⑤
<권리의 귀속>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II.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2. 외주제작사와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 마지막으로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정/마련한 방송분야 (방송사/출연진/스태프) 표준계약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 제작 스태프

ID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안)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방송영상 제작 스태프를 대상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등과의 계약시 표준계약서 적용 현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 (주)아시아리서치센터 장영배 본부장 (☎ 02-3775-1347)

주관부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산업정책팀 송진 (☎ 061-900-6313)

※ 응답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소정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아래 응답자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응답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제작 관련 활동기간	() 년	주된 계약기관 및 체결방식	① 방송사 개별 계약 ② 방송사 팀별 계약 ③ 독립제작사 개별 계약 ④ 독립제작사 팀별 계약
소속회사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주된 계약형태	① 서면계약 ② 구두계약 ③ 서면/구두 등의 특별한 계약이 없이 제작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

1. 다음의 정부가 제정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대상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정도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보았다	④ 잘 몰랐다	⑤ 전혀 몰랐다
스태프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방송사가 업무를 스태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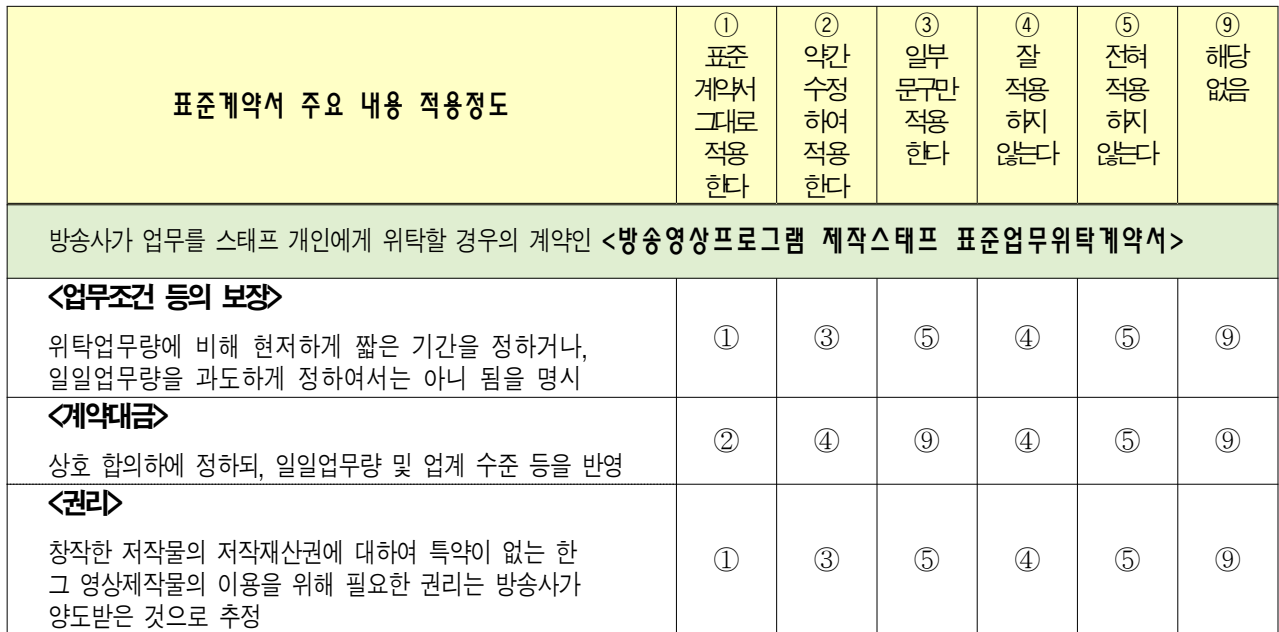
①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의 계약에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스텝만) 가장 최근 방송사와 체결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⑨ 해당 없음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스텝과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텝 표준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제작스텝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⑨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방송 후 익월 15일까지) 임금 지급, 부당한 임금 결정 금지 등 명시	①	②	③	④	⑤	⑨
<권리>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스텝 권리 보호, 다만 방송사는 제작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식재산권 소유	①	②	③	④	⑤	⑨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스텝과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텝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이행보증> 방송사는 계약 체결시 제작스텝 회사에 계약이행보증 보험 증권 제출 요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⑨
<임금 등 지급보증> 제작스텝 회사사가 방송사에게 임금 등의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⑨
<권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①	②	③	④	⑤	⑨



- ① 4대 보험 가입
- ② 임금 혹은 계약대금
- ③ 저작물의 권리
- ④ 계약이행 보증
- ⑤ 임금 등 지급보증
- ⑥ 업무조건 등의 보장
- ⑦ 기타 ()

위의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 ① 방송사에게 불리한 조건(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 ② 방송사(계약담당자)가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을 잘 몰라서
- ③ 방송사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 ④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⑤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⑥ 기타 ()

②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외주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의 계약에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스태프만) 가장 최근 제작사와 체결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⑥ 해당 없음
제작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⑥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방송 후 익월 15일까지) 임금 지급, 부당한 임금 결정 금지 등 명시	①	②	③	④	⑤	⑥
<권리>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스태프 권리 보호, 다만 제작사는 제작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식재산권 소유	①	②	③	④	⑤	⑥
제작사가 도급을 주는 스태프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이행보증> 제작사는 계약 체결시 제작스태프 회사에 계약이행보증 보험 증권 제출 요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임금 등 지급보증> 제작스태프 회사사가 제작사에게 임금 등의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때까지 제작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권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①	②	③	④	⑤	⑥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 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 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 다	⑨ 해당 없음
제작사가 업무를 스태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 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위탁업무량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	①	③	⑤	④	⑤	⑨
<계약대금> 상호 합의하에 정하되, 일일업무량 및 업계 수준 등을 반영	②	④	⑨	④	⑤	⑨
<권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①	③	⑤	④	⑤	⑨

[1-2]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스태프만) 제작사에서 스태프와의 계약시 표준계약서의 내용(조항) 중 잘 적용하지 않는 내용(조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작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내용(조항)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① 4대 보험 가입 | ② 임금 혹은 계약대금 |
| ③ 저작물의 권리 | ④ 계약이행 보증 |
| ⑤ 임금 등 지급보증 | ⑥ 업무조건 등의 보장 |
| ⑦ 기타 () | |

위의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1-3]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없다는 스태프만)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제작사에게 불리한 조건(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 |
| ② 제작사(계약담당자)가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을 잘 몰라서 | |
| ③ 제작사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 |
| ④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
| ⑤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
| ⑥ 기타 () | |

II.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관련

- ①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 ②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
- ③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 ④ 4대 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 ⑤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및 강제화 ⑥ 각종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
- ⑦ 노동환경, 인권환경 관련 정기적인 실태 파악 ⑧ 기타 ()



Ⅲ.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 방송사와의 방송 제작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2. 외주제작사와의 방송 제작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 마지막으로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정/마련한 방송분야 (방송사/출연진/스태프) 표준계약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 독립PD

ID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안)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방송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립PD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사/독립제작사 등과의 계약시 표준계약서 적용 현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처리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의처 : (주)아시아리서치센터 장영배 본부장 (☎ 02-3775-1347)

주관부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산업정책팀 송진 (☎ 061-900-6313)

※ 응답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소정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아래 응답자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응답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응답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제작 관련 활동기간	() 년	주된 계약기관 및 체결방식	① 방송사 개별 계약 ② 방송사 팀별 계약 ③ 독립제작사 개별 계약 ④ 독립제작사 팀별 계약
소속회사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주된 계약형태	① 서면계약 ② 구두계약 ③ 서면/구두 등의 특별한 계약이 없이 제작

1.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 인지

1. 다음의 정부가 제정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대상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정도		① 잘 알고 있다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들어는 보았다	④ 잘 몰랐다	⑤ 전혀 몰랐다
독립PD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방송사가 업무를 독립PD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①	②	③	④	⑤



①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방송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의 계약에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독립PD만) 가장 최근 방송사와 체결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⑥ 해당 없음
방송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⑥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방송 후 익월 15일까지) 임금 지급, 부당한 임금 결정 금지 등 명시	①	②	③	④	⑤	⑥
<권리>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스태프 권리 보호, 다만 방송사는 제작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식재산권 소유	①	②	③	④	⑤	⑥
방송사가 도급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이행보증> 방송사는 계약 체결시 제작스태프 회사에 계약이행보증 보험 증권 제출 요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임금 등 지급보증> 제작스태프 회사사가 방송사에게 임금 등의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권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①	②	③	④	⑤	⑥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⑨ 해당 없음
방송사가 업무를 독립PD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업무조건 등의 보장> 위탁업무량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일일업무량을 과도하게 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	①	③	⑤	④	⑤	⑨
<계약대금> 상호 합의하에 정하되, 일일업무량 및 업계 수준 등을 반영	②	④	⑨	④	⑤	⑨
<권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산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①	③	⑤	④	⑤	⑨

[1-2]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독립PD만) 방송사에서 독립PD와의 계약시 표준계약서의 내용(조항) 중 잘 적용하지 않는 내용(조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방송사에서 잘 적용하지 않는 내용(조항)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① 4대 보험 가입 | ② 임금 혹은 계약대금 |
| ③ 저작물의 권리 | ④ 계약이행 보증 |
| ⑤ 임금 등 지급보증 | ⑥ 업무조건 등의 보장 |
| ⑦ 기타 () | |

위의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1-3]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없다는 독립PD만)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송사에게 불리한 조건(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② 방송사(계약담당자)가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을 잘 몰라서
 ③ 방송사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④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⑤ 방송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⑥ 기타 ()



2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관련

1. 2013년 8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이후 독립제작사와의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의 계약에 제작사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 질문 1-1번)
 ② 일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③ 아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 질문 1-3번)

[1-1] (표준계약서를 적용한 적이 있다는 독립PD만) 가장 최근 제작사와 체결한 근로/하도급/업무위탁 계약기준으로 다음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조항)을 어느 정도 적용/활용하여 계약하였습니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적용정도	① 표준 계약서 그대로 적용 한다	② 약간 수정 하여 적용 한다	③ 일부 문구만 적용 한다	④ 잘 적용 하지 않는다	⑤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⑨ 해당 없음
제작사가 고용하여 임금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⑨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방송 후 익월 15일까지) 임금 지급, 부당한 임금 결정 금지 등 명시	①	②	③	④	⑤	⑨
<권리>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스태프 권리 보호, 다만 제작사는 제작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 및 파생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식재산권 소유	①	②	③	④	⑤	⑨
제작사가 도급을 주는 독립PD와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이행보증> 제작사는 계약 체결시 제작스태프 회사에 계약이행보증 보험 증권 제출 요구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⑨
<임금 등 지급보증> 제작스태프 회사사가 제작사에게 임금 등의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때까지 제작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⑨
<권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제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	①	②	③	④	⑤	⑨

제작사가 업무를 독립PD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계약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① 4대 보험 가입 ② 임금 혹은 계약대금
③ 저작물의 권리 ④ 계약이행 보증
⑤ 임금 등 지급보증 ⑥ 업무조건 등의 보장
⑦ 기타 ()

위의 계약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 ① 제작사에게 불리한 조건(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 ② 제작사(계약담당자)가 표준계약서 내용(조항)을 잘 몰라서
- ③ 제작사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 ④ 구두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⑤ 제작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 ⑥ 기타 ()

Ⅲ. 표준계약서 관련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바라는 사항

1. 방송사와의 방송 제작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2. 독립제작사와의 방송 제작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와 관련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 마지막으로 방송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제정/마련한 방송분야 (방송사/출연진/스태프/독립PD) 표준계약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진행	송 진(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진	김경환(상지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장영배(아시아리서치센터 본부장) 이정기(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의교수) 유인찬(아시아리서치센터 팀장) 서유라(아시아리서치센터 연구원) 조균선(아시아리서치센터 연구원) 류경민(아시아리서치센터 연구원) 김기웅(아시아리서치센터 연구원)

KOCCA 연구보고서 15-37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2016년 2월 29일 인쇄

2016년 2월 29일 발행

발행인 : 송성각

발행일 : 2016년 2월 29일

발행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전화 : (061) 3153-1114 / 팩스 (061) 900-6025

인터넷 : <http://www.kocca.kr>

인쇄처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ISBN: 978-89-6514-470-0 (93600)

비매품

